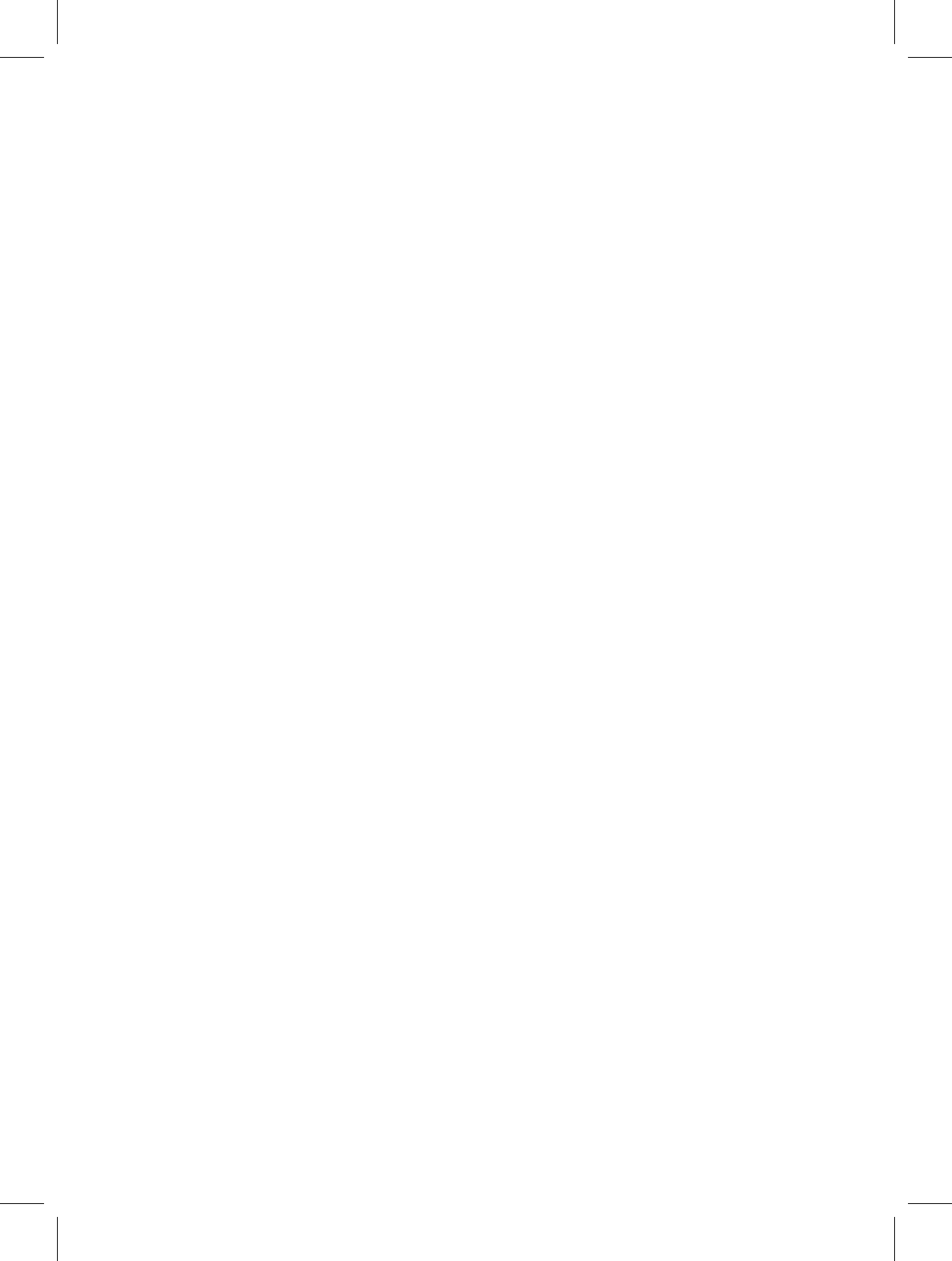


201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기록 확보를 위해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입니다.

연차보고서는 1967년 「농업기본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정책 및 농업동향을 내용으로 하여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농업기본법」이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 동향 및 정책을 포함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동향·정책이 추가된 연차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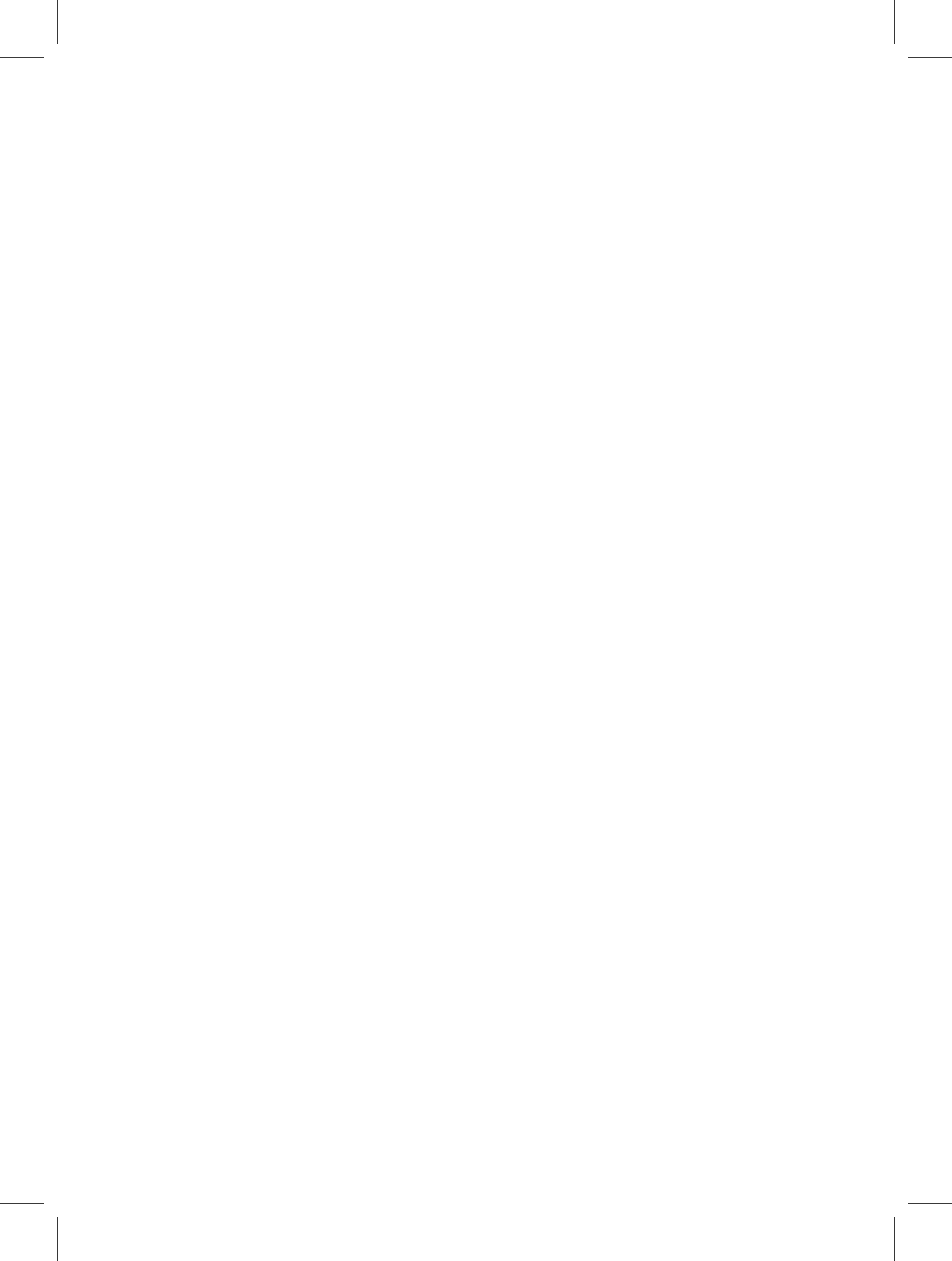
2011년 연차보고서는 ▲1편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동향 ▲2편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3편 2011년 수산업 동향 ▲4편 2011년 수산업 정책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 3편에서는 2011년 농어업·농어촌 경제동향, 국내·국제 농식품 수급동향 등의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를 제시하고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2편, 4편은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수산업에 대한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내용 및 성과, 평가 및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어업분야의 선진국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가 이러한 농어업의 국내외 환경과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농어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통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3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3
2. 농경지	4
제2절 농가경제	6
1. 소득 동향	6
2. 가계지출 동향	10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11
4. 농가자산 동향	11
5. 농가부채 동향	12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12
7. 주·부업별 지표	13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14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15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15
11. 지역별 주요지표	16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16
1. 개 황	16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7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20
1. 농업생산성	20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1
3. 농림업 부가가치	23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24
--------------------	----

1. 식량작물	24
2. 원예·특용작물	26
3. 축산물과 사료작물	32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37
2. 식품 수요현황	41
3. 식품산업 동향	45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50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55

제3장 국제곡물 수급·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60
2. 국제곡물 가격동향	61

제2절 주요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64
2. 주요국가 통상협력	76

제2편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소득 증대	93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	93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95

3.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운영	97	4. 논 소득기반 다양화	160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	100	5.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161
제2절 농가 경영 안정 지원	102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1. 농지은행 활성화	102	제1절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농식품 R&D 혁신	164
2.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106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164
3. 재해농가 지원 확충	109	2.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168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110	3.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170
5.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111	4. 농림수산물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173
6.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116	5. 종자산업 육성	177
7.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17	6. 근층산업 육성	180
8.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118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83
9. 농기계임대 활성화	120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183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22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187
1. 후계농업인 육성	122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190
2. 농업벤처 육성	125	4. 농지제도 개선	193
3. 농어업법인 활성화	126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4. 농어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128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95
5.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131	1. WTO / DDA 협상대응	195
6. 귀농·귀촌 지원대책 정비	133	2. 한·미 FTA 협상	199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3. 한·EU FTA 협상	201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36	4. 한·페루 FTA 협상	202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136	5. 한·콜롬비아 FTA 협상	203
2.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138	6. 한·호주 FTA 협상	205
3.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140	7. 한·터키 FTA 협상	206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42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207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147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207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51	2. 해외농업개발	211
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	151		
2. 공공비축제도 운영	155		
3. 비축수입농산물 관리	158		

목 차

3. OECD 활동	213	2.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262
4. FAO 활동	218	3.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	264
5. G20 농업장관회의	222	4. 천일염 산업 육성	267
6. AMAF+3 회의(아세안+한·중·일 농림장관회의)	224	5. 전통주 산업 육성	269
제6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72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226	7. 식생활 교육 추진	274
1. 농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226	8. 쌀 가공산업 활성화	278
2. 농식품안전성검사 확대	228	제2절 농식품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280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230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280
4. GMO 표시제도 및 안전관리	232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285
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234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6.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236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289
7.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238	1.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	289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240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292
1. 가축질병 방역강화	240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94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243	4.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97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246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299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48	6.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302
제3절 친환경농업 육성	250	7. 농지연금 활성화	303
1.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250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305
2. 친환경 비료 지원	252	1. 농어촌 종합개발	305
3. 친환경 농업직불제 운영	254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11
4. 친환경 농산물 소비유동 활성화	256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313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258	4.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315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5.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318
제1절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260	6. 향토자원 산업화	321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260	7. 농공단지 조성	323

제3편

2011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343
1. 어가인구	343
2. 어업 총생산	345
3. 어선등록현황	346
4. 이용어장	348
5. 어업 경영체	352
제2절 어가 경제	357
1. 어가소득	357
2. 어가 가계지출	358
3. 어가자산	358
4. 어가부채	359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360
1. 생산동향	360
2. 연근해어업	361
3. 양식어업	367
4. 내수면어업	368
5. 원양어업	369

제4편

2011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394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394
2. 유어산업 육성	399
3. 내수면 산업 육성	402
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405
5. 수산물 수출 진흥	408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409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409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411
3.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	413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325
1. 대규모 경지정리	325
2. 밭 기반 정비	327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28
4.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329
5. 수리시설 개보수	331
6. 농촌용수 개발사업	332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	335

제2절 국내수산물 수출·수입	370
1. 수출	370
2. 수입	373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377
1. 수급	377
2. 소비	377
3. 가격	378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379
1. 어황	379
2. 자원동향	380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382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384
1. 세계 수산물 생산	384
2. 세계 수산물 교역	386

목 차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416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16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418
3.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420
4.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422

제2절 어업질서 확립	423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423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425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427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428

제4장 어가경영안정 · 소득증대

제1절 어가 소득 증대	430
1.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430
2.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433

제2절 어가경영안정 지원	435
1. 어업보험 내실화	435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437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439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445
1. 수산 경영인 육성	445
2.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447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448

제2절 살기 좋은 어촌 개발	450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450
2. 어촌 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452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454

4. 어항시설 확충	456
5. 어촌 · 어항 관광개발	459
6. 어촌 · 어항 관광 기반 조성	462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464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464
2. 수출 · 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466
3. 수출 · 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468
4. 친환경 양식생산	469
5. 양식어장 환경개선	470

제2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472
1.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472
2.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475
3. 민간 가격안정사업	476
4.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477
5.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479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제1절 국제협상 강화	481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481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483
3.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485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487
5. 한 · 일 어업협정	491
6. 한 · 중 어업협정	494
7. 한 · 러 어업협정	497
8.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500

제2절 해외 수산자원 개발	503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503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505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507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508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4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23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5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24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5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25
〈표 1-1-4〉 휴경면적	6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26
〈표 1-1-5〉 농가소득	6	〈표 1-2-4〉 품목별 채소류 생산동향	27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7	〈표 1-2-5〉 채소류 수급동향	27
〈표 1-1-7〉 농업소득	7	〈표 1-2-6〉 과실류 수급동향	28
〈표 1-1-8〉 농업총수입	8	〈표 1-2-7〉 화훼산업 현황	29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8	〈표 1-2-8〉 특용작물 수급동향	30
〈표 1-1-10〉 농업경영비	9	〈표 1-2-9〉 버섯류 수급동향	31
〈표 1-1-11〉 농외소득	9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31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10	〈표 1-2-11〉 인삼류 생산 동향	32
〈표 1-1-13〉 가계비 지출	10	〈표 1-2-12〉 쇠고기 수급동향	33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11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35
〈표 1-1-15〉 농가자산	11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36
〈표 1-1-16〉 농가부채	12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36
〈표 1-1-17〉 2011년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13	〈표 1-2-16〉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38
〈표 1-1-18〉 2011년 주·부업별 지표	13	〈표 1-2-17〉 2011년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도시가구평균)	39
〈표 1-1-19〉 2011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14	〈표 1-2-18〉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40
〈표 1-1-20〉 2011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15	〈표 1-2-19〉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41
〈표 1-1-21〉 2011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15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42
〈표 1-1-22〉 2011년 지역별 주요지표	16	〈표 1-2-21〉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43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17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44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8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45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21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21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22		

표 목 차

〈표 1-2-24〉 2010년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46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100
〈표 1-2-25〉 규모별 추이	47	〈표 2-2-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03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47	〈표 2-2-3〉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농지임대 실적	104
〈표 1-2-27〉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48	〈표 2-2-4〉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105
〈표 1-2-28〉 2010년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	49	〈표 2-2-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105
〈표 1-2-29〉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50	〈표 2-2-6〉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107
〈표 1-2-30〉 농식품 수출실적	51	〈표 2-2-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111
〈표 1-2-31〉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52	〈표 2-2-8〉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113
〈표 1-2-32〉 연도별 상위 수출품목 현황	53	〈표 2-2-9〉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113
〈표 1-2-33〉 농식품 수입실적	54	〈표 2-2-10〉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4
〈표 1-2-34〉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54	〈표 2-2-11〉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4
〈표 1-2-35〉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55	〈표 2-2-12〉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5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56	〈표 2-2-13〉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5
〈표 1-2-37〉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57	〈표 2-2-14〉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119
〈표 1-3-1〉 세계 주요 곡물 수급동향	60	〈표 2-2-15〉 2011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23
〈표 1-3-2〉 미국농무부 고시 국제곡물가격 동향	63	〈표 2-2-16〉 제10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126
〈표 1-3-3〉 미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65	〈표 2-2-17〉 농어업법인 현황	127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65	〈표 2-2-18〉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133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65	〈표 2-3-1〉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141
〈표 1-3-6〉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68	〈표 2-3-2〉 2011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149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70	〈표 2-3-3〉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152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73	〈표 2-3-4〉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153
〈표 1-3-9〉 한·미간 농산물 교역 동향	77	〈표 2-3-5〉 식량자급률, 곡물자주율,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내역	153
〈표 1-3-10〉 대미 주요 수출 품목	77	〈표 2-3-6〉 한국과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154
〈표 1-3-11〉 대미 주요 수입 품목	78	〈표 2-3-7〉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155
〈표 1-3-12〉 한·캐나다 농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81		
〈표 1-3-13〉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축수산물	81		

〈표 2-3-8〉 정부비축미 목표 및 매입물량	156
〈표 2-3-9〉 국가별 쌀 약정 현황	157
〈표 2-3-10〉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내역	159
〈표 2-3-11〉 시·도별, 품목별 타작물재배 약정현황	160
〈표 2-3-12〉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162
〈표 2-4-1〉 농림수산물식품 녹색성장 2011년 핵심과제 추진계획	166
〈표 2-4-2〉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168
〈표 2-4-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78
〈표 2-4-4〉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2011년)	179
〈표 2-4-5〉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180
〈표 2-4-6〉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현황(2011년)	189
〈표 2-4-7〉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	191
〈표 2-4-8〉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실적	192
〈표 2-5-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209
〈표 2-5-2〉 2011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212
〈표 2-6-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 이력관리 추진 실적	231
〈표 2-6-2〉 수출입 등·축산물 검역·검사 추진 현황	245
〈표 2-6-3〉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2008년)	253
〈표 2-6-4〉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253
〈표 2-6-5〉 유기질 비료 지원조건(2011년)	254
〈표 2-6-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255
〈표 2-6-7〉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단가	259
〈표 2-7-1〉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	275
〈표 2-7-2〉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281

〈표 2-7-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2011년)	282
〈표 2-7-4〉 25개 농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282
〈표 2-7-5〉 수출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규모	283
〈표 2-8-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2010년)	289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290
〈표 2-8-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295
〈표 2-8-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296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296
〈표 2-8-6〉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298
〈표 2-8-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300
〈표 2-8-8〉 영농, 가사도우미 지원실적	301
〈표 2-8-9〉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303
〈표 2-8-10〉 2011년 농지연금 추진실적	304
〈표 2-8-1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307
〈표 2-8-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308
〈표 2-8-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309
〈표 2-8-14〉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310
〈표 2-8-1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312
〈표 2-8-16〉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314
〈표 2-8-1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율	314
〈표 2-8-18〉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316
〈표 2-8-19〉 농림수산종합정보망 이용현황	317
〈표 2-8-20〉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322

표 목 차

〈표 2-8-2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322	〈표 3-1-12〉 종류별 · 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51
〈표 2-8-22〉 부처별 농공단지 지원 현황	324	〈표 3-1-13〉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353
〈표 2-8-2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326	〈표 3-1-14〉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354
〈표 2-8-24〉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327	〈표 3-1-15〉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4
〈표 2-8-25〉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현황	329	〈표 3-1-16〉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355
〈표 2-8-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330	〈표 3-1-17〉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5
〈표 2-8-2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331	〈표 3-1-18〉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356
〈표 2-8-2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332	〈표 3-1-19〉 어가소득	357
〈표 2-8-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333	〈표 3-1-20〉 어업소득	357
〈표 2-8-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34	〈표 3-1-21〉 어업외 소득	358
〈표 2-8-31〉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34	〈표 3-1-22〉 가계지출	358
〈표 2-8-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335	〈표 3-1-23〉 어가지산	359
〈표 2-8-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336	〈표 3-1-24〉 어가부채	359
〈표 2-8-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337	〈표 3-2-1〉 어업별 생산현황	360
〈표 2-8-3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338	〈표 3-2-2〉 부류별 생산현황	361
〈표 3-1-1〉 어가호수와 인구	343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	362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 · 연령별 구성	344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366
〈표 3-1-3〉 전업 · 겸업별 어업가구	344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368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345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369
〈표 3-1-5〉 어업 생산량 현황	345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370
〈표 3-1-6〉 어업 생산액 현황	346	〈표 3-2-8〉 수산물 수출현황	371
〈표 3-1-7〉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346	〈표 3-2-9〉 품목별 수출현황	371
〈표 3-1-8〉 어선등록현황	347	〈표 3-2-10〉 국가별 수출현황	372
〈표 3-1-9〉 선질별 어선등록현황	347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373
〈표 3-1-10〉 통급별 어선등록현황	348	〈표 3-2-12〉 수산물 수입현황	374
〈표 3-1-11〉 품목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0	〈표 3-2-13〉 품목별 수입현황	374
		〈표 3-2-14〉 국가별 수입현황	375
		〈표 3-2-15〉 어종별 수입현황	376

〈표 3-2-16〉 수산물 수급동향	377	〈표 4-3-6〉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429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378	〈표 4-3-7〉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429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378	〈표 4-4-1〉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431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동향	378	〈표 4-4-2〉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현황	431
〈표 3-2-20〉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385	〈표 4-4-3〉 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432
〈표 3-2-21〉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387	〈표 4-4-4〉 직물제(순직물제) 사업별 현황	434
〈표 3-2-22〉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388	〈표 4-4-5〉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	436
〈표 4-2-1〉 2010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396	〈표 4-4-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지급액	439
〈표 4-2-2〉 바다숲 추진현황 및 계획	397	〈표 4-4-7〉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1년)	441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398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446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400	〈표 4-5-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요	451
〈표 4-2-5〉 낚시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400	〈표 4-5-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2011년)	452
〈표 4-2-6〉 내수면어업권 현황	402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453
〈표 4-2-7〉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 실적	406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453
〈표 4-2-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407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454
〈표 4-2-9〉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현황(2011년)	410	〈표 4-5-7〉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현황	455
〈표 4-2-10〉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411	〈표 4-5-8〉 어항지정 현황(2011년)	457
〈표 4-2-11〉 2011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현황	413	〈표 4-5-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457
〈표 4-2-12〉 일선수협 순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 현황	414	〈표 4-5-1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2011년)	458
〈표 4-3-1〉 감척 필요 어선 척수	418	〈표 4-5-1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2011년)	458
〈표 4-3-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419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459
〈표 4-3-3〉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424	〈표 4-5-13〉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460
〈표 4-3-4〉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425		
〈표 4-3-5〉 2011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현황	428		

표 목 차

〈표 4-5-1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60	〈표 4-7-3〉 2011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492
〈표 4-5-15〉 어촌관광모델개발 시범사업내용	461	〈표 4-7-4〉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2011년)	493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463	〈표 4-7-5〉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2011년)	493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463	〈표 4-7-6〉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어종별 어획실적(2011년)	493
〈표 4-6-1〉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465	〈표 4-7-7〉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495
〈표 4-6-2〉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 (2011년)	465	〈표 4-7-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498
〈표 4-6-3〉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누계)	471	〈표 4-7-9〉 남북수산협력 사업 주요 추진경과	502
〈표 4-6-4〉 2011년 정부비축사업 실적	475	〈표 4-7-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506
〈표 4-7-1〉 양국 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486		
〈표 4-7-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2011년)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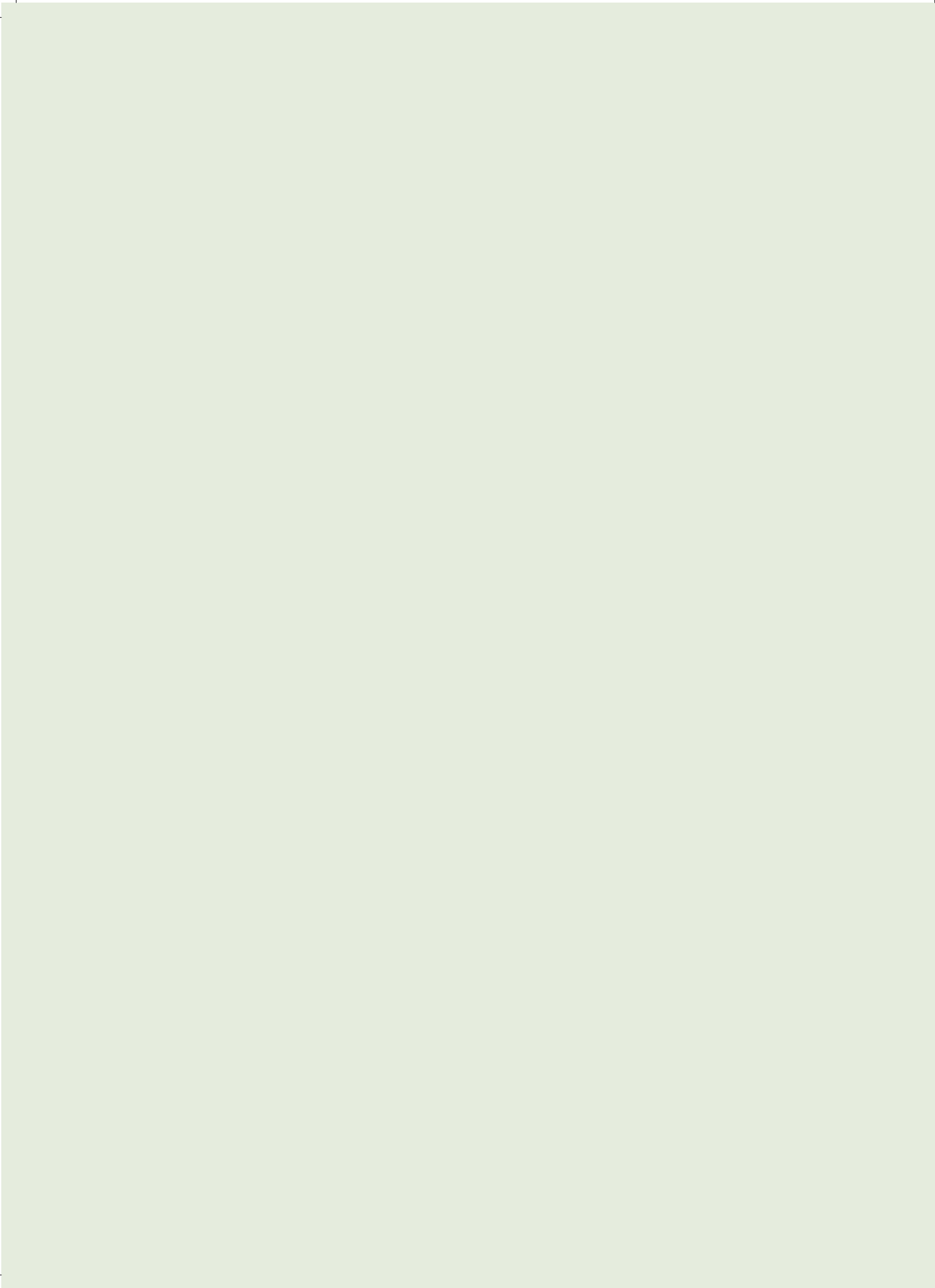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5	〈그림 2-7-3〉 2011 녹색식생활 실태조사 주요결과	277
〈그림 2-3-1〉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 유통비중	145	〈그림 2-7-4〉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281
〈그림 2-3-2〉 양곡관리 시스템	155	〈그림 3-2-1〉 유해성 적조 발생기간과 농도(왼쪽) 및 피해액(오른쪽)	383
〈그림 2-4-1〉 제2회 생명산업대전에 곤충산업 체험관 조성	182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403
〈그림 2-4-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187	〈그림 4-2-2〉 논생태 양식 개념도	404
〈그림 2-5-1〉 FAO 의사결정기구 (Governing Bodies) 개요	219	〈그림 4-3-1〉 유실된 통발·지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418
〈그림 2-6-1〉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표시 제도의 영향력	228	〈그림 4-3-2〉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422
〈그림 2-6-2〉 농림수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232	〈그림 4-6-1〉 생산자 중심의 신(新)유통체계	473
〈그림 2-7-1〉 식품 R&D 투자 부문	261	〈그림 4-6-2〉 노령진수산시장 현대화 후 조감도	474
〈그림 2-7-2〉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276		

제1편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제3장 국제곡물 수급·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11년 농가수는 1,163천가구로 전년의 1,177천가구보다 14천가구(1.2%)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962천명으로 전년의 3,063천명보다 101천명(3.3%)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54.2%인 630천가구로 전년의 627천가구(53.3%)보다 가구수는 3천가구가 증가하고 비중은 0.9% 증가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외의 일을 함께 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45.8%인 533천가구로 전년의 550천가구(46.7%)보다 17천가구가 감소하였다.

전체인구(49,779천명)중에서 농가인구(2,962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2011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이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33.7%로 2010년 31.8%보다 1.9% 증가하였다(전국 고령화율 2010년 : 11.0% → 2011년 : 11.4%)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56천명(49.2%), 여자가 1,506천명(50.8%)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연 도	단위	2000	2005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383	1,273	1,195	1,177	1,163	△14	△1.2
전 업 농가 (비중)		천호 (%)	902 (65.2)	796 (62.5)	693 (58.0)	627 (53.3)	630 (54.2)	3	0.4
겸 업 농 가 (비중)		천호 (%)	481 (34.8)	477 (37.5)	502 (42.0)	550 (46.7)	533 (45.8)	△17	△3.0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031 (8.6)	3,434 (7.1)	3,117 (6.4)	3,063 (6.2)	2,962 (6.0)	△54	△1.7
호당농가인구		명	2.91	2.70	2.61	2.60	2.55	0.05	△1.9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		%	32.7	43.2	49.7	46.4	48.6	-	-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		%	21.7	29.1	34.2	31.8	33.7	-	-
성 별 농 가 인 구	남자 (구성비)	천명 (%)	1,971 (48.9)	1,677 (48.8)	1,510 (48.4)	1,501 (49.0)	1,456 (49.2)	△45	△3.0
	여자 (구성비)	천명 (%)	2,060 (51.1)	1,757 (51.2)	1,607 (51.6)	1,562 (51.0)	1,506 (50.8)	△56	△3.6

자료 : 2009, 2011년 통계자료는 통계청 농업조사결과, 2000, 2005, 2010년 통계자료는 통계청 농업총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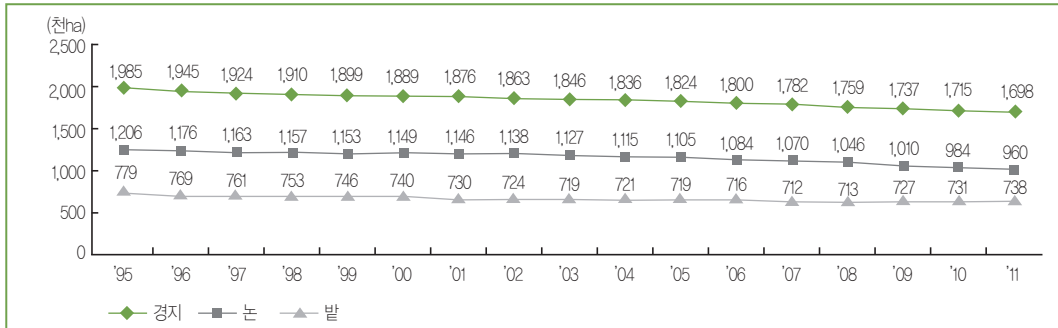
2.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7천ha 줄어든 1,698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960천ha로 전년에 비하여 24천ha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738천ha로 7천ha가 증가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7.9천ha), 공공시설(5.6천ha), 기타사유(10.0천ha)로 인하여 총 23.5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5.2천ha), 복구(1.1천ha) 등으로 총 6.3천ha 경지가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17.2천ha가 감소하였다.

2011년 경지이용면적은 1,797천ha로 전년보다 23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4.8%에서 104.7%로 낮아졌다.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054천ha로 전년보다 39천ha 감소, 채소는 227천ha로 21천ha 증가, 과수는 154천ha로 2천ha 감소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54.6천ha로 전년보다 4.1천ha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3.2%로 나타났다. ☞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2년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구분 연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간	간척	기타	계	건물건축	공공시설	기타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2007	4.3	3.4	0.6	0.4	23.2	10.2	4.1	8.9	△18.9
2008	5.6	4.6	0.4	0.5	28.4	9.8	5.2	13.4	△22.8
2009	26.7	23.0	2.7	1.0	48.7	15.2	13.9	19.6	△22.0
2010	9.5	7.9	0.4	1.2	31.0	8.4	9.3	13.3	△21.5
2011	6.3	5.2	0.4	0.7	23.5	7.9	5.6	10.0	△17.3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2년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분	연도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21	1,873	1,820	1,797	△23	△1.3
식 량 작 물	(미곡)	1,346	1,318	1,234	1,125	1,093	1,054	△39	△3.6
	(백류)	(90)	(68)	(61)	(54)	(51)	(42)	(△9)	(△17.6)
	(두류 등)	(200)	(177)	(193)	(147)	(150)	(158)	(8)	(5.3)
경 제 작 물	(채소)	851	780	689	748	641	743	102	15.9
	(과수)	(322)	(296)	(240)	(216)	(206)	(227)	(21)	(10.2)
	(기타) ¹⁾	(172)	(169)	(150)	(151)	(156)	(154)	(△2)	(△1.3)
		(357)	(315)	(299)	(381)	(279)	(362)	(83)	(29.7)
경 지 면 적		1,985	1,889	1,824	1,737	1,715	1,698	△17	△1.0
경지이용률(%)	(논)	108.1	110.5	104.7	110.8	104.8	104.7		
	(밭)	(104.1)	(106.3)	(102.9)	(112.0)	(106.2)	(105.6)		
		(114.7)	(116.9)	(107.3)	(109.0)	(102.7)	(103.6)		

주 :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2년

〈표 1-1-4〉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휴 경 면 적	64.6	16.8	44.2	45.4	50.5	54.6	4.1	8.1
논	33.5	4.3	24.1	13.9	20.1	22.4	2.3	11.4
밭	31.1	12.5	20.1	31.5	30.4	32.2	1.8	5.9
휴 경 륜 (%)	3.2	0.9	2.4	2.7	2.9	3.2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2년

제2절 농가경제

■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1. 소득 동향

■ 농가소득

2011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0,148천원으로서 전년(32,121천원)에 비해 6.1%(1,973천원) 감소하였다. 농업외소득은 전년수준이나,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3.3% 감소하고,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도 각각 2.8%, 13.7% 감소하였다.

〈표 1-1-5〉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0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가소득 ¹⁾	21,803	30,503	30,523	30,814	32,121	30,148	△1,973	△6.1
경 상 소 득	21,803	25,778	26,296	27,306	28,654	27,155	△1,499	△5.2
농 업 소 득	10,469	11,815	9,654	9,698	10,098	8,753	△1,345	△13.3
농 외 소 득	6,931	9,884	11,353	12,128	12,946	12,949	3	0.0
이 전 소 득	4,403	4,078	5,289	5,481	5,610	5,453	△157	△2.8
경 상 소 득 ²⁾	-	4,725	4,227	3,507	3,467	2,993	△474	△13.7

주 :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29.0%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2.4% 감소하였다.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8	2009	2010	2011
농가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84.8	84.5	86.2	88.6	89.2	90.1
농업소득	41.6	38.7	31.6	31.5	31.4	29.0
농외소득	32.9	32.4	37.2	39.4	40.3	43.0
이전소득	10.4	13.4	17.3	17.8	17.5	18.1
비경상소득	15.2	15.5	18.0	11.4	10.8	9.9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 농업소득

2011년 농업총수입은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는 3.4%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8,75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3.3% 감소하였다.

〈표 1-1-7〉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소득 ¹⁾ (농업소득률)	10,469 (65.4)	11,815 (44.6)	9,654 (37.4)	9,698 (36.4)	10,098 (37.1)	8,753 (33.1)	△1,345	△13.3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5,843	26,621	27,221	26,457	△764	△2.8
농업경영비	5,543	14,681	16,189	16,924	17,123	17,704	581	3.4

주 :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농업총수입은 26,45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감소하였다. 미곡과 채소는 각각 16.5%, 5.8% 증가하고, 축산 과수는 각각 26.4%, 9.3% 감소하였다.

〈표 1-1-8〉 농업총수입

(단위: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6,102	25,843	26,621	27,221	26,457	△764	△2.8
미 곡 수 입		5,450	7,264	7,296	7,364	6,522	5,368	6,254	886	16.5
축 산 수 입		3,981	6,386	5,145	5,336	6,972	5,892	4,335	△1,557	△26.4
채 소 수 입		3,386	6,388	6,817	5,755	6,198	7,251	7,675	424	5.8
과 수 수 입		1,542	2,945	3,192	3,398	3,355	4,147	3,762	△385	△9.3
기 타수입 ¹⁾		1,653	3,513	3,652	3,990	3,574	4,563	4,431	△132	△2.9

주: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채소수입(29.0%), 미곡(23.6%), 축산(16.4%) 및 과수수입(14.2%), 기타(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곡 수 입		34.0	27.4	28.5	24.5	19.7	23.6
축 산 수 입		24.9	24.1	20.6	26.2	21.6	16.4
채 소 수 입		21.1	24.1	22.3	23.3	26.6	29.0
과 수 수 입		9.6	11.1	13.2	12.6	15.2	14.2
기 타 수 입		10.4	13.3	15.4	13.4	16.9	16.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농업경영비는 17,70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하였다. 양축비와 임차료는 각각 7.0%, 8.0% 증가하였으나, 수선 및 농구비, 노무비, 비료·농약비는 각각 11.4%, 4.5%, 7.4% 감소하였다.

〈표 1-1-10〉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4,681	16,189	16,924	17,123	17,704	581	3.4
수선및농구비		807	318	329	327	372	330	△42	△11.4
노 무 비		441	913	886	843	897	857	△40	△4.5
양 축 비		1,261	2,747	3,340	3,676	3,125	3,345	220	7.0
비료·농약비		695	1,624	1,806	2,078	2,117	1,961	△156	△7.4
임 차 료		1,070	1,096	992	905	912	985	73	8.0
기 타 비 용 ¹⁾		1,269	7,983	8,836	9,095	9,700	10,226	526	5.4

주 :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집비용, 보험료 및 수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 농업외소득

2011년 농업외소득은 12,94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0.02% 증가하였다. 겸업소득은 5.4% 증가하고, 사업외소득은 1.9% 감소하였다.

* 겸업소득은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11〉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외소득		6,931	9,884	11,353	12,128	12,946	12,949	3	0.02
겸업소득		1,527 (22.0)	2,531 (25.6)	2,900 (25.5)	3,296 (27.2)	3,467 (26.8)	3,653 (28.2)	186	5.4
사업외소득		5,404 (78.0)	7,353 (74.4)	8,453 (74.5)	8,832 (72.8)	9,480 (73.2)	9,296 (71.8)	△184	△1.9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 이 전 소 득 및 비 경 상 소 득

2011년 이전소득은 2.8% 감소하였으며, 비경상소득 또한 13.7% 감소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6.9% 감소한 8,44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8,803	9,516	8,988	9,077	8,447	△630	△6.9
이 전 소 득		-	4,078	5,289	5,481	5,610	5,454	△156	△2.8
비 경 상 소 득		-	4,725	4,227	3,507	3,467	2,993	△474	△13.7

주 :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2. 가 계 지 출 동 향

2011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7,906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2,15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비소비지출은 5,75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 감소하였다.

〈표 1-1-13〉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비		14,782	26,649	27,102	26,574	27,672	27,906	234	0.8
소 비 지 출		14,782	19,378	20,328	20,017	21,264	22,156	892	4.2
비 소 비 지 출 ¹⁾		-	7,271	6,773	6,557	6,408	5,750	△658	△10.3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4.3	35.6	36.5	36.5	31.4	-	-
평균 소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68.3	83.4	85.6	82.5	82.7	90.8	-	-

주 :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 - 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11년 24,398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2,24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9.6%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처분가능소득 ¹⁾		21,629	23,232	23,749	24,257	25,712	24,398	△1,314	△5.1
소비지출 (분가지출)		14,782 (548)	19,378 -	20,328 -	20,017 -	21,264 -	22,156 -	892	4.2
잉여금 ²⁾		6,299	3,854	3,421	4,240	4,449	2,242	△2,207	△49.6

주 :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4. 농가자산 동향

2011년 가구당 평균자산은 387,18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자산과 예·저금 및 미 처분 농산물 등 유동자산이 각각 2.1%, 10.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5〉 농가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가자산		158,171	298,178	341,227	358,029	372,476	387,180	14,702	3.9
고정자산 ¹⁾		134,334 (84.9)	238,399 (80.0)	283,826 (83.2)	289,539 (80.9)	289,435 (77.7)	295,637 (76.4)	6,202	2.1
유동자산 ²⁾		23,837 (15.1)	59,779 (20.0)	57,401 (16.8)	68,490 (19.1)	83,041 (22.3)	91,542 (23.6)	8,501	10.2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5. 농가부채 동향

2011년 농가부채는 가구당 26,03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용 부채가 4.3% 감소하고, 가계용 및 겸업용 부채 등 농업용 이외 부채도 1.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당좌자산)은 30.3%로 전년에 비해 4.7% 개선되었다.

〈표 1-1-16〉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1995	2005	2008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농가부채(A)		9,163	27,210	25,786	26,268	27,210	26,035	△1,175	△4.3
농업용부채 (구성비)		6,351 (69.3)	16,315 (60.0)	13,600 (52.7)	13,150 (50.1)	12,930 (47.5)	11,892 (45.7)	△1,038	△8.0
농업용이외부채 ¹⁾ (구성비)		2,812 (30.7)	10,895 (40.0)	12,186 (47.3)	13,118 (49.9)	14,280 (52.5)	14,143 (54.3)	△137	△1.0
당좌자산(B)		19,739	54,354	52,118	63,493	77,668	85,848	8,180	10.5
단기상환능력 ²⁾ [(A/B) × 100]		46.4	50.1	49.5	41.4	35.0	30.3	-	-

주 :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6. 전업농가 · 겸업농가의 주요지표

2011년 전 · 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9,32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 소득의 57.7% 수준이었다.

〈표 1-1-17〉 2011년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A)	전업농가 ¹⁾ (B)	겸업농가 ²⁾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소 득	30,148	22,677	33,779	39,328	75.2	112.0	130.4
가 계 지 출	27,906	22,527	28,484	35,519	80.7	102.1	127.3
자 산	387,180	371,310	386,205	410,965	95.9	99.7	106.1
부 채 (부채 / 자산)	26,035 (6.7)	22,352 (6.0)	31,120 (8.1)	28,934 (7.0)	-	-	-

주 : 1) 전업농가 : 농가내의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2) 겸업농가 :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평균 농가자산은 387,180천원이며 ‘제2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410,965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는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31,120천원으로 나타났다.

7. 주·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38,989천원으로 자급농가(28,163천원)의 1.4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494,22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가는(260,103천원) 전문농가의 52.6%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3ha 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8.8%로 가장 높았다.

〈표 1-1-18〉 2011년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소 득	30,148	38,989	15,519	38,027	28,163
가 계 지 출	27,906	31,683	17,254	35,888	27,404
자 산	387,180	494,221	260,103	451,687	284,693
부 채 (부채 / 자산)	26,035 (6.7)	43,323 (8.8)	8,218 (3.2)	32,020 (7.1)	14,776 (5.2)

주 : 1) 농업총조사결과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2011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7,939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과수농가가 29,505천원으로 나타났다. 논벼농가의 소득은 19,707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0,148원)의 65.4%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화훼농가의 자산이 869,975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농가(592,192천원), 과수농가(454,973천원) 순이었다.

부채/자산비율은 특작농가가 25.6%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논벼 농가는 3.6%로 가장 낮았다.

〈표 1-1-19〉 2011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구 분	평 균	논 벼	과 수	채 소	특 작	화 훼	전 작 ²⁾	축 산
농가구성비 ¹⁾	100.0	29.9	15.3	35.7	1.8	2.5	4.0	7.5
농 가 소 득	30,148	19,707	29,505	26,386	21,280	24,759	18,429	47,939
가 계 지 출	27,906	20,772	27,460	24,125	25,370	54,983	21,455	30,440
자 산	387,180	366,531	454,973	315,246	269,508	869,975	299,639	592,192
부 채 (부채 / 자산)	26,035 (6.7)	13,371 (3.6)	35,391 (7.8)	18,826 (6.0)	68,969 (25.6)	64,298 (7.4)	26,932 (9.0)	89,570 (15.1)

주: 1) 농가경제조사결과 구성비임

2)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2011년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7.0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6천만원 이상인 반면, 2.0ha미만은 3천만원대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2011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구 분	평 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상
농가소득	30,148	28,172	24,383	29,965	29,124	31,917	36,999	36,078	61,918	68,412
가계지출	27,906	27,206	24,251	25,520	26,749	29,429	35,233	38,450	41,009	37,548
자 산	387,180	298,889	321,197	359,909	372,975	445,434	560,251	538,489	853,270	867,329
부 채 (부채/자산)	26,035 (6.7)	20,126 (6.7)	18,495 (5.8)	16,239 (4.5)	29,187 (7.8)	27,098 (6.1)	37,547 (6.7)	52,395 (9.7)	106,648 (12.5)	88,435 (10.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2011년 농가소득은 40대 연령층의 소득이 45,646천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0,60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50대가 520,000천원, 60대가 410,000천원, 40대가 390,000천원 순이다. 농가부채는 50대가 57,972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50,477천원, 30대가 39,248천원이나 70세 이상은 8,241천원으로 경영주 연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21〉 2011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구 분	평 균	39세 이하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가소득	30,148	37,011	45,646	44,213	31,803	20,608
가계지출	27,906	38,509	40,324	41,588	29,383	18,965
자 산	387,180	355,251	392,373	518,318	414,535	305,885
부 채 (부채 / 자산)	26,035 (6.7)	39,248 (11.0)	50,477 (12.9)	57,972 (11.2)	26,156 (6.3)	8,241 (2.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11. 지역별 주요지표

2011년 제주의 농가소득이 가구당 36,375천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경기와 강원, 경남 지역이 33,000천원 내외이며, 충북, 충남,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 격이 높은 경기가 679,989천원으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경기(42,623천원), 제주(31,042천원) 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1-22〉 2011년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분 \ 지역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소득	30,148	33,129	32,868	28,559	27,093	29,639	30,429	26,587	33,208	36,375
가계지출	27,906	38,087	28,616	27,974	26,834	24,955	24,365	23,140	28,033	31,050
자 산	387,180	679,989	371,087	330,146	406,291	336,132	237,019	304,960	314,344	456,550
부 채 (부채/자산)	26,035 (6.7)	42,623 (6.3)	30,665 (8.3)	20,740 (6.3)	22,656 (5.6)	25,661 (7.6)	16,718 (7.1)	20,303 (6.7)	28,927 (9.2)	31,042 (6.8)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1. 개황

201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2로 전년에 비해 12.1%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도 127.4로 전년 대비 5.2%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4.3으로 나타났다. 농가교역조건이 100 이하인 것은 농가채산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5년=100)

구분 \ 연도	2005	2008	2009	2010	2011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00.0	99.4	101.0	108.1	120.2
농가구입가격지수(②)	100.0	115.3	120.4	122.2	127.4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00.0	86.2	83.9	88.5	94.3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012년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2로 청과물(18.9%), 미곡(13.1%), 축산물(1.3%)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맥류(△5.5%), 화훼(△2.9%)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12.1% 상승하였다.

■ 곡 물

2011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1로 전년에 비해 13.6%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미곡(13.1%), 잡곡(52.1%), 두류(21.1%), 서류(8.6%) 등은 전년보다 상승하고, 맥류(△5.5%)는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 청과물

2011년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4.4로 전년 대비 21.4% 상승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28.1%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배추(△14.2%), 상추(△23.4%), 등 엽채류가 전년보다 13.1% 하락하고, 무(△15.04%) 등 근채류도 12.3% 하락하였다.

건고추(92.3%), 마늘(31.9%), 양파(1.8%)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76.0% 상승하였으며, 참외(△3.8%), 수박(31.4%), 토마토(8.6%) 등 과채류는 9.0% 상승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사과(후지 7.7%, 쓰가루 13.4%, 홍로 12.5%), 복숭아(49.3%), 감(1.2%), 배(10.2%)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7.9% 상승하였다.

■ 축산물

2011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9로 돼지(46.0%), 새끼돼지(46.0%)는 상승하였으나, 한우 암소(△22.8%), 한우 송아지 암컷(△25.2%), 한우 송아지 수컷(△24.9%) 등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하였다.

■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1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0.6으로 전년 대비 2.1% 하락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깨(12.6%), 인삼(7.3%), 들깨(△2.6%), 땅콩(1.8%), 팽이버섯(△21.0%)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0.1% 상승하고, 국화(△9.9%), 장미(5.2%) 등 화훼류는 2.9% 하락하였다.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5년=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 대비 등락률	
		2005	2009	2010	2011	2010	2011
총 지 수	1,000	100.0	101.0	108.1	120.2	7.0	11.2
곡 물	338.3	100.0	100.0	98.5	112.1	△1.5	13.8
미 곡	277.3	100.0	97.7	90.4	102.2	△7.5	13.1
맥 류	9.1	100.0	89.1	84.7	80.0	△4.9	△5.5
잡 곡	6.2	100.0	114.3	122.6	186.5	7.3	52.1
두 류	19.5	100.0	109.1	150.0	181.7	37.5	21.1
서 류	26.2	100.0	117.4	145.6	158.1	24.0	8.6
청 과 물	339.9	100.0	95.9	113.0	134.4	17.8	18.9
채 소	226.0	100.0	101.4	122.5	150.6	20.8	22.9
(엽 채 류)	45.1	100.0	66.4	91.3	78.2	37.5	△14.3
(근 채 류)	12.1	100.0	104.3	186.2	173.9	78.5	△6.6
(조 미 채)	83.5	100.0	132.4	149.7	225.7	13.1	50.8
(과 채 류)	85.3	100.0	89.2	103.2	112.2	15.7	8.7
과 실	113.9	100.0	84.9	94.1	102.0	10.8	8.4
축 산 물	249.5	100.0	103.3	107.5	108.9	4.1	1.3
가 축	168.1	100.0	97.4	104.2	101.4	7.0	△2.7
유 란	81.4	100.0	115.5	114.4	124.4	△1.0	8.7
기타농산물	72.3	100.0	122.1	132.7	130.6	8.7	△1.6
특 용 작 물	48.5	100.0	94.3	100.0	100.1	6.0	0.1
화 훼	20.6	100.0	189.7	216.1	209.9	13.9	△2.9
부 산 물	3.2	100.0	108.5	91.2	81.4	△15.9	△10.7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012년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1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4로 가계용품(4.7%), 농업용품(2.7%), 농촌 임료금(6.5%)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5.2% 상승하였다.

■ 가계용품

2011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3.1로 식료품(6.0%), 피복 및 신발(3.3%), 보건의료(2.7%), 교육(1.6%) 등이 올라 전년보다 5.5% 상승하였다.

■ 농업용품

2011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9.1로 사료(10.6%), 영농광열비(15.3%)등이 올랐으나, 비료(Δ 16.0%), 가축(Δ 10.8%) 등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3.7% 상승하였다.

■ 농촌임료금

2011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25.5로 전년보다 7.7%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 노동임금은 남자노임(6.0%)과 여자노임(7.6%)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8.7% 올랐다. 또한 쌀 도정료와 농기계임차료도 전년보다 각각 13.1%, 5.8% 상승하였다. ☞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5년=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 대비 등락률	
		2005	2009	2010	2011	2010	2011
총 지 수	1,000	100.0	120.4	122.2	127.4	1.5	4.3
가 계 용 품	660.4	100.0	113.9	117.6	123.1	3.2	4.7
농 업 용 품	255.9	100.0	138.4	135.4	139.1	△2.2	2.7
종 자	18.0	100.0	105.3	106.5	107.0	1.1	0.5
비 료	23.5	100.0	241.0	214.2	180.0	△11.1	△16.0
농 약	22.0	100.0	120.8	124.8	123.5	3.3	△1.0
농 기 구	49.1	100.0	119.1	120.0	122.7	0.8	2.3
영 농 광 열	16.8	100.0	110.6	120.7	139.2	9.1	15.3
가 축	34.6	100.0	74.8	82.3	73.4	10.0	△10.8
사 료	66.3	100.0	179.5	166.2	183.9	△7.4	10.6
영 농 자 재	25.4	100.0	117.6	123.9	142.0	5.4	14.6
농 촌 임 로 금	83.7	100.0	116.4	117.8	125.5	1.2	6.5
농 업 노 동 임 금	44.5	100.0	119.3	125.3	134.0	5.0	6.9
도 정 료	3.6	100.0	110.8	103.6	116.7	△6.5	12.6
농 기 계 입 차 료	35.6	100.0	113.2	109.9	115.7	△2.9	5.3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012년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1. 농업생산성

■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11년 호당 노동시간은 1,091시간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4,976천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6ha로 전년 수준이었다.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영농시간	1,376	1,253	1,487	1,171	1,103	1,091	△12	△1.1
농업자본액	21,323	31,425	49,721	52,517	53,323	54,976	1,653	3.1
호당경지면적	1.32	1.37	1.43	1.45	1.46	1.46	-	-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2011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4,876원으로 전년 15,698원보다 5.2% 감소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0원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3시간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도 4,162천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하였다.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구분 \ 연도	단위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1,778	12,297	14,061	15,698	14,876	△822	△5.2
토지생산성 ²⁾	천원/10a	954	1,051	1,141	1,229	1,273	1,229	△44	△3.5
자본생산성 ³⁾	원/원	0.61	0.47	0.36	0.31	0.32	0.30	△0.02	△6.3
노동집약도 ⁴⁾	시간/10a	102	89	93	87	81	83	2	2.5
자본집약도 ⁵⁾	천원/10a	1,575	2,237	3,138	3,921	3,920	4,162	242	6.2

주 :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2년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김규섭

2011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628천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2,195천원으

로 전년보다 26.7% 증가하고, 양파는 1,509천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하였다. 고추 또한 2,063천원으로 전년 1,908천원보다 8.1% 증가하였다.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1,510천원으로 가장 많고, 양파 1,007천원, 고추 994천원, 논벼 398천원으로 나타났다.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고추가 3,224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마늘 3,053천원, 양파 1,902천원, 논벼 57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생산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종묘비 비중이 높은 마늘이 87.2%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추 83.1%, 양파 63.8%, 논벼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0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879	944	822	968	146	17.8
	생산비(B)	412	538	588	625	614	628	14	2.3
	경영비(C)	198	280	334	395	388	398	10	2.6
	순수익(A-B)	325	503	292	319	208	340	132	63.5
	소 득(A-C)	539	761	546	549	434	570	136	31.3
마 늘	조수입(A)	2,001	1,427	2,007	2,201	4,268	4,562	294	6.9
	생산비(B)	1,067	1,226	1,423	1,676	1,811	2,295	484	26.7
	경영비(C)	582	683	798	999	1,091	1,510	419	38.4
	순수익(A-B)	934	201	584	525	2,457	2,267	△190	△7.7
	소 득(A-C)	1,420	744	1,209	1,202	3,177	3,053	△124	△3.9
양 파	조수입(A)	1,178	1,519	1,908	2,936	3,244	2,908	△336	△10.4
	생산비(B)	733	921	1,048	1,372	1,422	1,509	87	6.1
	경영비(C)	414	485	610	892	936	1,007	71	7.6
	순수익(A-B)	445	598	860	1,564	1,822	1,400	△422	△23.2
	소 득(A-C)	764	1,034	1,298	2,043	2,308	1,902	△406	△17.6
고 추	조수입(A)	1,613	1,837	2,209	2,857	2,452	4,217	1,765	72.0
	생산비(B)	937	1,127	1,497	1,848	1,908	2,063	155	8.1
	경영비(C)	347	428	638	855	929	994	65	7.0
	순수익(A-B)	676	711	712	1,009	544	2,155	1,611	296.1
	소 득(A-C)	1,266	1,410	1,572	2,001	1,523	3,224	1,701	111.7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2012년

3. 농림업 부가가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성, 초청연구원 김태우

2011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7조 8,62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1%, 어업은 1.4% 감소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축산업 또한 2.0% 감소하였다. 이는 재배업 중 식량작물, 약용작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화훼류, 특용작물 등의 생산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부가가치 감소는 주요 축종인 한육우, 돼지의 생산액 감소에 따른 것이다.

어업 부가가치는 어류, 갑각류 등 일반 해면어업과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천해양식의 생산액 감소로 인하여 어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4% 감소하였다¹⁾.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단위 : 10억원, %, 2005년 기준가격)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어업		25,853	26,240	27,294	28,827	29,759	28,444	27,862
실질 증감률	농림업	1.3	1.5	4.0	5.6	3.2	△4.4	△2.0
	재배업	0.0	△0.6	1.2	5.0	2.1	△7.5	△2.2
	축산업	0.7	3.4	9.1	10.6	4.8	7.8	△2.0
	임업	4.4	7.7	11.0	2.8	15.4	3.3	△3.0
	어업	11.1	11.3	12.7	1.9	2.2	△6.5	△1.4
	농림어업 서비스	11.2	△3.2	△1.1	3.5	7.3	△3.1	2.0

자료 : 한국은행, 2012년

1) 농림어업부문 생산액은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2'를 참고하였음.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 식량정책과 사무관 강동윤

■ 식량 공급

2011 양곡년도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4,846천톤(정곡)으로 2010 양곡년도 5,510천톤보다 664천톤 감소하였다. 이는 곡물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쌀이 2010년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쌀은 전년 4,916천톤에 비해 621천톤 감소한 4,295천톤이 생산되었으며, 콩도 전년 139천톤보다 34천톤 적은 105천톤이 생산되었다. 보리, 옥수수, 서류, 기타 곡물도 전년보다 다소 적은 75천톤, 74천톤, 225천톤, 25천톤이 생산되었다. 반면, 밀의 경우는 전년 39천톤에 비해 8천톤 증가한 47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단위: 천톤)

구 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08	5,031	4,408	157	10	84	114	230	28
2009	5,488	4,843	149	19	93	133	224	27
2010	5,510	4,916	81	39	77	139	232	26
2011	4,846	4,295	75	47	74	105	225	2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012년

■ 식량 수요

2011년 소비량은 21,435천톤으로 전년 19,946천톤에 비해 1,489천톤 증가하였다. 식량용은 전년 대비 691천톤 감소하여 10,896천톤 소비되었으나, 사료용은 전년 대비 798천톤이 증가하여 10,539천톤 소비되었다. 식량의 연말재고는 2,122천톤으로 전년 2,835천톤에 비해 713천톤이 감소하였다. 이는 쌀의 연말재고가 952천톤으로 2010년 1,509천톤에 비해 557천톤이 감소한 것에 영향이 크다.

2011년 전체 식량자급률은 22.6%로 2010년 27.6%보다 5.0% 감소되었고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도 44.5%로 2010년 54.0%에 비해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의 자급률이 크게 하락(104.6→83%)하고 보리쌀(25.4→23.7%), 옥수수(3.8→3.3%), 콩(32.4→22.5%)의 자급률 하락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10년 125.6kg과 비슷한 125.7kg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 72.8kg에서 1.6kg 줄어든 71.2kg으로 나타났으며, 밀과 서류는 전년보다 각각 0.7kg, 0.1kg 줄어들어 31.4kg, 3.4kg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리는 전년과 동일한 1.3kg으로 나타났고, 옥수수, 콩, 기타는 각각 0.6kg, 0.7kg, 1.1kg이 늘어나서 전체 양곡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0.1kg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 월	2,676	2,904	3,019	2,031	2,706	24,28	2,189	1,975	26,50	2,404	2,835
생 산	7,048	7,013	5,816	5,931	5,720	5,433	5,315	5,031	5,470	5,510	4,846
수 입	5,051	10,022	14,258	14,624	13,860	14,099	13,852	13,769	12,822	14,808	15,876
소 비	12,596	16,282	19,974	19,961	19,779	19,771	19,382	18,125	18,538	19,946	21,435
식량용	10,124	9,981	10,601	10,014	10,892	10,479	10,487	9,721	9,623	10,205	10,896
사료용	2,472	6,301	9,373	9,285	8,887	9,292	8,895	8,404	8,915	9,741	10,539
연 말 재 고	2,179	3,657	3,119	2,625	2,507	2,189	1,975	2,650	2,404	2,835	2,122
자 급 률 (%) (사료용 제외시)	56.0 (69.6)	43.1 (70.3)	29.1 (55.7)	29.7 (55.6)	29.4 (54.0)	27.7 (52.7)	27.2 (51.6)	27.8 (51.8)	29.6 (56.2)	27.6 (54.0)	22.6 (44.5)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67.0	160.5	153.3	137.5	134.4	131.9	127.3	125.4	125.6	12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012년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kg)

구분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4.4	78.8	1.2	33.3	4.6	8.9	3.5	4.12
	2007	131.9	76.9	1.1	33.7	4.5	8.5	3.3	3.9
	2008	127.3	75.8	1.1	30.9	4.5	7.6	3.5	3.9
	2009	125.4	74.0	1.2	31.4	4.0	7.6	3.4	3.8
	2010	125.6	72.8	1.3	32.1	3.9	8.3	3.5	3.8
	2011	125.7	71.2	1.3	31.4	4.5	9.0	3.4	4.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2012년

2. 원예 · 특용작물

■ 채소류

■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도범

2011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260.5천ha이었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9,747천톤이었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24.1천ha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11.9% 증가한 1,085천톤이었다. 고랭지 무·배추는 재배면적이 7.4천ha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19천톤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14.1% 증가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8.8% 증가한 27.1천ha이었고, 생육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되어 생산량은 57.3% 증가한 2,614천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42.6천ha로 전년보다 4.5% 감소하였고, 생육기 잦은 강우로 작황도 부진하여 생산량은 전년 95천톤보다 19.2% 감소한 77천톤이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4.0천ha로 전년보다 7.2%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8.60% 증가한 295천톤이었다. 양파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3.9% 증가한 22.9천ha가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7.7% 증가한 1,520천톤이었다.

〈표 1-2-4〉 품목별 채소류 생산동향

(단위 : ha, 천톤)

구분	연도	2010			2011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엽근채소	배추	28,270	6,307	1,783	35,513	7,549	2,681
	무	21,891	4,748	1,039	23,068	5,362	1,237
	상추	5,248	2,692	141	4,691	2,490	117
	양배추	4,524	5,585	253	6,767	5,445	368
	당근	2,711	3,767	102	2,849	3,289	94
양념채소	고추	44,584	214	95	42,574	198	77
	마늘	22,414	1,212	272	24,035	1,227	295
	양파	22,113	6,384	1,412	22,976	6,616	1,5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2년

〈표 1-2-5〉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내수	8,677		10,611	11,461	10,104	10,658	10,155	10,658	10,450	9,139	10,672
수출	20		59	41	89	72	69	95	107	96	82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10,754
	생산	8,677	10,586	11,282	9,605	9,994	9,394	9,935	9,889	8,381	9,747
	수입	20	84	220	588	736	830	818	668	854	1,007
1인당소비량(kg)		132.6	160.6	165.9	145.5	153.8	149.2	153.6	152.5	-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2년

■ 과실류

■ 원예경영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과수 총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에는 161.2천ha로 전년에 비해 1.2천ha가 감소하였다. 과종별로는 사과 175ha, 감귤, 231ha, 기타 과실은 647ha가 증가한 반면, 배 1,158ha, 포도 127ha, 단감 945ha, 복숭아 113ha가 감소하였다.

2011년 과실 생산량은 2,458천톤으로 전년의 2,489천톤에 비해 1.2%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감소와 겨울철 동해피해,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착과량 감소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였고, 7~8월 잦은 강우로 사과 갈반병과 겹무늬썩음병, 배 흑성병 발생 등으로 전체 생산량

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귤의 경우에는 착과량 증가와 해거리 영향으로 생산량이 66천톤(10.7%) 증가하였다. 1인당 소비량은 62.4kg이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과실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과실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큰 과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과실류 수출은 주로 사과, 배 위주로 수출되었으며, 2011년 수출실적은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70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84백만달러 대비 16.7% 감소하였다. 특히 사과는 2010년 17백만달러에서 2011년 8백만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1-2-6〉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요	내수	1,790	2,473	2,747	3,029	3,030	3,294	3,182	3,299	3,051	3,104
	수출	13	11	20	36	25	31	39	51	40	32
공급	생산	1,766	2,300	2,429	2,593	2,504	2,750	2,698	2,881	2,489	2,459
	수입	37	184	338	472	551	575	523	469	602	677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8	62.6	62.2	67.9	65.5	67.7	62.4	62.4

자료: 농림수산물부 원예경영과, 2012년

■ 화훼류

원예경영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2011년 화훼류는 전국 10,054호에서 총 8,215억원을 생산·판매하여 전년 대비 생산·판매 실적이 각각 2.8%, 3.5% 감소되었다. 이는 고유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에 따른 화훼류 생산 농가의 경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배면적은 전년 6,829ha와 거의 유사한 6,833ha 수준이다.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 또한 전년 16,098원보다 3.8% 하락한 15,482원으로 여전히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화훼류 수출액은 2010년까지 시설현대화, 증·개축 등 규모화 지원,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원(지열, 목재펠릿 등)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의 정책 실행으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는 수출 주 상대국인 일본의 후쿠

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화훼류 수출액이 2010년 103,067천달러보다 12% 감소한 90,596천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화훼소비 감소로 화훼류 수입금액도 2010년 44,744천달러보다 0.7% 감소한 44,427천달러였다.

〈표 1-2-7〉 화훼산업 현황

연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배농가 (호)	8,945	12,509	13,080	12,859	12,440	12,021	11,588	10,685	10,347	10,054
재배면적 (ha)	3,674	5,343	6,047	7,950	7,688	7,509	7,073	6,639	6,829	6,833
생산액 (억원)	2,628	5,090	6,650	10,105	9,411	9,237	8,969	8,640	8,510	8,215
수출액 (천달러)	1,443	6,363	28,888	52,142	40,414	58,089	76,222	77,179	103,067	90,596
수입액 (천달러)	5,907	26,738	19,472	28,845	35,819	40,974	42,757	38,107	44,744	44,427

자료 : 농림수산물부 원예경영과, 2012년

■ 특용작물

■ 원예산업과 사무관 황신구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1% 감소한 9,5천톤, 2011년 자급률은 14.1% 수준이다.

* 생산량 : ('97년) 33천톤 → ('00년) 32 → ('05년) 23.5 → ('10년) 12.7 → ('11년) 9.5

참깨 수입은 연간 약 70~8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으로 도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 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에 있으며 2011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3% 감소한 10,8천톤으로 자급률은 32% 수준이다.

* 생산량 : ('98년) 14천톤 → ('00년) 9 → ('05년) 6.6 → ('10년) 13.9 → ('11년) 10.8

〈표 1-2-8〉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연도	참 개						땅 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수요	계	57.8	88.9	101.6	100.6	93.4	96.3	44.2	29.7	42.9	40.8	43.6	43.3
	당년소비	56.8	86.3	94.6	90.7	86.9	90.2	40.1	25.1	41.0	39.9	43.1	42.6
	수 출	0.4	-	-	-	-	-	-	2.3	0.4	-	-	-
	차년이월	0.6	2.6	7.0	9.9	6.5	6.1	4.1	2.3	1.5	0.9	0.5	0.7
공급	계	57.8	88.9	101.6	100.6	93.4	93.1	44.2	29.7	42.9	40.8	43.6	40.1
	전년이월	4.7	19.0	7.5	13.1	5.1	7.0	8.1	3.3	2.7	1.1	1.0	0.4
	생 산	38.1	27.9	24.1	20.9	12.7	9.5	28.7	16.8	12.4	8.3	13.9	10.8
	수 입	15.0	42.0	70.0	66.6	75.6	76.6	7.4	9.6	27.8	31.4	28.7	28.9
자 급 률 (%)		67	32	30	23	14	14	72	67	30	21	32	3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2012년

버섯 생산량은 소득 향상과 식품의 고급화에 따라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165.3천톤이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 등 4 품목 생산량이 157.6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였다.

* 생산량 : ('97년) 114천톤 → ('00년) 117천톤 → ('05년) 162천톤 → ('10년) 174천톤 → ('11년) 165천톤

〈표 1-2-9〉 버섯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수요	계	58.4	103.3	126.8	174.2	190.2	184.4
	당년소비	55.4	103.2	126.6	173.7	169.0	166.2
	수출	3.0	0.1	0.2	0.5	21.2	18.2
	차년이월	-	-	-	-	-	-
공급	계	58.4	103.3	126.8	174.2	190.2	184.4
	전년이월	-	-	-	-	-	-
	생산	55.3	95.8	117.6	162.1	173.6	165.3
	수입	3.1	7.5	9.2	12.1	16.6	19.1
자급률(%)		100	93	93	93	103	98

자료 :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관실, 2012년

수출은 팽이, 새송이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에 의한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38,112천달러였다.

* 수출액 : ('00년) 5,562천달러 → ('08년) 23,185천달러 → ('09년) 33,038천달러
→ ('10년) 38,886천달러 → ('11년) 38,112천달러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달러)

구분 \ 연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액(천달러)	5,562	8,633	23,185	33,038	38,886	38,231
팽이	62	3,448	11,259	21,276	26,296	22,591
새송이	-	3,455	7,298	9,667	11,267	13,671
느타리	23	693	1,347	224	311	351
기타	5,477	1,037	3,281	1,871	1,012	1,499

자료 :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관실, 2012년

■ 인삼류

■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영만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인삼 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1996년 홍삼 전매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1년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7.4% 감소한 17,601ha이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10년 23,857호, 2011년 23,578호로 전체농가의 2% 수준이지만 인삼 수출액은 2011년에 사상 최고치인 189백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수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11〉 인삼류 생산 동향

(단위 : ha, 톤, 호, 백만달러)

구분 \ 연도	1990	1995	1996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재배면적	12,184	9,375	8,940	12,445	14,153	17,831	19,408	19,702	19,010	17,601
생산량	13,889	11,971	10,147	13,664	14,561	21,818	24,613	27,460	26,944	26,737
농가수	36,404	23,172	23,304	23,011	15,793	19,850	24,298	23,285	23,857	23,578
수출액	165	140	113	79	82	92	97	109	124	189

자료 :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관실, 2012년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축산물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성구

■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

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1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17.3% 증가한 505천톤이었다.

2011년 소비량 중 수입산은 289천톤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하였고, 국내산은 216천톤으로 16.3% 증가하였다. 한편, 2011년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0.2kg으로 전년보다 15.9% 증가하였다.

〈표 1-2-12〉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소비량	328	317	330	369	365	396	431	505
국내산	145	152	158	171	173	198	186	216
수입산	183	164	172	198	191	198	245	289
1인당 소비량(kg)	6.8	6.7	6.8	7.6	7.5	8.1	8.8	10.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2년

산지 소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5년 465만원, 2006년 425만원, 2007년 475만원대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여파로 2008년 8월 344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 및 쇠고기이력제 전면 시행('09.6), 한우산업발전대책('08.12) 추진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어 2009년 12월에 579만원, 2010년에 523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사육두수 과잉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6년에는 2,020천두, 2007년에는 2,201천두, 2008년에는 2,430천두, 2009년에는 2,635천두, 2010년에는 2,922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1년 사육두수는 2,950천두로 전년보다 1.0%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8년 12월 181천호, 2009년 12월 175천호에서 2011년 163천호로 전년(172천호) 대비 5.2% 감소하였다.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8년 13.4두, 2009년 15.1두, 2010년 17.0두에서 2011년 18.1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 규모화는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11년 총 소비량은 2010년 944천톤보다 0.2% 증가한 946천톤이었다.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19.3kg에서 2011년 19.0kg으로 비슷하게 소비되었다. 한편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2010년 9,881천두에서 2011년에는 8,171천두로 17.3% 감소하였고, 2011년 모돈 수는 903천두로 2010년 976천두보다 7.5% 감소하였다.

사육 가구수는 2010년 7.3천가구에서 2011년 6.3천가구로 13.7%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10년 1,354두에서 2011년 1,287두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제역 여파로 분석된다.

산지 돼지가격도 2010년 평균 322천원/110kg이었으나 2011년은 471천원/110kg으로 증가하였다.

■ 닭고기

2008년말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2010년 8월 배달용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이후 국산 닭고기 수요 증가로 2011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56.6만톤, 1인당 소비량은 11.4kg으로 전년 총 소비량 52.2만톤, 1인당 소비량 10.7kg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7% 감소하여 평균 1,860원/kg이었으며, 2011년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76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11년 1.6천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46,465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1,232호로 규모화·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계란

계란의 2011년 총 소비량은 57.6만톤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하였다. 1인당 소비량은 1.7% 감소한 11.6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20.0% 증가한 1,361원/10개(특란기준)였다.

■ 우유

2011년 원유 총 생산량은 1,889천톤으로 2010년 2,073천톤 대비 8.9%(184천톤) 감소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포함)은 3,589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10년 3,249천톤보다 10.5% 증가하였고, 시유 소비량은 2011년 1,483천톤으로 2010년보다 3.8%(58천톤)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70.6kg으로 2010년 64.9kg보다 10.9% 증가하였으나, 음용유 소비량은 32.7kg으로 전년 33.6kg보다 0.9kg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산,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이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산원유 1,889천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양은 1,823천톤(백색시유 1,324, 가공시유 159, 기타 유제품 340)으로서 전년 투입량 1,930천톤에 비해 5.5% 감소하였다. 잉여량(분유가공량)은 전년 143천톤에 비해 53.8% 감소한 66천톤 수준이었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와 국내 소비 감소로 전년에 비해 11.6% 감소한 53.8%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전년 641원/보다 12.0% 높아진 718원/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11년 404천두로 전년 430천두보다 6.0%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도 전년 6,347호에서 2011년 6,068호로 4.4% 감소하였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구제역 발생으로 2011년 66.6두로 전년 67.7두에 비해 1.6% 감소하였다.

■ 사료작물

■ 축산경영과 서기관 문태섭, 사무관 김규

2011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4,960천톤으로 전년보다 0.7%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9,383천톤, 조사료가 5,577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6,815천톤으로 전년(17,710천톤)보다 5.1% 감소하였다.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5	2000	2006	2009	2010 (A)	2011 (B)	증감률 (B/A)
합 계	23,302	19,289	21,271	24,547	25,157	24,960	△0.7
농 후 사료	15,700	15,897	17,049	19,344	20,124	19,383	△3.6
배 합 사 료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16,815	△5.1
농가자급사료	844	792	1,356	2,679	2,414	2,568	6.4
조 사 료	7,602	3,392	4,222	5,203	5,033	5,577	10.8
사료작물 및 목초류	2,498	992	1,326	2,101	1,870	2,454	31.2
산야초, 볏짚 등	5,265	2,400	2,896	3,102	3,163	3,123	△1.2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이며,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2년

축종별로는 양계용 1.9%, 한육우용이 0.7% 증가한 반면, 양돈용 19.0%, 젓소용은 4.0% 감소하였다. 구제역 영향으로 돼지를 비롯한 젓소 등의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2011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다. 반면 기타 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6.1% 증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1년 배합사료 가격은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5% 인상되었다.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6	2009	2010 (A)	2011 (B)	증감률 (B/A)
합 계	10,518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16,815	△5.1
양 계 용	3,274	3,766	3,867	4,267	4,463	4,658	4,748	1.9
양 돈 용	3,551	4,725	5,215	5,175	5,332	5,535	4,482	△19.0
젓 소 용	1,790	2,905	1,892	1,539	1,311	1,292	1,240	△4.0
한 육 우 용	1,667	3,680	3,340	3,574	4,310	4,761	4,792	0.7
기 타	236	589	792	1,138	1,249	1,464	1,553	6.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2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지개발과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 신규로 85ha의 초지를 조성하였다.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분 \ 연도	1995	2000	2003	2006	2009	2010 (A)	2011 (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413	253	58	25	147	145	85	△41.3
관 리 면 적	66,301	51,870	46,546	42,114	40,057	39,371	38,953	△1.1
목 초 생 산 량	462	364	343	294	280	273	273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12년

2011년 초지 총 관리면적은 39천ha으로 273천톤(건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윤재

■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4~2011년간 연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2.7%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 3.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빵 및 떡류(7.6%), 기타식품(7.0%), 육류 및 육류가공품(5.6%)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2.0%), 외식비(2.0%)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2011년 4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9.2%), 곡류 및 곡류가공품(5.8%),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5.7%)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지류(0.4%), 해조 및 해조가공품(0.7%), 기타식품(1.6%)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표 1-2-16〉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및 곡물 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채소 및 채소 가공품	해조 및 해조 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차, 음료, 주류	외식비
2004	1,848.7	541.3 (100)	41.4 (7.6)	12.8 (2.4)	40.9 (7.6)	32.2 (5.9)	23.2 (4.3)	2.2 (0.4)	31.2 (5.8)	32.6 (6.0)	6.0 (1.1)	17.5 (3.2)	12.1 (2.2)	6.3 (1.2)	22.1 (4.1)	260.7 (48.2)
2005	1,925.6	546.6 (100)	39.2 (7.2)	12.9 (2.4)	43.5 (8.0)	32.1 (5.9)	24.8 (4.5)	2.3 (0.4)	32.2 (5.9)	31.8 (5.8)	6.2 (1.1)	17.6 (3.2)	11.6 (2.1)	7.7 (1.4)	21.8 (4.0)	262.7 (48.1)
2006	2,000.4	552.6 (100)	36.6 (6.6)	13.7 (2.5)	45.0 (8.1)	33.4 (6.0)	24.0 (4.3)	2.4 (0.4)	33.9 (6.1)	32.9 (5.9)	6.3 (1.1)	16.4 (3.0)	11.7 (2.1)	8.5 (1.5)	22.6 (4.1)	265.2 (48.0)
2007	2,074.4	564.8 (100)	35.5 (6.3)	14.9 (2.6)	46.1 (8.2)	34.0 (6.0)	23.8 (4.2)	2.3 (0.4)	34.1 (6.0)	33.9 (6.0)	6.5 (1.2)	16.7 (3.0)	10.2 (1.8)	8.8 (1.6)	22.7 (4.0)	275.3 (48.7)
2008	2,183.3	606.1 (100)	39.3 (6.5)	17.6 (2.9)	50.6 (8.3)	35.3 (5.8)	27.0 (4.5)	2.8 (0.5)	36.4 (6.0)	33.4 (5.5)	6.9 (1.1)	18.7 (3.1)	10.9 (1.8)	9.4 (1.6)	24.8 (4.1)	293.1 (48.4)
2009	2,187.8	591.1 (100)	37.2 (6.3)	18.6 (3.1)	52.4 (8.9)	34.3 (5.8)	28.8 (4.9)	2.9 (0.5)	36.2 (6.1)	32.1 (5.4)	3.9 (0.7)	19.8 (3.4)	10.9 (1.8)	9.0 (1.5)	24.4 (4.1)	280.8 (47.5)
2010	2,312.5	619.0 (100)	34.5 (5.6)	20.3 (3.3)	56.0 (9.0)	34.9 (5.6)	29.3 (4.7)	2.8 (0.5)	38.5 (6.2)	39.2 (6.3)	4.1 (0.7)	22.0 (3.6)	10.9 (1.8)	9.9 (1.6)	26.3 (4.2)	290.9 (47.0)
2011	2404.3	650.5 (100)	37.7 (5.8)	21.4 (3.3)	60.1 (9.2)	36.9 (5.7)	30.3 (4.7)	2.8 (0.4)	40.7 (6.3)	38.3 (5.9)	4.4 (0.7)	24.5 (3.8)	14.7 (2.3)	10.1 (1.6)	28.6 (4.4)	300.2 (46.1)
2004 ~2011	3.8	2.7	-1.3	7.6	5.6	2.0	3.9	3.3	3.9	2.3	-4.6	4.9	2.8	7.0	3.8	2.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년

■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11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소득 계층(3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유제품 및 알, 기타식품, 당류 및 과자, 차·음료·주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 정도가 작은 품목은 조미식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유지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이다.

〈표 1-2-17〉 2011년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도시가구평균)

(단위: 천원)

구 분	1·2분위		3분위		4·5분위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소 비 지 출	1,584	(67.3)	2,353	(100)	3,249	(138.1)
식 료 품	470	(72.1)	652	(100)	830	(127.2)
곡류 및 곡류가공품	35	(96.8)	36	(100)	41	(111.6)
빵 및 떡 류	15	(69.3)	21	(100)	28	(130.5)
육류 및 육류가공품	46	(77.0)	60	(100)	75	(125.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3	(94.3)	35	(100)	42	(121.3)
유 제 품 및 알	23	(72.5)	31	(100)	38	(120.4)
유 지 류	3	(91.6)	3	(100)	3	(114.4)
과일 및 과일가공품	80	(73.4)	37	(100)	52	(129.0)
채소 및 채소가공품	36	(97.4)	37	(100)	41	(109.9)
해조 및 해조가공품	4	(87.8)	4	(100)	5	(116.6)
당 류 및 과 자	16	(70.1)	26	(100)	30	(114.7)
조 미 식 품	15	(112.7)	13	(100)	15	(110.6)
기 타 식 품	8	(71.3)	11	(100)	13	(118.5)
차 · 음료 · 주류	22	(74.4)	30	(100)	35	(116.5)
외 식 비	183	(60.4)	305	(100)	414	(136.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년

■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방과 비타민C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2,051kcal, 단백질 74.0g, 지방 44.8g, 철 14.6mg, 비타민C 106.0mg으로 나타났다.

〈표 1-2-18〉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구분 연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2007	1,810	65.4	37.7	462	12.9	711	1.24	1.05	14.7	92.8
2008	1,838	65.8	38.8	476	12.9	721	1.22	1.11	14.9	96.3
2009	1,883	67.6	40.5	492	13.4	766	1.26	1.20	15.4	100.2
2010	2,051	74.0	44.8	530	14.6	806	1.37	1.29	17.0	106.0

-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은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은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 2007년은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6) 2005년은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7) 2010년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0)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년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10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73.9%로 매우 낮았다. 철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60.0%), 철(142.6), 비타민A(123.4%), 티아민(125.9%), 나이아신(118.3%), 비타민 C(113.2%)는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9.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19〉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 연도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2007	2009	2010
에너지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87.5	91.1	99.1
단백질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142.9	148.9	160.0
칼슘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63.4	67.4	73.9
철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119.8	123.7	142.6
비타민 A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108.4	118.7	123.4
티아민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114.4	117.5	125.9
리보플라빈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82.5	94.9	101.0
나이아신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102.6	108.6	118.3
비타민 C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99.3	108.5	113.2

-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은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7년은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5) 2005년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6) 2010년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0)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년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당질 61.8%, 단백질 13.7%, 지방 24.4%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식품 수요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윤재

■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곡류자급률은 1990~2010년간 43.8%에서 28.1%,

채소류는 98.9%에서 90.1%, 과일류는 102.5%에서 81.0%, 육류는 92.9%에서 78.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66.3%, 어패류는 121.7%에서 68.1%, 유지류는 8.0%에서 2.6%로 하락하였다.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영 자급	급양률	칼로리	62.6	50.6	50.6	45.4	44.9	44.1	48.3	49.8	49.3
		단백질	67.8	57.2	52.8	47.0	46.3	46.5	49.4	49.5	47.6
		지방	30.3	26.8	21.4	18.1	17.6	17.7	22.6	21.4	20.4
물기 자급	량준률	곡류	43.8	30.0	30.8	29.4	27.8	27.4	28.4	30.2	28.1
		쌀	108.3	91.1	102.9	96.0	95.3	98.3	94.4	101.1	104.5
		두류	24.5	11.7	8.2	10.7	14.2	11.6	9.3	10.7	11.0
		채소류	98.9	99.2	97.7	94.5	92.2	90.4	91.0	93.7	90.1
		과실류	102.5	93.2	88.7	85.6	82.7	83.5	84.8	87.0	81.0
		육류	92.9	89.2	83.9	81.6	78.4	78.2	78.6	77.5	78.6
		쇠고기	53.6	50.8	53.2	48.1	47.8	46.4	47.6	42.2	43.2
		돼지고기	100.3	96.6	91.6	83.7	77.4	75.8	76.5	78.9	81.0
		닭고기	100.0	98.1	79.9	84.3	82.6	87.7	86.4	87.1	83.4
		계란류	100.0	99.9	100.0	99.3	99.4	99.4	99.7	99.8	99.7
		우유류	92.8	93.3	81.2	72.8	72.4	70.8	72.3	70.5	66.3
		어패류	121.7	100.4	87.7	60.0	64.0	72.3	72.4	72.8	68.1
		유지류	8.0	4.8	3.2	2.8	1.9	1.7	3.3	2.4	2.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년

칼로리 자급률²⁾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10년 49.3%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10년 47.6%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 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10년 20.4% 수준이다.

2)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55.1kg), 채소류(150.2kg), 어패류(76.7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두류(13.6kg), 과실류(55.9kg), 육류(46.6kg), 우유류(56.9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55.1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며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3.6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적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10년에 150.2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6.6kg으로 일본, 파키스탄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계란류(11.7kg), 우유류(53.3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76.7kg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2-21〉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구분	국가·연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파키스탄
		2009	2005	2005	2005	2005	2005
곡	류	155.1	173.4	91.1	177.2	137.7	153.7
서	류	12.9	38.4	21.4	57.4	74.1	13.8
설	탕 류	14.2	119.3	24.6	173.9	205.7	224.7
두	류	13.6	73.7	26.1	86.9	63.5	54.4
채	소 류	150.2	130.7	113.2	125.5	133.6	29.6
과	실 류	55.9	58.4	138.6	122.8	135.1	31.0
육	류	46.6	34.8	78.2	93.7	77.3	15.0
계	란 류	11.5	18.7	18.0	14.8	11.8	2.1
어	패 류	76.7	64.8	31.0	23.4	14.3	1.8
우	유 류	56.9	75.5	21.5	256.5	308.0	151.4
유	지 류	0.4	0.5	24.0	1.4	2.6	0.9

-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3)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4)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10년에는 2,842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10년 에너지원의 56.0%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6.7%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구분 \ 국가·연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파키스탄
	2010	2005	2005	2005	2005	2005
에너지(kcal)	2,842	2,837	2,955	3,690	3,584	2,422
전분질(%)	56.0	65.4	41.2	57.1	48.6	64.8
설탕(%)	8.4	7.6	9.0	8.0	10.9	13.0
동물성(%)	16.7	20.5	21.4	27.7	32.0	17.8
유지류(%)	12.1	0.4	19.6	0.9	1.8	0.9
기타(%)	6.8	6.0	8.9	6.4	6.7	3.5
1인당GNI(달러)	20,562	38,950	16,067	43,560	34,870	690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2)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3)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과 한국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식품수급표, 2011년

3. 식품산업 동향

■ 식품제조업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김형식

2010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4,269개로 2000년(3,431개)보다 24.4%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69천명으로 2000년(158천명)보다 7.0%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10년 65.4조원으로 2000년 34.0조원 대비 92.4% 증가하였다.

2010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53억원으로 2000년 99억원보다는 54.5%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3억원으로 2000년(0.95억원) 대비 36.8%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10년 34.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체수(A)	3,431	4,057	4,257	4,061	4,169	4,269
종사자수(B)	158	157	163	161	167	169
출하액(C)	34,071	44,381	48,149	55,211	60,771	65,446
업체당 출하액(C/A)	9,931	10,939	11,311	13,596	14,557	15,331
1인당 부가가치	95.3	113.1	119.5	128.3	130.6	134.1
부가가치율	44.2	40.0	40.4	37.4	35.9	34.6

주: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100
 자료: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10 경제총조사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18.4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8.1%), 사업체수 1,476개(36.6%)로 전체 식품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10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48개(5.8%), 출하액 7.9조원(12.0%) 수준을 보였다.

2010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수산물 가공·저장 처리업(806개),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633개), 과일 및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431개),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281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 처리업(10.5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7.3조원),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6.2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4.0%가 경기지역(1,024개)에 분포하고 다음으로 충남(417개, 9.8%)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5.6조원), 충남(7.7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 : 인천 254.5억원, 최저 : 전남 63.9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4〉 2010년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식품 제조업	4,269	169,297	65,446,171	100.0
식료품 제조업	4,021	156,210	57,595,780	88.0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633	29,246	10,480,158	16.0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806	24,566	4,484,808	6.9
-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31	13,540	2,257,072	3.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59	2,228	2,505,155	3.8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8,629	6,197,184	9.5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제조업	281	7,734	4,973,680	7.6
- 기타 식품제조업	1,476	62,964	18,372,036	28.1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29	7,303	8,325,687	12.7
음료 제조업	248	13,087	7,850,391	12.0
- 알콜 음료 제조업	97	6,513	3,922,259	6.0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151	6,574	3,928,132	6.0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10 경제총조사

2010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1.3%이고 2000년 이후 79.5%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 56개소 → 2010년 : 39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1.3%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2.4%, 출하액 비중은 29.4%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9.2%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77.4%,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4%에 그쳤다.

〈표 1-2-25〉 규모별 추이

(단위: 개, %)

구분 \ 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3,431	4,507	4,257	4,061	4,169	4,269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79.5	82.4	82.6	81.5	81.0	81.3
- 50~300인	18.9	16.6	16.4	17.5	18.0	17.8
- 300인 이상	1.6	1.0	0.9	1.0	1.0	0.9
출하액규모별						
- 10억원 미만	39.1	26.7	26.9	22.9	19.4	19.2
- 10~100억원	45.6	55.9	55.1	56.6	57.9	57.7
- 100~1,000억원	13.1	15.2	15.6	17.3	19.2	19.7
- 1,000억원 이상	2.1	2.2	2.3	3.2	3.5	3.4

자료: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대상), 2010 경제총조사

■ 외식산업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임현규

2010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586천개로 지난 10년간 50만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609천명으로 2001년 1,342천명보다 19.9%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67,5조원으로 2001년 34,2조원에 비해 97.3%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10년 115.2백만원으로 2001년 67.8백만원에 비해 69.9%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10년 41.9백만원으로 2001년 25.5백만원에 비해 64.3% 증가하였다.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

구분 \ 연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체수(A)	505.2	531.9	546.5	577.3	577.0	580.5	586.2
종사자수(B)	1,342	1,445	1,450	1,567	1,578	1,601	1,609
매출액(C)	34,246	46,253	50,892	56,365	64,712	69,865	67,566
업체당 매출액(C/A)	67.8	87.0	93.1	97.6	112.2	123.5	115.2
1인당 매출액(C/B)	25.5	32.0	35.1	36.0	41.0	43.6	41.9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년, 2009년 이전은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음식점업 및 주점업)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81천개, 매출액은 32.2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절반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서양식, 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식당 사업체 수는 2009년 대비 1.0%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3.3% 감소하여 업체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7〉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

업종	구분	2009			2010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음식점 및 주점업		580,505	69,865	120.4	586,297	67,566	115.2
음식점업		421,856	56,121	133.0	425,856	55,527	130.4
일반 음식점업		316,183	41,719	131.9	317,908	39,913	125.6
한식		278,978	33,770	121.0	281,551	32,284	114.7
중식		21,466	3,097	144.3	21,071	2,569	121.9
일식		6,268	1,752	279.5	6,259	1,754	280.2
서양식		8,610	2,840	329.8	7,997	3,052	381.6
기타 외국식		861	258	299.7	1,030	255	247.6
기관구내식당업		4,566	2,833	620.5	4,647	3,568	767.8
출장및이동음식업		469	135	287.8	449	132	293.0
기타 음식점업		100,638	10,179	101.1	102,852	11,914	115.8
제과점업		13,223	2,411	182.3	13,883	3,461	249.3
피자,햄버거,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12,102	2,089	172.6	12,774	3,050	238.8
치킨 전문점		26,156	1,924	73.6	27,782	2,013	72.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5,454	2,802	61.6	44,447	2,372	53.4
그외 기타 음식점업		3,703	952	257.1	3,966	1,019	256.9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58,649	12,770	80.5	160,441	12,039	75.0
주점업		130,881	10,847	82.9	129,640	9,535	73.5
비알콜 음료점업		27,768	1,923	69.3	30,801	2,504	81.3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2011년

지역별로는 경기(115.5천개)와 서울(108.4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8.2%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80억원), 경기(1.29억원), 인천(1.12억원), 대전(1.17억원), 부산(1억원), 광주(1.07억원) 지역이 1억원 이상이고, 경북(73.8백만원) 지역이 8천만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28〉 2010년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당매출액	1인당매출액
전국	586.3	100.0	1,609.1	67,565.8	115.2	42.0
서울	108.4	18.5	368.3	19,527.3	180.2	53.0
부산	45.5	7.8	121.2	4,548.6	100.0	37.5
대구	29.8	5.1	74.9	2,558.6	86.0	34.1
인천	27.5	4.7	74.7	3,077.7	112.0	41.2
광주	15.9	2.7	43.6	1,700.4	107.1	39.0
대전	16.4	2.8	45.9	1,925.5	117.1	42.0
울산	15.0	2.6	37.7	1,409.7	94.0	37.4
경기	115.5	19.7	335.8	14,952.7	129.5	44.5
강원	26.9	4.6	61.3	2,058.3	76.5	33.6
충북	20.6	3.5	49.3	1,782.4	86.4	36.2
충남	26.3	4.5	64.4	2,487.3	94.6	38.6
전북	20.6	3.5	52.9	1,854.2	90.0	35.1
전남	23.3	4.0	54.2	1,829.2	78.4	33.8
경북	39.1	6.7	87.5	2,885.4	73.8	33.0
경남	46.3	7.9	111.0	4,049.8	87.5	36.5
제주	9.3	1.6	26.4	918.6	99.0	34.8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2011년

2010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91.3%이고, 지난 10년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1% 수준이다. 사업체수의 91.3%에 달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70.3%, 매출액 비중은 55.6% 수준인 반면, 사업체 중 2.1%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대규모 음식점업체는 매출액 비중이 24.4%로 나타났다.

2010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72.9%로 2001년 86.4%에 비해 13.5%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26.0%이고 2001년 13.3%에 비해 12.7% 증가하였다. ↻

〈표 1-2-29〉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단위: 천개, %)

구분 \ 연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505.2	531.9	546.5	550.8	577.0	580.5	586.2
종사자규모별							
5인 미만	90.3	89.6	90.4	89.9	89.8	89.6	91.3
5~10인	7.8	8.5	7.9	8.2	8.2	8.4	6.5
10인 이상	1.8	2.0	1.8	1.9	1.9	2.5	2.1
매출액규모별							
100백만원 이상	86.4	79.1	75.0	71.3	70.5	66.7	72.9
100~1,000백만원	13.3	20.4	24.3	27.9	28.5	32.1	26.0
1,000백만원 이상	0.3	0.5	0.7	0.7	1.0	1.20	1.1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2011년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수출동향

■ 수출진흥팀 서기관 김민욱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7,691.4백만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에

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악화 등 열악한 수출여건 속에서도 농·축·임·수산물 전 부류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 실적인 77억달러를 수출하였다. 이는 2007년 40억달러 돌파 이후 4년만에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0년(5,880,0백만달러) 대비 18억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과거 10억달러 돌파가 20년(1988년→2008년) 정도 소요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김, 음료, 인삼, 제3맥주, 소주의 신규추가 및 김치의 2004년 이후 1억달러 품목 재진입 등으로 연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이 담배, 참치, 설탕, 커피조제품, 라면, 오징어를 포함하여 2007년 6개에 불과하던 것이 12개로 증가하는 등 주력품목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시설원에 신선농산물의 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소득 증대효과가 높은 전략상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토마토(45.3%), 전복(42.2%), 오징어(57.7%), 굴(23.7%)도 큰 폭으로 증가, 신선농산물은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한류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로 우리나라 전통식품 수출도 선전하였다. 막걸리는 전년 대비 176.2% 급증하였고, 인삼(52.4%), 고추장(29.8%), 유자차(24.0%), 김치(6.3%)도 안정적 증가세를 이어갔다.

〈표 1-2-30〉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증감률 (B/A)
			물량	금액(A)	물량	금액(B)	
농림수산물		4,809.3	3,104.0	5,880.0	3,480.4	7,691.4	30.8
농 식품		3,298.1	2,311.0	4,081.8	2,793.4	5,383.0	31.9
(신선농식품)		(739.3)	(328.5)	(873.8)	(331.1)	(1,015.6)	(16.2)
(가공농식품)		(2,558.8)	(1,982.5)	(3,208.0)	(2,462.3)	(4,367.4)	(36.1)
농 산 물		2,990.8	2,079.2	3,721.7	2,541.2	4,940.8	32.8
축 산 물		139.6	59.2	146.1	64.2	176.3	20.7
임 산 물		167.7	172.6	214.0	187.3	266.4	24.4
수 산 식 품		1,511.2	793.0	1,798.2	687.0	2,308.4	28.3

자료 : 농림수산물부 & aT,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중국(전년동기 51.1% 증), 아세안(43.4%), 홍콩(25.3%)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중국, 아세안, 대만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며 일본에 이은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일본(26.1%), 미국(15.7%) 등 선진시장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EU(8.5%), 대만(23.6%), 러시아(3.0%) 등 주

요국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최대 수출국 일본은 지속적인 증가세로, 2007년 이후 엔고와 한류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수출증가를 지속하며 제1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시장개척 노력에 힘입어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진척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국 188개국 중 1억달러 이상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태국, 대만,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11개국에 이른다. 전체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2.1%로 전년(83.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 아세안, EU 등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주요국의 수출비중은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2011년 국가별 상위 수출품목과 전년 대비 증감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일본 : 참치(전년 대비7.2%), 소주(△9.0), 제3맥주(42.5), 김치(4.9), 파프리카(12.7)
- 중국 : 설탕(47.8), 펄프(△80.0), 커피조제품(17.5), 오징어(147.6), 라면(△6.4)
- 미국 : 담배(△6.1), 배(△6.2), 김(64.8), 라면(3.8), 굴(23.0)
- 러시아 : 커피조제품(1.5), 담배(△34.7), 마요네즈(△10.2), 음료(36.8), 우유조제품(7.0)
- 홍콩 : 설탕(28.1), 인삼(40.0), 맥주(9.6), 담배(23.7), 굴(△30.0)
- 대만 : 배(△21.1), 인삼(60.4), 사과(△59.4), 옥수수전분(△68.4), 커피조제품(30.4)
- 아세안 : 참치(43.1), 담배(41.3), 커피조제품(97.7), 설탕(72.4), 과당(2.2)
- EU : 참치(△43.0), 라면(33.1), 오징어(△60.7), 바지락(70.5), 어류제품(6.0)

〈표 1-2-31〉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0(A)		2011(B)		증감률(B/A)		점유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3,104.0	5,880.0	3,480.4	7,691.4	18.1	30.8	100.0
일본		961.9	1,882.6	1,074.7	2,373.9	33.6	26.1	30.9
중국		474.3	787.4	572.1	1,189.4	20.6	51.1	15.5
미국		188.8	518.8	194.4	600.3	2.9	15.7	7.8
러시아		116.7	235.7	118.3	242.7	1.4	3.0	3.2
홍콩		194.0	243.7	200.7	305.5	3.5	25.3	4.0
대만		118.0	211.3	99.9	261.2	△15.3	23.6	3.4
아세안		529.8	719.8	527.2	1,032.4	△0.5	43.4	13.4
EU		161.6	332.7	144.1	360.9	△10.9	8.5	4.7
기타		358.9	948.0	549.0	1,325.1	53.0	39.8	1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2년

〈표 1-2-32〉 연도별 상위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연도 순위	2008		2009		2010		2011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신 선 농산물	1	인 삼	97	인 삼	109	인 삼	124	인 삼	189
	2	김 치	85	김 치	89	김 치	98	김 치	105
	3	파프리카	54	배	54	파프리카	58	파프리카	66
	4	배	47	파프리카	53	배	54	배	47
	5	유 자 차	27	밤	30	유 자 차	33	유 자 차	40
가 공 농식품	1	겔 련	453	겔 련	467	겔 련	536	겔 련	550
	2	커피조제품	196	커피조제품	194	자 당	242	커피조제품	302
	3	라 면	130	자 당	149	커피조제품	206	자 당	291
	4	자 당	128	라 면	142	라 면	157	라 면	187
	5	소 주	124	소 주	113	소 주	123	음 료	184
수 산 식품	1	참 치	293	참 치	314	참 치	374	참 치	394
	2	오 징 어	127	오 징 어	108	오 징 어	115	오 징 어	181
	3	김	75	김	82	김	105	김	161
	4	굴	46	넙 치	52	넙 치	71	굴	82
	5	삼 치	45	삼 치	45	굴	66	삼 치	6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 수입동향

2011년 농식품 수입은 폭우, 이상 저온 등 기상재해 및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8.7% 증가한 33,184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과실류는 국내 과일 작황 저조 및 오렌지, 포도 등 수입과일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213.2백만달러 수입되었다.

곡류는 전반적인 국제 곡물가 상승 및 옥수수, 밀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8.2% 증가한 4,772.9백만달러가 수입되었고, 채소류는 고추, 김치, 무, 채소종자, 당근 등 전반적인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8.9% 증가한 855.5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전반적인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71.2% 증가한 3,289.0백만달러가 수입되었고, 임산물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5,560.7백만달러, 수산물은 21.2% 증가한 4,189.9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표 1-2-33〉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0(A)		2011(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47,177.8	25,787.2	47,529.4	33,184.0	0.8	28.7
곡	류	13,593.7	3,455.0	13,345.5	4,772.9	△1.8	38.2
박	류	5,095.4	1,307.0	4,957.2	1,410.5	△2.7	7.9
과	실 류	821.1	945.1	923.2	1,213.2	12.4	28.4
채	소 류	853.9	719.5	1,006.8	855.5	17.9	18.9
두	류	1,318.4	651.7	1,244.2	766.6	△5.6	17.6
주	류	323.9	600.1	350.9	684.8	8.3	14.1
커피	류	117.7	418.1	130.8	718.9	11.1	71.9
연초	류	66.4	381.0	56.9	341.1	△14.2	△10.5
화	훼 류	12.0	44.7	11.8	44.4	△1.4	△0.7
인삼	류	0.2	4.0	0.1	3.5	△38.6	△12.5
육류(포유가축)		601.8	1,921.5	873.5	3,289.0	45.2	71.2
어	류	806.3	1,891.0	871.2	2,229.0	8.1	17.9
갑각	류	101.3	503.6	109.7	630.5	8.3	25.2
기타	타	23,465.7	12,944.9	23,647.6	16,224.1	0.8	25.3

자료 : 농림수산물부 & aT,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표 1-2-34〉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연도	2010(A)		2011(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47,177.8	25,787.2	47,529.4	33,184.0	0.8	28.7
미	국	13,223.8	5,959.7	11,717.8	7,706.2	△11.4	29.3
중	국	6,955.3	4,323.2	7,400.6	5,249.7	6.4	21.4
호	주	5,278.8	2,212.7	5,568.7	2,820.1	5.5	27.5
캐	나 다	1,889.3	1,062.8	2,799.0	1,709.5	48.2	60.9
브	라 질	2,554.0	1,518.4	1,956.9	1,618.8	△23.4	6.6
뉴	질랜드	2,473.5	845.9	2,497.3	1,061.3	1.0	25.5
러	시 아	894.6	738.5	841.1	914.0	△6.0	23.8
A	S E A N	6,474.6	3,422.5	7,011.2	4,455.8	8.3	30.2
E	U	1,533.1	1,955.8	1,270.7	2,771.9	△17.1	41.7
기타	국가	5,900.8	3,747.7	6,466.1	4,876.7	9.6	30.1

자료 : 농림수산물부 & aT,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증가 및 치즈, 생우유 등 낙농품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한 7,706.2백만달러가 수입되었고, 중국은 쌀, 대두 등 곡물 수입 증가 및 고추, 김치 등 채소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한 5,249.7백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호주는 밀, 보리, 옥수수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한 2,820.1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노승환

■ 농식품 교역규모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No.44). 이후 남북경협이 축소됨에 따라 2011년 남북한 전체 교역실적은 1,713.9백만달러로 전년 1,912.2백만달러에 비해 10.4% 감소하였다. 또한, 농식품 교역실적은 33.1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74.4%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 규모 1,713.9백만달러의 1.9%를 차지하였다.

〈표 1-2-35〉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연도	연도별 교역실적		
		2010	2011	증감률(%)
전체		1,912.2	1,713.9	-10.4
농림수산물		129.5	33.1	-74.4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 2011년

■ 농식품 교역동향

■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11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27백만달러로서 전년 41백만달러보다

33.5% 감소하였고, 반입은 5.6백만달러로서 전년 5.8백만달러보다 4.4% 감소하였다.

■ 주요 품목별 반출입실적

■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 품목수는 100여개 품목이다. 이 중 농산물은 쌀, 감자, 밀가루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수목류 등이며, 수산물은 명태, 김을 위주로 기타 해조류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반출실적은 27백만달러로서 전년보다 33.5% 감소하였다.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분	연도	2010(A)		2011(B)		증감률(B/A,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30,423	41,292	19,605	27,466	-35.6	-33.5
	쌀	5,775	3,827	19	28	-99.7	-99.3
	감자	0.7	1	1	1	42.9	0.0
	밀가루	5,135	2,054	6,693	3,179	30.3	54.8
	마늘	4,163	6,503	0.1	0	-100.0	-100.0
	대두유	3,225	3,385	162	153	-95.0	-95.5
	곡류가공품	859	2,707	1,193	3,366	38.9	24.3
	빵	1,005	3,935	1,710	6,101	70.1	55.0
	면류	797	2,663	999	2,271	25.3	-14.7
	기타농산가공품	1,972	3,970	1,897	4,091	-3.8	3.0
	축산물	305	1,513	133	642	-56.4	-57.6
	임산물	532	794	217	318	-59.2	-59.9
	수산물	3,062	2,661	3,725	2,167	21.7	-18.6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 2011년

■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 품목수는 21여개 품목이며, 이 중 농산물은 참깨, 밤, 박류 등이고, 수산물은 툇미역 등이다. 반입실적은 5.6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93.6% 감소하였다. ☞

〈표 1-2-37〉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톤, 천달러)

구분	연도	2010(A)		2011(B)		증감률(B/A,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49,361	88,255	3,838	5,607	-92.2	-93.6
참	깨	411	744	453	813	10.2	9.3
들	깨	458	814	164	277	-64.1	-66.0
고	추	27	34	52	87	92.6	155.9
	밤	401	1,613	488	1,563	21.7	-3.1
	참기름	24	54	78	188	225.0	248.1
	기타유지가공품	118	234	146	245	23.7	4.7
합	판	77	25	0.02	0	-100.0	-100.0
	기타 목재류	30	6	0.1	1	-99.7	-83.3
	톳	28	522	26	445	-7.1	-14.8
미	역	2,590	2,250	2,233	1,818	-13.8	-19.2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 2011년

제3장 국제곡물 수급·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식량정책과 서기관 노영호

■ 개 요

2011/12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증가된 23억 924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2011년보다 3.1% 증가한 22억 9,986만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4억 7,112만톤, 기말재고율은 2010/11년보다 0.2% 낮은 20.8%로 추정된다.

■ 쌀

2011/12년 쌀 생산량은 2010/11년보다 3.5% 증가된 4억 6,504만톤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억 5,862만톤으로 추정된다. 기말재고량은 2010/11년 대비 6.5% 증가된 1억 500만톤, 기말재고율은 2011년보다 0.8% 높은 22.9%로 추정된다.

■ 밀

2011/12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6억 9,518만톤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6.3% 증가한 6억 9,556만톤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은 1억 9,759만톤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고, 기말재고율도 1.8% 하락한 28.4% 수준으로 추정된다.

■ 옥수수

2011/12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5.5% 증가한 8억 7,684만톤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사료용, 바이오연료용 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8억 6,835만톤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이 전년보다 6.7% 증가한 1억 3,597만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5.7%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대두(콩)

2011/12년 세계 콩 생산량은 2억 3,603만톤으로 전년 대비 10.8%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량은 전년 2억 5,131만톤보다 253만톤 늘어난 2억 5,384만톤 수준이다. 기말재고량은 5,194만톤으로 전년의 7,019만톤과 비교하여 26%나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7.4%나 하락한 20.5%로 추정된다.

〈표 1-3-1〉 세계 주요 곡물 수급동향

(단위 : 백만톤, %)

구분	연도	2010/2011(B)	2011/2012(C)	증△감(%) C/B
전체곡물	생 산	2,199.21	2,309.24	5
	소 비	2,230.48	2,299.86	3.1
	교 역	283.73	318.25	12.2
	(기말재고량)	461.73	471.12	2
	(재고율 %)	20.7	20.5	△0.2%
쌀	생 산	449.37	465.04	3.5
	소 비	445.95	458.62	2.8
	교 역	34.84	35.51	1.9
	재 고	98.59	105.00	6.5
	(재고율 %)	22.1	22.9	0.8%
밀	생 산	651.90	695.18	6.6
	소 비	654.48	695.56	6.3
	교 역	132.43	153.91	16.2
	재 고	197.97	197.59	△0.2
	(재고율 %)	30.2	28.4	△1.8%
옥수수	생 산	830.77	876.84	5.5
	소 비	849.07	868.35	2.3
	교 역	91.46	101.28	10.7
	재 고	127.47	135.97	6.7
	(재고율 %)	15.0	15.7	0.7%
대 두	생 산	264.74	236.03	△10.8
	소 비	251.31	253.84	1.0
	교 역	92.64	90.54	△2.3
	재 고	70.19	51.94	△26.0
	(재고율 %)	27.9	20.5	△7.4%

주 : 1)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자료 : 미국농무부(USDA), 2012년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식량정책과 서기관 노영호

■ FAO 식량가격지수 동향

FAO 식량가격지수는 2008년 6월 애그플레이션 당시에 224.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2월 237.9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밀, 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인이다.

한편 FAO 곡물가격지수는 2008년 6월 274.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4월에 265.4가 최고치였고, 이후 점차 하락하여 12월 217.6을 기록하여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 쌀값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값은 2010년 11월부터 급등하여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870달러/톤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11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12월에는 764달러/톤을 기록하였다. 중립종의 2011년 평균 가격은 855달러/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2010년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11년 2월에 538달러/톤을 기록하였다가 5월에는 498달러/톤으로 하락했으나, 6월 이후 다시 급등하여 11월에는 629달러/톤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초에 필리핀,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높아진 식량가격에 항의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밀값 동향

국제 밀값은 2010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12월 305달러/톤을 기록하여 6월의 176달러/톤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2011년에 들어와서 밀값은 6월까지 300달러/톤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하여 12월 246달러/톤으로 마무리하였다. 2011년 평균 밀값은 298달러/톤으로 2010년 평균가격 224달러/톤에 비해 33% 높은 수준이었다.

밀값의 급등도 쌀값 급등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튀니지 등 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스민 혁명 등 정권이 붕괴되는 혁명이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옥수수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2월 가격이 233달러/톤으로 6월의 137달러/톤에 비해 무려 70%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년 4월에는 296달러/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완만히 하락하여 12월에는 239달러/톤을 기록하였다. 2011년 평균 옥수수 가격은 267달러/톤으로 2010년의 169달러에 비해 58%나 높은 수준이다.

■ 콩값 동향

콩 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12월에 484달러/톤으로 6월 349달러/톤에 비해 39%나 상승하였다. 2011년 1월에는 513달러/톤으로 2008년 7월의 553달러/톤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년 상반기까지 계속 500달러/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420달러/톤을 기록하였다. 2011년 평균 콩값은 485달러/톤으로 2010년 385달러/톤에 비해 26%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표 1-3-2〉 미국농무부 고시 국제곡물가격 동향

(단위 : US달러/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쌀 (중립)	2007	551	551	551	551	551	536	529	535	576	584	584	557	
	2008	590	595	595	758	926	963	1,036	1,061	1,119	1,113	1,102	1,102	913
	2009	1,102	1,075	1,123	1,208	1,202	1,150	1,067	948	895	849	816	794	1,019
	2010	772	772	732	728	719	739	728	722	741	794	852	871	764
	2011	871	871	871	871	871	871	871	866	860	860	816	764	855
쌀 (장립)	2007	320	323	327	324	325	331	335	334	332	336	349	368	334
	2008	384	474	615	929	949	789	756	709	701	634	574	543	671
	2009	598	615	615	572	547	592	602	553	544	513	550	605	576
	2010	596	576	538	502	478	463	465	472	494	501	534	550	514
	2011	534	538	509	500	498	531	557	576	614	615	629	608	559
대 두	2007	258	278	279	271	285	303	314	310	350	358	391	423	318
	2008	464	508	500	483	491	552	553	470	432	339	331	319	454
	2009	365	341	332	374	419	445	388	392	342	355	372	379	375
	2010	361	345	349	358	351	349	367	376	391	427	462	484	385
	2011	513	512	500	501	499	500	500	501	492	446	430	420	485
밀	2007	179	181	179	178	177	206	224	244	310	318	300	350	237
	2008	350	409	424	345	305	326	311	313	281	222	209	208	309
	2009	226	209	211	211	235	233	205	190	176	186	198	197	206
	2010	193	183	181	181	184	176	215	260	274	268	271	305	224
	2011	324	343	315	336	333	301	278	299	290	262	253	246	298
옥 수수	2007	154	162	160	142	147	150	130	130	141	141	150	170	148
	2008	192	203	218	234	237	275	254	216	215	162	147	145	208
	2009	154	142	150	152	166	162	129	129	128	146	154	158	148
	2010	152	143	145	139	145	137	149	161	193	215	217	233	169
	2011	250	272	270	296	285	284	263	281	273	249	247	239	267

주 : 1) 쌀(중립종) : 미국산(California medium grain milled No.1) 내수용 공장출고가

2) 쌀(장립종) : 태국산(100% B) FOB // 대두, 밀(HRW), 옥수수 : 선물거래가격

자료 : USDA Rice Outlook, 2012년

제2절 주요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허송무

■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국으로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밀이나 면화의 생산량도 많다. 축산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생산이 왕성하다. 2010년 미국 국내총생산액 144,471억달러 중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1,734억달러이다.

미국의 농경지 규모는 전체 토지면적(98,315만ha)의 41.8%인 41,120만ha가 농용지이며, 이중 17,050만ha가 경지로, 270만ha는 영년생작물용지로, 23,800만ha는 방목지 등으로 이용된다. 2011년 미국 농무부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호수는 220만호로 2002년 대비 4% 증가하였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57.1세로 2002년 55.3세에 비해 높아졌는데 특히, 2002년 대비 75세 이상의 농장주는 20% 증가, 75세 이하 농장주는 30% 감소하였다.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169ha로 2002년 176ha보다 감소하였다. 농림수산업인구는 548만명으로 전체 인구(31,167만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농장 중 연 매출액 25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농장수 비중이 10%(약 22만 개)이며 이들이 총 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 매출액 1만달러 이하 소규모 농장수 비중은 60%(약 126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2%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취미농 형태이다.

2010년 가족농 전체 평균 소득은 83천달러이며 이중 농업소득은 13%(11천달러 내외)를 차지하고 농업외 소득(off-farm income)이 77%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1만달러 이하 매출 소규모 농장의 농업 순 소득은 미미한 반면, 25만달러 이상 매출 대규모 농장의 농업소득은 20만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농외소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콩,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이다.

〈표 1-3-3〉 미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만톤)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밀	5,724	4,922	5,582	6,802	6,031
옥수수	28,226	26,750	33,118	30,714	33,301
콩	8,350	8,700	7,286	8,075	9,142
우유	8,025	8,246	8,419	8,616	8,586
쇠고기	1,120	1,186	1,198	1,184	1,189
돼지고기	938	955	995	1,060	1,044
닭고기	1,604	1,622	1,663	1,700	1,633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며, 옥수수, 콩, 밀, 면화의 수출액은 세계 1위,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2위이다. 특히 옥수수는 전 세계 수출액의 5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FAO, 2008).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수출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수입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캐나다	162	14.0	캐나다	179	22.6
멕시코	156	12.5	EU	158	19.9
일본	131	11.3	멕시코	108	13.6
중국	112	9.7	중국	34	4.3
EU	107	9.3	인도네시아	27	3.4
총액	1,155	100	총액	793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수출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수입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콩	155	13.1	음료	55	6.8
옥수수	139	11.8	와인	46	5.7
밀	113	9.6	원재료	38	4.7
면화	48	4.1	커피원두	38	4.7
조정식료품	48	4.1	맥주(보리)	37	4.6
총액	1,179	100	총액	804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 대상, 지원 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Farm Bill)은 2008년 5월 14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2008년 6월 18일 정식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다. 소요 예산은 2002년 「농업법」보다 370억달러 증가한 5년간 총 3,05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국 농무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보존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policy+Program)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1965년 「농업법」 이후 4~5년 주기로 개정·보완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이 2012년 만료됨에 따라 신 「농업법」 논의를 위한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2011년 8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나 예산 삭감안에 대한 반대 등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개체식별시스템(NAIS)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 및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

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행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였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회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정책방향 즉, ① 농산물 수출증대 ② 바이오연료 및 재생가능 연료 생산 촉진 ③ 지역 농업생산과 지역 소비의 연계 ④ 미국 농촌에 초고속 통신망(Broadband) 설치 ⑤ 야외 여가 시설에 투자 ⑥ 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s)의 활용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9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3.4%(2008년 54.3%)인 712,880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960,000천ha의 약 12.7%인 121,715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0.61ha로 한국의 1.46ha보다 적다. 2010년 농산물 수입액은 332.46억달러로 2009년 253.52억달러 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 158.69억달러보다 약 2.09배 가량 많다. 농촌가구 1인당 순수입(10년)은 5,919위엔으로, 전년(5,153위엔)에 비하여 14.96% 증가하였다.

〈표 1-3-6〉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농가 인구('09) 총 인구 대비	천명 %	712,880 53.4	농촌가구 1인당 순수입 농촌가구 1인당 가계비	위엔/인	5,919 4,381
농가 호수('05) 총 가구수('10)	천호	252,225 401,934	농림어업 취업자('10)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3,757 0.49
GDP('10)	억위엔	401,202	농산물 수출('10)	억달러	158.69
경지면적('10) 국토 대비	천ha %	121,719 12.7	농산물 수입('10)	억달러	332.46

자료 : 1) 농림수산물주요통계, 2012년
2)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2011년

■ 농업정책동향

중국정부는 2011년 농업정책의 중점 과제로 '삼농'(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투자확대, 농업생산 확대, 농산물 유통 및 시장조절 규제 개선,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농촌민생 개선 및 농촌개혁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삼농'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8년 연속(2004~2011년)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중앙 1호 문건'에 포함되는 등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먼저 '삼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농혜농(强農惠農)'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의 중점을 농업, 농촌에 두어 농업, 농촌분야 재정투입액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예산 내 고정자산투자의 중점을 농업농촌 기초시설건설에 집중시킴으로써 예산총액 중 농업의 비중을 향상시켰다. 또한 토지매도 수익의 중점을 농업토지개발, 농전 수리 및 농촌기초건설 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농지 및 기초건설 분야의 지출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농업신용대출 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삼농'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했다.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식량의 파종면적을 확보하여 단위당 생산량 제고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 식량생산 천억근 증산계획', '전국 자포니카벼 생산 확대 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식량주산지에 대한 이익보상기제를 구축하고, 우위 생산지의 생산능력 제고, 산지직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및 시장 조절 규제 개선을 통하여 농산물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절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집무시장 및 할인마트 임

대비에 관한 규정 확립, 농산물시장 관리감독 강화, 곡물과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수매질서 유지, 허위정보 및 물가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농업발전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8억 무(畝 : 200평) 고표준 농전을 건립하는 '전국 고표준 농전 건설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농업기술 보급, 동식물 병충해 예방작업, 농산물 품질감독 등의 업무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농촌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농민직업기술 및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농촌의 식용수, 도로, 가스, 노후주택의 개조, 농촌교육, 3급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및 공공문화서비스체계 확립,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농촌빈곤지역개발 요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국무원에서 발표한 '2011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배 하달에 관한 통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다. 상기 문건에서는 농산물, 식품생산·가공 및 수출입, 식품유통, 요식업 서비스 분야의 식품안전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식용유, 건강식품, 신선육, 육제품 등을 중점제품으로 선정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기업들의 식품안전 관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11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4.9%(2010년 5.1%)인 6,163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37,795천ha의 약 12.1%(2010년 12.1%)인 4,561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81ha로 한국의 1.46ha보다 약간 넓은 편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55,841억엔으로 2010년 48,281억엔 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 2,651억엔보다 약 21.1배 가량 많다. 일본의 식량자급률(10년)은 열량 기준으로 39%이며, 생산액 기준 69%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7%이다.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농가 인구(2011) 총 인구 대비	천명 %	6,163 4.9	농가 총소득 농가소득	천엔	4,660 2,840
농가 호수(2010) 총 가구 대비	천호 %	2,528 4.8	농림어업 취업자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2,230 3.7
GDP(2010) 농업 총생산액	억엔	4,817,732 81,214	농산물 수출(2011)	억엔	2,651
경지면적(2011) 호당 (2011)	천ha ha	4,561 1.81	농산물 수입(2011)	억엔	55,841

자료 : 농림수산물통계, 2012년, 일본 농림수산물통계, 2011년

■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인 고령화, 농지면적 감소 등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2010년 3월 새롭게 수립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식료 자급 목표율을 칼로리 기준 41%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모작을 활용하여 현재 과반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의 재배를 확대하고, 사료용 쌀을 증산하여 수입 옥수수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구별 소득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그 적용대상을 보리, 콩, 축산, 낙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자력 판매·가공이 가능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농업소득의 증대를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식과 농림어업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다음의 7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 두 번째는 농업을 6차 산업화하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목재자급률 50% 달성을 위한 산림 및 임업 재생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자원관리형 수산업 구축을 통한 수산업 재생을 추진하며, 여섯 번째는 지진 및 자연재해에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방사능 재해에 정면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향후 5년간의 추진 공정표 역시 작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배은정

■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10년 기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1인당 GDP 12,268십억유로, 인구 501,106천명, 면적 4,325천km²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83,875천ha, 농업분야 취업자 수는 10,45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총생산액은 3,556억유로 정도이다. 2010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2%, 돼지고기 8.9%, 신선채소 8.7%, 쇠고기 8.2%, 가금육 5.0%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을 보면 프랑스(18.6%), 독일(13.4%), 이탈리아(12.4%), 스페인(11.2%), 네덜란드(7.1%), 영국(6.6%), 폴란드(5.3%), 루마니아(4.1%), 그리스(2.8%), 덴마크(2.7%), 벨기에(2.2%), 오스트리아(1.8%), 포르투갈(1.7%), 헝가리(1.7%), 아일랜드(1.6%), 스웨덴(1.4%), 체코(1.1%), 불가리아(1.0%), 핀란드(1.0%), 리투아니아(0.5%), 슬로바키아(0.5%),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0%)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2011년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이다. 국가별로는 몰타(1.7%), 독일(1.8%), 벨기에(1.8%), 영국(1.9%)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19.1%), 불가리아(14.7%), 폴란드(10.1%), 그리스(9.2%)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다. 2011년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룩셈부르크(0.3%), 영국(0.4%), 슬로바키아(0.4%), 스웨덴(0.5%), 체코(0.5%)는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2.7%), 그리스(2.3%), 스페인(1.9%), 사이프러스(1.7%) 등의 국가도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2011년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9%(총 13,827억유로 중 954억유로)이며, 수입은 5.7%(총 15,355억유로 중 876억유로)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3,445백만유로), 러시아(9,216백만유로), 스위스(6,097

백만유로), 일본(4,360백만유로)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18,643백만유로), 낙농품, 달걀 및 벌꿀(7,809백만유로), 육류(6,600백만유로),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5,827백만유로)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1,560백만유로), 미국(7,317백만유로), 아르헨티나(5,897백만유로), 스위스(3,831백만유로) 등이며, 주로 과일 및 견과류(12,766백만유로), 식품 가공 부산물(8,158백만유로), 유지종자류(7,992백만유로), 커피·차 및 향신료(7,881백만유로)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2010년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7년 이후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3년만에 다시 흑자를 기록하였다. (자료출처 :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1)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국 가 (27개국)	경지면적 (천ha)	농장수 ¹⁾ (천개)	농장당 경지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업 생산액 (백만유로)	농업 부가가치 (백만유로)	GDP 대 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역 수지	
연 도	2010	2007	2007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07	2009
EU_27	183,875	13,700	12.6	10,459	4.7	355,573	143,810	1.2	6.7	6.6	-6,832	16.5
벨기에	1,365	48	28.6	81	1.8	7,757	2,622	0.9	8.5	9.3	3,472	17.3
불가리아	5,030	493	6.2	515	14.7	3,832	1,457	1.9	9.9	17.5	734	-
체코	3,546	39	89.3	135	2.6	3,990	994	0.5	6.0	4.2	-1,508	22.8
덴마크	2,639	45	59.7	73	2.6	9,214	2,155	1.4	12.7	18.4	5,386	14.8
독일	16,890	371	45.7	730	1.8	45,044	14,970	0.6	8.1	5.7	-10,181	14.7
에스토니아	932	23	38.9	19	3.5	636	236	1.2	10.5	8.1	-269	28.7
아일랜드	4,190	128	32.3	79	4.3	5,634	1,529	1.1	12.8	14.7	7,080	-
그리스	3,819	860	4.7	429	9.2	10,245	5,567	2.3	12.0	24.3	-1,862	21.4
스페인	22,798	1,044	23.8	712	3.8	39,033	22,016	1.9	9.1	15.0	5,781	17.0
프랑스	35,178	527	52.1	779	2.9	66,651	27,172	1.6	8.4	12.7	11,399	17.0
이탈리아	13,338	1,679	7.6	838	3.4	44,349	23,007	1.5	9.0	8.3	-5,241	17.4
사이프러스	121	40	3.6	15	3.7	695	318	1.7	13.5	22.1	-667	22.0
라트비아	1,833	108	16.5	62	6.7	934	263	1.0	15.7	16.3	-209	25.3
리투아니아	2,689	230	11.5	95	7.1	2,005	648	1.5	12.0	16.5	457	32.5
룩셈부르크	131	2	56.8	7	1.9	298	95	0.3	9.6	5.9	-871	18.0
헝가리	5,783	626	6.8	220	5.5	6,561	2,093	1.4	5.6	8.2	2,690	27.4
말타	10	11	0.9	3	1.7	125	57	0.7	12.4	4.0	-321	19.2
네덜란드	1,921	77	24.9	251	2.9	24,772	8,979	1.7	10.5	15.5	26,025	15.0
오스트리아	3,169	165	19.3	177	4.3	6,452	2,682	1.1	7.8	7.5	-724	14.2
폴란드	15,625	2,391	6.5	1,604	10.1	19,437	7,385	1.3	7.8	10.7	2,313	27.0
포르투갈	3,686	275	12.6	434	8.8	6,998	2,092	1.0	11.8	10.1	-3,075	-
루마니아	13,711	3,931	3.5	1,726	19.1	15,342	6,456	2.7	8.4	8.5	-765	32.7
슬로바니아	469	75	6.5	68	7.1	1,092	402	0.9	9.1	5.9	-771	20.2
슬로바키아	1,930	69	28.1	45	2.1	1,902	377	0.4	9.8	6.2	-22,527	13.6
핀란드	2,296	68	33.6	107	4.4	4,159	1,456	1.0	7.7	3.5	-2,151	18.2
스웨덴	3,067	73	42.9	100	2.2	5,046	1,447	0.5	7.4	3.3	-4,337	16.4
영국	17,709	300	53.8	593	1.9	23,372	7,335	0.4	9.8	6.2	-22,527	13.6

주 : 1)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 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자료 :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1

■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영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공동농업정책(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88년)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92년)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99년,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 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03년 7월)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2008년에는 2013년까지 추진되어 온 CAP의 효과를 점검하고 2014년부터 새로운 CAP 방향 설정을 위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2011년 10월 12일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였다. 이는 직접지불금, 단일 공동시장 관리, 농촌지역 개발정책, CAP 예산 등에 대한 4개 법률 및 이의 이행을 위한 3대 부가법령으로 구성되며, 동 제안의 주요 골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개혁 정책(Greening of the CAP), 농가 직접지불금 단가의 회원국간 형평성 제고, 실제 활동농가 지원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EU 각 회원국, 농업계, 유럽 의회 등에서 집행위 개혁 제안에 대해 논의중이나, R&D 지원 정책 강화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Greening 조치로 인한 새로운 규제 부과에 대한 농업계 반대, 직불금 단가 조정과 관련한 회원국간 의견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입법 내용은 2012년 12월말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13년 중 이행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2014년 1월 1일 새로운 CAP가 발효될 예정이나,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의 합의 도출 과정이 지연될 경우, 2015년으로 1년 연기하여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 2014년 EU CAP 개혁 법률안 주요 골자 표 기준으로 작성 (EU 집행위 제안, '11.10)

정책방향	주요내용
① 고용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소득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직불금의 형평성, 목표지향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Basic Payment Scheme*을 도입하여 농가간, 지역간, 회원국간 분배의 형평성 제고 * 실제 활동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액 체감기준(연간 15만유로) 및 상한액 설정(30만유로)
②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변동성 확대 문제 대응을 위해, 현행 공적 개입과 민간 보유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 모든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도입으로 광범위한 시장교란 위기시 EU집행위의 시장개입허용 - 농산물 관련 보험과 뮤추얼 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③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녹색' 직불금 도입(greening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가 직불금의 30%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적화 사용토록 하는 부대조건* 부여 * 재배작물 다양화, 영구적 초지 유지, 생태학적 목적의 경지면적(7%) 유보 등
④ 연구 및 혁신 관련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연구/혁신 예산 증액 및 농업계와 과학계간의 파트너십으로 연구결과의 농촌현장 활용도 제고
⑤ 경쟁력 있고, 균형잡힌 식품 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의 거래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및 분야간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 현재 EU의 유일한 쿼터제도인 설탕 쿼터제도를 2015.9.30 이후 폐지키로 함 - 학교 급식(과일 및 우유 지원) 제도 확산
⑥ 농업/환경정책의 지역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차원의 농업/환경정책 활성화 추진*에 우선순위 부여 * 생태계 보존/회복,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⑦ 젊은 농업인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하 농업인에 대해, 창업 초기 5년간 Basic Payment를 25% 추가 지원 (단, 회원국별 중소농에 한함)
⑧ 농촌의 고용과 기업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rter kit'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 및 LEADER 프로그램의 지역활동그룹의 역할 더욱 강화 * 농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7만유로까지 지원
⑨ 조건부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막화 방지 및 비옥한 영토 보존을 위해, 자연조건 불리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지원액 증액* * 현행 회원국 예산의 5% 범위내 · 이를 위해 EU의 회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및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 차원의 예산 이외에 추가예산 지원
⑩ CAP 단순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CAP 집행과정 단순화 · 예를 들어, 환경보존 의무 등 cross-compliance 의무이행 항목 감소 - Small Farmers Scheme 제도 도입으로 중소농 지원책 단순화 · 2014.10.15 까지 동 제도수혜 신청 중소농에 대해서 500~1000유로의 직불금을 연간 지급, Cross-compliance 의무경감 및 녹색 직불금 의무 면제 등 - 경영이양 중소농의 농지 매매 활성화로 농업구조조정 촉진

2. 주요국가 통상협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허승무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중국에 이어 제5위 수출 시장이다. 2011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77억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미 농산물 수출은 연초, 배 등 약 6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 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년 4월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맺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강화와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의무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산 감귤의 수출재개,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 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 동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 및 수의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9〉 한-미간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1 / 2010(%)
수 출	합 계		467.3	518.8	600.3	28.5
	- 농산물		313.9	348.2	394.5	25.7
	- 축산물		15.3	15.6	14.0	△8.5
	- 임산물		9.1	12.8	10.9	19.8
	- 수산물		128.9	142.2	180.9	40.3
수 입	합계		4,590.9	5,959.7	7,706.2	29.3
	- 농산물		3,264.5	4,333.3	5,245.4	21.0
	- 축산물		702.2	926.7	1,686.1	81.9
	- 임산물		500.8	573.5	619.4	8.0
	- 수산물		123.4	126.2	155.3	23.1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2년

〈표 1-3-10〉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09			2010			2011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겔 련	1.1	28.1	겔 련	1.2	31.3	김	4.5	68.7
배	11.0	24.7	배	10.2	25.4	음 료	37.9	29.8
라 면	6.7	20.1	음 료	31.6	25.1	겔 련	1.5	29.4
김	4.1	19.3	김	3.7	23.5	배	8.2	23.8
굴	3.2	15.5	라 면	6.2	19.8	굴	3.6	21.5
비스킷	3.3	13.1	굴	3.3	17.4	라 면	6.4	20.6
곡류조제품	2.7	10.5	비스킷	3.8	16.3	비스킷	4.1	19.7
소 주	6.2	9.1	오징어	6.0	11.6	오징어	4.8	15.8
오징어	6.5	9.0	곡류조제품	2.7	10.8	곡류조제품	3.1	12.1
국 수	4.2	8.3	국 수	5.1	10.1	국 수	6.0	11.6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2년

〈표 1-3-11〉 대미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09			2010			2011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옥 수 수	5,929.7	1,324.4	옥 수 수	7,282.0	1,684.1	옥 수 수	6,024.1	1,936.7
밀	1,057.8	310.4	쇠 고 기	92.6	421.6	쇠 고 기	128.4	653.0
쇠 고 기	61.5	285.5	밀	1,430.7	376.7	돼지고기	164.7	509.9
대 두	409.5	213.1	대 두	733.8	355.8	밀	1,281.1	507.0
돼지고기	95.9	201.9	혼합조제식품	15.0	229.6	혼합조제식품	98.3	437.2
펠 프	357.4	195.3	펠 프	296.4	223.1	면	106.4	402.4
혼합조제식품	10.6	173.7	사료용근채류	718.6	195.8	대 두	556.3	326.0
사료용근채류	653.9	153.9	돼지고기	81.9	184.0	펠 프	293.9	232.9
침엽수원목	805.9	152.6	대 두 박	385.6	167.6	사료용근채류	776.3	229.9
면	71.1	98.1	침엽수원목	530.8	156.4	오 렌 지	141.2	178.4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2년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11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1년 양국 간 농식품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1,380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5,249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전체 산업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식품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대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높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 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간 한·중 농수산물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1년 6월 베이징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2년 제7차 회의시 한·중 농수산물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의 체계’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5차 회의가 2011년 11월 중국 옌타이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의회를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식품, 농식품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2,374백만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 7,691백만달러의 30.9%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제8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44차 회의를 2011년 11월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캐나다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허승무

캐나다산 농산물은 우리나라에 2011년 약 17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돼지고기·치즈·감자제품 등이다. 우리나라 농산물은 캐나다에 라면·김·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수출입 실적은 2011년 약 0.6억달러에 그쳤다.

캐나다와는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2003년 5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었다. 2011년 6월 캐나다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를 이루었고, 2011년 12월 국회심의 절차도 마무리 되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블루베리의 수입허용을 촉구하고,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물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표 1-3-12〉 한·캐나다 농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수출 (A)	합 계		39.1	44.5	52.6	62.6
	농 산 물		29.1	31.8	35.8	43.4
	축 산 물		0.8	0.7	0.9	1.4
	임 산 물		0.5	0.2	0.6	0.6
	수 산 물		8.8	11.8	15.4	17.2
수입 (B)	합 계		587.0	749.1	1,062.8	1,709.5
	농 산 물		225.2	157.5	303.2	728.0
	축 산 물		188.0	151.7	153.3	288.4
	임 산 물		127.4	392.9	553.4	625.4
	수 산 물		46.4	47.0	52.9	67.7
무역수지(A-B)			-508.7	-704.6	-1,010.2	-1,646.9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2년

〈표 1-3-13〉 한국의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축수산물

(단위 : 천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1	라 면	4,638	밀	396,428
2	김	3,831	펄 프	154,330
3	음 료	3,359	돼지고기(냉동)	151,130
4	비 스 켓	2,964	침염수원목	122,571
5	국 수	2,221	침염수표백	116,196
6	이 빨 고 기	2,419	유 체 유	94,430
7	식물성점질물	2,084	밀 (제 분 용)	92,962
8	아이스크림	1,544	제 제 목	67,074
9	곡류조제품	1,543	돼지고기(신선, 삼결살)	39,926
10	단감(신선)	1,307	조제품기타	27,868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12년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배은정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림축수산물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EU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약 3.6억달러('11년)로 우리나라의 4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EU로부터 수입은 27.7억달러('11년)로 미국, 중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의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들은 주로 한국과 EU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 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수산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으나,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하게 됨에 따라 장차 동 식물 검역 관련 통상현안 문제는 FTA 협정하에 설치된 위생 및 검역조치(SPS)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관심사항인 EU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EU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확보 및 다른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사례를 들어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위험평가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측은 EU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우선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가 요청하는 육류 수출작업장 일괄 승인(pre-listing) 방식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요청시 해당 국가의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다른 작업장의 위생 관리 평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식품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EU는 동등성을 인정하여 EU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우리 측이 인정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 바, 우리 측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및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세계동물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양자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동구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 및 경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1년 7월1일, 한-EU FTA가 발효하여 EU의 주력품목인 치즈 등 낙농품을 위주로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 중남미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허승무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 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블루베리, 쇠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

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 외교적 측면과 농업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에 중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브라질에서 1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2008년 8월에는 서울에서 2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그리고 2010년 11월 브라질에서 3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수입허용, 검역협정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 대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및 축산물안전 관리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농업 잠재력이 큰 콩고 민주공화국과 2010년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여(10년) 정부간 농업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제2편

201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어업 자원 개발

제6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장 총론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고은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위기,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개방경제 추세의 확대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제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귀농귀촌, 농어촌 관광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위험관리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2011년에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 성장과 농어가 경영안정

2004년 이후 40조원 수준으로 정체되어왔던 농림어업생산액은 이명박 정부 초기 46조원에서 2011년에는 51.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한국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는 농어업을 1차 산업만이 아닌 2차, 3차 산업을 결합한 6차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한편,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어가의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까지로 늘리고 대상 재해도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화재 등으로 확대 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를 도입하였다.

■ 지속적인 농·수협 개혁 추진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 개혁을 통해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 등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차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였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조세·보험 특례 조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수협 경영을 정상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의 부실수협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2011년에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1.6)을 수립하여 식품산업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식품산업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품산업은 매년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분야별로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 활성화, 한식세계화 등 식품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고 다양한 수출전략을 전개하여 국내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한식업체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농식품 수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9억달러였던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2011년에는 77억달러로 31%나 증가하는 등 2010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R&D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전 부처 최초로 마련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활력 창출

정부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행 계획(10년~14년)'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에는 관련 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농

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력 유인을 촉진하였으며, 농어촌 일자리 발굴과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1회 귀농·귀촌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범국민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추진하여 2011년 1만명의 재능기부자가 활동 중이다.

■ 물가, 재해, 가축질병 등 농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2011년은 사상 최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소, 돼지 등 가축 348만 마리를 매몰하는 등 축산업의 기반을 위협 받았고, 2010년산 쌀의 생산량 감소, 7·8월의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증가, 배추·쇠고기 등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의 발생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이에 정부는 보유중인 쌀 물량 공급, 돼지고기 무관세 물량 도입, 과잉생산 된 쇠고기에 대한 군급식 추진 등을 통하여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서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이력제를 확대하고 인증제를 통폐합하는 등 인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가축질병방역 긴급행동지침을 전면 개선하고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평시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 식량자급률 제고 및 해외농어업 개발·협력

정부는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2006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7월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 식량도입체계 마련 등 이다. 아울러, 현재 쌀 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을 통해 해외농업투자·협력을 활성화하고 곡물확보 능력을 증대시켰다. 조업권 등 수산자원 확보능력을 확대하고 연안국 경제발전의 상생형 구조로 어업협력사업을 개편하였으며, 개도국의 식량·산림 문제 해결 및 국내 농식품관련 기술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 합리적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산자원 방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회복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넙치, 전복, 참다랑어 등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양식어장 신규개발, R&D지원을 함으로써 양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한·미 FTA를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아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 하는 등 직불제도를 대폭 확충하였고 시설 현대화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규제개혁 가속화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농어촌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유통구조개선, 어업제도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수요자의 건의를 수렴해 ‘농어촌 현장에 100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개혁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증대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소득 증대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추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박나영

■ 추진배경 및 개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WTO·DDA 협상 논의, 한·미 FTA와 한·EU FTA 타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요인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현행 직불금이 쌀에 집중(11년 순 직불제 예산 대비 87.1%)되어 품목 간 형평성 문제 등도 대두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의 당해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직전 5개년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농업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그 격차의 일정비율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여야간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쌀농업직불제가 신규 도입되고 FTA피해보전직불제가 확대시행될 예정으로 당초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여건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6월 한·미 FTA로 인한 피해의 국내 보전대책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발표한 이래로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여 농가별 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9.10.2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 제1차 도상연습에 이어 2011년에는 제2차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대상품목은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 변동 폭이 큰 20개 품목으로 하였으며, 1차 도상연습의 쌀, 콩, 고추, 사과, 한우 등 9개 품목에서 11개 품목(감자, 쌀보리, 겉보리, 배추, 마늘, 시설오이, 대파, 배, 육우, 번식우, 인삼)을 추가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은 18개 시·군의 44개 읍·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 농업경영체에 기등록된 농업인 중 현장점검 결과 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이 적합한 9,798 농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생산비가 반영된 소득 외에도 농가수취가격과 평균 도매시장가격이 각각 반영된 두가지 조수입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상연습 결과 발동기준 100%, 보전비율 85% 적용시 표준소득 기준의 경우 전체 대상농가 9,798호의 67.6%에 해당하는 6,624호에 평균 1,873천원, 조수입 I (농가수취가격) 기준시 5,881호(60%)에 1,010천원, 조수입 II (도매시장가격) 기준시 6,499호(66.6%)에 2,37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쌀을 비롯하여 돼지, 인삼, 고추, 감귤 등으로, 비교적 생산자의 경영 책임이 요구되는 품목에 직불금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한편,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시 소득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제는 2008년에 「농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시행 근거를 마련('08.6.22 발효)하였고, 2009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영정보의 등록 및 확인, 자금지원 등의 제한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였다('09.10.2 시행).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200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등록사업을 시작하여 인적정보, 농지지번, 경지면적, 재배품목 또는 사육두수 등 총 53개 항목에 대해 2011년 138만 농가의 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농업소득

세를 납부하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가소득신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농업인의 의식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될 발농업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의 확대 등에 따른 여건변화가 농가소득안정직불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가별 농업소득 산정방법과 필요한 소요인력 및 예산을 파악하고 여건변화 등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해 기계화된 도상연습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44개 읍·면, 약 10,000 농가를 대상으로 2차 20개 대상품목에 발농업직불제 대상 품목인 옥수수 등을 비롯한 15개 품목을 추가(맥주보리, 옥수수, 고구마, 수박, 고랭지배추, 가을무, 고랭지무, 양배추, 양파, 시설토마토, 시설가지, 복숭아, 단감, 참다래, 참깨)하여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3차 도상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박영근

■ 추진배경 및 개요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2,962천명중 65세 이상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1,163천호 중 66%의 경지 규모는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토록 하는 대신 일정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

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으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사업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지 118회 광고게재, 안내문 21만매, 리플릿 16만매 배포, 정책홍보 만화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경영이양 농업인 95천명에게 직불금 2,849억원(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68천ha를 전업농 65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업인에게는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2012년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 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농업인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

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운영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최수아

■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5년 이전에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2004년에 일시 시행한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여 통합 시행('05.7.1)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

이 쌀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로 인한 쌀값지지와 쌀농가 소득에 기여한 직접소득효과, 2003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쌀 80kg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외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 대하여 벼 재배 여부나 쌀값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 597천원)을 매년말에 지급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2008년 하반기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일부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부당수령사건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개선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면서 그동안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쌀 직불금 신규진입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만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부재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제한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계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아울러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부재 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농림수산물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신청면적을 최대 30일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당하게 신청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 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물부로 이관 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함으로써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소지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80kg당 138,231원으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80kg당 지급액이 변동직불금은 15,588원, 고정직불금을 11,486원으로 80kg당 총 27,074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목표가격(170,083원/80kg) 대비 97.2%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였다.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구 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2010년산	837	883	6,223	781	789	7,501	13,724
2009년산	866	891	6,328	815	809	5,945	12,273
2008년산	1,097	1,013	7,118	-	-	-	7,118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와 제도개선이 2009년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개선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쌀직불제도는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로써, 쌀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농업인의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제도개선과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이석기

■ 추진배경 및 개요

2010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읍·면)의 면적은 전 국토의 89.7%에 달하지만 농어촌 거주인구는 전체인구의 19.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정한 농어촌 인구의 확보 없이는 농어촌지역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4~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의 활력 증진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 139개 시·군(1,4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제2기('12년~'16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법정리를 재선정한 결과 2011년 3,137개에서 3,550개(전국 읍·면 지역 15,238개 법정리 중 23.3%)로 조정하였으며, 352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지급단가가 변동 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꾸준히 지급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10년부터는 밭 50만원/ha('09년. 40만원), 초지 25만원/ha('09년. 2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각각 25%씩 인상하였다.

2012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면적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고, 향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운용 등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제2절 농가 경영 안정 지원

1. 농지은행 활성화

■ 농지과 사무관 서민정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8.12.29)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하였다.

■ 농지유통화정보제공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구축(www.fbo.or.kr)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1월부터 농어촌종합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구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간의 농지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에 농지구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491ha 1,305억원, 농지임대차 1,292ha 300억원, 농지교환·분합 4ha 6억원 등 총 2,787ha 1,611억원을 3,42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조 5,024억원을 지원하여 161,656ha의 농지를 규모화·집단화시켰다.

〈표 2-2-2〉 농지구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분	합계	1990~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면적	161,656	135,649	7,855	5,863	5,220	4,282	2,787
금액	65,024	52,179	3,400	3,204	2,512	2,118	1,6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ha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34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전업농 수는 1995년 13천호에서 2011년 70천호로 늘어나고,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1년 5.4ha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쌀전업농 호당 경영규모 : ('95년) 2.5ha → ('05년) 4.2ha → ('10년) 5.2ha → ('11년) 5.4ha
 이는 2011년 쌀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 1.14ha의 4.7배의 규모이며, 쌀 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79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54천ha)의 44.4%로서 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15,923농가에 10,837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경영규모 0.7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2-2-3〉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농지임대 실적

(단위: 호, ha)

구분 \ 연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수	82,674	219	6,613	7,997	9,737	27,237	14,948	15,923
면적	47,832	110	3,372	4,277	5,162	15,956	8,118	10,83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우선적으로 매입해 갈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며,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수준에 해당하는 저가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의 지급으로 농가부담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경영회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1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자금(농협)과 연계하여 상담과 신청, 자금의 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 위기농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액별로 선정기관을 달리하는 등 대상자 선정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표 2-2-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분	연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수		3,878	183	444	490	635	1,148	978
면적		5,196	311	629	696	878	1,369	1,313
금액		9,070	422	953	1,195	1,700	2,400	2,4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FTA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농지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시가로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은퇴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 하고, 매입 비축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주어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등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711ha를 매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입한 농지 1,206ha 중 1,182ha를 1,320농가(농가당 0.9ha)에게 임대해 주었다.

〈표 2-2-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분	연도	매 입			임 대		
		합계	2010	2011	합계	2010	2011
면적		1,206	495	711	1,182	486	696
금액		2,323	750	1,573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지규모화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6ha규모 쌀전업농 7만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2.5~4ha규모 쌀전업농을 중점 지원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비예산) 등을 활용하여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12년 사업목표를 12,000ha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수탁 대상 농지 물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연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영회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매입비촉사사업은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2012년 1,000ha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청구제도(「농지법」, '12. 7 시행) 도입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등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윤식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가뭄·홍수 등 기상이변 발생이 증가하여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 '루사(02년)', '매미(03년)'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우박, 폭염, 태풍 등 기상재해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 수준이 미약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2-6〉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상품목 ¹⁾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파,수박 추가)	20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추가)	25 (대추, 딸기, 토마토,오이, 참외 추가)	30 (풋고추, 호박, 국화, 시설풀미, 복분자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419	29,174	32,538	45,884	47,745	67,654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81	51,550	86,604
	가입률(%)	23.4	24.5	26.5	28.5	31.4	36.0	40.2
지원 규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50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49,371	50,783	49,280	49,063	53,351	67,732	91,547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5,877	5,171	7,274	3,383	8,734	13,851	28,311
	보험금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90,330	13,263
	손해율(%)	43.5	36.6	110.4	45.0	105.8	104.6	119.4

주 : 1) 사과·배('03년), 복숭아·포도·단감·감귤('04년) 6개 품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배 2개에서 2011년 30개로 매년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사업초기 과수작물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보험대상을 벼·콩·고추 등 식량·채소작물 등으로 전 농작물로 다양화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 2011년 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풀미, 시설폰이, 시설폰마토, 시설폰외, 대추,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 전국단위 본 사업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뽕은감

■ 대상재해 확대

대상재해의 경우도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 개발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벼 품목의 경우에는 병충해의 일부(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위험방식에서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보험 가입률 제고

2011년에는 전년 대비 41.7% 증가한 67,65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10년 51,550ha에서 86,604ha로 늘어 가입률 40.2%를 달성하였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전국 대상면적의 약 76% 이상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배를 제외한 감귤·포도·복숭아 등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20% 이내로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이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과수작물 외에는 대부분의 작물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11년까지 88천 농가에 5,07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4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3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의 소규모로 사업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범사업 품목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재해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야생동물피해·화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재해농가 지원 확충

■ 재해보험팀 사무관 조성환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이다. 실제로 매년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재해를 피하기 위한 여러 예방사업 및 예방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이러한 재해농가의 영농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냉해, 한파, 집중호우, 우박, 태풍 무이파·메아리 등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141,391ha, 하우스 273ha, 축사 343동, 양식시설 240동, 가축 140만마리가 피해를 입어 약 4,002억원(보조 3,088억원, 융자 914억)을 지원하였다.

저온 및 태풍피해는 예년에도 발생한 재해이나, 2011년에는 1~5월에 한파·냉해, 2월에 대설 등 전국적인 대규모 냉해피해가 발생하였고, 태풍 무이파·메아리는 대규모 낙과피해 및 벼 백수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복구비로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백수피해의 경우, 피해농가를 위해 백수벼 등외품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가 매입하였고, 조사료 활용 시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업인은 1년 또는 다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금전적 피해와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 등 정신적 피해도 크게 받는다. 재해복구비는 손실액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아니며, 복구비 또한 현실단가의 60% 수준으로 다소 부족하나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이뤄지게 하였다.

또한 지원기준 단가가 없거나 현실보다 적은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매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해농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운식

■ 추진배경 및 개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11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등 15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11년에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속 지원하였고, 보장범위확

대, 대농업인 보험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가입률을 전년 52.1% 대비 2.4% 증가한 54.5%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상품목과 전국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표 2-2-7〉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	7.2	6.9	7.1	8.3	8.1	7.8	6.7	6.1
돼지	48.2	57.2	66.7	63.2	65.0	77.0	74.8	82.7
말	2.1	4.9	6.7	7.2	7.9	8.6	6.3	5.2
닭	24.0	37.0	39.3	43.1	45.2	46.9	51.6	54.8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48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돼지, 닭은 높은 반면 소는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재해 및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문지인

■ 추진배경 및 개요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능별 예산분류기준(16개 부문)에 따라 조세감면 실적을 분류했을 때, 농림수

산 분야의 지원실적이 전체(319,871억원)의 16.0%(51,304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조세지원 실적이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어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취득·등록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에 대한 감면도 다양하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준비금 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 조합원 예적금 증서, 용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 항목(국세 30여개, 지방세 21여개) 중 조세감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이 있다.

이들 감면 항목에 대한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8〉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주요 항목	면세유	농업	14,180	11,535	11,208	11,353	9,646	
		어업	7,542	5,816	7,321	7,005	6,459	
		계	21,722	17,351	18,529	18,358	16,105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업	9,228	10,793	12,108	11,675	11,213	
		어업	426	409	405	404	394	
		계	9,654	11,202	12,513	12,079	11,607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농업	802	957	1,129	1,014	1,299	
		어업	115	148	155	154	153	
		계	917	1,105	1,284	1,618	1,45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7,737	9,992	18,779	17,134	12,37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 추계 자료('12년)

석유류 면세는 1972년에 어업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2011년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기계 42개 기종, 임업기계 10개 기종, 어업부문 13개 부문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표 2-2-9〉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단위: 천t, 억원)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공급물량 (천t)	농업		2,478	1,976	1,898	1,923	1,807
	어업		1,253	969	1,098	1,103	973
	소계		3,731	2,945	2,996	3,026	2,780
공급액 (억원)	농업		16,694	18,337	14,110	16,410	19,344
	어업		6,355	7,269	6,541	7,743	8,896
	소계		23,049	25,606	20,651	24,153	28,240
감면세액 (억원)	농업		14,180	11,535	11,208	11,353	9,646
	어업		7,542	5,816	7,321	7,005	6,459
	소계		21,722	17,351	18,529	18,358	16,10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 추계 자료('12년)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적용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계 32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종, 어업용 37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45종, 어업용 25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2-10〉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비료		1,485	1,120	1,800	1,548	1,481
농약		986	1,133	1,310	1,250	1,258
농기계		1,004	980	958	1,019	1,004
사료		5,442	7,250	7,300	7,500	7,350
축산기자재		311	310	740	358	120
계		9,228	10,793	12,108	11,675	11,21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 추계 자료('12년)

〈표 2-2-11〉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농업용 필름		211	238	237	250	276
농업용 파이프		149	185	209	196	225
농업용 포장상자		271	341	336	350	400
과일봉지		36	38	42	41	45
농업용 부직포		27	36	53	51	64
농업용 배지		22	30	36	39	42
기타		86	89	216	87	247
계		802	957	1,129	1,014	1,29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 추계 자료('12년)

〈표 2-2-12〉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어업용 사료	112	94	95	103	91
로 프	65	63	62	62	53
어선(20톤미만)	59	53	53	34	46
선외내연기관	29	30	29	40	41
어 망	30	29	28	28	29
양식용약품	28	28	28	25	25
기 타	203	112	110	112	109
계	426	409	405	404	39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 추계 자료('12년)

〈표 2-2-13〉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어 상 자	45	41	45	39	36
어업용 발전기	21	17	16	15	14
어선 및 어업용 방어도료	-	24	25	24	21
약사법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	-	14	14	15	17
차 광 망	-	13	13	14	14
기 타	49	39	42	47	51
계	115	148	155	154	15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2년), 농협·수협·산림조합 추계 자료('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국제 유가·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 하고, FTA의 확대에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6.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유재형

■ 추진배경 및 개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요건 관련 농업용 부채 기준을 '1,500만원(특별재난지역은 700만원)'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였고, 지원제외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 기준을 31백만원에서 3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정책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업경영위기 사유에는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추가하였고, 농업용 원자재의 원가상승(또는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요건은 기존 20% 이상에서 15%로 완화하였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다만, 2012년은 계도기간으로 미등록 농가에도 지원 가능)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해 연계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시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출지원이 보다 용이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출실시 이후에는 농협중앙회(또는 일선 조합)가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간이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의 회생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2011년에 226농가에 264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되는 등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649농가에게 4,424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통해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기존 대출금(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및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 포함)을 장기저리자금(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3%)으로 대환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11년은 40억원)해 주었다.

향후 농업인·일선조합·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조건 완화 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7.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유재형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 역시 늘어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

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이차보전대상 자금인 2001·2004년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년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에 대해 1,055억원을 이차보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91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36.9%)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6.7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 3.2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 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 식량산업과 사무관 이범섭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과 관리체

계 개선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공급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농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고유가 현상과 자원고갈 문제의 대두, 한미 FTA,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농업용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 어업용의 경우 어업용 선박 및 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상유종으로는 휘발유, 경유, 실내 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이다.

농림어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280만kl(농업용 181만kl, 어업용 99만kl)로 2010년 302만kl와 비슷하며, 2011년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도 1조 7,800억원(농업용 1조 1,174억원, 어업용 6,626억원)으로 2010년 1조 8,358억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 2-2-14〉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단위: 만kl, 억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사 용 량	농 업 용		190	192	192	181
	어 업 용		115	110	110	99
감면세액	농 업 용		11,208	11,353	11,353	11,174
	어 업 용		7,522	6,816	7,005	6,626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과 어선어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물가안정과 국민가계 부담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어업인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계 및 어선을 가진 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은 농수산물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도 취약한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환경보호측면, 도로 비주행 등의 이유로 자국의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효과는 면세유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킴으로써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량을 전량 공급하고,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에 소요되는 유류는 충분히 공급하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은 적극 방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9. 농기계임대 활성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조슬

■ 추진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발작물 농기계의 경우 영세한 영농규모, 짧은 사용기간, 발농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기계화율이 50%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 농업 중심의 농기계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국고 125억원을 지원하여 총 220개소를 설치하였고, 2011년 농기계 이용률은 7.5일/대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 대비 5배 높은 성과를 거두어 농기계 이용률 및 밭농사 기계화를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의 경우, 2011년 전국 지역농협 813개 중 673개소(83%)가 참여하였고, 영세·고령농의 농작업 대행 면적은 130천ha로 전체 벼면적의 15%를 달성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에는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고추·마늘 기계화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농기계 구입비용으로 150억원을 국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 후계농업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강효주

■ 추진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1981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있고,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영농기반 확장을 통해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도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0년 말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였는데,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1년에는 지원대상자로 1,500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저리의 장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은 1,500명이 선정되었다. 이중 남성이 1,286명(85.9%), 여성이 211명(14.1%)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36명(29.1%), 30대가 591명(39.5%), 40대가 470명(31.4%)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99명, 전북 280명, 전남 222명, 경기 181명, 충남 121, 경남 160명 순이다.

〈표 2-2-15〉 2011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명,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500	181	67	86	121	280	222	299	160	43	41
(%)	12.1	4.5	5.7	8.1	18.7	14.8	20.0	10.7	2.9	2.5

2010년까지는 창업용자금의 신청 및 용자금 대출이 확보한 예산의 50%에 못 미쳤으나, 용자금을 선정 당해 연도에 최소 4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40% 이상 사용한 자에 한 해 3년 동안 분할하여 잔여 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용자금 대출을 확보예산의 94%까지 지원하였다.

■ 농산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40만원까지 지원되며, 2011년에는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3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29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438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약 2조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33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벤처 육성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허영희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 기업이다. 농업벤처는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10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학교), 2006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농업벤처업무에 식품업무를 추가하여 농식품 관련 창업지원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벤처 업무를 확대 발전시켰다.

〈표 2-2-16〉 제10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이템
최우수	강동연	7백만원	기능성 황토죽염
우 수 (3)	윤선주	5	효소추출공법을 이용한 과일음료
	이종우	5	쌀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쌀호두과자
	정진근	5	참두릅 묘목과 친환경 농자재 제조법
장 려 (6)	김영남	2	미강을 활용한 미강유
	김지한	2	기능성현미 '활활미'(活活米)
	목영래	2	컨트롤러가 포함된 양돈/양계/공장/일반건축용 인공지능 환기팬
	이중근	2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흑미 차(茶)음료
	제해수	2	뿌려먹는 분말고추장
	허병문	2	알로에(사포나리아) 발효액 이용 건강음료 및 화장품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부터는 예산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3. 농어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친환경 농어업, 농수산물의 안전성 요구 증가,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등의 근거규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총 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법인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어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장·군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를 종전 3/4이내에서 최대 9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농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0% 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조직변경 근거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경영효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농어업법인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농업법인 수는 10,867개로 전년 대비 11.6% 증가, 어업법인수는 823개로 6.2% 증가하였고,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66,889명,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4,885명으로 나타났다.

〈표 2-2-17〉 농어업법인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ha)

구분 \ 연도	2010	2011	증감률	구분 \ 연도	2010	2011	증감률
농업법인 수	9,740	10,867	△11.6	어업법인 수	775	823	6.2
종사자 수	60,118	66,889	11.3	종사자 수	4,891	4,885	-7.1
판매액	128,720	144,100	11.9	판매액	7,905	9,576	21.1
법인당 경지면적	11.4	10.5	-7.9	법인당 양식장면적	4.5	4.1	-8.9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 조사 보고서, 2012년

또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9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규모 법인은 전체의 66.5% 수준이며,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은 35.1%,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로 나타났다. 판매액도 법인당 판매액은 14.9억원,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39.8%, 농업생산 수입 26.3%, 가공업 24.1% 수준이며, 재정상태의 경우는 법인당 자산은 12.6억원, 부채는 7.7억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57.2%로 전년(157.7%)보다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법인의 경우도 법인당 종사자 수 6.5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65.4%이며, 사업유형과 판매액에서는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은 46.1%, 법인당 판매액은 12.8억원, 어업생산수입은 전체 판매액 중 23.4%를 차지하였다. 재정 상태는 법인당 자산 10.7억원, 부채 7.1억원, 자본대비 부채비율 195.9%로 전년(204.2) 대비 8.3%p 하락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지속적인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농어업법인이 증가하는 동시에 경영 지표도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 경영을 압박시키는 요인에 대한 비용절감의 추진 및 농식품모태펀드 등 창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세제지원, 농어업법인에 대한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사후 관리 점검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법인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 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업법인이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농어업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농어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4. 농어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손윤하,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어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정예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습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도농가 실습장, 전국대표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을 확충하고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과 소득 증대와 연계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하는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점검하고 2011년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계 학교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특성화농고 및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후계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업 전문인력육성을 위해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산업전문가과정, 수산벤처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선도농가실습장 57개와 전국대표실습장 7곳을 지정·운영으로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고,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실습교육장 등 구축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0개 캠퍼스에서 88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40학점을 이수하는 교육체제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 증대 및 경영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2월 농한기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에 농업교육과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분야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49개 기관 76개 과정을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여성농업을 연계 1:1 맞춤 농업인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업·농촌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총 16개 기관 1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10개 기관에서 15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국외 시장개척을 선도하였다.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2개 농고를 대상으로 농고비즈니스쿨, 학술대회, 전국FFK전진대회, 농고멘토링, 우수학생국외연수 등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은 전국 11개 농과대학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및 체험, 현장실습교육(WPL), 인턴십, 진로탐색프로그램(Job Map 프로젝트), 학교별 연계수업, 우수학생 대상 국외연수, 지역농고 협력 등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 국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 유형 특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평가·강의평가/모니터링·서면평가·현장평가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하였다. 장기교육과정인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교육운영 성과 측정에 활용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AgriEDU)에 대한 서비스 보완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통합운영 체계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기능고도화를 실시하였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지정하기 위한 농업마이스터 시험제도 개발, 농업교육이 농업경영체 성공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연구, 농업교육 수요 및 운영 실태조사, 농고·농대 농산업분야 인식변화 조사분석,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교육 학위취득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농업교육 관련 현황을 통계로 정리하여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인적자원지표 개발 연구와 농업교육 전·후의 농업인 역량(능력표준)을 점검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 교육체계 개편 계획 수립을 통해 범농업계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여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계 대학에서 창업·경영·마케팅과 조직화·리더십 및 비용절감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수산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수산경영자과정과 수산벤처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어한기를 활용, 어업인들에게 품목별 단기(2개월) 전문기술 교육과정인 최고수산업전문가과정을 운영하였다.

신규 수산인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계 고교 9개교를 대상으로 수산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취득, 국제교류실습 등 공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기사 및 잠수기능사를 양성함으로써 취업률 향상 및 원양어선의 고용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교육훈련은 농어업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어 농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수산업전문가 양성(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산업전문가과정, 한국수산벤처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 운영으로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영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의 30%를 교육생 자부담 원칙으로 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기획과제공모, 자생적 학습조직 운영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농정현안 및 중장기 농정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업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범농어업계 교육의 전문성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확대하고,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도움되는 실용 교육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농어촌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업 산업분야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 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의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농업인

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식품부의 대규모 기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컨설팅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농가 및 법인을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 컨설팅, 농협 등 농업인단체의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분야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여 컨설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컨설팅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컨설턴트, 컨설팅업체당 사업량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평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 후 인증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 실시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 및 컨설팅 질의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생산기술위주의 농어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11개 조직경영체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 자부담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자율적 컨설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및 어업컨설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컨설팅주체(지자체, 컨설팅업체, 경영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점검평가

2010년에 농어업경영컨설팅을 받은 994개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수행단계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완료하는 한편, 2011년에 컨설팅을 받은 934(개별경영체 778개, 법인 및 조직경영체 156개)개 경영체에 대한 중간점검을 시행하였다. 2010년 경영체에 대하여 수행계획이 불량한 415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컨설턴트 1명 자격정지, 컨설팅업체 4곳에 주의 조치, 60개 경영체의 부실한 컨설팅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다.

■ 컨설팅 후 농가소득 증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컨설팅 대상 농업경영체의 10%(150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22.7%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2-2-18〉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분 \ 연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량(개소)	220	1,000	1,009	1,080	1,250	1,448	994	934
사업비(백만원)	1,710	8,000	8,640	8,640	9,750	11,200	10,080	9,916
국 고	671	4,000	4,400	4,400	5,000	5,600	5,040	3,1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법인·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11년 평가점검단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은 33.6%, 순이익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부터는 FTA 피해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6. 귀농·귀촌 지원대책 정비

■ 경영인력과 사무관 황규광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대비하여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 등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 발표하고

그간의 귀농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농업과 농촌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에서 창업자금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통하여 조기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식품산업 차원에서는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관점에서 주민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교육 실시,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농업·농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립적인 농업창업, 정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운영 내실화

귀농자가 귀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귀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결이네 귀농일기, 창업농업 길라잡이 등 온라인 교육과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수산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결심 초기의 탐색단계 귀농귀촌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 실습형 교육과정과 본격적인 실행 단계 귀농귀촌희망자 대상의 장기 합숙형 교육과정을 운영,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 강화

농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전용상담전화(1577-9597)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귀농·귀촌 통합정보 시스템(www.returnfarm.co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농업창업 및 주거마련 자금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에게 2억원 한도내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는 4천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귀농정책이 정부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2009년의 귀농·귀촌종합센터 구축, 상담전화 설치 등 귀농·귀촌 추진체계의 구축과 귀농지원 정책은 타 산업분야의 경영마인드를 보유한 우수 인력의 유입으로 지역 농산업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귀농교육 확대, 귀농귀촌종합센터 시스템 보강 및 귀농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 (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공동계산액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
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었다.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및 소비지 시장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경영체 위주의
육성 정책에서 통합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
고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30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
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
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
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
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정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해서 2011년부터는 통합경영체 위주의 통
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좀 더 강화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
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대학과 농수산유통공
사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

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제 개선안을 마련(10.7)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제 개편안(10.7)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

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1식품·1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1년에는 42만명에 72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와 소비지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1식품·1외식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소를 설치하여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에는 B2B 거래목표(3,815억원) 대비 초과달성(6,255억원)으로 농수산분야 B2B 거래를 활성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홈페이지(싱싱장터, www.esingsing.co.kr)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하였으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를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지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정례장터 개설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3.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안유영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시스템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희공간과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경매 부조리,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효율화)을 개선하고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표 2-3-1〉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¹⁾

(단위: 천톤, 억원)

구분 \ 연도	2000	2002	2005	2008	2010
물량(천톤)	6,130	6,411	6,628	7,257	6,873
금 액(억)	61,549	69,965	85,203	97,216	123,196

주: 1) 거래실적: 공영도매시장(33개소) + 일반법정도매시장(13) + 민영도매시장(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화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3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3개소(서울 가락시장, 대전 오정시장, 광주 각화시장)를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2009년에서 20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2010년 시설현대화 건설기본계획수립,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1단계 공사와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 오정시장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임시판매장 조성을 건립하고, 1단계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광주 각화시장의 경우, 당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를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전자거래 시행,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2009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제도와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중인 농수산물은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견본거래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유통시설 과부족 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서울 가락, 대전 오정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중앙도매시장과 더불어 지방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천안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유통 효율화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동등하게 규정,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조직 신설, 경매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적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 포전매매 서면계약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정삼

■ 추진배경 및 개요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 까지 올리면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중추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부족이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였다고 하였다. 배추값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에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지속 추진중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수급안정 토대 구축, 농협의 역할 강화, 도매시장 거래 제도 개선, 직거래 확대, 공정거래 제도 정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의 목적은 농산물의 가격폭등락을 막고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유통비용을 감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농업관측 강화

농업관측은 파종전 재배의향 조사와 파종후에는 생산량 예측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품목이 얼마나 심어질 것이며, 심어진 이후에는 얼마만큼 생산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수급안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배의향을 조사하여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품목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관측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예측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이를 피해감으로써 미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종후 재배면적이 확정된 후에는 기상의 변화가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측표본을 늘리고 관측정보를 보다 자주 전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품목별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결정한다. 계약재배¹⁾는 주로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물량 과부족시 정부의 출하조절명령(시장출하 또는 산지폐기)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010년에는 생산량의 8%에 대해 계약재배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12%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약재배의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먼저 농

1)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고랭지 감자 등에 대해 실시

업인이 선호하는 포전거래 방식을 계약재배에 도입하였고,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농협중앙회가 영농작업단을 운영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확작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급격한 기상이변 등으로 갑작스런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상시비축을 추진하였다. 고추, 마늘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3%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에 추가하여 소비량의 2% 정도를 국내산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연중 4기작(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을 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작기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급부족 예상시 미리 수매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다.

■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논의해 왔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금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전환(12.3.2 시행)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활성화를 농협의 주요 책무로 하도록 하였다. 산지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앙회 경제지주가 책임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의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일례로 작년 고랭지배추의 경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일반 도매시장 경로보다 33%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농협은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수집하고 농협 도매유통회사는 전국단위 물류센터²⁾를 활용하여 소비지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수발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의 핵심이다. 이러한 농협 직거래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생산량의 10%내외에 불과한 계통출하 물량을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하여 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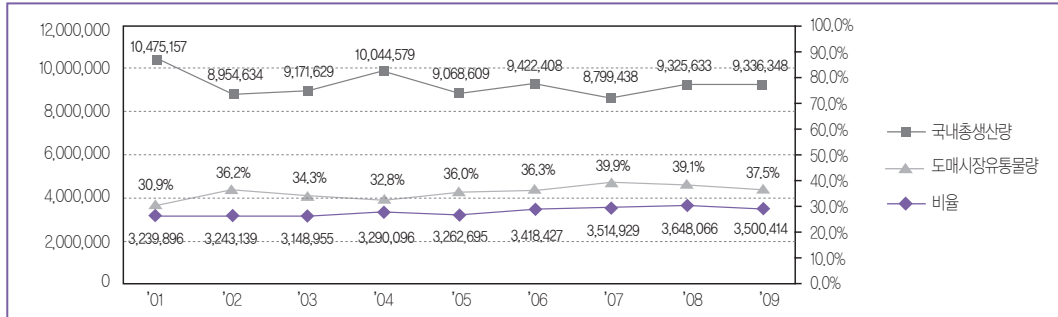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³⁾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계획. 수도권(안성)은 '13년초, 기타 4개소는 '15년까지 완공할 계획

3) 현재 우리나라는 50개의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121개의 도매법인과 55개의 시장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실례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 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절반가까이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1〉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 유통비중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외에 경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가·수의 매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도매시장 상장 시 정가·수의 매매는 전자거래⁴⁾나 견본거래⁵⁾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출하자가 경매와 정가·수의 매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 분야 B2B 시장⁶⁾ 개척

산지 조직화·규모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는 2009년 1월 문을 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들 수 있다. 사이버거래소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농수산물분야 기업간 상거래(B2B) 시장을 개척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9년 10월 B2B 시범거래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1,755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수산물분야 B2B 시장확대와 학교급식의 투명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4) 거래 할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매매방법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제도('07년 도입)
 5) 일정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의 견본(보관 농수산물 일부)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제도('09년 도입)
 6) 국가 전체 전자거래액('10) : 824조원(B2B가 91%), 농수산물은 B2C분야 6,800억원(B2C의 2.7%)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2011년에도 B2B 시장의 성장을 지속 이어가고 있으며 6,250억원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 확대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의 확산을 위해 2011년 5월 정부는 ‘직거래장터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2009년에 개장한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과 2010년에 개장한 서울터미널 바로마켓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부산·경남, 충북 증평, 옥천에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였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까지 전체 8개 지자체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고, 2012년부터는 매년 10개소 이상의 장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 생협방식의 직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계획

2011년 가을 배추가격 폭등시 생협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 생협이 포기당 1만원이 넘는 배추를 2천원대의 평년가격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생협이 평년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수년에서 10년 이상 거래해 온 생산자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미리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생협의 소비자 회원과 생산자들이 매달 조금씩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협의 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생협방식의 직거래가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생협 회원수는 45만명정도로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회원수 2,200만명으로 인구대비 17%나 된다. 정부는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여 생협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산물 공정거래 제도의 정착으로 공생발전 추구

유통개선 대책의 마지막 분야는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 제도 정착이다. 90년대 후반에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래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조직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중에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추진중인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농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 유통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의 감액이나 반품시 그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저가납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2011년 5월에는 ‘대규

모 소매업체의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지에 배포하였다. 이 매뉴얼에서는 계약체결부터 이행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규정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매 반기별 합동점검을 통해 산지가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산지 방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들이 산지를 방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사례 및 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평가·발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 1월부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급안정 인프라 구축, 계약재배 및 비축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효과와 사이버거래소의 B2B 확대 및 온/오프라인의 직거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의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2012년부터 시작되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강화하고 일관파레트화(palletizing),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의 물류효율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 유통정책과 서기관 안형덕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7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었다(07.1.3 공포).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액중 비중이 높고, 가격변동폭이 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농업관측정보는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

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2010년 현재 총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류별로 채소 10개, 과일 6개, 과채 6개, 축산 6개, 곡물 3개 품목 등이다.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2008년부터는 16회 실시하고, 패널수를 1,200명으로 확대하였다. 쌀 판매시점(POS)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 정보를 관측보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칠레, 일본, 중국 총 4개국에 36명의 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월부터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곡물류 품목 추가 및 관련 중국통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2009년 12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2012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관측센터는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가의 생산, 유통, 수출 동향 뿐 만 아니라 농업 및 농산물 관련정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관측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정보 관측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보강하고 있고, 2008년에는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으며, 미국 미주리대학 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로 개별 품목의 품목별 수급모형(KREI-COMO)을 개발하였다.

한편, 농업관측의 고도화 및 정밀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⁷⁾,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7)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정보('06년), 수출입정보('07년), 저장정보('08년)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표 2-3-2〉 2011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부 류 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양념채소류(5개)	고추, 마늘, 양파, 파(대파, 쪽파), 풋고추	3 ~ 12월	1일
엽근채소류(4개)	배추, 무, 당근, 양배추	3 ~ 12월	1일
버섯 관측	양송이, 느타리	9 ~ 12월	1일
과 일 류 (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5 ~ 12월	10일
과 채 류 (6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3 ~ 11월	"
축 산 류 (6개)	한육우, 젓소, 산란계, 오리	2, 5, 8, 11월	25일
	육계, 돼지	2 ~ 12월	"
곡 물 류 (3개)	쌀, 콩, 감자	1, 5, 8, 11월 쌀 속보 9, 10월	15일

매월 수집·분석된 관측정보는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및 지역자문회의와 품목팀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측보(월보·분기보)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관측보는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지역모니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농업전문지, 인터넷, 농업관측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고 있다. 2011년에는 주산지 속보 50회를 포함하여 총 83회의 관측보를 제공하였다. 관측정보 제공면에서 기존 소극적인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관측정보 서비스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e-농업관측’을 작성하여 매월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측의 핵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월 4,500여명에게 휴대폰 SMS를 활용하여 농업관측알림(휴대폰 SMS)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매년 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주관 개최하는 농업전망대회는 한국농업부문 최대 행사로 명실상부한 위상이 정립되었다. 2011년 2월 개최될 14번째 대회에는 ‘농업·농촌과 농식품산업(새로운 시장과 기회)’이라는 대주제하에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전망 보고서와 PPT 자료는 발표 완료되었다.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수요자 평가 조사결과 농업관측정보 피제공자 이용률이 89.7%로 나타났다.(10년 : 85%)

2009년 시범으로 실시한 ‘소비관측’을 더욱 확대하여 2010년부터 소비관측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매월 소비의향지수, 분기별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결과 등 소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농업관측정보는 단기 시장유통물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생산단계 규모조절 기능이 미흡하였다. 기존 관측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기작형의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수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기선행관측사업을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기선행관측을 통하여 출하기 가격을 예측하여 예측된 가격의 수준에 대하여 ‘경계’나 ‘주의’와 같은 조기에보지수도 산출하여 수급조절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하반기 양파와 월동 배추를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0년 1월부터 양파, 배추, 무, 대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은 마늘, 고추, 오이, 호박을 추가 했으며, 중기선행관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선행관측 대상품목에 대해 작형별 월별 수급모형이 구축·운영되고, 경제 내외적인 변수들을 종합분석하여 조기에보지수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조기에보지수는 정식 또는 입식 3~6개월 전에 제공되는 것으로 예측가격이 어느 단계에 있는 지를 제시한다. 조기에보지수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제공된다. 중기선행관측은 시장 유통물량 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관측사업이 농축산물 시장 수급안정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측 대상품목은 2009년 29개에서 2010년에 생산자 및 정책적 수요 증대에 따라 버섯과 오리 2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버섯관측’은 양송이와 느타리를 분류하여 관측하고 ‘오리관측’은 육용오리 생산두수 및 사육두수, 가격동향과 전망 등을 관측체제 구축을 통해 2010년 9월호부터 관측보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기후변화가 심한 6-9월에 고랭지 배추·무의 작황, 생산, 출하 동향을 선제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관측기동반’을 운영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관측사업은 농축산물 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심도있는 현장분석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을 대비해 국제곡물관측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

■ 식량정책과 서기관 노영호

■ 추진배경 및 개요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부 내부는 물론, 농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증가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이 2000년에 2010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처음 설정하고, 이후 5년 단위로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온 것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말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농정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08년~’13년)’에 반영(‘07.12)하여 발표하였다.

그 당시 설정한 2015년 목표치는 주식 54%, 전체곡물 25%, 칼로리(Cal) 47%, 그리고 쌀 90%, 밀 1%, 채소류 85, 과실류 66, 육류 71% 등이었다.

설정된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협력하여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여 2008~2010년 기간 중 매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핵심 주식인 쌀을 100% 이상 자급하여 2008년, 2010년 국제 곡물가 상승 및 곡물수출 중단 등의 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제2의 녹색혁명사업을 추진하여 국산밀 생산이 2009년 19천톤에서 2010년 39천톤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조사료도 정부의 지속적인 생산확대 정책과 민간의 증산노력이 결합되어 2007년 78.4%에서 2009년 84%으로 자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은 시설현대화, 가축질병 방역, 사육기술 제

고 등을 추진하여 자급률을 유지하였고, 과실류는 우량묘목 생산, 노후과원 폐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목표치 66%에 비해 무려 21%나 높은 87.3%(09년)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비측면의 다양한 제도적 기반확충을 위해 국민 식생활 개선 및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09.11.28, 시행)하였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10.2.4)하여 표시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 애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식량자급률 관련 요구가 증가하였고, 사료용 수요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대표적인 식량자급률 지표로 사용되어 국내 자급률 수준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곡물위주의 지표로 산출되어 채소, 과수,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국내 생산외에 비상시에 곡물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도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기로 결정(09.1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고)하고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운영(09.8~'10.9)하고,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1년 7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였다.

특히 지난 2006년에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자급률 지표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2015년 목표치를 높였다. 밀자급률을 1%에서 10%로, 과실류자급률은 66%에서 80%로 목표치를 대폭 높이고, 쌀자급률도 90%에서 98%로 높였다. 이외의 품목들도 콩과 계란 이외에는 대부분 목표치를 높이고, 사료(전체) 자급률 항목을 신설하였다.

〈표 2-3-3〉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구분	곡물 전체	칼로리 (Cal)	주식	쌀	보리	밀	콩	서류	사료	채소류	과실류	유류	유제품	계란
기존	25	47	54	90	31	1	42	99	-	85	66	71	65	100
재설정	30	52	70	98	31	10	36.3	99	41.2	86	80	71.4	65	99

* 보리, 밀, 콩 자급률은 식용곡물만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사료자급률은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아울러, 2020년 목표치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는데, 2015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채소·과실·유제품은 시장개방 확대, 노동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표 2-3-4〉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구분 연도	곡물 전체	칼로리 (Cal)	주식	쌀	보리	밀	콩	서류	사료	조사료	채소류	과실류	육류	유제품	계란
2020	32	55	72	98	31	15	40	99	44.4	90	83	78	72.1	64	99

한편, 그간 사료용 수요를 포함한 곡물자급률(10년, 27.6%)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자급률 수준이 저평가되고, 국제 곡물값이 상승할 때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내 위기감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식량자급률(식용곡물)·곡물자주율·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신설하여 기존 자급률 지표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혼선과 오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5〉 식량자급률, 곡물자주율,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내역

연도	구분	식량자급률(식용곡물)	곡물자주율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2015		57	55	45
2020		60	65	50

참고로 이번에 제시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할 때, 밀·채소·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더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2000년에 201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처음 설정하고, 이후 매 5년마다 10년 뒤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왔다.

〈표 2-3-6〉 한국과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구분	칼로리 (Cal)	쌀	보리	밀	콩	서류	사료	채소류	과실류	육류	유제품	계란
한국	55	98	31	15	40	99	44.4	83	78	72.1	64	99
일본	50	96	16	34	17	98	38	85	41	59	71	96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국내 식량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과 2010년의 국제곡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향후 세계식량수요 증가를 생산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의 가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자급률 제고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 설정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생산과 소비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급률 제고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였다. 자급률 제고방안은 2010년말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각 품목별 육성대책을 종합하여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논밭 기반정비와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품목별 생산 확대, 남은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곡물 수입수요 대체, 가공산업 육성, 식생활교육 확대, 원산지표시제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식품소비 촉진,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식량의 안정적인 도입체계 구축 등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DDA/FTA 협상 진행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전체적으로 자급률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정하되,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2. 공공비축제도 운영

■ 식량정책과 사무관 강동윤

■ 추진배경 및 개요

쌀이 부족한 1990년대까지는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증산위주의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 서민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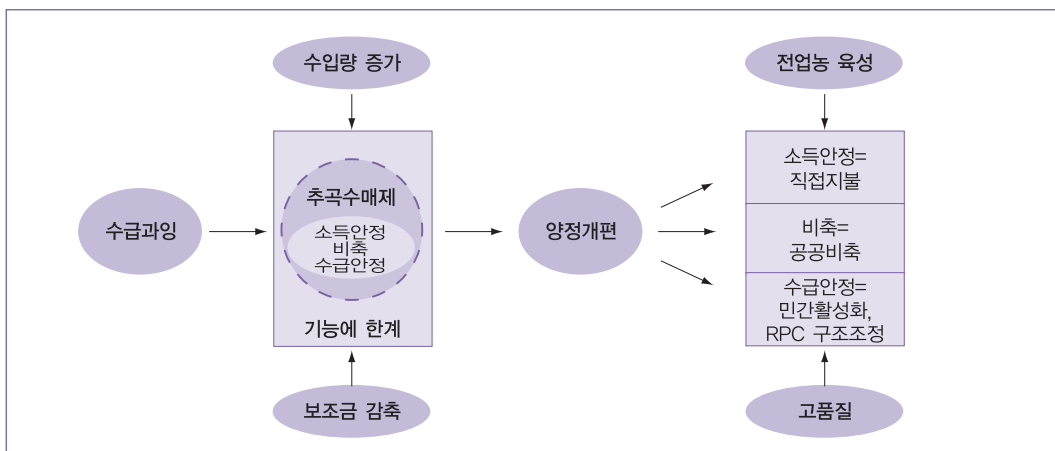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2004년에는 생산량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 기능과 물량흡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문제는 재정지원(직불금)으로 보전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2-3-7〉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구 분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매입 목적	농가소득안정, 쌀수급조절, 안보용 비축	안보용 비축
매입 물량	국회동의	국무회의 의결(3년 주기 결정)
매입 가격	행정가격(생산비 감안)	시장가격(통계청 조사가격)

〈그림 2-3-2〉 양곡관리 시스템



그에 따라, 현행 쌀 정책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 시가 매입·판매방식의 공공비축제 운영,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와 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 고급화·브랜드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비축물량은 FAO 권고량(연간 소비량의 17%)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비축물량의 1/2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2-3-8〉 정부비축미 목표 및 매입물량

- 1차('05~'07) : 864천톤('05년 576천톤, '06년 504, '07년 432)
- 2차('08~'10) : 720천톤('08년 400천톤, '09년 370, '10년 340)
- 3차('11~'13) : 720천톤('11년 340천톤, '12년 370, '13년 370)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미곡처리량(RPC)을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 9월에는 제4차 협정문이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최종 타결되어 제11차 AMAF+3 농림장관회의(11.10.7. 인도네시아)에서 협정문 승인이 이루어졌다.

〈표 2-3-9〉 국가별 쌀 약정 현황

구분 \ 국가	한 국	중 국	일 본	아 세 안	합 계
약정물량(천톤)	150	300	250	87	787
출연기금분담액(천달러)	1,000	1,000	1,000	1,002	4,002
운영비용기부금(5년간)	75	75	75	74	299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양곡년도 쌀 자급률은 83.0%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공공비축제를 포함한 쌀 수급정책으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곡물의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공비축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 여건 속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특히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DDA/WTO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비축제 도입은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쌀의 유통과 수급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2011년에는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쌀의 품위 등급을 세부분화(특, 상, 보통 → 1등급, 2, 3, 4, 5, 미검사)하고, 품종명 표시를 보완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공공비축제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약 72만톤의 적정 재고를 확보할 뿐 아니라, 국내 소비량이 많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수입산과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하여 식량안보상 필요하고 수급·가격 변동성이 커서 비축을 통한 대응여력 확충이 필요하거나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정책상 필요한 밀·콩·옥수수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비축수입농산물 관리

■ 식량산업과 사무관 서정호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는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잇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작황의 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대로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농산물 가격도 작황부진으로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비축수입농산물 관리는 새롭게 주목 받게 되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급불안, 식량위기 대응과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산물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관리는 역할과 중요성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추진내용 및 성과

1976년 농안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78년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설치하여 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따라 국영무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변동 추이에 대하여 FAO, OECD, 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 농무성 등의 자료를 통한 국제 식량 수급전망, 국가별 농업통계를 기초로 국제 곡물가격을 예측하여 비축수매를 추진하고 있고, 2009년 2월부터는 국제곡물정보관측기구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운영하여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입선 다변화와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적기 구입·비축하고 있다.

2011년에는 콩 280천톤, 팥 26천톤을 수입하였고, 콩 45천톤(2개월 사용분) 정도를 상시 비축하고 있다.

〈표 2-3-10〉 농산물 수입비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톤, 달러/톤)

구분	연도	2010			2011		
		금 액	물 량	단 가	금 액	물 량	단 가
콩		167,565	224,014	581	246,656	279,718	713
팥		34,710	21,000	1,423	47,291	26,000	1,231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2012년

수입농산물 비축사업은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 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비축수입농산물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국제적으로 기초적인 종자산업부터 농산물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대외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의 식량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비축관리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세계곡물 시장은 2008년, 2009년을 정점으로 한발,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은 감소한 반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인한 곡물수요가 증가하고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곡물가는 상승하고 수급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늘어나는 소비에 비해 생산 증가요인은 많지 않은 상황과 곡물 가격 급등주기도 과거 10년에서 최근 3년으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국제곡물가 급등시 혼란의 우려가 높으며, 수출국의 수출금지 등 식량의 무기화 추세에 이어 식량자원의 투기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비축규모는 FAO권고를 기준으로 국내 연간소비량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비축방법도 단순 현물매입에서 국제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식량안보 확보와 국내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해외곡물 조달체계와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식량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농산물 산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 논 소득기반 다양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윤승우

■ 추진배경 및 개요

2008~2009년 연속적인 풍작,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확대 도입 등에 따라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쌀값의 하락과 함께 정부의 재고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종자개량, 재배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쌀의 공급 과잉이 구조화되었다.

한편 콩, 조식료 등은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면서 곡물자급률 수준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의 공급과잉 구조 해소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논에 타작물재배 시범)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논에 타작물재배 시범사업은 2010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벼 이외에 콩, 조식료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0a당 300천원을 지원하였다.

총 4만ha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군에서 논 39,951ha에 타작물재배를 약정하였다.

〈표 2-3-11〉 시·도별, 품목별 타작물재배 약정현황

(단위: ha)

시 도	목표면적(A)	약정면적	이행면적(B)	비율(B/A)
합 계	40,000	39,951	37,197	93.0
경 기	4,200	1,678	1,668.3	39.7
강 원	1,700	1,647	1,629.7	95.9
충 북	2,100	2,551	2,419.6	115.2
충 남	6,930	4,721	4,517.1	65.2
전 북	6,000	6,516	6,101.1	101.7
전 남	8,200	8,825	7,756.8	94.6
경 북	5,200	7,890	7,435.2	143.0
경 남	3,800	5,263	4,907.2	129.1
기 타	1,870	860	762.4	4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2012년

이 사업을 통해 37천여ha에 타작물을 재배하여 약 20만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콩, 조사료 등의 생산을 확대하였고 정부의 논 타작물재배 시범사업과 연계한 논콩 재배단지, 농촌관광테마파크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업경영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등의 모범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을 통해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이 안정되어 농가의 쌀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콩·조사료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었으며 가공용벼 계약재배를 시범 실시하여 쌀의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2011년 쌀 생산액은 8조 88억원으로 2010년 6조 7,874억원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이는 타작물 재배를 통해 수급균형을 달성함으로써 2011년 수확기 쌀값이 166,068원/80kg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쌀 과잉재고 보관관리 비용과 쌀값하락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등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쌀 생산이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논을 시설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쌀 수급상황에 따라 생산조정의 목표와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5.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추진배경 및 개요

대부분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품질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쌀 브랜드 수가 1,629개나 되는 환경속에서 쌀유통이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구매자 중심으로 급히 이전됨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부합

하고 균일한 품질의 동일브랜드 쌀 대량 공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런 여건에서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산 및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는 RPC역량강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 규모화된 RPC 중심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이후에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들녘별 쌀경영체 및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품질쌀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19년까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브랜드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RPC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간 일정규모 이상 원료벼를 취급하는 규모화된 RPC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38개소를 육성하였다. 2012년에도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를 4개소 지원하여 국고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쌀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자금 40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과 농가에 대한 교육, 브랜드 쌀의 홍보, RPC 시설 및 운영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 2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지원해 주고 있다.

〈표 2-3-12〉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개)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량 (누계)	8 (8)	8 (16)	9 (25)	8 (33)	5 (38)
전국 쌀브랜드 수	-	1,721	1,650	1,667	1,629

■ 평가 및 향후계획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절감(△34%), 미질향상, 유통개선 등이 되었고, 수확기에 집중 출하되는 물량 흡수를 통해 국내 쌀값 안정 및 수급 조절에 기여하는 등 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논에서 수확한 벼를 RPC에 입고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계약재배 RPC가 점차 늘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품질면에서는 브랜드사업 대상 RPC의 완전립 비율이 증가('06년:89.9%→'10년:94.7%〈4.8%↑〉)되고 단백질 함량이 감소('06년:6.9%→'10년:5.8%〈1.1%↓〉)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향후, 사업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RPC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정된 RPC가 여건에 알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1절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농식품 R&D 혁신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 녹색미래전략과 서기관 김종필

■ 추진배경 및 개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보스 포럼, APEC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글로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종래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저탄소 에너지 보급 계획을 마련하였고,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11년~2010년) 평균기온이 1.8℃상승하여 전세계 평균(세계 평균

0.75℃)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집중호우,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증가하는 등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후에 취약한 농림어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업 환경의 변화는 재배지의 변화, 기상재해 및 병충해 등의 증가에 따른 농어업 생산량의 감소 뿐 아니라 식량 생산성 하락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하락, 물가변동 확대, 식량안보 위협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2008년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전 부문에 걸쳐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09.2.16)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10.4.14)되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 BAU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녹색성장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요인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50개 실천프로젝트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10.2.3). 이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등 3대 전략 및 50개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투입·고효율 농식품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그 동안의 여건변화, 선택과 집중, 정책 우선순위 등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50개 과제 중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식품 녹색성장 핵심과제 추진계획’(11.3)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농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5대 핵심분야와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2-4-1〉 농림수산물 녹색성장 2011년 핵심과제 추진계획

구분	세부 추진 내용				
5대 핵심 분야	1.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3.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녹색실천 강화	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강화	5.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제협력 확대
15개 과제	·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 농작물 재해보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생산 기술 개발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보급 · 어선 LED 보급 지원 · 농업분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녹색 식생활 운동 확산 ·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치유 활성화	· 저수지 뚝 높이기 지속 추진 · 친환경 비료 지원 · 바다숲 조성 확대 · 미래지향적 산지관리체계 마련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확대 및 기능강화 · UNCCD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2대 관리 분야	1. (성과관리) 50대 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정부 업무평가 대응 2. (홍보) 성과확산을 위한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홍보 강화				

또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속적인 식량생산 추구하고 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 연구 협력체인 ‘농업 온실가스 국제연구 연맹(GRA)’에 공식 가입(11.6.24)하여,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27명)를 구성(11.4)·운영하여 ‘농림수산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림수산물 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년~20년)’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 6대 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농림수산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은 기후변화를 농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업·축산 및 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관리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목표관리 대상 26개 업체에 대해 업체별 2011년 감축이행 계획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으며, 2012년에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컨설팅과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 축산,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통계 종합산정 시스템 마련하고, 농림수산물분야 국가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하여 보고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배

출통계 종합산정 시스템을 재정비(11.6)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정책 성과를 발굴하고, 정책 알리기 홍보에 주력하였다. KBS 다큐멘터리 ‘그린밥상’을 제작하고, EBS 지식채널e ‘온실가스와 푸드마일을 줄일 수 있는 도시농업’을 방영하였다.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UNCCD) 및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외부의 시각에서 본 성과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 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소개(11.5)된 바 있다.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저변확대 및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민 및 국민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 녹색성장 실천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소통 루트를 통해 쉽고, 접근성이 높은 홍보 수단을 선택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흡수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 작물생리 및 품종개발 연구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분야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업 관련 기상 정보 제공 등을 전담하는 조직(가칭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신시나리오(RCP)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년~’20년)을 보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농업 탄소상쇄 시범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온실가스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과제도 대폭 발굴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 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도 도모할 계획이다.

2.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덕민

■ 추진배경 및 개요

2008년 이후 세계경기회복 기대감, 중동지역 정정불안, 부존자원의 한계 인식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 국가별로 무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10% 수준이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이후면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유가·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원에 분야의 유류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면세유 중 67%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산업에 대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2〉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단위: 천TOE²⁾)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9
총에너지소비량	75,107	121,962	149,852	170,854	182,066
농림어업	1,813(2.4%) ¹⁾	3,224(2.6)	4,069(2.7)	3,385(2.0)	3,035(1.7)
- 석유제품	1,687(3.7%)	2,934(3.5)	3,600(3.9)	2,755(2.9)	2,244(2.3)
- 전력	125(1.5%)	290(2.1)	456(2.2)	603(2.1)	786(2.3)

주: 1) ()안은 국가총소비량 대비 비중, 2010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 TOE: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물리적 단위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시설원에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순환형수막시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목재펠릿난방기 및 지열난방시설을 보급·지원하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을 통해 유류의존도를 70%까지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장비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등의 시설장비를 시설원예농가에 보급·지원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냉난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농업용 화석에너지(특히 면세유) 사용 절감과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난방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급했다. 2011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실적은 사업비 187억원(국고 보조 기준)을 투자하여 1,263ha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였다.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용 면세유의 67%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면적을 2020년까지 가온면적의 30%수준인 4,453ha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열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자하여 60ha에 시설을 설치하였고, 목재펠릿난방기는 63억원을 투자하여 166ha에 대하여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 시설원예 에너지 다변화 추진

2010년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 사업의 시설현대화분야에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면세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계측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원예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을 수산과 축산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화석 에너지의 유한성과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농어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원에 뿐만 아니라 수산과 축산분야를 포함하는 농어업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발, 에너지절감시설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R&D 투자규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시설 확충

■ 방역관리과 사무관 김정주

■ 추진배경 및 개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 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화 · 액비화 · 에너지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 ·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10년에 791억원에서 2011년 801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7년) 424억원 → (08년) 664억원 → (09년) 754억원 → (10년) 791억원 → (11년) 801억원

또한, 가축분뇨를 퇴 · 액비화 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2010년 107만톤에서 77만톤으로 감축하는 한편, 자원화율도 2010년 86.6%에서 87.6%로 끌어 올렸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개정

그 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6년 9월)」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규칙(’07.11)」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액비부숙기간(6개월 → 4), 액비살포 의무면적(돼지 : 640㎡ → 260) 및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100m)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0.11.8) 하였으며, 또한 액비의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액비살포 가능지역에 골프장·시험림을 포함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1.7.28) 하였다.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4억원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14,06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액비저장조 984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 (3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

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4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5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년)5개소 → ('08년)19개소 → ('09년)39개소 → ('10년)56개소 → ('11년)68개소

■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실태 등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평가결과 3년 연속 '하'등급을 받는 경우 모든 정책지원을 제외하고, 불량 액비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액비저장조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저장조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4. 농림수산물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김기연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세계농업은 FTA 확대와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수산물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물부는 글로벌화와 고령화, 기후변화와 가치변화 등의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고 녹색산업 및 생명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2009년에 농림수산물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0년~14년)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이 종합계획에 따른 2012년 시행계획에는 방향성 있는 농식품 R&D를 추진하고자 가축질병 대응 등 현안대응 R&D에 1,067억원을, 기후변화 대응, 생명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등 미래 주요 이슈대응에 1,848억원을, 식량안보 및 유전자원 보존 확보 등의 국가 주도의 기반연구에 1,62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금액은 2008년 6,554억원에서 2012년에는 9,089억원으로 약 38.7%가 증가되었다.

농림수산물 R&D는 산업의 특성상 농림수산물현장에서의 기술지도보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기관(농촌진흥청·산림청)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농림수산물 R&D 총 예산 중 약 60%)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산·학·연 민간에 대한 R&D지원이 취약하나 향후 민간투자영역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2년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물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0년~14년)의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인 종합계획에 기초하되, FTA확대·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 환경 변화를 적극 고려한 2012년 농식품 R&D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

의 우선분야를 구체화하였다.

향후, 2011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역할 확대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 4월 출범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하여 제4기('12.7.22~'13.7.21)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후 국가 R&D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중복성 및 투자효율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부·농진청·산림청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기획조정전문위를 신설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한 생산기반·안전유통·종자생명·녹색자원환경 분과 등 5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여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물 R&D 평가를 주관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전문위원회에서는 각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부·청 의견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반영의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 미래유망 및 현장수요 부합형 신규사업 발굴·기획

농림수산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술수요·정책수요 및 산업동향을 반영하여 농림수산물부 주관으로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R&D 사업을 기획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로 제출하였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통해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추진중인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및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극복기술개발사업'에도 농림수산물부가 주요부처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녹색인증제도 시행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부 등 8개 부처의 통합고시를 마련하여 녹색인증제를 시행('10년 4월)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10.8)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농림수산물부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을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10.4)하였고, 동 평가기관을 통해 2011년 농림수산물분야 녹색인증·확인 건수는 총 31건으로 녹색기술 25건, 녹색사업 2건, 녹색전문기업 4건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녹색인증제 시행 이후 인증수요 부족 등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개정('11.5)을 통해 인증대상 확대, 기술수준 구체화 및 평가절차 간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로 한번 더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물부의 2012년 녹색 인증·확인 목표는 전년 대비 40% 높은 43건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농림수산물 R&D 기획단 운영

국내의 R&D 환경변화 및 농림수산물분야 R&D 예산사업의 체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2011년부터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을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 등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단위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미래 연구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연구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단장, 예타사업자문위원회, 기획총괄팀, 기획분과 등으로 구성된 '농림수산물 R&D 공동기획단'을 구성·운영('10.9)하여,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의 2011년 사업 대상과제 발굴과 기획을 지원하고, 생명산업 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 연구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산업화 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포함) 공동기획단을 운영하여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40억 규모)을 기획해 2012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물 R&D 통합 DB 구축

농림수산물분야 R&D 정보는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결과와 성과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부·청의 R&D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기존 NTIS 관리항목에 농림수산물분야 R&D 사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 DB 구축에 착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으로 기관연계가 확대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 DB의 구축으로 농림수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의 적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농림수산물분야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개별 과제 진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 내용·공고·실적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관별 R&D 기획 및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기관 간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연구자 입장에서든 기관별 연구과제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여 관심분야 연구동향 파악이 쉬워지므로 민간 차원의 연구계획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 R&D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농림수산물분야 R&D를 총괄 조정하는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R&D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목표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홍보 및 우수 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활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정기포럼 및 합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농림수산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물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단체·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발전에 대하여 논의할 장을 마련하고, 방사능·구제역·AI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정확한 과학적 논거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5. 종자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상집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의 종자업체가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전북 김제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11.4)하였으며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11.6~12)하여 타당성제조사 요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수출전략 및 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10년간 연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상세기획을 2012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종자산업법」에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식물신품종보호법(안)」이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고로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수는 2011년 기준 987개로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4-3〉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연도	구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기타
20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20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20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20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2010		950	35	197	283	152	130	30	139
2011		987	43	196	300	160	130	31	127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유전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명자원통합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정책과는 별도로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1년 종자수출액은 33백만달러로 전년도 대비 34%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 품종보호등록은 3,833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4〉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2011년)

(단위: 건)

구분 작물	국 내						외 국				총 계					
	계	개인	중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중자 업계	국가	계	개인	중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화훼류	1,180	254	76	392	445	13	1,029	32	997	0	2,209	286	1,073	392	445	13
식량작물	652	16	17	50	517	52	3	1	2	0	655	17	19	50	517	52
채소류	565	7	433	30	73	22	14	0	14	0	579	7	447	30	73	22
과수류	171	65	23	14	66	3	1	0	1	0	172	65	24	14	66	3
특용작물	139	1	13	12	110	3	1	0	1	0	140	1	14	12	110	3
버섯류	57	14	3	24	14	2	3	2	1	0	60	16	4	24	14	2
사료작물	18	0	0	0	18	0	0	0	0	0	18	0	0	0	18	0
계	2,782	357	565	522	1,243	95	1,051	35	1,016	0	3,833	392	1,581	522	1,243	95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중인 농업유전자원은 307천점(11년)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용형질 특성평가는 15%(09년) 수준에서 18%(10년)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 확대(10ha, 270억원 → 54ha, 750억원)를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예산부처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상세기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되며, 「종자산업법」과 「식품신품종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분리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및 분양을 일부 실시중에 있으나, 2014년까지 ‘농수산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을 완료하여 농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재원

■ 추진배경 및 개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충, 그리고 학습·애완·관광상품용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의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표 2-4-5〉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단위: 억원)

활용 분야	대상 곤충 종류	시장 규모(추정)	
		2009	2015
학습·애완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적곤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애, 풍뎅이유충, 거미 등	-	700
합계		1,570	2,98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0년.

■ 추진내용 및 성과

- ‘2011년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에 2015년까지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570억원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 계획(11년~15년)'에 대한 '2011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시설 조성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곤충생산단지와 곤충체험학습시설을 현대화·규모화 하는 등 곤충농가 및 곤충산업체를 육성·지원하고자 한다.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등과 같이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으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수집·보존 및 표본 자료 DB구축, 곤충의 가치 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관련 대학·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곤충산업육성 교육과정을 농업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의 교육기관에 개설할 계획이다.

■ 제2회 생명산업대전 개최를 통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2011년 10월 13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생명산업대전' 행사를 통해 '기존의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산업'이 '곤충 등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인 미래 첨단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제시와 산업화의 발전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4-1〉 제2회 생명산업대전에 곤충산업 체험관 조성



■ 평가 및 향후계획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1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미개발 유용 곤충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 정책인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존 시장이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위주로 편중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등 곤충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사료곤충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곤충사료화에 대한 기획 연구를 실시하고 곤충자원을 이용한 사료소재로서 산업화의 길을 개척하여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화의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훈인기

■ 추진배경 및 개요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공포('09.6.9)하였다.

1단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09.12)하고, 국회에 제출('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10.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10.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 2.24, 4.14, 4.19, 4.22, 12.6, '11. 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11. 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드디어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 금융위 등 이

해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 조합장·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2단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토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토록 하고,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농협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서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11.3.31 공포)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정부는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1년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요청한 6조원 중 4조원을 반영하였고, 지원형식은 3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업분야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협사업구조개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출발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경제부문에 배정된 자본금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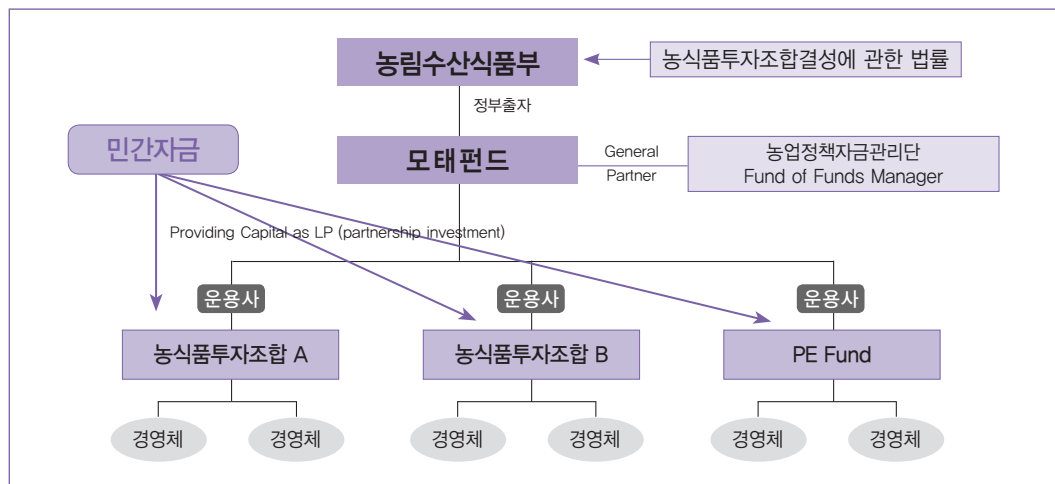
■ 녹색미래전략과 서기관 김남웅

■ 추진배경 및 개요

전통적 농어업 금융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도입된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에는 펀드의 근거법을 마련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농식품투자조합결성을 개시하여 펀드운영을 본격화하였다. 그동안 농식품분야의 투자는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자본에 의한 농림수산분야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는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된 농식품투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융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분야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기후 변화, 식량안보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과 열악한 농식품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영전략이 필요하여 펀드 투자관리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교육·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4-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 9월 597.3억원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는 정부에서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누적규모 1,097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087억원을 출자하여 총 11개(농림수산식품일반 1, 농림축산업 3개, 식품산업 3, 수산업 2, 프로젝트사업 2)의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총 결성규모는 2,300억원으로 이 중 1,213억원을 민간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 등에 대한 투자는 연차별 의무투자비율(2년 40%, 3년 60%, 4년 80%)에 따라 이루어지며 2011년에는 조합결성 후 펀드 초기단계의 조합별 경영체 발굴 및 투자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말 215.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식품모태펀드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근거법률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농식품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세제 관련법상의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으로 우수 투자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및 지역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투자처 발굴 및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투자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표 2-4-6〉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현황(2011년)

(단위 : 억원)

사업 연도	펀드 형태	투자 분야	운용사	정부출자 비율	결성금액			결성일
					정부	민간	계	
2010년 (5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수산 식품일반	그린부산 창업투자	45%	90	110	200	'11.3.21
		농림축산업	아주B투자	50%	100	100	200	'11.3.17
		식품산업	미시간 벤처캐피탈	40%	100	150	250	'11.3.17
		수산업	캐피탈원	50%	100	100	200	'11.7.26
	사모투자 전문 회사(PEF)	프로젝트 사업	현대증권/ 동양(공동)	50%	157	163	320	'11.3.17
소계					547	623	1,170	-
2011년 (6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2개)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50%	100	100	200	'11.6.8
			아시아 인베스트	50%	100	100	200	'11.7.12
		수산업	유니창업투자	50%	80	80	160	'11.12.12
		식품산업 (2개)	나우아이비 캐피탈	40%	80	120	200	'11.7.12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50%	80	90	170	'11.11.25
		프로젝트 사업	미래에셋 벤처투자	50%	100	100	200	'11.7.12
소계					540	590	1,130	-
총계('11년말)					1,087	1,213	2,300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 농식품모태펀드사업은 정부예산으로 농식품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7개 농식품투자조합의 추가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성이 완료되는 2012년말까지 농식품모태펀드는 누적규모 총 3,300억원(정부 1,625억원, 민간 1,673억원)의 18개 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펀드 운영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할 경우 정책혜택이 대규모 경영체 등 일부 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2012년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영체에 펀드결성액의 전액을 투자하는 특수목적 펀드 2개(200억원)를 결성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하

여 2012년에 결성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1년차(20%) 투자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조기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및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투자의무비율 조기달성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열악한 농식품분야 투자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 심사역을 대상으로 농식품경영체 특성, 심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사업성 평가, 경영진단, 투자연계 등을 포함하는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수의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결성된 조합의 농식품경영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 경영체간의 정보교류 확대와 농식품경영체 투자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농식품모태펀드가 단순히 민간분야의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의 선진투자 및 경영기법, 책임경영 등의 노하우를 농어업에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 투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 정아름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분야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정책금융은 농업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로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농업분야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4-7〉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1년말 대출잔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농 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시중은행
정부자금(A)	116,020	68,771 ¹⁾	3,254	8,296	34,080	1,619
차관자금(B)	71	71	-	-	-	-
민간자금 (이자보전)	정책자금	91,700	89,559	1,947	-	194 ²⁾
	부채대책	29,155	28,768	387	-	-
	계(C)	120,855	118,327	2,334	0	194
합계(A+B+C)	236,946	187,169	5,588	8,296	34,080	1,813

주 : 1) 농촌환경개선자금(구, 행자부소관)의 공자기금 및 농특 포함(금융자금, 기금, 지방비 지원금액 제외)

2) 민간자금 시중은행(194억원) : 부산(8), 외환(29), 산은(20), 전북(42), 기업(1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 정책자금 시중은행 취급 확대

2004년 8월부터 촉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촉발기금의 모든 용자사업과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용자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2008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신규 후계농 및 창업농·후계농추가지원 자금을, 2010년에는 농촌주택정비사업, 재해복구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자금을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모태펀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대출취급기관이 농

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하였고, 기존에는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종합자금제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Pool)로 운영하도록 하고있으며,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2-4-8〉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종합자금	10,202	12,010	11,050	12,978	13,345
농축산경영자금	29,201	28,023	27,566	26,632	24,280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경영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05년 4,000억원→'06년 5,780억원→'07년 7,357억원→'08년 6,952억원→'09년 9,095억원→'10년 1,200억원)하는 한편,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의 신규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운용배수가 안정화('06년 96.0배→'07년 23.8배→'08년 14.6배→'09년 6.6배→'10년 4.3배 → '11년 4.9배)되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업인등에 대한 신규보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자금 취급을 시중은행에 개방하였음에도 기준금리의 차이, 회계검사 의무화, 대손보전 제외 등으로 인해 취급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경영비를 보

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요경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요경비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소액 대출에 대하여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 자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농지제도 개선

■ 농지와 사무관 안종락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특히, 상속, 이농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임차농지와 임차농업인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 임차농보호제도의 마련을 각계에서 제기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농업계 내·외의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2010년 1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민단체, 국토연구원, 언론계 등 농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12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농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안을 기초로 마련된 농지법개정안은 2011년 3월부터 7월 중에 관

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8월 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1년 8월 8일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1년 12월 29일 최종 의결되었다. 의결된 안은 2012년 1월17일에 공포되어 2012년 7월 18일에 시행된다.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임대차계약 최소기간 지정, 임대차계약의 조정 등 농지임차농 보호제도 규정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폐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제도 도입,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보완,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제도 보완 등이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한 농지법개정안중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집행임원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을 폐지하는 안은 비농업인의 투기목적 농지소유 우려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 주택을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던 것을 변경 또는 해제시에도 주민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법적으로 최소한 3년은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중에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기간 등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대차 당사자가 임차료,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차당사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분쟁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지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인 농지법 시행령과 농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규정을 시행일에 맞춰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지자체 농지담당공무원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에서 농지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 WTO / DDA 협상대응

■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유미선

■ 추진배경 및 개요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 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지속적 개혁 및 자유화를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을 출범시켰다.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하도록 일정을 정하였다.

동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내지 5월 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는 등 중간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에 관한 공동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무역원활화 등 일부 이슈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4년 들어 협상진전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2004년 말로 예정되었던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각료회의 직전까지 핵심쟁점들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으나, 각료회의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데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각료선언문에 따라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말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향후 협상일정을 정하였으며, 그간 EU와 미국, 수출국들간에 입장대립이 극심했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하였다.

2006년에 들어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주요국 및 주요 그룹간 입장차가 매우 커서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2006년 7월에 개최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였으나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DDA 협상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재개 시까지 각국이 입장을 재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별로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미 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를 통해 DDA 협상 전반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본격적 협상의 재개라기보다 주요국간 탐색 및 주요 그룹 내의 기술적 협의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주요국 각료들이 DDA 협상의 본격적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는 DDA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고, 농업분야에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7월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이후 하반기 DDA 협상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그룹 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 협상(약 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2월에 팔코너 의장이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하였고, 5월에 2차, 7월에 3차 수정안이 배포되어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수준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수정안이 배포된 7월에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부원칙이 타결될 전망도 보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대립으로 결국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팔코너 의장은 7월 각료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등 주요국들이 국내 일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8년 DDA 협상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접근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으며, 4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DDA 협상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초 인도에서 개최된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주요국들이 하반기 DDA 협상 진행과 2010년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 합의하였고,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통상장관들이 2010년 초 협상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협상이 활기를 띠어 농업협상그룹 의장 주재로 이행계획서 작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 TRQ 신설, 관세상한, 관세단순화, SSM(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등에 대해 각국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0년에도 실무 차원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고, SSM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는 DDA 협상점검회의가 개최되어 각 협상그룹별 협상현황과 주요쟁점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5월에는 SSM 논의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 관련 문서가 회람되었고 양허표 작성 및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에서 각국의 제안 등이 있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1년을 DDA 협상타결의 기회로 보고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 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5월부터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패키지

(small package) 구성방안이 논의되었다. 포함 의제로는 최빈개도국(LDC) 이슈, 수출경쟁, 수산보조금 등이 논의되었으나 이에 대해 주요국간의 입장차이가 지속되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1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DDA 협상의 교착,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등 대내외적 도전 속에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도하 각료선언 47항의 조기수확, 복수국간 합의방식 등 새로운 접근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기수확에 포함될 의제로는 최빈개도국(LDC) 이슈, 무역원활화, 비관세장벽 등이 거론되었으며, 복수국간 합의방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다자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유보의사를 표명하면서 일괄타결과 FIT(Full participation, Inclusiveness, Transparency) 원칙을 강조하였다. 제8차 각료회의는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DDA 협상을 포기하지 말고 합의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키는 등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가들의 협상타결 의지가 낮고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의 영향으로 2012년 DDA 협상진전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8차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2012년 초부터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논의, 특히 조기수확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조기수확 방안과 일괄타결 원칙의 해석, 조기수확에 포함될 의제범위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FTA 등 양자간 무역협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양자간 교역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WTO의 기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WTO 각중위원회의 이행점검기능이 강화되고 일반통상이슈(보호무역주의 대응, 비관세장벽, 자유무역협정 정의해석 등)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협상

■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이경미

■ 추진배경 및 개요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에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있었고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 협상이 개최되어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동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타결된 협상의 비준동의안을 2011년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국회 비준절차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2011년 11월 22일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 후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 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 FTA 찬반 양측 전문가들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008년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농어촌 지원 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08.2.19)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 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

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1월 30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12월 3일 추가협상을 타결하였다. 농어업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냉동목살에 대한 양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2011년 6월 3일 외교통상부는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비준동의안을 묶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추가협상으로 인해 협상의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상정조차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국회 및 정부에서는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회 여당, 야당 및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의 이익균형, 피해분야의 대책 등 비준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편 정부측과 민간인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한·미 FTA 찬반 토론회인 끝장토론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과정 끝에 2011년 11월 22일 국회비준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으며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미 FTA 농산물 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측에 대해 양허제외, 수입쿼터(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산물 셰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수많은 반대와 우여곡절 끝에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될 한·미 FTA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FTA 대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3. 한·EU FTA 협상

■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강민철

■ 추진배경 및 개요

한·EU FTA는 27개국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의 FTA로, 교역·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다.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 분야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또한 충실히 마련한다는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한·EU FTA는 여덟 차례 공식협상('07.5~'09.3)과 고위급협의 이후 대통령 유럽 순방을 계기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한·스웨덴 정상회담('09.7)에서 실질적 타결 후 정식서명('10.10)이 완료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실질적 타결('09.7) 및 가서명('09.10) 후, 협정문에 대한 EU측의 22개국 언어 번역 작업, 양측의 내부 법률 검토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식서명('10.10)이 이루어졌다. 정식서명 이후 국내 관련 국책 연구 기관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10.10)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보완대책을 발표('10.11)하였다.

한·EU FTA 보완대책은 EU와의 FTA 추진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농수산물분야에서는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향후 10년간('11년~'20년) 2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한·EU FTA는 2011년 5월 4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11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협상과정에서 EU측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한 데 대해 교역현황 등을 감안,

한·미 FTA와 차별화하는데 노력하여 돼지고기 양허기간·양허방식, 낙농품(저율관세할당 TRQ) 등에서 한·미 FTA 결과보다 보수적 양허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협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향후 한·EU FTA 이행 관련 쟁점은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게 된다.

4. 한·페루 FTA 협상

■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강현수

■ 추진배경 및 개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시 톨레도(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추진을 제안한 이후 2008년 5월 민간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2008년 11월 APEC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한·페루 FTA는 양국 간 교역규모 및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 보유량과 남미 시장으로의 다각적인 진출 필요성 및 시장 선점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3월 협상을 시작하여 각각 공식협상 5회, 소규모 회의 3회, 통상장관회담 3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8월 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2011년 3월 21일 양국은 이에 공식 서명하였다. 이후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한·페루 FTA를 비준하였으며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다. 우리측은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노력하였다. 전체 농산물중 쌀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인삼류, 사과, 감귤 등 89개 주요 세번은 현행관세를 유지하였으며, 수산물은 냉동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세번에 대해 10년으로 장기양허하였다.

특히 페루의 관심품목인 오징어는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어업·양식업 분야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페루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하였으며, 수산물은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수산물은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을 활용하되, 추가대책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5. 한·콜롬비아 FTA 협상

■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방문진

■ 추진배경 및 개요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에너지,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동연구('09.3~8)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09.10)를 거쳐 2009년 11월 18일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12월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협의 및 분야별 양측 입장교환을 위한 한·콜롬비아 FT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까지 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상품을 비롯한 각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 일부 분야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

상품 양허협상은 몇차례 수정 양허안 교환이 있었으나 콜롬비아 측은 쇠고기, 낙농품, 열대과일, 화훼류 등 관심품목에 대해서 우리측은 자동차 및 차부품, 가전, 철강 등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관심품목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로 양허협상의 진전은 미미하였다.

아울러, 농업관련 협정문 분야에서도 콜롬비아측은 농업섹션 별도 구성 주장 등 농업분야의 이슈

화에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는 농업분야의 이슈화에 반대하는 한편, 농산물셰이프가드(ASG) 도입, 농업수출보조금 유지 등 농수산업의 민감성 확보와 더불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10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핵심 협상분야인 상품양허협상에서 진전이 미흡함에 따라 동 분야 협상 진전을 위한 소규모 회의 개최, 수석대표간 회의 등을 통해 5차협상 이전까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갔다.

2011년 10월 제5차 협상(서울)에서 양측은 협상의 조기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여 최대 쟁점분야인 상품양허 협상의 진전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양허안에서 우리측은 자동차 등 8개 품목에 대해, 콜롬비아측은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양측의 기체결 FTA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였다.

콜롬비아측의 핵심관심품목이 농산물 및 주요 민감 농산물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는 양허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주요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커피 등 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탄력적 양허 입장을, 쇠고기, 낙농품 등 핵심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수적 양허 입장을 견지하였다.

5차 협상 이후 2011년 11월 소규모 회의(미국, LA)를 개최하여 2011년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2011년 11월 소규모 회의에서 우리는 5차 협상에 따른 화훼류, 열대 과일 등 일부 농산물 양허개선 제시와 더불어 콜롬비아 측의 추가 양허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기체결 FTA사례, 국내 농어업 여건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양허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콜롬비아 FTA는 2011년 10월 5차 협상 이전까지 상품양허분야 등에서 양측간 기대수준의 차이로 협상 진전이 미흡하였으나, 5차 협상 이후 양측은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양허 등 상품분야 협상의 진전에 협상력을 집중하였다. 상품 양허협상의 집중 추진에 대해 농수산물의 양허 대응은 콜롬비아측의 양허기대 수준 조정과 더불어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민감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최종 협상까지 농수산물의 양허는 기본적으로 기존 양허 입장위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양허제외, 장기양허 등 농수산물의 예외적 취급 확보에 중점을 두어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6. 한·호주 FTA 협상

■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강봉규

■ 추진배경 및 개요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시작에 합의한 이후 2008년 10월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간 사전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양국 정상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호주 FTA 협상은 호주의 여타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불리해진 호주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서비스·투자 분야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기대이익이 낮고 개방수준에 따라서 FTA로 인한 영향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5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11년 10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7차례의 소규모 회의를 가졌다. 호주는 협상 시작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EU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 여건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주 측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 및 구조, 관세율 구조, 축산 경쟁력 등이 미국, EU와 차이가 큰 만큼 동일한 양허는 불가하며, 또한 상대국마다 관심이 있는 품목이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양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기대이익 불균형이 심한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서의 기대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개발 협력, 식량안보 관련 조항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협력’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쇠고기, 낙농품 등 일부 농산물만 쟁점으로 남아 있었으나,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중요해진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호주가 수세적 입장인 반면,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점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협상 진전 속도는 양국 간 이익 균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이익균형도 양국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7. 한·터키 FTA 협상

■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이경미

■ 추진배경 및 개요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로서, 터키의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과 시장잠재력을 고려하여 민간 공동연구('08.9~'09.5),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10.2)를 거쳐 2010년 3월 한·터키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3월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2011년 말까지 총 3차례의 공식협상과 1차례의 소규모 협상을 진행하였다. 2010년 4월 터키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는 협상운영을 위한 기본세칙(TOR) 합의 및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분야별 양측입장을 교환하였고, 위생 및 검역 조항은 WTO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다는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진행된 2차례의 협상(2차: '10.7 서울, 3차: '11.3 앙카라)과정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수준과 유형에 대한 시각차이를 확인하였다. 2011년 3월 터키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한 양측의 동등한 양허를 주장한 반면, 터키측은 제조업·농수산업 등 산업발전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양허를 요구하는 등 FTA에 대한 접근방식 및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입장차

이를 재확인하였다. 3차협상까지 터키측 무역역조현상 개선을 위한 농수산분야의 과도한 양허요구 등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소규모 협상(11.11)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터키와 농수산분야 교역액은 2011년 기준 69백만불(수입 54백만불, 수출 15백만불)로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교역액의 0.2%를 차지해 교역액이 많지 않으며, 주요 수입 품목도 잎담배, 올리브유, 헤이즐넛 등 우리나라 생산이 없어 수입이 필요한 품목들이어서, FTA로 인해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분야별 소규모 협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되, 우리측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장기양허 등 예외적 취급 확보에 중점을 두어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노상욱

■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가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2010년 11월 우리 정부는 경

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를 GNI(국민총소득) 대비 2010년 0.12%에서 2015년 0.2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관련 기술전수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아 및 빈곤 감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가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첫째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기여로 국가이미지 제고, 둘째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FTA 협상 측면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부문 국제협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기아와 빈곤의 퇴치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국제협력을 위하여 7억원 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매우 커서 14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 42억원, 2011년 10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농식품부가 추진한 협력사업은 2006년 이래 크게 늘어났다. 사업 개수로는 11개('06년), 13개('08년), 17개('10년)로 늘었고, 이후 신규 협력사업의 추가,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23개('11년)로 늘어났다.

사업당 규모도 늘어나서 2008년에는 13개 사업 중 10개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타당성 조사 사업을 제외한 23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다. 이는 단기 소규모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협력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오던 8개 단기 소규모 사업(일반협력사업)은 2011년에 마무리되었다.

대상 국가별로는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모잠비크를 필두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이 사업 대상국들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에는 23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 등 12건의 기획협력사업에 69억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의 '개도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제고사업' 등 공동협력사업에 11억원,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등 일반협력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개)

지역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CIS	아프리카	다자/기타	계
2008	4	2	3	2		2	13
2009	4	1	7	1	1	1	15
2010	3	1	6		4	3	17
2011	2		11		7	3	23

아울러 2010년부터는 농림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발휘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협력사업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유엔식량농업기구(FAO)나 게이즈재단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FAO와 함께 동남아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능력제고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등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2010년 3월 민관협의체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농식품부 제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업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예전의 국제협력국 양자협상협력과(그 이전에는 통상협력과)에서 추진하던 국제협력 업무를 2011년부터 해외농업개발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과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사업의 발굴과 협약 체결, 사업자 선정과 사업 시행의 관리·감독, 평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2009년까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던 협력사업 관리 업무는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여 전문적 관리의 기초를 다졌고, 2011년부터는 해외 농업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제농업협력에 대한 행정적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협력사업 대상 국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지원 전략의 수립 등의 업무와 사업에 대한 평가 등 객관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게 하는 등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11년 7월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해외농업개발 위주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으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에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정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농림수산 분야에 처음으로 별도의 국제협력 관련 법률조항을 구비하게 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우리의 지원은 2006년에 도입되어 추진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편으로 아직은 양적·질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기획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다양화하여 개도국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의 총괄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등을 적극 운영해 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009년 11월 가입,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통한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외농업개발

■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이행우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1,400~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하는 구조적인 곡물수입국으로 국내 경지면적이 170만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는 식량자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으로 곡물의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및 외교적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우리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출유망국가의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조사 및 진출희망기업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09년~'11년) 80억원을 집행하였고, 용자사업은 해외농업 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및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672억원을 9개 국가에 진출한 23개 기업에 용자 지원하였다.

■ 보조사업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은 해외농업 진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농업투자여건 정보 제공과 민간기업의 관심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환경조사사업을 비롯하여 해외농업개발 포털(www.oads.or.kr)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용자지원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 증가 등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5-2〉 2011년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구 분	추진실적	성 과
해 외 농 업 환 경 조 사	- 정책조사 : 1997~2011년 22국가 조사 - 맞춤형조사 : 2008~2011년 27 기업 지원	- OADS 정보제공 - 보고서 배부 : 46기관 1,200부
OADS운영	- 해외농업투자여건 정보제공 - 해외농업개발사업 매뉴얼 제공 - 해외통신원 현지 농업정보 제공 - 국제곡물가격 등 다양한 정보제공	- 회원수 : 1,719명(개인 1,587, 기업 132) - 해외농업 전문가 등록 : 167명 -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효율성 제고
컨 설 팅	- 4개 기업 8개 분야 지원	-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전 문 인 력 양 성 교 육	- 20명 해외현지교육 2주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전문교육 수요가 많음
해 외 인 터	- 2011년 2명	-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기업채용)
해외통신원 운 영	- 10개 국가 통신원 운영	- 현지 농업정보 제공
워 크 슝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관기관 등 의견 및 만족도 조사

■ 용자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사업은 민간기업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농장형) 및 건조·저장·가공(유통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용자조건은 금리 연 2.0%,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2011년에는 9개 기업에 252억원을 지원(농장형 5개 기업 8,849백만원, 유통형 4개 기업 16,343백만원)을 지원하여 72,409톤의 곡물을 확보(직접 생산 49,075톤, 수집·유통 23,335톤)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한-필리핀 국가간 협력으로 미사미스 오리엔탈주에 농업중심복합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민간·공공 합동진출을 통해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토지, 제도상 문제점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는 해외농업 진출기업에 대한 용자금액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과 담보물로 은행의 지급보증서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동산 담보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등 용자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고, 새로 시행된(12.1.15)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해외농업개발사업(투자)과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이 유기적으로 연계·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OECD 활동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호균

■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무역 합동작업반회의, 농업환경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무역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을 발간하고 있다.

■ 최근 발간 주요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

■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2011년에는 ‘2011~2020 세계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을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 차원에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를 담은 보

고서로서, FAO의 품목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전망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최근의 농산물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가격 급등이 장래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다만 높은 가격과 좋은 기후의 도움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급증대가 일어나서 농산물 가격이 현재의 높은 가격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2007~2008년의 가격 급등 시기 이후, 2009~2010년 초반까지 농산물 가격은 안정기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중순부터의 기후와 관련된 공급부문의 변동성으로 인해, 2011년 2월에 FAO의 국제식량가격 (FAO's index of international food commodity prices)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1년 초반까지 국제농산물 가격은 다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제농산물 가격이 2010~2011년의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전 3개년의 수준과 비교하여, 밀, 쌀, 단백질 식품(protein meal), 설탕의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상조건과 관련하여 2011년의 수확량수준이 향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결정적이다. 반면 육류, 낙농품, 곡물(coarse grain)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10년 동안의 기간과 비교한 향후 전망기간동안의 농산물 가격은 평균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이전 10년 평균치와 비교하여 향후 10년('11년~'20년) 동안의 가격은 실질가격기준으로 곡물은 약 20%, 육류는 약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 제시된 2010~2019년 기간에 대한 농업전망과 비교하여 2011년 제시된 2011~2020년 기간 동안의 농업전망의 특징은 이전 3개년의 수준과 비교하여 밀, 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추세의 단기적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10년 농업전망은 대체로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에 따른 농산물 수요회복추세를 반영하여, 이전 10년 동안과 비교하여 농산물가격이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11년 농업전망도 중기적으로는 유가상승 및 자원제약으로 인한 적정 생산증가 및 재고수준회복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농산물 가격상승이 제공한 이윤증대의 기회로 인해 농업생산이 단기적으로는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2011년 농업전망의 특징이 있다.

■ 2010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11년 OECD는 ‘2011년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1~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하여 OECD 회원국의 구조적 다양성과 세계농업에서 신흥국가의 변화하는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2009~2010년 기간 동안 농업 정책의 주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농업 지지정책의 수준, 구성,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OECD 회원국들에서 생산자 지지는 2010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0년 OECD 국가들에서 생산자에 대한 지지액은 생산자 지지 추정액(Produce Support Estimate; PSE) 기준으로 총 2270억달러(1720억 유로)였다. 이는 농가 총 수입의 18%에 해당되며 이 수치는 2009년 22%, 2008년 20%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1980년 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장기적으로 생산자 지지가 감소 추세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신흥국가들(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에서의 생산자 지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시점과 국가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한다. 브라질에서의 농가 지지는 농가 총 수입의 5%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 지지 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7%로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러시아의 생산자 지지 수준은 최근 몇 년간 OECD 평균인 22%에 도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자 지지 수준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5%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생산자 지지는 최근 몇 년간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자 지지 수준은 OECD 국가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 1998~1997년 이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감소해 왔다. 뉴질랜드(1%)와 호주(3%)는 지속적으로 최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칠레(4%)가 이와 같은 최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미국(9%)은 최저 지지 수준 국가 그룹에 근접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멕시코(12%), 캐나다(16%)의 지지수준 역시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EU(22%)는 지지수준을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터키(27%)의 지지는 평균 이하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아졌다. 다소 낮아졌지만, 한국(47%), 아이슬란드(48%), 일본(49%), 스위스(56%), 노르웨이(60%)의 지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GDP 대비 농업 지지의 비중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업 부문 총 지지액은 2008~2010년에 3740억달러(2690억유로)였다. 농업 부문 총 지지액은 생산자 지지 추정액(PSE), 연구, 기반시설, 검사, 마케팅 및 홍보, 소비자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하는 지표이다. 이 액수는 OECD GDP의 0.9%에 해당되며 1986~1988년의 2.2%, 1995~1997년의 1.4%

비해 감소하였다. 신흥국가들에서의 GDP 대비 농업 지지 비중은 중국(2.3%)을 제외하고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1995~1997년의 0.2%에서 2008~2010년 0.6%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러시아는 1995~1997년 2.6%에서 2008~2010년 1.6%로 감소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같은 기간 1%에서 0.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의 감소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생산자 지지와 실제 생산 간의 분리가 OECD 국가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들이 생산자 지지와 생산이 분리된 지지정책으로 정책 수단을 옮겨감에 따라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지지 정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시장가격, 생산량, 투입재에 기초한 가장 왜곡적인 지지액의 비중은 총 생산자 지지액의 5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86~1988년의 82%, 1995~1997년의 70%에 비해 낮은 것이다. 현재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다소 덜 왜곡적인 지지액은 2008~2010년 기준 총 지지액의 23%로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가들은 시장 가격 지지에 보다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재정 지출의 대부분은 일반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신흥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지지는 시장 가격 지지 정책과 같이 상품 생산 또는 투입재 이용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상당부분은 농업에 대한 일반 서비스(주로 기반시설, 훈련 및 교육) 제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자원의 한계 등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생산자는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격 및 생산 지지 정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안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가격 및 생산과 연계된 지지를 줄이고 농가 생산성, 지속가능성, 중장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민간, 공공민간 합작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관심을 얻고 있다. 동시에 국내 가격을 지지하는 국경 제한 조치 및 기타 정책은 오히려 국제적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일련의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생산자는 필요로 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위험 관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높은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에게 이득이 되는 반면, 세계적으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게 된다. 궁핍 및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 이외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농업, 무역, 개발, 정부 시스템 간 정책 일관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G20는 FAO와 OECD 등 국제 기구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2012년 동안에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식품정책 설계, 시장과 정책 중기 전망, 농업무역 자유화라는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 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의 유익한점, 국내정책의 무역외국 효과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분야(농정시장,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시장 분야에서는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구조 변화 분석, 농가위험관리, 농업분야 민간자본 투자, 농식품 녹색성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제53차 농정시장작업반(11.3.1~3) 회의에서는 EU 및 터키에 대한 농정개혁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위험관리 및 식품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제54차 농정시장작업반(11.5.30~6.1)에서는 '2011-2020 OECD-FAO 세계 농업전망', '회원국 및 신흥경제국 농정개혁평가', '농산물 시장 구조변화 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하고, 세계식량안보에 대한 연구계획을 검토하였다.

제55차 농정시장작업반(11.11.14~15)에서는 동물질병에 관한 위험관리 보고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12~2013년에 걸쳐 진행 될 위험관리 분야의 연구 과제를 점검하였다.

농업무역 분야에서는 제65차 및 제66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논의해 온

비관세 조치 분석 사례연구, 지역무역협정 중 농업분야 분석보고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수출제한에 대한 연구계획을 검토하였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제31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11.10.10~12) 회의에서 녹색성장과 농업에 대한 정책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와 농업, 수자원과 농업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4. FAO 활동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양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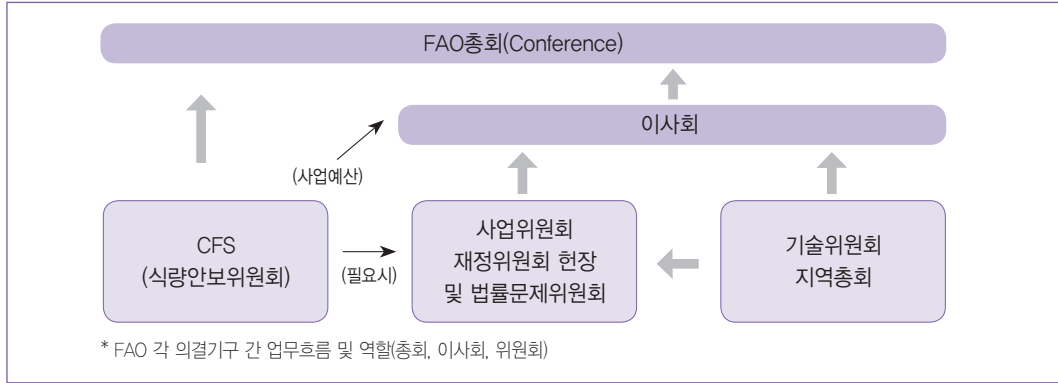
■ FAO 개요

FAO는 세계 인류를 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달성, 즉 인류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 영양 상태 개선, 농업 생산성 제고, 농촌 인구의 삶의 질 개선 및 세계 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개발 지원, 영양·식량·농림축수산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개발에 필요한 자문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45년 10월 26일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설립 총회에서 'FAO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14일 FAO 제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고 유엔총회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FAO는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2011년 현재 191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페로 제도, 토켈라우 제도)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는 총회, 이사회, 7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재정, 헌장 및 법률, 품목, 수산, 산림, 농업위원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및 5개 지역총회(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근동, 남미·카리브, 유럽)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49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연속하여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5-1〉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총회(매 홀수년도)와 지역총회(매 짝수년도)는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며,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는 정책 결정, 예산 승인,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가입 승인, 사무총장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FAO 헌장 개정,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의 검토 등 중요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2011년 현재 총 3,069명(본부 1,675명, 분권화된 지역사무소 1,394명)의 인력이 FA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전문직은 46.7%인 1,434명이며, 일반직은 1,635명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정규 직원은 총 2명으로 본부와 아·태지역사무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정규예산, Net Appropriation)과 자발적 기금(Extra-budgetary)으로 구분된다. 정규분담금은 회원국별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UN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FAO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국별 정규분담금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2010~2011년의 정규분담금 비율은 2.184%로, 191개 회원국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자발적 기금은 정규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예산 지원, 현지 프로그램 사업, 기술지원 및 긴급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FAO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직원 역량 제고, 본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 대내외적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FAO 개혁은 2004년 제127차 이사회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FAO 조직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FAO 운영 실태 평가(IEE : Independent External Evaluation)를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5~2007년 기간 중 IEE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개혁을 위

한 구체적인 즉각행동계획(IPA : Immediate Plan of Action)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제35차 특별총회에서 세부적인 개혁조치사항을 담은 즉각행동계획(IPA) 5개년 계획('09년~'13년)을 승인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FAO 총회(제37차 : 6.25~7.2), 3차례의 FAO 이사회(제141차 : 4.11~15, 제142차 : 7.4, 제143차 : 11.28~12.2)가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산림위원회, 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37차 FAO 총회 참석

제37차 FAO 총회는 2011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19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 선출, 2012~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차기 이사국 선출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다.

차기 FA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브라질의 그라지아노 다 실바(José Graziano da Silva) 후보가 180표 중 92표를 획득하여 88표를 획득한 스페인의 미구엘 앙헬 마라티노스(Miguel Ángel Moratinos) 후보를 누르고 차기 사무총장(임기 : '12.1.~'15.7)으로 선출되었다.

2012~2013년 사업예산은 FAO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1,046.9백만달러에서 31.9백만달러 감축한 1,015백만달러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2010~2011년 대비 1.4% 증가한 규모다. 또한, 총회는 2012~2013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2012년 1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사무국이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34.5백만불의 추가적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내도록 결정하였다.

2012~2013년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은 2011년 UN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되었는데, 우리나라 분담률은 2010~2011년 2.184%에서 0.087% 증가한 2.271%로 세계 11위 순위이다.

또한, 금번 총회에서 49개 이사국 중 33개국의 차기 이사국을 선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사국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1989년 이후 9회 연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FAO 운영 및 활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2010년 제30차 아·태지역 총회

(10.9.27~10.1, 경주)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국가·지역사무소 등 분권화 사무소 기능 및 역량 강화, 기아 인구가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FAO 이사회 참석

2011년은 총 3차례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제141차 : 4.11~15, 제142차 : 7.4, 제143차 : 11.28~12.2). 이사회에서는 식량안보·프로그램·재정·헌장 및 법률 등 각 상임위원회, 농업·산림 등 기술위원회 및 5개의 지역총회 결과가 상정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141차 이사회는 2012~2013년 FAO 예산 및 국가별 분담비율 결정,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연설 및 질의응답, FAO 개혁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FAO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인력 채용시 능력별 채용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성별·지역별 균형 있는 인사가 채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42차 이사회는 각 지역 그룹 내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표결 없이 선출되었던 주요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제143차 이사회는 제37차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예산안을 조정하고, FAO 개혁을 위한 즉각행동계획(IPA : Immediate Plan of Action)의 추진상황 및 각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금번 이사회에서는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2012년 1월 취임 후 FAO의 비전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지역총회의 분권화 및 의결기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세계식량안보위원회는 2009년 FAO 총회에서 CFS 개혁안 채택 이후 개혁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따라 논의 의제와 참석자가 다양해지고 포괄적으로 변모하면서 식량안보관련 핵심 논의 기구로서의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37차 위원회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112개국 회원국, 8개 UN Agency, 83개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8개 국제농업연구기구 및 금융기구, 30개 민간부문 협회 및 자선재단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국제 및 지역적 차원에서 식량안보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 '토지 등의 책임 있는 관리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식량안보 및 소농을 위한 농업투자 확대, 성(Gender)과 식량안보,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한 정책 권고를 도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FAO는 19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UN기구로서, 세계 식량안보 및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FAO 활동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의 의장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제37차 총회에서는 아태지역 의장국으로 참석하여 2010년 9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제30차 아태지역 총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분권화사무소 기능 및 역량 강화, 기아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 회원국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식량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선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FAO 분담금 규모, 인구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FAO에 근무할 적정 인원은 15~20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기술협력 및 정책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남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G20 농업장관회의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문광규

■ 배경 및 개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응 공조를 위하여 출범한 G20는 2010년 서울회의에서 개발장관회의가 추가되었다. 이 개발장관회의 의제 중 일부로서 식량안보, 농산물 가격 변동성 문제 등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과 관련하여 FAO, OECD 등 국제기구 주관으로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되었다.

이에 2011년 G20 개최국인 프랑스는 '1차 상품의 가격변동성'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고, 특히 농산물 가격 변동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G20 최초로 농업장관회의를 6월 22~23일 양일간 개최하게 되었다.

제1차 G20 농업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4개 초청국 등 24개국과 FAO, IFAD, WTO 등 10개 국제기구가 참석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한 G20 차원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행동계획은 11월 3~4일 개최된 칸느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제1차 G20 농업장관회의에서는 '농업과 식량가격 변동성에 관한 G20 행동계획'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농업문제에 대한 G20 차원의 협력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언문에 채택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로 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 투자와 연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의 창설로 밀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쌀 연구기관을 통해 쌀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시장정보와 투명성이다. FAO를 중심으로 농산물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창설하고 이와 더불어 조기경보시스템(EWS), 신속대응포럼(RRF)을 연계 운영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국제 정책공조 강화이다. FAO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DDA 협상의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부사항으로는 WFP의 인도적 목적의 식량구매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및 과도한 수출세 부과 금지를 합의하고, 바이오 연료와 식량생산 및 공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인도적 긴급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방안의 연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넷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위험관리 수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WFP 등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인도적 긴급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방안 타당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로 농산물 파생 금융상품 시장 규제강화이다. 농산물 파생 금융상품시장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강화 방안을 재무장관 채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참석하였고, 식량안보와 식량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협력 다년간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과 G20 농업장관회의

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G20 농업장관회의는 농업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20 농업장관회의 등 G20 차원의 국제논의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G20 행동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질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신속대응포럼(RR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조, 통계자료 제공 및 전문가 파견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개발협력 확대 및 생산성 제고를 노력하고, 농산물 파생금융 상품 규제 등 G20 재무장관, 개발장관 등 관련 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의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6. AMAF+3 회의(아세안 + 한 · 중 · 일 농림장관회의)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송재원

■ 추진 배경 및 개요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AMAF+3)는 기존의 ASEAN 농림장관회의에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을 참여시켜 ASEAN과 3국간 농림수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로서 앙가라(Angara) 필리핀 농림장관의 확대제안('00.8)을 한 · 중 · 일 3국이 수용함으로써 출범하였다.

2001년 10월 제1차 ASEAN+3 농림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ASEAN 10개국과 한 · 중 · 일 3국간 농림수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장 ·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여 농림수산 분야 ASEAN+3 협력활동 추진 결과 및 협력의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동아시아의 지역의 역내 협의체로서 농림수산 분야 협력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회의라고 할 수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농림장관들은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ASEAN+3 협력사업계획('07년~'17년)'에 따라 식량, 농업 및 산림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결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관들은 식량안보 강화,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동물건강과 질병통제, 다 분야 이슈의 6개 전략분야로 구성된 'ASEAN+3 협력전략(APTCS)'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농림장관들은 ASEAN+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에 대한 서명을 통해 지역 내 비상수요를 충족하며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APTERR 협정을 항구적 체제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고 APTERR 체제의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 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의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아세안+3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비축미나 정상적인 무역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축된 쌀을 지원하여 재난 발생국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수확 후 농산물 관리기술 제고(한국식품연구원),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제고(UN 식량농업기구) 등 5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발전경험과 기술을 동남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농림수산업 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ASEAN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극심한 빈곤과 취약한 식량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 ASEAN+3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동남아 개도국의 농림수산 분야 역량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12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12년 9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PTERR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APTERR 운영규칙 및 절차, 사무국 구성 등 안건이 논의될 것이며, 한·중·일 3국이 추진 중인 ASEAN+3 차원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진전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

제6장 농식품 안전성 · 품질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1.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김기성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소비 중 외식 소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2008년 7월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2010년 2월 4일 제정 · 공포하고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법령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 62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적용하는 한편,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신

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입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소금과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 10월에는 음식점에 수산물 6품목의 원산지표시제를 신규 도입하고 찌개용·탕용 배추김치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한국소비자원,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

※ 2011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농수산물·가공품 : 868품목(국산농수산물 393, 국내가공품 295, 수입농산물·가공품 180)
- 음식점 : 12품목(소·돼지·닭·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넉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 2011년 원산지표시 처벌기준 강화

- 음식점 거짓표시 :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 상습범 : 10년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공표기관 확대 : (기존) 농식품부, 시·도 → (확대)농관원, 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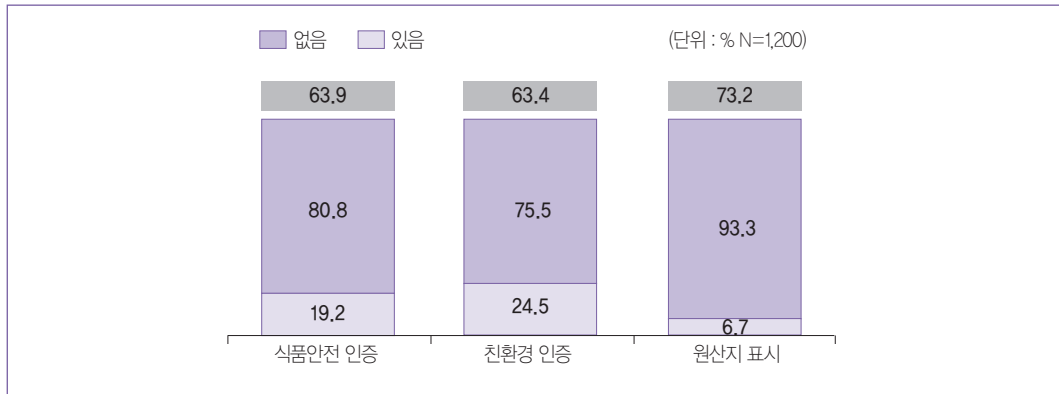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언론매체와 홍보채자 및 전단지 등의 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을 활용하여 조직적·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사례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소속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감시·지도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소비자의 호응속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주요 4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콩, 고춧가루)의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가 연간 최대 7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원산지표시 제도의 영향으로 국내산의 거래량과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수입산은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후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 여

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의 경우 인지도도 높고 식품구매의 영향력도 93.3%로 다른 인증제도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2-6-1〉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표시 제도의 영향력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11년 11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표시방법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협조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식품안전성검사 확대

■ 안전위생과 서기관 김일환

■ 추진배경 및 개요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초 안전성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

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농산물 271개 품목을 대상으로 76,589건 검사하여 계획(72,000건) 대비 6.0% 초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63,537건, 중금속 4,902건, 병원성미생물 638건, 곰팡이 독소 997건, 방사선조사 및 핵종 541건,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40건, 이물(기생충란) 150건을 조사하였고, 농지·용수·자재에 대해서도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4,004건 조사하였다. 2011년 안전성 검사 결과 1,348건의 농산물이 부적합한(1.8%)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351건), 출하연기(338건), 관계기관 통보 등(659건)으로 조치하였다. 2011년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률이 2010년 2.2%에서 2011년 1.8%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생산·저장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단계에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12,556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유해물질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분석능력이 우수한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14개소) 운영하였으며, 분석실(24개소)의 정도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조사물량과 조사대상 분야를 78,000건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잔류조사(54품목, 16,000건)를 추진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검사기관 지정 확대, 첨단 분석장비 확충 및 분석인력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안전성 조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확대('09년 10품목→'11년 24개 품목 → '12년 전품목)하여 폐광산 주변 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 안전위생과 사무관 하종수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력등록대상자는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개, 권장 23개)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

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9년에 대상 품목을 110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자 중 행상·노점상 등 단순판매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이력추적 조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의 이력관리번호(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표 2-6-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 증 기 관 (개 소)	31	38	43	45	49
GAP관리시설(개소)	316	417	484	565	606
인 증 농 가 수 (호)	16,796	25,158	28,562	34,421	37,146
인 증 면 적 (㎡)	24,754	36,322	40,081	46,701	46,701
생 산 계 획 량 (톤)	331,421	419,842	434,047	509,931	642,165
농산물이력등록 농가수	30,557	48,214	70,612	88,218	94,949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농업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들의 GAP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조직단위의 집단인증제 도입을 통한 GAP생산조직 육성, GAP인증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개선 및 GAP인증 분석비용 지원 확대, GAP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GAP시설 지정 기준 개선, GAP위생시설 지원 확대, 군납·학교급식 등 GAP인증농산물 대량수요처 발굴을 통한 GAP인증농산물 소비확대,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AP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GAP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가의 등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

축하고, 생산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한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경영체에 생산정보 대행입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력관리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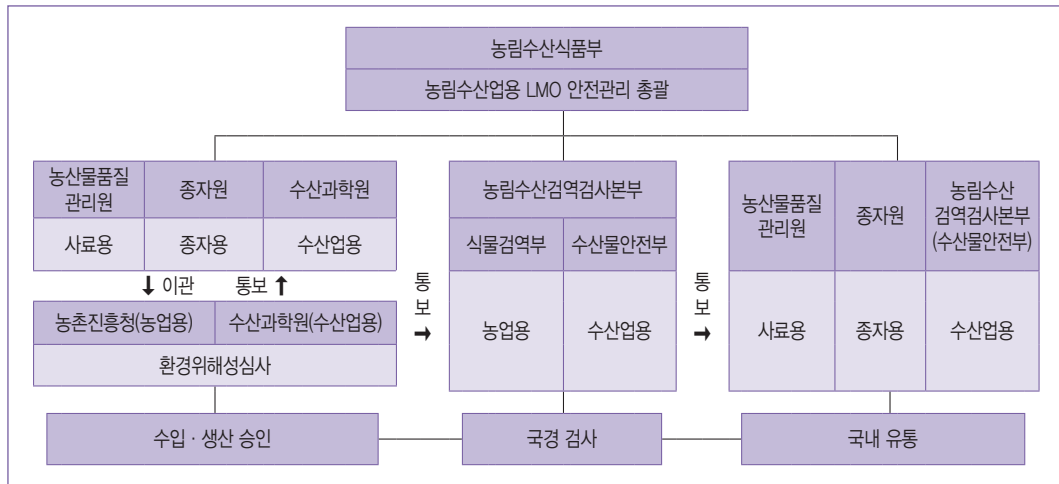
4. GMO 표시제도 및 안전관리

■ 검역정책과 서기관 지일구

■ 추진배경 및 개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2008년 3월부터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2008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 및 생산되는 모든 농림수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입·생산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2-6-2〉 농림수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6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과 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콩나물,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 품목도 제도도입 당시의 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미꾸라지에서 관상용유전자변형어류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8개반 51명)하여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료공장 주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한국조리사회중앙회, YMCA 등 26,500명)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55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3건을 적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수산업용 LMO의 안전관리는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용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농림수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료용 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항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과 사료공장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과의 합동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조민경

■ 추진배경 및 개요

식품의 이물질 검출사건과 신종 유해물질 등장, 국제교류 확대에 의한 해외 질병 및 병충해 유입 등으로 식품관련 사고는 점차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민소득 증대와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과 관련하여 위험 정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품안전정보의 전달에 따른 불안감해소 및 안전성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정부 31대과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에 걸쳐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및 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09년 8월 분리 운영되었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AGROS)과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FSIS)의 통합 사이트(www.foodsafety.go.kr)가 구축되어 농·축·수산물 분야의 안전 및 위험요소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추진방향

일방적인 농식품 위험정보의 제공에서 대국민 안전·건강한 식생활 정보까지 영역 확대에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수요자 중심 맞춤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대국민 대표 농식품안전정보 제공창구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이용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식품 안전 분야 특정 이슈를 소비자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국내·외 정보수집 및 관리

국내 관련 기관 생성정보 및 관련 이슈를 실시간 수집체제로 강화하고, 해외 현지 정보제공자 운

영을 확대를 통해 해외 정보 수집을 확대하여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강화하고자 한다. 수집 정보에 대한 전문가 심의단을 운영하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농식품안전 정보연계 및 대응체계 강화**

농식품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대응 체계 강화로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회수조치 및 사고처리에 요구되는 농식품안전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

수요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색기반 서비스'로의 개편 및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확산을 위한 소셜서비스(SNS) 서비스 연계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추진성과**

- **국내·외 농식품안전정보 제작 및 배포**

자체 수집 및 외부 기관 연계, 해외정보제공자를 통해 총 7,942건의 국내외 농식품 안전·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식품안전백과 및 전문동향 정보 등 총 4종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제공하였다. 관련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농식품안전 뉴스, 농식품안전 동향)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배포(총 184회)하였다.

- **관리 및 제공체계 강화**

정보생산기관 담당자, 소비자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의 협의체인 정보관리협의회 및 실무진 간담회를 정기적 개최하였으며, 총 9개 분야(화학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동물질병 등)의 정보심의를 구성·운영하여 제공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 사업**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앙언론지 및 전문지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Foodsafety 서비스 홍보물 및 관련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기별 특성과 이슈에 맞춰 주요 키워드 20개를 선정하여 온라인 키워드 홍보 및 정기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여 1,500여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

였다. 웹표준화 및 웹접근성 강화로 UWA(User Web Aaddaccessibility,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고도화

농식품안전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 및 검색체계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웹크롤러(500개 대상)와 DB Agent를 설치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

통합검색서비스(www.search.foodsafety.go.kr) 구축 및 농식품안전·식생활 백과 DB(약 2,000종)를 구축하여 정보 활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생활 속 농식품안전정보 확산 및 교류를 위한 FoodSafety 웹진을 제작·배포하였다. 국가정보자원개발 공유체계 구축사업(농림분야 공동과제), 국가대표포털(Korea.go.kr)과의 로그인 및 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해 서비스 활용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식품안전과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정책기획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산된 정책부서의 통합을 추진하여 2009년 4월 소비안전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수집·공개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조민경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식품안전(zero risk, 무위험)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및 업계의 이해·수용수준에 대한 격

차가 커서 상호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신속한 농식품사고에 대한 긴급정보대응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추진방향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이해 수준 향상을 통한 신뢰도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쌍방향 의견교환에 따른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 농식품위험정보교류 활성화

소비자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농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외 식품문제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사고예방 및 긴급대응 체계

농·축·수산물 분야별로 분산된 위험관리 정보 및 대응체계를 정부 중심의 농식품안전 긴급대응 체계로 점검·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소비안전정책과를 대표 창구로 효율적인 사전예방·긴급대응 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추진성과

■ 이해그룹별 위험정보교류 활성화 사업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의 소비자 단체와 농식품 안전 정보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V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 긴급정보대응체계 구축

긴급상황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책을 위한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긴급정보 대응을 위한 국내·외 조치 및 정책 동향을 수집·공유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 내 분산된 안전성 평가 정보기능의 일원화와 정확한 인식공유를 위해 쌍방향 소통 활성화, 위기대응 리스크 전략을 마련하여 식품사고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 및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류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사전예방적 농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7.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 방역관리과 주무관 이종균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단계에서

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부착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지역축협 등 137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유통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 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이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DNA동일성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완료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이력제 대상 축종을 돼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 단계별 표준안 및 시범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쇠고기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고, 이력제 전산시스템 성능이 낮아 다양한 정보 제공, 전산 접속 속도 향상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력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성능개선, 스마트폰, RFID 등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축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에 도입하는 돼지이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부 브랜드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1. 가축질병 방역강화

■ 방역총괄과 서기관 강대진 · 조옥현, 방역관리과 서기관 이기중

■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미국·일본 등에 광우병(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국가 방역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국경검역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신고 및 소독의무화 시행에 따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되었고, 또한 공항·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확대 운영 설치하여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검역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 안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요 가축질병에 대해 국가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되어 발령되면서 단계별 방역조치가 추진되며, 예찰요원을 동원한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였고, 의심축 신고를 위한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산업연수생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 강화와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국내 방역을 추진하였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2010년에 세차례(1월 6건, 4월~5월 11건, 11월~'11.4 153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및 인근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매몰)조치 및 전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소독·농장예찰 강화 등 국내방역에 주력하여, 2011년 4월 경북 영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과 2006년 말 국내발생이후 겨울철새 유입시기인 동절기(11~2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2008년 4월~5월 전국적인 발생으로 발생시기가 다변화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능동적 예찰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국내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발생지역 등 재발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시·군 예찰팀을 구성, 매주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닭·오리·야생조류(철새 등) 등 국내유입 가능 경로별 예찰검사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가의 주기적 소득 등 차단방역 능력을 제고하고 초동방역팀 운영 등 방역 능력을 강화하여 AI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근절 체계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돼지열병은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 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100% 실시, 검사물량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BSE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SE 검사체계를 단순 검사두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여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였고, BSE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하였으며, 동물성원료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이행여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을 확충,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2006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446명('09년 151명, '10년 149명, '11년 146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의무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 검역정책과 사무관 장재홍

■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2010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 가축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경에서부터 철저한 검역조치를 통해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해 신고·소독조치 등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불법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집중투입 및 X선 촬영(X-ray) 검색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나라와의 FTA 체결 및 발효 이후 축산물의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에서 각종 유해물질 혼입 등 식품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수입되도록 해외 위생정보 수집강화 및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강화대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대책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 등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발생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들 가축질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등에 대한 휴대품 검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전염병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진초에 대한 소독 및 실험실 검사,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용품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였으며, 신발 소독 실시, 외국인 연수생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및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진다.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기 이전에 해당국가에 대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입허용 절차는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이 수입되면 계류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에 입고되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표 2-6-2〉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추진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 물	수출	마리	6,729	255,299	6,721	217,523	6,956	33,241,930	7,488	45,734,947	8,488	76,857,815
		군	-	-	1	12	-	-	-	-	-	-
	수입	마리	7,608	1,085,087	7,377	1,175,977	7,186	1,318,808	8,320	1,216,782	10,029	3,541,885
		군	9	436	-	150	1	100	2	70	-	-
	계	마리	14,337	1,340,386	14,098	1,393,500	14,142	34,560,738	15,808	46,951,729	18,517	80,399,700
		군	9	436	3	162	1	100	2	70	-	-
축 산 물	수출	톤	10,215	144,266	11,457	149,795	12,385	144,042	11,251	146,692	12,414	170,473
		천개	118	6	182	692	209	1,974	139	1,122	5	214
	수입	톤	126,107	2,025,954	127,596	2,048,973	128,761	1,937,033	144,450	2,125,598	161,165	2,545,147
		천개	293	764	318	663	367	717	464	2,823	458	970
	계	톤	136,322	2,170,219	139,053	2,198,768	141,146	2,081,075	155,701	2,272,290	173,579	2,715,620
		천개	411	770	500	1,355	576	2,691	603	3,945	463	1,184

■ 평가 및 향후계획

구제역, 고병원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공항만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과 '국경검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소독 등 검역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투입과 X-ray 검색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국경검역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위생정보에 대한 수집·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입위험분석절차 실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출 단계부터 수출국내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를 통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도착시 철저한 수입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 안전위생과 사무관 이성도

■ 추진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공포(11.11.22)하였으며, 축산물위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위하여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률 감소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으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축산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11.7.1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한편, 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으로 항생제의 사용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사육단계의 HACCP적용이 대폭 확대(10년 2,084개 농가 → '11년 2,846개 농가)되었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광우병(BSE) 우려를 감안하여 2009년 11월부터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 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HACCP 적용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HAC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검사는 잔류물질 120천건, 미생물 110천건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용을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식용란의 유통·판매 주체에 대해 법적 영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고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도축장 위생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도축장 위생 강화 대책을 수립(‘11.12)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였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산물 취급업소 등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부, 지자체 및 농림수산물검역 검사본부의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위생 감시를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에 관한 정책은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From Farm-to-Table) 일관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심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사육 단계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HACCP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생산단계의 HACCP 적용 확대 및 최종 판매단계까지의 HACCP 활성화 등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방역총괄과 사무관 나인지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연합(EU)과 국제수역사무국(OIE)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20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가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년을 발표하였다. 동물실험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EU에서는 개·고양이 가죽제품의 수입이 2007년부터 금지되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은 2009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다.

OIE에서는 20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 9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동물생산시스템(Animal Production System)에 대한 지침을 제정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및 독신 세대 증가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문화 미성숙 등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량과 동물학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험동물은 한해 약 100여만마리가 사용되나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동물 실험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축산업은 규모화 등으로 선진화를 이루었으나 좁은 국토 여건 등으로 밀집사육 등이 일반화되어 동물복지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과 국내 축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금지, 동물의 도살방법, 벌칙 등이 대폭 강화·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2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

물관매업 등록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 등 동물보호·복지 증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2011년에는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고 필요한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완료하였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실정에 적합한 농장동물복지기준 및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동물복지형 사육방식 등을 축산농가에 도입·확산시키고,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을 증진시키며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법제화를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3월에는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 T/F를 구성하였고, 8월에 인증기준안을 개발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 9월에는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12월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방안을 마련하였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였다.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9년에 광주, 경기, 제주에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 인천 등 5개소에 5.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0.9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미안해, 고마워'(임순례 총괄감독)를 제작·개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동물보호 온라인캠페인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화책·만화책을 제작하고, 동물복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축산농가, 일반인, 동물보호단체 회원, 공무원, 학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동물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 증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육계, 돼지, 한·육우 및 젓소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동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

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인·동물소유자·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캠페인 등의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친환경농업 육성

1.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재학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도입해 지원해 오다가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지구 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비중 10% 제고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방안을 수립(04.2)하여 농업환경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에는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

업모형을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고, 2007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물을 자원화 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10년까지 1,020개소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8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인증 농가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1년에는 광역단지조성 신규 7개소와 2~3년 차 사업 18개소에 국고 341억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축산물을 국민에 제공하며, 농업환경개선, 친환경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의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시·군 단위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 이상)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1년 말까지 1,048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2년에는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28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총 1,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11년까지 34개소를 선정·지원하였고 2015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친환경 비료 지원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윤식

■ 추진배경 및 개요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여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보조를 감축·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2-6-3〉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2008년)

순 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순 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1	아이슬란드	2,525	16	폴 란 드	124
2	네덜란드	577	17	이탈리아	118
3	아일랜드	461	18	헝가리	118
4	일본	361	19	그리스	115
5	벨기에	326	20	포르투갈	113
6	뉴질랜드	309	21	슬로바키아	110
7	영국	287	22	미국	109
8	한국	267	23	스페인	95
9	오스트리아	223	24	스웨덴	89
10	스위스	211	25	터키	76
11	독일	209	26	캐나다	67
12	프랑스	191	27	멕시코	63
13	노르웨이	191	28	덴마크	28
14	체코	141	29	호주	45
15	핀란드	134			

* 자료출처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08년)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 2011년 250만톤 1,25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2-6-4〉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 연도	2004까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물 량	2,600	700	1,200	1,350	2,000	2,100	2,500	2,500
금 액	910	245	420	473	1,160	1,218	1,450	1,250

〈표 2-6-5〉 유기질 비료 지원조건(2011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100	900
	일반퇴비(원/20kg)	1,000	900	700

주 : 지방비 : 600원/20kg 의무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평가 및 향후계획

맞춤형비료 사용결과 효과분석 및 신규비종 설계 등으로 화학비료 사용량감축을 추진하고,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친환경 농업직불제 운영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29천ha를 대상으로 501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를 대상으로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를 대상으로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를 대상으로 37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논 38천ha, 밭 33천ha 등 총 72천ha를 대상으로 87천 농가에게 30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6-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ha, 천ha)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 급 액	141	208	287	345	376	306
면 적	34,896	53,682	76,352	90,132	93,318	71,766
농 가 수	46	69	97	112	116	88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10.2%(172,672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11년에는 10.6%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0년 382kg/ha에서

2011년 249kg/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에는 73천ha에 4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급면적이 2011년보다 12천ha 정도 감소한 이유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지급단가를 50%수준 인상하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친환경 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 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생협 등),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1억원, 2010년 15억원을 조성하였다. 2011년에는 13.6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0억원, 2007년 200억원,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3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년~'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251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 착공, 201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내 친환경농수산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생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에 건립중인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2012년 8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중순에 개장, 운영할 예정이다. 동 센터가 개장, 운영되면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제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 방역총괄과 사무관 나인지

■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도입 등 친환경축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축산정책 전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경종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축산농가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한육우·젓소·돼지·닭·오리 등 7개 축종이다. 직불금 지급기준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농가당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0백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7〉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한 우	젓소(우유)	돼 지	산란계(계란)	육 계	오 리	오리알
유 기	170,000/마리	50/ℓ	16,000/마리	10/개	200/마리	400/마리	20/개
무항생제	65,000/마리	10/ℓ	6,000/마리	1/개	60/마리	120/마리	2/개

주: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급

2010년에는 예산 3,000백만원 중 226농가에 약 2,71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307농가에 예산 3,000백만원 중 2,999백만원이 집행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직불금 지급단가·기한·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직불금 지급축종을 산양·메추리·사슴 등으로 확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 축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김형식

■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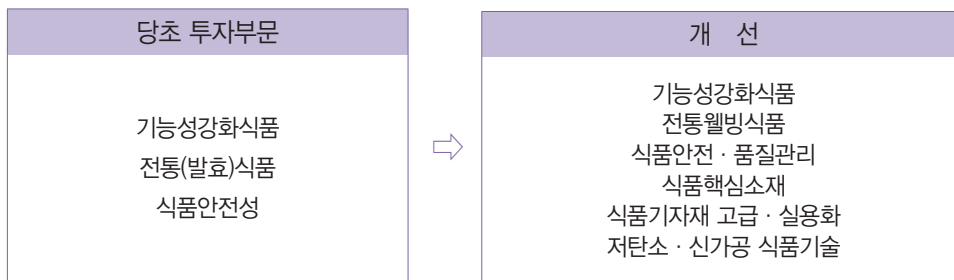
세계 식품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well-being 및 LOHAS 강화, 고령화 대응, 세계화 및 지역화, 환경친화 추구, 기술 융합화 등 다양하고 복잡화되는 추세이다. 세계 유명 식품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다양화되는 식품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식품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0~65%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위해인자를 추적하는 기술은 40%,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기술은 43%, 식품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기술은 30% 수준으로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열위에 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미흡한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민간의 R&D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기존 3대 부문에서 6대 부문으로 식품핵심소재, 식품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분야를 확대하고 중점 추진방향으로 글로벌 시장대응 수출상품화를 위한 전통식품 상품화, 국내 기능성 강화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품질관리기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식품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 분야를 신규 지원하였다.

〈그림 2-7-1〉 식품 R&D 투자 부문



2010년에는 총 138개 과제에 183억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전에 선정되어 연구중인 83개 계속 과제에 112억원과 신규 과제로 92개 과제를 선정하여 13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정공모과제는 ‘장류를 이용한 소스류 개발’, ‘설탕 등 기존 감미료 대체소재’, ‘천일염 품질관리 개선 및 대량 생산기술’, ‘해충 유입 방지 식품포장기술’, ‘신선식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저에너지 유통 기술’ 등 18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84개 연구기관이 응모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18개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유응모 과제는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응모하는 과제로서 204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제품개발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와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단위 엄격한 심사를 거쳐 74개 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식품산업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 R&D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R&D 지원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2.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임영조

■ 추진배경 및 개요

2008년 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 식품산업 진흥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농어업의 문제를 식품을 매개로 해결하려는 신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써,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게 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의 개편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발표 등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 산업인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의 농수산물 및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산업화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1년 말까지 총 67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사업단 선정시부터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1년 12월에는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운용사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간 투자유

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업단이 정부 지원기간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은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융합형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육성, 창업에 따른 직간접 일자리 5,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금융 지원 강화, R&D 투자 강화, 창업 촉진 및 규제 완화,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유형 〉

- 공동출자형 :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특히, 2010년 7월 29일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동 지원단은 산하에 5개 실무지원팀(총괄 조정, 창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금융개편 지원, 마케팅 지원)을 설치하고 융합형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중기청과 합동으로 두차례에 걸쳐 현장평가 및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11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중기청과 협력하여 육성전략에 따라 농공상융합형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7개 사업단 육성을 계기로 지역 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양산하는 등 사업이 정착 중에 있지만, 향후에는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 개시 전전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 실시하는 한편 성과 평가, 사업관리 강화 및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역전략식품산업 우수사례 〉

- 경북 감 클러스터사업단 : 감 부산물(상품성이 떨어진 감, 껍질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14건)을 통해 국내유통(상록프라자 등 입점, 홈쇼핑) 및 수출(캐나다, 일본, 대만 등 3억7천만원 수출)로 소득증대
 - * 사업단 매출 : ('09) 7억 → ('10) 16 → ('11) 42 (500% ↑)
 - * 참여기업 매출 : (초년) 60억 → ('11) 100 (67% ↑)
 - * 사업단의 주주는 네이처팜, 청도반시연합회, 상주F&G영농법인 등으로 농어민 지분율이 97.3%

한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수립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융합형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우수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합동으로 2012년 말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육성하여 융합형 중소기업이 농어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

■ 식품산업진흥과 서기관 이재갑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품의 소비형태는 기술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품질 외에 편의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중요시되면서 유기식품(organic food),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웰

빙 식품을 찾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의 전통발효식품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품질 개선·제품개발 등에 투자가 미흡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연구실적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수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발효기술 응용을 통한 다양한 고부가 전통발효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 기반을 산업화·현대화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기능규명·R&D 투자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89억을 편성하고 지원하였으며, 김치를 세계화하고 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김치산업 진흥법을 2011년 7월 21일 제정하고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김치 R&D, 브랜드·홍보, 체험·교육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2010년 1월 설립하고 세계김치연구소 청사 건립을 2009년부터 지원하여 2012년 10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 전통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 등 기초인프라 확충

전통발효식품업체 대부분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생산시설을 신축·증축·증설·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연 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9년 92억원, 2010년 134억원, 2011년에는 60억원을 지원하였다. 전통발효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업체 매출액 신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본다.

■ 전통발효식품 세계 명품화 지원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적인 정보·통계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전문지 기획기사 연재, TV다큐 제작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영양학적·기능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 하였으며 전시·체험·시식 행사 및 전통식품업체

소비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전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식품명인의 해외 선진지 연수, 연찬회 및 우수제품 판촉전 실시 등 식품명인 활성화 및 판매·유통망 구축 등 판로확대도 추진하였다.

■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구축 지원

규모화 및 계열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순창군 장류밸리단지에 65개 업체의 공동생산·유통·저장·마케팅 등을 위한 전통절임류 세계화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164㎡ 총사업비 100억원(국고보조 50억원)의 3개년 사업으로 201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HACCP 기준에 맞는 종합가공시설 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절임원료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의 전문적 연구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화·세계화를 촉진할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같은해 7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광주광역시로 세계 김치연구소 건립 입지를 선정하였다. 8월에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세계 김치연구소 출범 준비를 거쳐 2010년 1월 1일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과 함께 청사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5월 본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김치 등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홍보, 마케팅, 체험 등의 다목적 기능과 관련 연구의 종합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전통식품산업의 발전과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과학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유산균을 활용한 치매예방, 항바이러스 등 고부가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하는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연구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7월 21일 「김치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기반 현대화 및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또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은 김치의 세계화·명품화 및 전통적인 미생물 발효산업 현대화를 통해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세계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우리의 우수한 발효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에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전통식품 및 식품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품평회·전시회·시음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통발효식품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2012년 1월 22일에 시행에 따라 김치원료의 안정적 공급, 김치의 안전성 확보, 김치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김치의 품질향상과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4. 천일염 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서기관 정동기

■ 추진배경 및 개요

천일염은 2008년 3월 ‘식품’으로 인정되기까지 지난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왔고, 이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위생 기반이 취약하였고 산업 측면에서는 육성 정책도 소홀하였다. 2008년 2월 식품산업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족으로, 2009년 3월 천일염 관리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소금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천일염은 다른 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성분이 낮고¹⁾, 항암효과가

1) 염화나트륨 함량 : (한국산) 82.5% < (프랑스 계랑드산) 89.89% < (중국산) 88.47%

있는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까지 식품이 아닌 광물로 취급받아 산업적 발전 기반이 미흡하였다. 향후 이러한 우수성을 잘 살려 산업화·과학화해 나갈 경우 세계 명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우선, 천일염의 생산 시설 노후화 및 위생시설 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주, 소금창고, 산지종합처리장 등 시설현대화, 포장재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등을 위해 2011년 100억원을 지원하고, 원산지 단속 등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인프라 확충

염전생산에 필수요소인 해주와 소금창고의 신축·증축·개보수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연 금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의 70%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27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있는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자재로 대폭 교체하기 위하여 2011년 예산 4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으로서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지원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 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지화, 현대화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 Salt Processing Complex)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천일염의 신뢰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1 천일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산 소금의 국산둔갑 유통방지 및 천일염의 유통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추진

천일염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천일염 포럼을 2010년 2월 창립하였고, 동 포럼을 통한 국제

세미나, 소금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현장방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소금산업육성 종합 대책을 2011년 9월 마련하였다.

현행 염산업의 구조조정 및 염제조업 허가에 한정된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11.11.22)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천일염의 포장재, 디자인 개선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천일염의 우수성이 임상실험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어 천일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염전시설의 현대화 및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기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천일염의 이력관리제, 품질인증제 등을 시행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한편, 다양한 상품개발, 마케팅·홍보 및 공동브랜드 관리, 천일염 수출 협의회 구성 및 지원, 관광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5. 전통주 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재경

■ 추진배경 및 개요

2010년 국내 술 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으로 약 8조원 규모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는 전체 술 시장의 11%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해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하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진흥기반 조성,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품질고급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통주 등 우리술을 고부가가치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기반조성, 우리술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농업·한식과의 동반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11.9.14)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2009년 마련한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2010년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개선과 기술보급, 양조용 원료 품종개발·보급, 우리술의 품질고급화 및 선진국형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전통주의 세계화 및 과학화, 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우리술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막걸리 등 전통주 산업규모 및 우리 술 수출액 증가, 술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를 육성하여 세계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술 품질인증제 및 원산지표시제 실시

2010년 8월 5일 품질인증대상품목(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및 품질인증 마크를 고시하였다. 2010년 10월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향후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술 품질인증제는 생산자의 경우 공들여 만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또한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술 제조원료 원산지표시 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전통주 등 소비가 많은 주류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로 주류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막걸리 등 우리술의 시장활성화 및 세계화를 촉진하고자 쌀 수확철과 연계하여 '막걸리의 날'(매

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지정)을 지정하고, 이 날을 기점으로 전국 규모의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 판촉전 위해 ‘201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2011년 10월 27일~10년 30일 4일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국민축제 형식으로 개최하였으며, 매년 동일시기에 정례화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술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우리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려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자에게는 타업체와 비교를 통해 품질고급화 및 상품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간 산발적, 비정기적으로 실시 해오던 유사행사를 동일시기, 장소에서 통합·연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술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다.

■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 판촉전 실시

막걸리의 날에 전국의 양조장,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2011년산 햅쌀막걸리를 동시에 출시하는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전이 국내 제조업체, 중간 유통업체, 전국 유명 판매업체의 협조하여 추진되었다. 이는 당해년 햅쌀로 제조한 막걸리로 유통을 차별화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여 국내외 막걸리 붐(Boom)을 이어나가고 우리술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보졸레누보’ 출시 행사와 같은 컨셉으로 ‘막걸리의 날’ 이전에는 당해년 햅쌀막걸리 출시를 자제하고 ‘막걸리의 날’에 맞춰 동시 출시하는 판촉전이였다. 햅쌀막걸리 동시 출시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하고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Tag), 스티커 및 판매장 홍보포스터 등을 일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201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우리술 대축제 장소인 월드컵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8개 주종별로 우수제품 4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32점을 선발하였다. 각 시·도 예비심사를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통하여 대표브랜드를 선정 후 입상된 제품은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 유통업체, 해외바이어,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국내 각종 행사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 전통주 홍보· 및 판매 행사 추진

막걸리 등 전통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각지의 12가지 술을 발로 뛰어 직접 취재한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은 '술래잡기' 책을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우리 술 스토리텔링 외에도 저자들의 술빚기 체험, 나만의 막걸리 소개, 우리 술 시음법, 숙취해소법, 우리 술 상식 등 우리술과 관련한 다채로운 내용들이 함께 수록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품질인증제도 등을 통해 우리술 다양화 및 고급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술 산업 진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강화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해 전통주 기반조성 및 품질고급화, 우리 술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사무관 성병화

■ 추진배경 및 개요

농림수산물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농림수산물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규모는 2010년 약 5.1조달러로 IT 시장(3.5조) 및 자동차 시장(1.6조)의 2~3배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인구증가 및 신흥개발국 성장에 따라 2020년에는 6.4조달러로 성장 예상되며 이중 아태지역이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국내 식품시장 또한 2010년 기준 142조원 규모로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식품매출액 1조원 이상 업체도 2007년 8개에서 2010년 15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R&D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케팅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업체가 약 85%를 차지하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30~65%(국가과학위원회), 매출액 대비 R&D 투자규모는 0.57% 수준으로 선진국(1.6~2.6%)의 1/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여 150개 식품기업과 10개의 식품연구소를 유치,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식품연구소, 식품관련 대학, 지역농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535억원(국비 1,371, 지방비 622, 민자 3,542)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2만㎡의 부지에 3대 핵심 R&D센터 등 6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R&D와 인력양성 등 10대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전인함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2009년에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09.11)와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대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를 거치고, 201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 산단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에 중앙·지자체·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의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담당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11.2)하였다.

산업단지 조성분야는 LH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승인을 국토부에 요청('11.12)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아 2013년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1년까지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총 24회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관 운영을 통해 총 52개 기업체·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기업지원시설 등에 대한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5년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 완공 목표에 맞춰 기업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투자유치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앵커기업과 세계적 연구소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투자유치 타깃기업과 연구소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투자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특히, 국내외 주요 입주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또한, LH공사의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공사,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신에너지·IT 등이 접목된 미래형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진입로, 폐수종말처리장 등) 구축에 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주·교통여건 등이 최상의 산업단지가 되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식생활 교육 추진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김호관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 연간 20조원, 처리비용 약 8천억원('08년)

* 비만 등 성인병 치료비 지급액 : 1조8천억원('07년)

이에 2008년 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하였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09.4)되고 공포('09.5)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7-1〉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생활 교육 위원회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 식생활 조사·연구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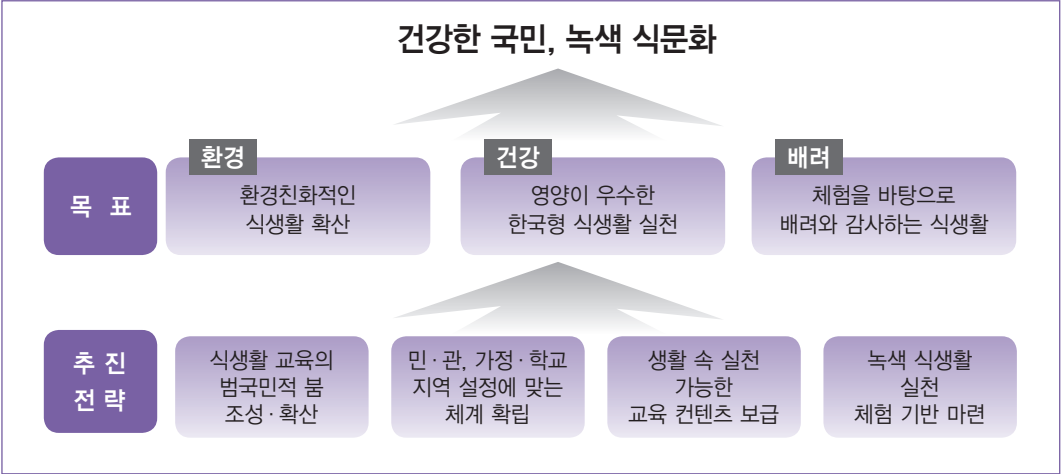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10.2)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및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10.4.2) 심의를 거쳐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실천방안, 농어업인과 소비자 교류촉진, 체험활동 활성화,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는 ‘5개년(10년~14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10.4)하였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2〉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녹색식생활교육 다큐멘터리(KBS 과학카페 4부작) 및 공익캠페인(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 등) 전개, 홍보물(리후릿, 포스터)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가정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문제점 인식 및 개선 의지를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식생활교육 방향을 제시하였

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교육교재(18만부) 및 가정식생활수첩을 제작·보급하는 등 활용 가능한 식생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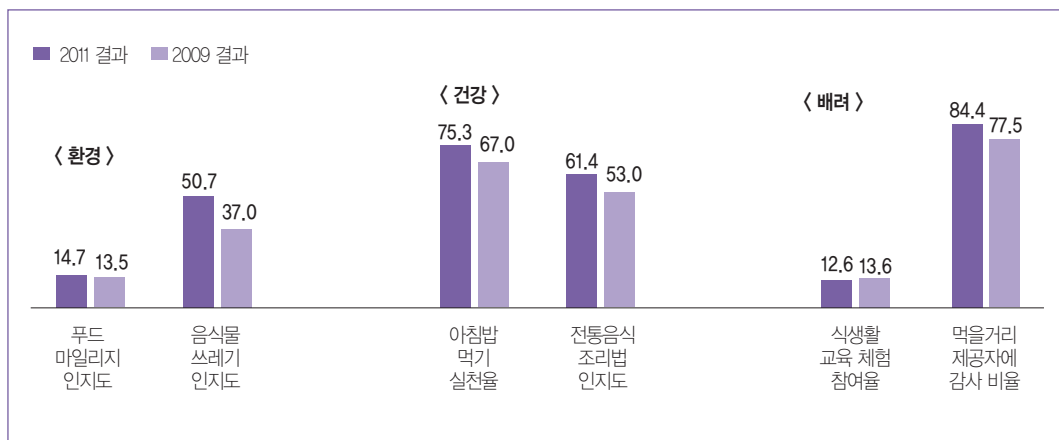
또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녹색식생활 및 전통음식 체험을 위해 방과후 교실(10년~11년 206개 학교, 5천여명)과 농어촌 체험(10년~11년 287개 학교, 37천명)을 지원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제1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를 개최(11.7.1~7.3, aT센터)하여 15천명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녹색식생활 범국민 체험 확산을 도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으로 수립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0년~14년)’은 ‘환경’, ‘건강’, ‘배려’를 핵심 가치로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 개념을 재정립, 기존 영양적 균형 중심의 식생활 교육에서 환경과 배려까지 고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문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녹색식생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반적으로 녹색식생활 인지도 및 실천율 상승 등 범국민적 녹색식생활 가치 공감대 확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7-3〉 2011 녹색식생활 실태조사 주요결과



2012년 이후에는 교육·체험기회 확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강화, 식생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여, 지난 2년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민간 주도의 식생활 운동을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식생활 실천이 전 연령대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령, 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체험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8. 쌀 가공산업 활성화

■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전호

■ 추진배경 및 개요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재고량도 적정수준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쌀 가공산업 육성을 추진, 쌀 수요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주식인 건강식품으로서의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 초기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과 함께 아침밥먹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밥 중심의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식문화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이 필요하여 ‘우수 쌀 가공제품 Top10’을 선정하고 생산자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이 필요하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소비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40대 이하 젊은층의 접근성이 높

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사이버 쌀 박물관을 통해 쌀 소비촉진 관련 콘텐츠 개발, 쌀관련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지속적인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CBS(기독교방송), 노컷뉴스, 교통문화선교회 등과 쌀 소비촉진 공동 캠페인 업무협력 MOU를 체결(10.11)하여 우리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쌀교과서 제작, 쌀국수 시범급식,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시행학교 선정 지원, 쌀중심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 차세대 소비 주축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쌀가공업체가 영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 2008년부터 쌀가공산업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년간 총 5,730억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동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쌀가공업체의 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쌀가공제품 개발과 대기업의 쌀가공산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쌀가공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소비자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과 함께 쌀가공업체의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국산 고미나 가공용 수입쌀을 밀가루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고추장, 된장 등 다양한 가공제품에서 쌀이 밀가루를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쌀가루 산업에 농심, 대선제분, CJ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수입밀수요 대체를 위하여 2011년에 서울시 소재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쌀밀가루(쌀가루 10% 혼합밀가루)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672개소에 850여톤을 공급하였다.

또한, 쌀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의존성을 개선하고 생산제품에 적합한 원료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1년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용 쌀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쌀 및 쌀제품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및 쌀가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1.11)하고 이를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신세대 입맛에 맞는 쌀요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米라클 프로젝트, 대한민국 쌀요리 경연대회, 미

래세대인 초등학생 대상 다양한 주식교육, 쌀밀가루 공급과 함께 쌀 면류 대중화사업,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사업, 쌀가공산업대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추진본부를 전국 14개 지방 조직으로 발족하여 쌀 소비촉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벤트 중심의 단기적인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지양하고 사회 저변에 쌀 및 쌀가공제품에 대한 소비기반을 확대하기위하여 쌀가공제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익성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절 농식품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진흥팀 서기관 김민욱

■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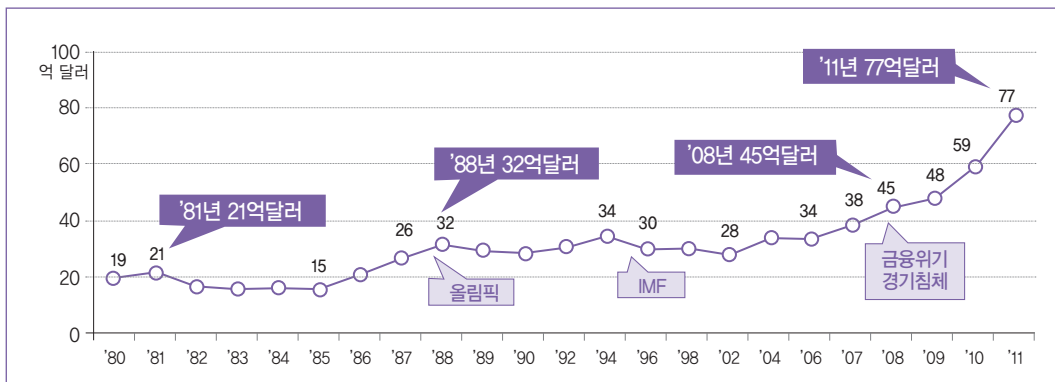
농식품 수출은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한편 수출을 통해서 국제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농식품 수출산업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 가공식품은 1.8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각각 휴대폰 수출에 비해 1.3배, 2.5배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0년 농식품 수출확대지원 정책의 고용효과는 27,256명으로 분석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 수출은 2007년~2011년까지 4년 만에 두 배 증가한 77억달러를 달성하였다. 과거 20~30억달러 수준에서 오랫동안 주춤하던 수출은 2007년 40억달러 돌파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1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의 호조세와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한국산 경쟁력 제고로 전년 대비 약 18억달러가 증가하였고, 수출증가율은 30.8%에 달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를 주도(44억달러, 수출 비중 57%)하는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수산물 수출도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최초로 23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 품목의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그림 2-7-4〉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표 2-7-2〉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A)	2011(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 합계	2,851.5	3,365.2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5,880.0	7,691.4	30.8
신선농림축산물	522.4	550.9	608.2	535.5	597.1	675.0	739.3	873.9	1,015.6	16.2
가공농림축산물	1,057.3	1,534.1	1,613.3	1,768.9	1,934.7	2,373.2	2,558.8	3,207.9	4,367.4	36.1
수 산 식 품	1,271.8	1,280.2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1,798.2	2,308.4	28.4

또한,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도 2007년 라면, 오징어, 설탕, 참치, 껌, 커피 등 6개에 불과하였으나, 4년동안 인삼, 김, 음료, 김치, 제3맥주, 소주가 추가되어 12개로 늘었다.

시장별로는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억달러 이상 수출국이 2007년 8개 국가에서 2011년에는 11개로 늘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였다. 중국·아세안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표 2-7-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2011년)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수출액(백만 달러)	2,373.7	1,189.4	600.0	242.7	305.5	261.2	1,032.3	360.9
국가별 비중 (%)	30.9	15.5	7.8	3.2	4.0	3.4	13.4	4.7
전년 대비 증가율(%)	26.1	51.1	15.7	3.0	25.3	23.6	43.4	8.5
4년 평균 증가율(%)	18.2	30.2	10.1	△6.1	21.0	27.6	31.8	13.7

주 : 1억달러 이상 수출국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07년 8개) +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농식품부는 2008년 '2012년 농식품 100억 불 수출 추진대책'에 따라 농식품 수출을 뒷받침할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수출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1년에는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전략품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스타품목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당초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5개 수출 전략품목을 지정하였다.

〈표 2-7-4〉 25개 농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구 분	품 목
신선식품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가공식품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수산식품	해삼, 굴, 미역, 김, 전복, 넙치 등 10대 양식품목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중요하다. 국제박람회 참석은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유망권역, 벤더발굴, 미개척시장 등 전략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로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6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 140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

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한도를 표준물류비의 35% 이내로 하는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였다.

인센티브도 2009년 7,783백만원에서 2011년 10,435백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기본물류비(25% 한도)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총액한도 예외). 해외물류기반 구축, 수출보험, 안전관리 등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도 2009년 1,480백만원에서 4,004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해외 냉장·냉동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물류기반구축 지원을 본격 가동, 2011년에 5개국 20개소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바이어의 시장개척 의지 제고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한편, 국내외 수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6개국 9개 해외 aT센터 또는 사무소에서 입수되는 수출관련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Korea Agriculture Trade Information, <http://www.kati.net>)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표 2-7-5〉 수출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인센티브	수출인프라
2009		7,783	1,480
2010		10,343	2,162
2011		10,435	4,003

원예전문단지는 채소·과실·화훼 등 안전·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과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로 개편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원예단지는 2011년 155개소이며, 수출비중은 2010년 40.4%에서 2011년 43.9%로 증가하였으며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단지 내 2011년 GAP 인증농가는 1,814호로 16.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출선도조직을 2009년부터 결성하여 2011년 17개소를 육성하였다. 수출선도조직은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관리, 안정물량 확보를 위한 농가의 조

직화 및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수출선도조직의 수출 실적은 2009년 114백만달러에서 2011년 149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업체간 자율적인 수출질서 유지 등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7개 품목별 수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 방지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시장에서 신규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3%(11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수출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미국의 현지시장 진출, 러시아·EU·중동 등 적극적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기존의 신선농산물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가공식품까지 패러다임을 확장하였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상위 품목도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물류비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 대상에 식품업체들도 포함시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매월 장관주재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업체 및 관계기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품목 육성을 위해 수출전략품목 25개를 선정하여 물류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전략품목 집중육성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 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이연섭 · 임현규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고양 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농림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식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물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4월에 ‘한식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린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세계화 5대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 세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7일 한식세계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 참여적 한식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2010년 3월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식세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한식세계화는 현재 초기 실행 단계로서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 한식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1년에 뉴욕, LA, 동경, 오사카,

상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에 해외한식당협의체 9개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종사자 교육, 한식당 맛지도 제작, 홈페이지 구축, 메뉴판 교체 및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 여러 국제행사시 한식 오·만찬 제공, 한식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결과를 한식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홍보를 통한 한식의 이미지 개선 및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해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에 이어 ‘한식 스태프 양성과정’(4개소 109명)과 ‘향토음식 전문가과정’(7개소 149명) 등 단기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3개교와 고교 1개교를 ‘한식조리 특성화학교’로 지정하였으며,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11개 도시, 2,204명)도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인 국내 외식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산업진흥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6개월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시책 마련,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외식산업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 외식업지구 및 외식업자 지정·육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12월에는 인력, 정보·통계, R&D분야의 인프라 확충,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과 융복합 및 해외 외식시장 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3대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외에도 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소의 외식·전처리업체에 72억원의 국산 식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충 및 농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의 본격적인 한식세계화 활동에 맞추어 언론 등에서도 한식세계화 필요성, 가능성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한식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국내 여론조사결과 국민 92%가 한식세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80%가 실현가능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다. 외국인들의 한식선호도 역시 가시적으로 상승하였다.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 9%였던 한식선호도가 2011년 상반기 31%, 2011년 하반기에는 41%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최고 미식축제인 '마드리드 푸전 2012'에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주빈국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등 한식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다. 아시아 지역 특급호텔 레스토랑 중 홍콩 하버 그랜드호텔('11.1), 베이징 르네상스 호텔('11.9월), 상해 메리어트 호텔('11.10), 홍콩 샹그릴라·카오룽 호텔(2012년 1월)에는 한식이 고정메뉴로 입점되었고, 해외에서 미술랭 스타 한식당 4개소(미국 1개소, 일본 3개소)가 한식당 사상 최초로 탄생하는 등 한식이 '파인 다이닝'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해외에서 이러한 한식의 위상강화를 통해 국내 한식 기업의 해외진출 및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식 기업의 경우 2008년 27개 업체, 109개 점포에서 2010년 10월 기준 30개 업체, 172개 점포로 2011년에는 37업체 210점포로 증가하였다. 농식품 수출액도 2008년 45억달러에서 2010년 59억달러, 2011년 77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초기 붐 조성과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 현지 한식당 협의체를 통해 한식당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서 본격적인 한식의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 한류의 중심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비빔밥, 갈비, 불고기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진출 외식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경영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현지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식조리 특성화학교'를 5개소로 늘리고, 해외 요리학교 한식강좌도 동남아 지역 요리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홍보대행사를 통해 해외에 한식의 맛과 멋을 홍보하고 K-pop 등 한류와 연계한 한식홍보를 통해 한식의 해외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은 「외식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근거로 다양한 외식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력, 정보·통계 측면의 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외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영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외식업경기지수(KRBI)를 작성할 것이다.

또한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를 육성하여 많은 외식업 지구의 모범사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외식업체에 우수 식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외식 식재료 전문몰'을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1.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

■ 농어촌정책과 사무관 신지영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령화, 과소화되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하였다.

이 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미흡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였다.

〈표 2-8-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2010년)

(단위: 개소)

구 분	도 시	농어촌
약국 현황(2010년)	19,159(시지역)	1,937(군지역)
상수도 보급률(2010년)	99.4%(동지역)	56.1%(면지역)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최소한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0.7)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설정을 주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목표치를 고시(11.1)하는 한편 관련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30명)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5)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3)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 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부 문	항 목	세부내용
교육 (6)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 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5)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2011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을 43개 세부기준으로 분류하고 50개 지표로 통계 DB를 구축하여 농어촌 140개 시·군 단위의 항목별·지역별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다.

항목별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하수도 보급률, 구급차 30분내 도착, 시·군내 문화시설 운영 등에서 달성비율이 높았으나 재가노인서비스, 평생교육시설 운영, 인도설치, 방법용 CCTV 설치 등의 항목은 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북부·남부, 충청 북부, 광역시 인구는 달성 정도가 높으나, 강원, 경북, 경남은 상대적으로 달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항목별·지역별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원인 분석, 보완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도농간 공공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기준이행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 및 목표치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 농어촌정책과 사무관 신지영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계절제 근무, 경제활동인력의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2

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년~14년)을 수립하면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결정(09.12)되었고, 이후 농어촌영향평가로 제도명을 변경하여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범운용을 실시하여 2011년부터 농어촌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농어촌영향평가 운용방안 및 지침을 마련하여(11.6)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화하였다(11.7).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전문가의 심도 깊은 정책평가를 시행하는 전문평가와 정책 추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분류되는데,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평가 과제(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KREI)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석·검토를 실시하였고(11.3~11), 9개 부처(*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및 9개 도에서 자체평가(11.6~12)를 실시하였다.

전문평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원거리 외 부강사 교통비 지원, 광역새일지원본부 및 취업설계사 확대 등의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자체평가는 복지(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의료(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도로(위험도로 구조개선), 교육(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등), 문화(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 등)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여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촌영향평가제의 도입, 전문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정책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보완하도록 하여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정책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김병준

■ 추진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표 2-8-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 고 지원율	8 %	18 %	28 %	28 %	28 %	28%	28%	28%
월 평균 지원세대	606천세대	603천세대	521천세대	504천세대	484천세대	457천세대	435천세대	413천세대
지원예산	340억원	666억원	1,340억원	1,431억원	1,559억원	1,559억원	1,516억원	1,718억원

주 : 2011년 집행액은 세수부족으로 이월 · 집행된 2010년 예산 110억원 포함.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1년 기준 월 평균 256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였다.

〈표 2-8-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연도 구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790천원
지원금액 (월/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9,900~ 35,550

주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액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861	984

주 : 2011년 지원액은 세수부족으로 이월 · 집행된 2010년 예산 79억원 포함.

■ 평가 및 향후 계획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 · 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 · 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기여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지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김병준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 사업은 UR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융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상환은 졸업 후 2년 후부터(2011년부터 거치기간 연장 1년→2년) 1학기 분 융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

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전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정부가 605억원을 출연하여 33,273명을 대상으로 1,103억원(상환금 재용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2-8-6〉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출연금	융자현황	
			인원수	금액(재용자액 포함)
1994		8,000	1,724	1,712
1995		22,000	19,177	19,089
1996		20,000	19,301	19,252
1997		12,400	19,936	19,849
1998		15,100	19,563	19,396
1999		17,300	20,123	19,579
2000		30,550	20,650	20,476
2001		18,000	18,017	25,023
2002		15,000	15,911	23,764
2003		4,000	19,649	36,698
2004		2,100	26,424	60,652
2005		12,733	25,206	63,702
2006		48,288	24,964	67,664
2007		44,097	26,333	76,942
2008		41,260	26,721	83,843
2009		47,500	28,962	92,916
2010		50,521	31,093	101,216
2011		60,482	33,273	110,295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학자금 용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수혜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 여성·취약농어가 지원 확대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최승묵

■ 추진배경 및 개요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어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다.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어촌 고령화로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농어촌 취약 농어가 추가 추세에 있다. 농어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보육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 28천명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다. 시설이용 아동 14천명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시설미이용 아동 14천명에게는 정부 보육료 단가의 45%를 지원하였다.

〈표 2-8-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액(억원)	146	192	316	430	494	419	316	245
지원인원(천명)	27	30	56	57	66	53	41	28
· 시설			33	35	40	29	22	14
· 시설미이용			23	22	26	24	19	14
지원율(%)								
· 시설	50	50	50	70	70	70	70	70
· 시설미이용			25	35	35	35	35	45

주 : 지원액은 국고(50%)기준이며, 지방비 부담도 50%임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52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10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다. 2011년에는 14천 농가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농어촌 취약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14천 농가에 11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2-8-8〉 영농, 가사도우미 지원실적

(단위: 천호, 백만원)

연도	구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2008		28	5,792	13	4,732	16	1,060
2009		31	5,992	12	4,732	19	1,260
2010		28	6,520	13	5,460	20	1,060
2011		28	6,520	14	5,460	14	1,060

■ 평가 및 향후계획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자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주관)이 무상보육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보육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보육시설 진입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놀이차량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면지역에 돌봄센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어촌 취약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일수 증가, 대상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11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운식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락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등에서 배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 개선

2010년에는 농업인안전공제 사망시 보상수준을 2008년 45백만원에서 최고 60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주요 상품 개선 사항으로는 일(열)사병 사망 기본계약을 신설하고,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유사한 장제비 지원 특약을 운용하여 농작업 재해이외에 일반 사망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개별약정 계약방식에서 2009년부터는 개별 및 단체계약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단체일괄 가입 시 일선영업점 및 농업인 모두에게 물적·시간적 비용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다.

■ 사업 홍보 강화 및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공제가입 농업인 증가

농업인에 대한 농민신문 및 지역언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 행사시에 공제 상품을 적극 알려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 국고지원은 2010년 332억원보다 8.1%(27억원) 증가한 359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의 공제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1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매년 농업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804천명 대비 1.6%인 13천명이 증가한 817천명으로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인안전공제는 19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2011년까지 3,097억원의 장해·사망 공제금 및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재해농업인 또는 유족의 생계비 일정부분을 보전하고,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8-9〉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단위: 천건, 억원)

구분 \ 연도	합 계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량(계약건수)	11,234	6,658	658	742	764	791	804	817
지 급 공 제 금	3,620	1,345	201	284	367	403	497	52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중앙회 전산자료, 2012년

한편, 농업인은 재해·안전사고에 대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별도의 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년~14년)'에 따라 안전공제 보상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재 60백만원에서 2014년까지 10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수준 향상 등으로 가입률을 2014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7. 농지연금 활성화

■ 농지와 사무관 정재원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08.12.29)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농지연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 65세 이상 농촌인구비중 : ('90년) 11.6% → ('00년) 21.7 → ('09년) 34.2(전국 10.6%)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며 소유농지 총면적이 30,000㎡이하인 농업인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1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이 본격 시행되었다. 1년 동안 농지연금에 1,007명의 고령농업인이 가입, 총 72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가입자는 매월 평균 97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했다.

〈표 2-8-10〉 2011년 농지연금 추진실적

가입 인원(명)	평균 연령(세)	평균 월연금액(만원)	담보농지	
			평균면적(㎡)	평균가격(백만원)
1,007	75	97	5,371	15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2011년에는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500명의 농업인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행결과 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다.

2011년 7월에는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법률개정으로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농지연금의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문,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홍보도 강화하여 농업인 교육과 이장회의를 활용하여 설명회

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고객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만족도는 77.2%로 높은 편이며 타인에게 추천의향 역시 73.2%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 농지연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2년에는 2,089명을 대상으로 190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고령농업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설·추석 명절 집중홍보,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1. 농어촌 종합개발

■ 지역개발과 사무관 안완기

■ 추진배경 및 개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

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정책방향

-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추진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신(新)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기본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추진전략]

- 기초생활권 개발 : 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광역경제권 추진 : 5+2광역경제권 설정
- 초광역권 개발 : 대외 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초광역권은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내륙벨트 등 5개 권역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은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권으로 개발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초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금으로 지원)은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28개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접경도시지역 15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표 2-8-1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구분	해당 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합천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첫째, 소도읍육성을 포함하는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어촌종합개발을 포함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셋째,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하는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 넷째,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 기계화경작로,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 개발촉진지구,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신활력지역을 포함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용 측면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2-8-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유형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기준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제외한 소득사업은 가급적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는 기존에 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로 통합하여 시행
권역단위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지역역량 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사업기간 : 사업규모에 따라 3년~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미만(3년간), 30억이상~50억미만(4년간), 50억이상(5년간)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통합 시행 (복합형=농촌형+어촌형+산촌형)
신규(기준) 마을 조성	신규 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100% 확보, 마을정비조합 구성, 입주예정자 80%이상 확보한 지역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기존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형태임
	기존 마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마을정비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형태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 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기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이 해당
	농업생산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 개발 등의 시설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의 농업기반 지원시설이 해당

〈표 2-8-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휀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소득증대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소득기반	농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사무장 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1차 계획: '10년~'14년)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120개 시·군 971개 내역사업에 9,312억원을 지원하여 22,617명의 신규인구유입 효과를 얻는 등 성과가 있었다.

〈표 2-8-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10	2011
계	973,649	931,198
경 기	35,761	44,751
강 원	61,878	53,428
충 북	86,716	83,090
충 남	116,632	119,739
전 북	122,185	114,211
전 남	215,892	196,664
경 북	173,740	115,397
경 남	144,314	142,820
제 주	16,531	21,09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예산설명서

■ 평가 및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각 시·군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시적인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 공간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추진 체계구축이 미흡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 및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2년에는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원자(지자체, 지역주민 등) 과정교육 등을 개설하여 지역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서기관 이재식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 욕을 고취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예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에는 총 8,000동(사업비 4,000억원)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융자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표 2-8-1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1
지원 물량 (세대)	5,600	6,000	7,000	8,000
세대당 융자한도액	40	40	40	50
융 자 재 원	224,000	240,000	280,000	400,000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개발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농어촌 생활형 주택으로 개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문화 정착 및 농어촌 미래주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한 농어촌 생활형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3. 농어촌 뉴타운 조성

■ 지역개발과 서기관 박종훈

■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 우리 농어촌 산업은 승계농업인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젊은 이들의 전입이 없으면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 농업 중심의 농어촌사회가 해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창업후계농 육성을 추진 중이나 지역연고와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고,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자는 많으나 경제적 여건, 친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아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연두업무계획 보고 시 농어업 인력 확보대책 일환으로 도시의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거·자녀교육·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실무 작업단을 구성, 내부 토론회, 지자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5개소를 조성기로 하였으며, 2008년 10월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현지실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09년 1월에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세부설계 및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대상 선정은 기숙형 고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의료·문화·복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선정하였으며, 개소 당 75~200세대 규모의 전원형 단독주택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형태로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조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25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귀농인 등이다.

〈표 2-8-16〉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단위: 세대)

구분	계	충북 단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사업규모	650	75	75	100	200	200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은 5개 지구 650세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의하여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공동주차장 등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에 대해 국고보조 및 용자금 지원을 한다.

〈표 2-8-1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국고 보조율

(단위: %)

구분	계	보조		국고용자
		국비	지방비	
마을기반시설	100	70	30	-
임대주택	100	40	-	60
분양주택	100	-	-	100

주: 표준사업비 한도내 지원

2010년까지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입주자 모집·선정 및 주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농어촌 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22,401백만원의 보조금 및 용자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지구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완료 및 단양·장성 2개 지구의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24,64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에 5개 지구 650세대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국민 소득증대 및 농어촌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웰빙 추구로 도시민

들의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전체 인구의 15.2%)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귀농·귀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은 도시민들의 귀농 정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하여 도시 과밀화 및 실업 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 뉴타운 53개소 조성 시 약 6,300세대 20천 명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위주의 고령·영세 농어업인 중심의 농촌인력구조는 2·3차 산업 융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젊은 농업경영주로의 세대교체가 가능해진다.

향후,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지자체, 지역개발 전문가, 귀농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 추진여부 및 방향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4.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통계담당관실 서기관 이대형·사무관 최재웅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에서도 초고속통신망 구축, PC보급, 정보화 교육 등의 정보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농어업·농어촌 정보화 추진 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인터넷 망의 접근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특히,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현상은 농어업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은 1차 기본계획('02년~'06년)과 2차 기본계획('07년~'11년)을 수립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정보화 선도그룹을 육성하였다. 또, 농어업경영체의 스마트화를 확산하고 사이버직거래 시스템을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 및 디지털가축 방역체계의 구축을 통해 축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간의 정보화 기반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어업인 육성은 물론 영농의 과학화를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 사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농정실현 및 스마트 IT인프라 전략 등을 포함하는 3차 농림수산물 정보화 기본계획('12년~'16년)을 수립하였다.

도시 소비자 또는 타 산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 수단이 열악한 농어업인 들에게 집합 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 활용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표 2-8-18〉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단위: 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66.2	58.3	50.2	45.4	42.1	39.7	38.2	36.4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농어민 정보격차 실태조사

또한 19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농림수산물종합정보망(www.okdab.com)을 통해 전국의 농수산물 가격유통정보, 시황·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정보 및 지식정보 서비스(www.okdabCEO)를 꾸준히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하였으며, 동호회를 통한 활발한 회원활동으로 농어업인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교류가 촉진되었다. '옥답'은 농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대표 포털사이트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신지식농업인, 사이버농업인, 농업경영CEO 등의 농식품 분야 경영리더 대다수가 농림수산물 종합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옥답은 농업·농촌의 정보화 선도자 그룹을 성공적으로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2-8-19〉 농림수산물종합정보망 이용현황

(단위: 명, 개)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회 원 수		238,252	257,646	269,113	282,094	285,598
연 계 기 관 수		51	65	72	72	85
동 호 회 회 원 수		26,301	36,905	40,860	42,229	44,284

자료: 농림수산물부 정보통계담당관실

2010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농수축산 분야 별 IT융합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스마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정보시스템(ERP 등) 구축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장부 소프트웨어 등을 보급하여 농작업의 기록 관리를 통한 과학적 영농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농가경영장부 소프트웨어를 후계농업인 및 농업마이스터 과정 등의 영농전문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중에 실습을 통해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률을 높였으며, 농가경영장부 및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 사업과 결합하여 융합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중간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등의 유통구조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구제역 등 위생·방역 상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을 위한 쇠고기이력제 시행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하여 한우 소비의향이 증가되었다. 첨단 IT기반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 정보의 현행화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활동 지원이 가능해져 방역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을 증진하였다.

또한 그간 쌀소득, 친환경, 조건불리 등 직불제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신청을 차단하고, 농림사업간 DB검증 등을 통해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6년간 총 7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격분석 서비스 등 정보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등 급변하는 IT환경에 부응하여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IT융합 기술을 접목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모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농림수산물 IT융합 확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어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생육환경 분석이 가능해지고, 주변의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업 경영 및 유통을 효율화하고, 생산 및 유통 이력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앞으로도 각 농림수산 사업 및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조·융자사업 이력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농어업경영체 DB를 중심으로 농림수산물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등 부정·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격이 있는 농어업인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자격여부 등도 맞춤형으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5.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 농어촌산업팀 서기관 최국일·사무관 유재중·박재화

■ 추진배경 및 개요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정착, 주5일 수업 시행,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어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어촌체험·휴양기반

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어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였다. 2011년까지 587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571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멘토(mentor)제도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10개 교육과정에 3,767명을 교육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방문객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1년까지 364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에 61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어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aT센터)에서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72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을 운영하여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어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어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

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1년에는 8,741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농어촌일손돕기 등 611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 소득증대 등 농어촌 지역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1사1촌 운동 확산 등으로 농어촌체험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가 소득증대 등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어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어촌체험관광 등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어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12년 50개(총 621)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속 지원하고, 농어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농어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생활·체험기 공모,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6. 향토자원 산업화

■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이동홍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 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 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8-20〉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사업량(개소)	139	19	30	30	30	30	* 목표: 2013까지 200
예산 (억원)	1,169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주 : 2007~2008년 선정지구에 대한 사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 신규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는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써 농림수산물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2,356억원을, 2011년에는 2,435억원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8-2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구분 연도	계	농수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농수산물제조· 가공지원	체험· 전시지원	농어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지원
2010	2,356억원	1,035	396	10	392	523
2011	2,435	848	501	13	547	526

■ 평가 및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매년 30개 소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13개 개별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기존 사업의 물리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사업대상을 성격에 따라 ①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②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 체험·전시지원, ④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내용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단편적, 1회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구조를 보다 고도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7. 농공단지 조성

■ 농어촌산업팀 서기관 조병임

■ 추진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지식

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2-8-22〉 부처별 농공단지 지원 현황

부처명	지원내용	관련법
지 식 경 제 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 토 해 양 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 경 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신규사업 11개소, 계속사업 32개소 등 59개소 등 102개소에 52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1년 기준 363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1년 6,02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598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38천여명, 생산액 49조6,811억원(업체평균 93.6억원), 연간 수출액 123억32백만달러(업체평균 232만달러) 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

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목표도 조만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 단지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의 신규 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신규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2017년까지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개발보다는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1. 대구획 경지정리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시·도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국고 2조 4,005억원을 투입하여 119.7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하였다.

〈표 2-8-2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19.7	70.6	3.3	72.5	46.6
사업비(억원, 국고)	37,632	24,005	63.8	776	65.9	12,85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국고 1조 7,294억원을 투입하여 93.7천ha를 착수하였다.

〈표 2-8-24〉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10	93.7	85.2	3.7	88.5	12.6
사업비(억원, 국고)	20,563	17,294	84.1	822	88.1	2,4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쌀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외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1년까지 국고 1조 9,417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3,6천km를 완료하였다.

〈표 2-8-25〉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3.6	67.4	1.1	70.5	10.3
사업비(억원, 국고)	29,689	19,417	65.4	834	68.2	9,4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농업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조래청

■ 추진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

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 국고 3조 7,187억원을 투입하여 153.4천ha를 완료하였다.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1년에는 배수개선사업 62개 지구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개 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 기후 여건과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88천ha에서 232,5천ha로 조정(09.7)하였다.

〈표 2-8-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232.5	153.4	66.0	4.2	67.8	74.9
사업비(억원, 국고)	75,610	37,187	49.2	2,500	52.5	35,92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3,492지구(국가관리 208지구, 지방관리 3,284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1,562지구(국가 162, 지방 1,400)를 완료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배수개선사업 18개 지구, 방조제개보수사업 30개 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5.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조례청

■ 추진배경 및 개요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2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69,313	17,531	7,529	18,116	2,721	23,416
30년 이상	39,471	16,648	2,783	14,804	2,353	2,883
30년 미만	29,842	883	4,746	3,312	368	20,53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추진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400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80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0.3천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2-8-2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지구)

구분		총계획	2010까지	2011	2012이후
사업비		109,323	52,971	2,600	53,752
사업량	수원공	4,330	2,090	80	2,029
	수로정비	15.9천km	5.9천km	0.3천km	9.7천km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촌용수 개발사업

■ 농업기반과 서기관 한준희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등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용수공급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중인 지구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984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788천ha(80.1%)이고, 수리시설이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96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20천ha(52.9%)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8-29〉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구분 \ 연도	단위	2000	2003	2006	2010
논 면 적 (A)	천ha	1,149	1,127	1,084	984
수 리 답 (B)	천ha	880	878	859	788
	(B/A)%	76.6	77.9	79.2	80.1
수 리 안 전 답 (C)	천ha	421	440	478	520
	(C/A)%	36.6	39.0	44.1	52.9
수 리 불 안 전 답 (D)	천ha	269	249	225	196
	(D/A)%	23.4	22.1	20.8	1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해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 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66개 지구(30천ha)에 1,729억원을 투입하여 1개지구 0.1천ha를 준공하였고, 2012년에는 71개 지구(30천ha)에 2,100억원을 투입하여 6개지구 2.1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2-8-3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5~’13)	사업량(천ha)	107.5	61.4	2.1	44.0
	추진율(%)	100	57.1	59.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31개 지구(1.1천ha)에 279억원(국고 174억원, 지방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14개 지구 0.4천ha를 준공하였고, 11개 지구 0.3천ha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33개 지구(0.8천ha)에 163억원(국고 113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지구 0.3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1〉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소 규모 (’03~계속)	사업량(천ha)	11.0	2.3	0.3	8.4
	추진율(%)	100	20.9	23.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지표수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86개 지구(10.4천ha)에 810억원(국고 696억원, 지방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23개 지구 1.5천ha를 준공하였고, 18개 지구 1.2천ha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80개 지구(8.2천ha)에 698억원(국고 580억원, 지방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8개 지구 0.6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2〉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지표수 보강 (’95~계속)	사업량(천ha)	31.8	29.7	0.6	1.5
	추진율(%)	100	93.4	9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정도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53%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20%정도여서 수리안전담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홍수와 가뭄의 발생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

■ 새만금개발과 사무관 박재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형주

■ 추진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계(水系)단위의 종합개발방식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대단위 농업

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금강(錦江) 등과 같은 대단위 수계(水系)내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2-8-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구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Ⅳ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특회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관리기금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추진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307천ha를 추진하여 2011년까지 15지구 162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 지구 등 9지구 145천ha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지구에 2011년까지 총 6조 1,593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정리 11,25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895ha 조성하여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의 농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2010년 5월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후,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 차원에서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4공구(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팜랜드(경기도 주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다.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및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11.3)하였으며, 방조제 내측 토지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에 착공한 방수제(7개공구)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민간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11.3)하였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점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첨단산업기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공유 토지·건물의 장기임대 허용 및 광역기반시설설치 계획수립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2-8-3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 도	시 군			
계(15지구)			161,667		1,376,806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1970 ~ 19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1970 ~ 1977	37,657
영 산 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1972 ~ 19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1974 ~ 19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1974 ~ 1979	12,521
창 념	경 남	창녕	2,269	1975 ~ 19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1975 ~ 19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1977 ~ 19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1978 ~ 1984	23,029
미호천(Ⅰ)	충북	음성, 진천	11,554	1977 ~ 1989	104,871
논 산	충남	논산, 공주	9,938	1978 ~ 1990	94,035
금 강(Ⅱ)	전북	서천, 군산	하구둑	1983 ~ 1990	101,000
삽 교 천	충남	아산, 당진	24,574	1975 ~ 1994	235,546
대 호	충남	서산, 당진	7,419	1980 ~ 1996	185,630
영 산 강(Ⅱ)	전남	목포, 나주	20,700	1976 ~ 1998	354,4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새만금 및 금강Ⅱ 등 시행중 9지구에 국고(농특회계) 736억원과 농지관리기금 2,847억원 등 총 2,734억원을 투입하여 홍보지구 배수개선 227ha, 금강Ⅱ 지구 경지재정리 191ha, 화옹·시화 방수제 35.6km 등을 부분 준공할 계획이며, 금강Ⅱ 지구 경지재정리 655ha 및 화옹지구 4공구 에코팜랜드(768ha)에 대한 세부설계를 추진하여 신규 착수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977년~1988년까지 미호천 인근 12천ha 용수공급을 위해 백곡·원남·광혜·금왕·맹동 등 5개 저수지를 축조한 미호천Ⅰ 지구에 이어, 청주·청원·천안 일원 4천ha의 농경지에 용수공급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착수한 미호천Ⅱ 지구가 청원도수로, 남계·청원양수장, 청주시 무심천내 청주보 및 동·서부공구내 경지정리 1,417ha 등을 완료하고 2012년에 관개면적 857ha, 저수용량 759만톤에 달하는 오창저수지를 마지막 준공하고, 23년에 걸친 미호천Ⅱ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준공식을 2012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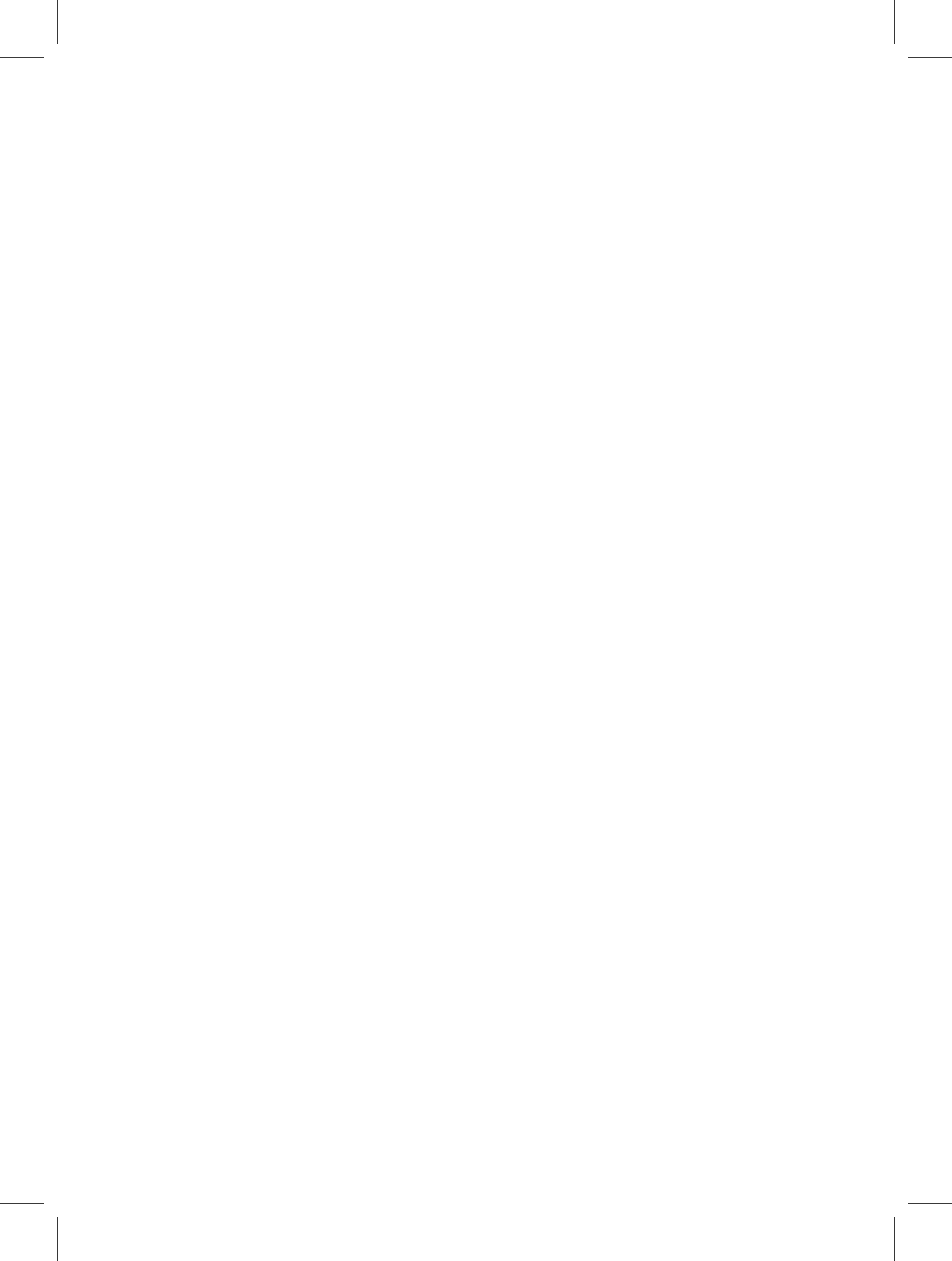
〈표 2-8-3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9지구)	5개 시·도	23개 시·군	144,868	1989~2020	10,121,266	
금강Ⅱ	충남·전북	서천·완주·부여· 군산·익산·김제	43,000	1989~2014	810,341	
미호천Ⅱ	충북·충남	청원·청주·천안	4,430	1989~2012	324,375	
홍보	충남	홍성·보령	8,100	1991~2016	437,464	
영산강Ⅳ	전남	무안·신안·함평·영광	16,730	2001~2015	783,947	
영산강Ⅲ-1	전남	영암·해남·강진	13,160	1995~2015	624,644	
영산강Ⅲ-2	전남	해남	7,840	1997~2014	411,582	
화옹	경기	화성	6,212	1991~2016	875,531	
시화	경기	안산·화성	4,396	1998~2016	429,136	
새만금	(외곽)	전북	부안·김제·군산	41,000	1991~2010	2,949,008
	(내부)	전북	부안·김제·군산	-	2009~2020	2,475,2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또한, 새만금 방조제 내측 토지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에 착공한 방수제공사는 201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이후 대규모농업회사가 입주예정인 농업용지 5공구(1,513ha)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협의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농업전망 및 내부 농업용지 개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을 보완·추진하고, 새만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신시도 휴게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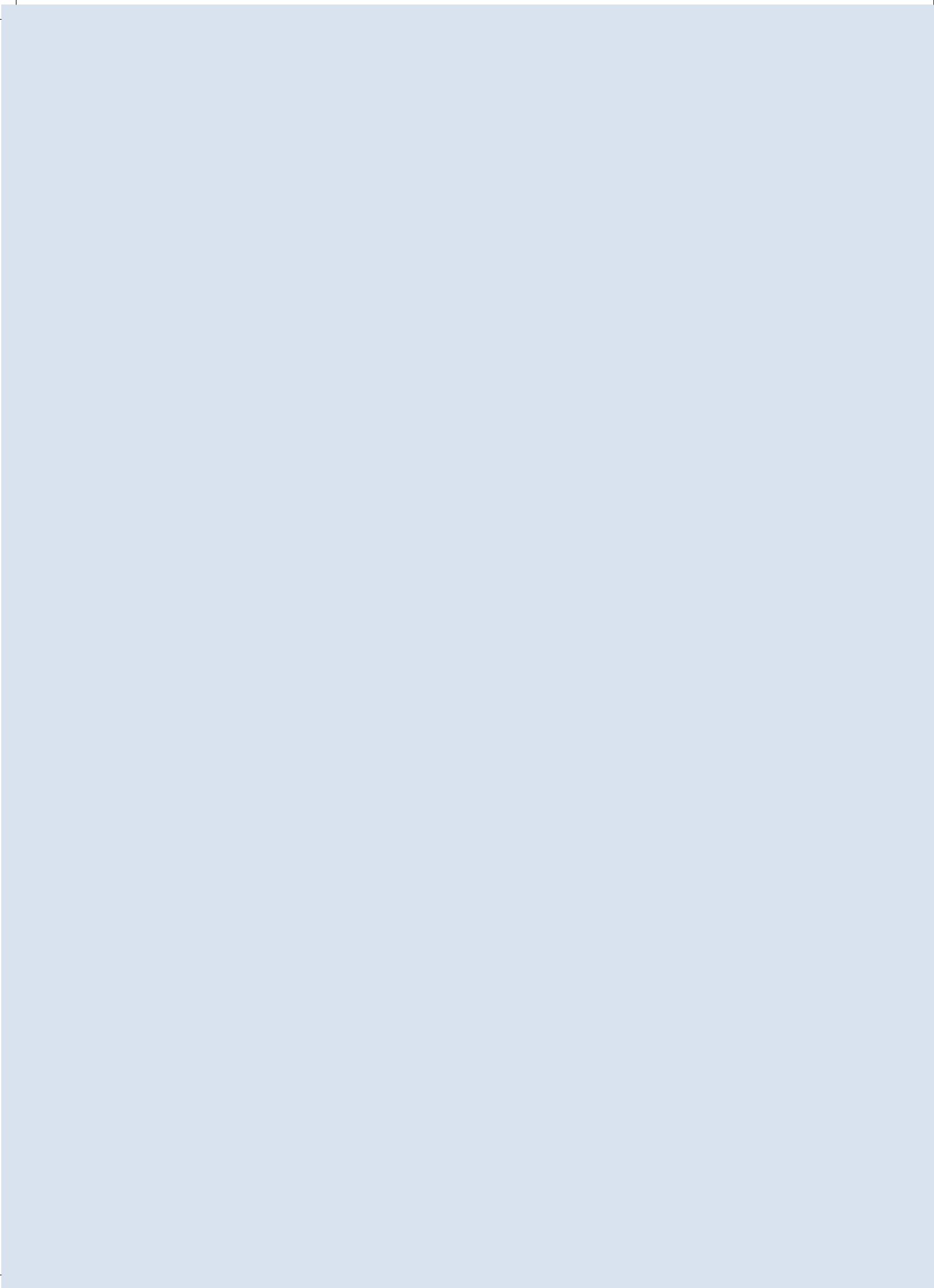


제3편

2011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1. 어가인구

■ 수산정책과 사무관 지정훈

2011년 전국의 어가는 63,251호로 2010년의 65,775호보다 2,524호(3.8%)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159,299명으로 2010년의 171,204명보다 11,905명(7.0%)이 감소하였다.

〈표 3-1-1〉 어가호수와 인구

(단위 : 호, 명,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 가 호 수	73,934	71,046	69,379	65,775	63,251	96.2
어 가 인 구	201,512	192,341	183,710	171,204	159,299	93.0
여 성 인 구 (구 성 비)	100,527 (49.9)	96,485 (50.2)	92,136 (50.2)	85,529 (50.0)	80,829 (50.7)	94.5 -
호당평균어가인구	2.73	2.71	2.65	2.60	2.51	96.5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2011년 어업종사자는 2010년에 비해 3.0% 감소된 103,903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54,856명(52.8%), 여자가 49,047명(47.2)이다.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44.9%, 50대가 34.0%, 40대가 15.2%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총 사 자		122,916	118,879	115,532	107,163	103,903	97.0
성 별	남 자	65,520 (53.3)	63,037 (53.0)	60,790 (52.6)	57,224 (53.3)	54,856 (52.8)	95.9 -
	여 자	57,396 (46.7)	55,843 (47.0)	54,742 (47.4)	49,939 (46.7)	49,047 (47.2)	98.2 -
연 령 별	30세 미만	2,407 (2.0)	1,964 (1.7)	2,068 (1.8)	1,857 (1.7)	1,534 (1.5)	82.6 -
	30~39세	7,698 (6.3)	7,010 (5.9)	6,120 (5.3)	5,973 (5.6)	4,595 (4.4)	76.9 -
	40~49세	26,543 (21.6)	23,630 (19.9)	19,689 (17.0)	18,817 (17.6)	15,796 (15.2)	83.9 -
	50~59세	38,877 (31.6)	38,506 (32.4)	37,901 (32.8)	34,765 (32.4)	35,346 (34.0)	101.7 -
	60세 이상	47,393 (38.5)	47,769 (40.2)	49,753 (43.1)	45,751 (42.7)	46,632 (44.9)	101.9 -

자료: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3〉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호,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73,934	71,046	69,379	71,046	69,379	96.2
전 업	22,407 (30.3)	20,938 (29.5)	20,923 (30.2)	20,938 (29.4)	20,923 (30.5)	99.8 -
겸 업	51,527 (69.7)	50,062 (70.5)	48,455 (69.8)	50,062 (70.6)	48,455 (69.5)	94.6 -

자료: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호,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총 어업가구	73,934	71,046	69,379	65,775	63,251	96.2
어선 사용가구	34,691 (46.9)	32,481 (45.7)	30,569 (44.1)	19,327 (29.4)	17,903 (28.3)	92.6 -
어선비 사용가구	15,896 (21.5)	16,464 (23.2)	16,218 (23.4)	29,062 (44.2)	27,533 (43.5)	94.7 -
양식 어업가구	23,356 (31.6)	22,101 (31.1)	22,592 (32.5)	17,386 (26.4)	17,815 (28.2)	102.5 -

자료: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업 총생산

■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경남

2011년도 어업 총생산량은 3,256천톤으로 전년 3,112천톤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어업 총생산액은 8.7% 증가한 8조 72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1-5〉 어업 생산량 현황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10	2011	2010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348	2,514	2,714	3,363	3,112	3,256	140	4.6
연근해	1,425	1,189	1,097	1,286	1,134	1,235	101	8.9
양식	996	653	1,041	1,382	1,355	1,478	123	9.1
내수면	29	21	24	29	31	32	1	3.2
원양	897	651	552	666	592	511	△81	△13.7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2년

〈표 3-1-6〉 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10	2011	2010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7,963	40,664	50,493	63,550	74,257	80,729	6,472	8.7
연근해	24,794	23,295	27,060	32,297	39,117	44,441	5,324	13.6
양 식	6,481	6,839	13,484	15,225	18,156	17,842	△314	△1.7
내수면	1,429	1,234	1,757	2,753	3,338	3,775	437	13.1
원 양	5,260	9,257	8,192	13,274	13,645	14,670	1,025	7.5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2년

〈표 3-1-7〉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2010	2011(P)	증감률(%)
국내총생산(GDP)	1,173,275	1,237,128	5.4
국내총부가가치(GVA)	1,053,933	1,114,726	5.8
농림어업	27,832	30,096	8.1
어업	3,203	3,319	3.6
농림어업 GDP 구성비	2.4	2.4	-
농림어업 GVA 구성비	2.6	2.7	-

자료 : 한국은행, 2012년

3. 어선등록현황

■ 어업정책과 사무관 윤영호

2011년 어선등록현황은 75,629척에 606,627톤으로 2010년에 비하여 척수는 1,345척(1.7%)이 감소하였고, 톤수는 6,005톤(1.0%)이 증가하였다. 전체 어선 중 동력어선은 73,427척으로 97.1%, 톤수는 604,414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 65.4%, 양식어선 23.5%, 내수면어선 3.8%, 원양어선 0.5%, 기타가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3-1-8〉 어선등록현황

(단위: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7,713	76,974	75,629	98.3
	- 동 력		89,294	87,554	75,247	74,669	73,427	98.3
	- 무동력		6,596	3,181	2,466	2,305	2,202	95.5
	톤 수		923,099	700,810	594,772	600,622	606,627	101.0
	- 동 력		917,963	697,956	592,445	598,365	604,414	101.0
	- 무동력		5,136	2,854	2,327	2,257	2,213	98.1
연 근 해	척 수		68,629	64,579	53,799	50,757	49,488	97.5
	톤 수		397,868	322,811	257,292	249,694	248,233	99.4
양 식	척 수		20,359	18,244	17,786	17,594	17,737	100.8
	톤 수		28,516	27,131	31,077	32,845	35,155	107.0
내 수 면	척 수		3,664	4,164	3,824	2,973	2,860	96.2
	톤 수		2,874	3,518	2,974	2,149	1,714	79.8
원 양	척 수		597	493	370	379	377	99.5
	톤 수		349,420	257,614	188,174	199,859	200,316	100.2
기 타	척 수		2,641	3,255	1,934	5,271	5,167	98.0
	톤 수		144,421	89,736	115,255	116,074	121,210	10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2년

선질(船質)별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어선척수의 84.1%, 목선이 13.4%, 강선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톤수의 32.8%, 목선이 2.7%, 강선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7,713	76,974	75,629	98.3
	톤 수		923,099	700,810	594,772	600,622	606,627	101.0
목 선	척 수		40,057	22,281	12,647	11,788	10,115	85.8
	톤 수		112,413	49,697	21,112	18,849	16,546	87.8
강 선	척 수		3,442	2,417	1,916	1,865	1,843	98.8
	톤 수		656,194	444,687	381,578	386,117	390,204	101.1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52,378	65,831	63,107	63,279	63,628	100.6
	톤 수		154,425	205,754	191,688	194,954	199,177	10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2년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7.1%를, 5톤이상 50톤미만 어선은 9.2%를, 50톤 이상 100톤미만 어선은 1.2%를, 100톤이상 200톤미만 어선은 0.5%를, 200톤이상의 대형어선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0〉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7,713	76,974	75,629
톤 수			923,099	700,810	594,772	600,622	606,627	101.0
1톤 미만	척 수		37,542	30,962	25,855	24,454	22,627	92.5
	톤 수		23,620	20,069	17,142	16,331	15,169	92.9
1~5톤 미만	척 수		44,794	47,253	42,371	42,957	43,213	100.6
	톤 수		107,263	111,344	97,681	98,768	98,968	100.2
5~50톤 미만	척 수		10,797	10,607	7,922	8,032	8,249	102.7
	톤 수		138,130	123,424	95,660	96,234	98,102	101.9
50~100톤 미만	척 수		1,584	1,024	800	778	791	101.7
	톤 수		120,489	75,783	58,301	56,877	57,787	101.6
100~200톤 미만	척 수		518	346	273	263	265	100.8
	톤 수		73,551	50,640	40,071	38,853	38,849	100.0
200톤 이상	척 수		655	543	492	490	484	98.8
	톤 수		460,046	319,550	285,917	293,559	297,752	101.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2년

4. 이용어장

■ 연근해어장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 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이어도어장(소코트라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례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 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원양어장

■ 원양정책과 사무관 전우진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협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조업이 중지

되었고,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2011년 말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를 비롯해 12개가 설립되었고, 남태평양수산물관리기구(SPRFMO) 등 2개가 설립준비 중이며,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가 신설 중에 있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양식어장

■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우리나라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의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에서 1970년대에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전복 등 고소득 어·패류 양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고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챙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최근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되고 있다.

〈표 3-1-11〉 품목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130,890	132,416	136,083	139,871	139,223	139,811	0.4
어 류	1,986 (1.5)	1,962 (1.5)	1,988 (1.5)	1,965 (1.4)	1,880 (1.3)	1,774 (1.3)	-5.6
패 류	49,550 (37.9)	49,261 (37.2)	49,169 (36.1)	49,538 (35.4)	49,721 (35.7)	49,848 (35.7)	0.3
해 조 류	74,757 (57.1)	76,183 (57.5)	79,504 (58.4)	81,601 (58.3)	81,255 (58.4)	81,837 (58.5)	0.7
기 타 수 산 동 물	4,597 (3.5)	5,010 (3.8)	5,422 (4.0)	6,767 (4.8)	6,367 (4.6)	6,352 (4.5)	-0.2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2011년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14만 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은 1.4천ha이다.

〈표 3-1-12〉 종류별 · 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 감 률
합 계	1,971	1,735	1,641	1,382	1,419	1,388	-2.2
육상수조식양식 (어류 · 패류 등)	268 (13.6)	276 (15.9)	271 (16.5)	261 (18.9)	258 (18.2)	290 (20.9)	12.4
축제식양식 (어류 · 새우 등)	1,703 (86.1)	1,459 (84.1)	1,370 (83.5)	1,121 (81.1)	1,161 (81.8)	1,099 (79.2)	-5.3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201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적조,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상승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면의 개발제한, 수출용 패류의 지정해역 및 그 인근해역에 대해 어장개발 관리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김, 어류, 굴 등의 적정한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에 대하여는 어장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관리하였다.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관측을 통하여 적정하게 수급관리를 하였으며, 그동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해 왔던 9개 품종(김, 어류, 전복, 굴, 우렁챙이, 미더덕, 홍합, 미역, 피조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신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서해 5도(인천시 옹진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복, 김 등 모든 양식품종에 대해 신규어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5. 어업 경영체

■ 연안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상목

2011년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201,937개로서 2010년의 195,545개보다 6,392개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각각 55,432건 및 6,424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 341건과 116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선 감척사업 추진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을어업(면허어업)은 2,892건으로 전년에 비해 166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서지역 어촌계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고령화로 면허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 중 어선어업 경영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신규 어업허가 억제정책과 1994년부터 추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신고어업은 총 129,447건으로 전년 대비 2,127건이 증가하였으며, 인천·전북·경북지역 등이 다소 증가가 있었다. 이것은 어업자원증대에 의한 증가보다는 간석지의 발달에 따른 조개류의 서식환경변화와 준법조업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로 맨손어업의 신고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별도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소득 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의한 어업자원변동 및 수산자원 회복정도 등 어업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3〉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수, %)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153,570	150,111	150,365	178,219	193,296	195,545	201,937	103.3
허가	소 계	88,394	83,334	79,202	73,798	68,287	64,631	61,856	95.7
	연안어업	80,518	75,723	71,756	66,660	61,388	58,091	55,432	95.4
	구획어업	7,876	7,611	7,446	7,138	6,899	6,540	6,424	98.2
면허	소 계	3,279	3,279	3,390	3,437	3,556	3,594	3,418	95.1
	마을어업	2,726	2,726	2,835	2,897	3,020	3,058	2,892	94.6
	정치망어업	553	553	555	540	536	536	526	98.1
신고	소 계	61,897	63,498	67,773	100,984	121,453	127,320	136,663	107.3
	맨손어업	56,348	57,561	61,631	94,768	114,557	120,200	129,447	107.7
	나잠어업	5,507	5,900	6,090	6,144	6,825	6,952	7,013	100.9
	투망어업	42	37	52	72	71	168	203	12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2년

■ 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근해어업 경영체는 2011년에 3,280개로서, 2010년 3,276개보다 0.1% 증가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2003년 및 2007년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업허가를 관리하고 있어 허가처분에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유예처분된 허가가 새로 처분된 건이 있어 다소 증가되었다.

업종별 경영체를 살펴 보면, 근해자망 10%, 근해연승이 2% 증가하였고, 근해봉수망 9%, 근해형망이 10% 감소하였다.

〈표 3-1-14〉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건, %)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4,061	3,957	3,406	3,276	3,280	0.1
대형기저		83	92	82	81	83	2.5
중형기저		94	94	90	90	90	0.0
근해트롤		99	99	91	91	90	△1.1
근해선망		82	79	74	72	72	0.0
근해채낚기		915	896	720	699	699	0.0
기선권현망		79	80	78	77	77	0.0
근해자망		873	838	736	707	714	1.0
근해안강망		262	259	247	238	236	△0.8
잠수기		236	235	236	236	236	0.0
근해통발		401	389	331	310	309	△0.3
근해형망		138	129	101	94	85	△9.6
근해연승		743	709	575	536	548	2.2
근해붕수망		51	53	40	40	38	△5.0
근해자리돔들망		5	5	5	5	3	△4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12년

■ 양식어업

■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최근 중규모(1ha 이상 3ha 미만)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가수가 크게 줄고 3ha 이상 대규모 양식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15〉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건, %)

구분	연도	합계	1ha 미만	1~3ha	3~6ha	3~10ha	10ha 이상
2005		28,184 (100.0)	14,388 (51.1)	7,091 (25.2)	3,220 (11.4)	1,444 (5.1)	1,441 (5.1)
2010		22,016 (100.0)	10,506 (47.7)	5,250 (23.8)	2,810 (12.8)	1,249 (5.7)	2,201 (10.0)

주: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2년

2011년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795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220(12.5%), 새고막 946(9.7%), 김 903(9.2%), 피조개 775(7.9%), 바지락 637건, 어류 528건, 다시마 571건, 우렁쉥이·복합양식 기타 4,215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총 3,569건으로 해상종묘생산어업이 895건, 육상양식어업 1,241건(육상·수조 식양식 958건, 축제식양식 283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433건이다.

〈표 3-1-16〉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개소)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9,297	9,352	9,555	9,709	9,735	9,795	60
김	971	948	960	939	911	903	-8
굴	1,186	1,182	1,211	1,247	1,245	1,220	-25
피 조 개	868	857	848	832	803	775	-28
새 꼬 막	845	850	862	875	915	946	31
바 지 락	614	633	606	602	602	637	35
미 역	495	455	451	432	435	474	39
어 류	574	560	553	568	549	528	-21
우 령 쉥 이	503	494	506	521	463	456	-7
기 타	3,241	3,373	3,558	3,693	3,812	3,856	7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 경영체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경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다. 반면 어류와 전복, 진주조개, 우렁쉥이, 새우, 가리비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1-17〉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ha, %)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130,890	131,439	136,083	139,867	141,015	139,811	99.1
어촌계 및 수협	106,649	108,242	111,800	115,166	116,550	115,943	99.5
개인 및 협업	24,241	23,197	24,283	24,701	24,465	23,868	97.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향후 WTO, DDA, FTA 체결에 따른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개인 양식업을 대규모 양식으로 유도하고, 기존의 저가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고부가가치의 품종 양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원양어업

2011년 원양어업 경영체는 2010년 90개사보다 2개사가 감소한 88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보면 2척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53개사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선 359척중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참치연승·참치선망은 92%, 해외트롤어선의 95%이상이 21년 이상 노후 선박이다. 업종별로는 참치어선이 179척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트롤어선이 100척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해역별로는 태평양수역에 212척, 대서양수역에 135척, 인도양수역에 12척이 진출하고 있다

〈표 3-1-18〉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단위: 개, 척)

구분 \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업 체 수	36	82	157	139	112	109	110	106	95	90	88
선 박 수	278	750	810	535	410	392	387	380	362	353	35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12년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제2절 어가 경제

■ 수산정책과 사무관 지정훈

1. 어가소득

2011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8,62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8.2% 증가하였다. 어업소득은 23.0% 증가하였고, 어업외 소득은 4.6% 감소하였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52.9%로 전년에 비해 6.4% 감소하였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128.1%, 도시가계 소득의 75.8% 수준이다.

〈표 3-1-19〉 어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 가 소 득	30,668	31,176	33,945	35,696	38,623	108.2
경 상 소 득	25,868	26,344	30,213	31,729	35,119	110.7
어 업 소 득	11,975	13,801	16,220	16,607	20,432	123.0
어업외 소득	10,981	10,120	11,136	11,931	11,377	95.4
이 전 소 득	2,913	2,423	2,857	3,191	3,309	103.7
비경상소득	4,799	4,831	3,732	3,968	3,504	88.3
농 가 소 득	31,967	30,523	30,814	32,121	30,148	93.9
도시가계소득	44,105	46,737	46,664	48,092	50,983	106.0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20〉 어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 업 소 득	11,975	13,801	16,220	16,607	20,432	123.0
어업총수입	26,535	33,457	35,350	37,682	45,875	121.7
어업경영비	14,560	19,656	19,129	21,076	25,443	120.7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21〉 어업외 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업외 소득	10,981	10,120	11,136	11,931	11,377	95.4
겸업소득	5,689	4,860	5,189	5,755	5,951	103.4
사업외 소득	5,292	5,260	5,946	6,176	5,426	87.9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가 가계지출

2011년 어가 가계지출은 29,90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이 중 소비지출이 23,524천원으로 2010년에 비해 7.0%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이 6,38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5.0% 감소하였다.

〈표 3-1-22〉 가계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가계지출	22,963	25,405	27,065	28,700	29,906	104.2
소비지출	18,263	20,051	20,656	21,982	23,524	107.0
비소비지출	4,700	5,354	6,409	6,719	6,382	95.0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3. 어가자산

2011년 어가의 평균자산은 287,65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은 9.5% 감소하였고, 유동자산은 14.8% 증가하였다.

〈표 3-1-23〉 어가자산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 가 자 산	225,992	221,066	257,095	258,872	287,650	111.1
고정자산 ¹⁾ (구성비)	153,483 (67.9)	161,720 (73.2)	186,102 (72.4)	178,364 (68.9)	195,232 (67.9)	109.5
유동자산 ²⁾ (구성비)	72,509 (32.1)	59,346 (26.8)	70,992 (27.6)	80,508 (31.1)	92,418 (32.1)	114.8

주 : 1)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4. 어가부채

2011년 어가부채는 가구당 37,86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하였다. 어업용 부채는 1.9% 증가하였으며, 어업용 이외 부채도 10.8% 증가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 자산 비율은 45.1%로 전년에 비해 3.4% 감소되었다. ☞

〈표 3-1-24〉 어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 가 부 채 (A)	34,407	33,587	35,864	35,640	37,862	106.2
어업용부채 (구성비)	16,690 (48.5)	18,207 (54.2)	19,038 (53.1)	18,277 (51.3)	18,631 (49.2)	101.9
어업용이외부채 (구성비)	17,717 (51.5)	15,380 (45.8)	16,826 (46.9)	17,363 (48.7)	19,231 (50.8)	110.8
당좌자산(B)	64,341	52,782	63,648	73,560	83,867	114.0
단기상환능력[(A/B)×100]	53.5	63.6	56.3	48.5	45.1	-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자료 : 통계청, 2011 어업기본통계조사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

■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경남

2011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10년보다 4.6% 증가한 3,256천톤으로 나타났다. 연근해 어업은 수온상승으로 멸치,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이 연근해어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어획실적이 8.9% 증가하였으며, 천해양식어업은 김·다시마 등 해조류와 굴, 홍합 등 패류의 작황 호조로 전년에 비해 9.1%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금액은 전년(7조 4,257억원)보다 8.7% 증가한 8조 729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1〉 어업별 생산현황

(단위: 천톤, 억원)

구분	연도	2005		2010		2011		증감(2011/2010)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합	계	2,714	50,493	3,112	74,257	3,256	80,729	4.6	8.7
	연근해어업	1,097	27,060	1,134	39,117	1,235	44,441	8.9	13.6
	양식어업	1,041	13,484	1,355	18,156	1,478	17,842	9.1	△1.7
	원양어업	552	8,192	592	13,645	511	14,670	△13.7	7.5
	내수면어업	24	1,757	31	3,338	32	3,775	3.2	13.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2년

2. 연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2011년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1,235천톤으로 2010년보다 8.9% 증가하였으며, 생산금액도 4조 4,441억원으로 전년보다 13.6% 증가하였다.

전년에 비해 4.8%, 해조류는 1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5.4%가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패류는 72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0.0%, 갑각류는 102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5.6%가 각각 감소하였다.

〈표 3-2-2〉 부류별 생산현황

(단위: 천톤)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 (2011/2010)		
합	계	1,152	1,286	1,227	1,134	1,235	8.9		
어	류	762	878	796	736	843	14.5		
패	류	74	82	90	80	72	△10.0		
갑	각	류	85	88	100	108	102	△5.6	
연	체	동	물	206	216	223	188	197	4.8
해	조	류	18	14	11	13	15	15.4	
기타	수산물	7	8	7	8	7	△12.5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2년

주요 어종별로 살펴보면, 멸치(293천톤, 17.3%), 오징어(172천톤, 7.9%), 고등어(139천톤, 47.1%), 참조기(59천톤, 85.6%)는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갈치(33천톤, △44.1%), 삼치(29천톤, △18.2%), 꽃게(27천톤, △19.9%) 등은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 (2011/2010)
멸치류	221.1	261.5	203.7	249.6	292.7	17.3
고등어류	143.8	190.5	175.3	94.3	138.7	47.1
갈치	66.0	72.3	85.5	59.2	33.1	△44.1
강달리류	13.8	11.0	12.1	5.0	14.0	180.0
전갱이류	19.1	22.8	22.1	19.3	42.9	122.3
참조기	34.2	33.2	34.0	31.9	59.2	85.6
삼치류	42.2	40.8	36.8	35.8	29.3	△18.2
청어	28.3	45.5	37.5	25.0	23.4	△6.4
오징어류	174.5	186.2	189.2	159.1	171.6	7.9
문어	12.0	11.8	15.4	10.8	10.4	△3.7
붉은대게	25.4	28.3	30.0	30.7	32.5	5.9
젓새우	12.6	14.9	18.9	18.9	20.7	9.5
꽃게	13.6	17.8	33.2	33.2	26.6	△19.9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012년

■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4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hook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 청어리, 전갱이, 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선망어업은 2011년에 2010년에 급감했던 고등어류의 생산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2010년에 비해 36.6% 증가한 219,109톤을 생산하였다.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과 2척으로 조

업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된다. 제주근해와 서해중부해역에서 주로 갈치, 가자미, 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특히,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은 멸치 어획량이 전년(3,566톤)에 비해 240.1%(12,128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72,268톤으로 전년(64,327톤) 보다 12.3% 증가하였다.

■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 가자미, 도루묵, 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 아귀, 강달이, 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된다.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생산량은 멸치, 오징어, 아귀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40,844톤)보다 11.4% 증가한 45,482톤을 생산하였다.

■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 갈치, 복어 등을 주로 어획한다.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어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 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의 2011년 오징어 생산량은 41,205톤으로 전년(41,677톤)보다 1.1%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갈치의 생산량은 1,566톤으로 전년(2,169톤)에 비해 38.5%(603톤) 감소하였다.

■ 연근해안강망어업

연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 조기, 멸치, 병어, 아귀, 꽃게, 젓새우 등을 어획하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생산량은 멸치, 아귀, 참조기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78,492톤)보다 1.0% 소폭 증가한 79,293톤을 기록하였다.

■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 2척을 비롯하여 어탐선, 가공선, 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뤄,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생산량은 전년(144,762톤)보다 2.4% 증가한 148,164톤을 기록하였다.

■ 연근해자망어업

연근해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 멸치, 가자미, 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며,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생산량은 참조기, 병어 등의 어획 증가로 전년(131,451톤)보다 5.7% 증가한 138,937톤을 기록하였다.

■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6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 갈치, 병어, 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

가자미, 도루묵, 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으로 구분된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보인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구 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인 오징어의 2011년 어획량은 107,584톤으로 전년(87,086톤)보다 23.6% 증가하였다.

■ 연근해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서해·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규모가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근해장어통발, 연근해통발(어류·게류·고동류), 근해문어단지로 구분된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봉장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2011년 생산량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2008년 이전의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해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2011년에는 73,021톤을 생산하여 전년(72,437톤)보다 0.8% 증가하였다.

■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은 동해·서해·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은 갈치, 옥돔, 아귀, 복어, 가자미, 장어, 불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그물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대구, 붕장어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15,277톤)보다 9.3% 증가한 16,696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전 수준의 생산량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1,152,299	1,284,890	1,226,966	1,133,721	1,235,489	9.0
대	형 선 망	194,093	234,525	241,052	160,409	219,109	36.6
	대형기선저인망	76,290	65,159	63,737	64,327	72,268	12.3
중	형 기 저	28,996	34,979	36,922	40,844	45,482	11.4
근	해 채 낚 기	62,657	61,343	60,478	46,147	45,073	△2.3
안	강 망	72,553	76,278	74,197	78,492	79,293	1.0
권	현 망	108,934	150,394	116,464	157,720	154,055	△2.3
자	망	114,025	117,473	135,038	131,451	138,937	5.7
근	해 트 롤	99,009	106,219	119,578	99,620	118,443	18.9
통	발 어 업	75,043	68,727	70,930	72,437	73,021	0.8
연	승 어 업	16,975	24,510	16,614	15,277	16,696	9.3
마	을 · 구획어업	87,470	100,664	82,237	76,445	85,103	11.3
기	타	216,254	244,619	209,719	189,367	188,009	△0.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어업생산통계

3. 양식어업

■ 양식산업과 사무관 장묘인

양식수산물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천해양식어업은 2010년 태풍(곤파스) 및 겨울철 동사 등으로 인한 출하가능 물량 부족,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류(조피볼락, 참돔)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해조류(김, 미역) 및 패류(굴, 홍합) 등의 양식작황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2010년에 비해 9.0% 증가한 1,478천톤으로 나타났다.

어종별 생산량은 넙치가 40,805톤으로 2.8%를 차지하며, 조피볼락(우럭)은 17,338톤(1.2%) 생산되었다. 패류양식의 경우 홍합, 바지락 등의 생산량 증가로 2011년에는 전년 356천톤보다 9.4%(33천톤) 증가한 389천톤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굴이 281천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72.2%를 점유하였으며, 그 외 홍합(71천톤), 바지락(26천톤), 전복(7천톤)의 순이었다.

미역과 김, 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2010년(902천톤) 대비 10.0%(91천톤)가 증가한 992천톤을 생산하였다. 이 중 미역이 394천톤으로 39.7%를 차지하였고, 김은 31.9%인 317천톤, 다시마가 24.9%인 247천톤을 생산하였다. 기타 톳, 파래, 청각 등은 전년 31천톤보다 12.6% 증가한 35천톤이 생산되었다. 한편, 기타 수산동물양식은 우렁쟁이, 미더덕, 오만둥이, 흰다리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18천톤) 대비 35.0% 증가한 24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0/2011
합	계	1,259,275	1,385,804	1,381,003	1,313,355	1,355,000	1,477,546	9.0
어류	소 계	91,123	97,663	99,006	109,516	80,110	72,449	-9.6
	넙 치	43,852	41,171	46,432	54,674	40,925	40,805	-0.3
	조피볼락	27,517	35,564	32,992	33,020	20,918	17,338	-17.1
	기 타	19,754	20,928	19,582	21,822	18,267	14,306	-21.7
패류	소 계	391,060	478,646	343,704	326,544	355,699	389,159	9.4
	굴	283,296	321,276	249,976	240,911	267,776	281,022	4.9
	홍 합	81,617	98,121	67,442	55,035	54,440	70,554	29.6
	바 지 락	14,327	18,819	15,541	17,905	23,430	25,862	10.4
	전 복	3,050	4,350	5,146	6,207	6,228	6,779	8.8
	피 조 개	2,064	3,015	1,903	1,714	1,560	2,110	35.3
	기 타	6,706	37,415	3,696	4,772	2,265	2,832	25.0
해조류	소 계	764,914	792,953	921,024	858,659	901,672	992,283	10.0
	미 역	322,371	309,049	381,076	309,155	393,616	393,724	0.0
	다 시 마	201,919	250,049	285,221	306,183	241,322	246,701	2.2
	김	217,559	210,956	224,242	211,444	235,534	316,729	34.5
	기 타	23,065	22,851	30,485	31,877	31,200	35,129	12.6
기타 수산동물 ¹⁾	12,178	16,542	17,269	18,636	17,519	23,655	35.0	

주 : 1)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쉥이, 오만둥이, 미더덕, 흰다리새우 등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2년

4. 내수면어업

■ 자원환경과 사무관 김평전

2011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년 31천톤에 비해 4.2% 증가한 32천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 생산량이 10천톤 수준으로 전체의 31.9%, 양식어업생산량은 22천톤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특히 뱀장어는 종묘 채포량이 감소함에 따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톤)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6,760	29,180	30,071	30,982	32,270	1,288	4.2
[어로어업]		5,803	11,098	11,707	10,256	10,283	27	0.3
가 물 치		28	46	42	50	77	27	54.0
메 기		149	232	218	88	97	9	10.2
미 꾸 라 지		0	0	0	3	19	16	533.3
뱀 장 어		40	96	145	119	72	△47	△39.5
봉 어		1,295	2,447	2,561	2,655	2,710	55	2.1
잉 어		825	1,379	1,777	1,802	1,775	△27	△1.5
피 라 미		47	113	156	227	249	22	9.7
패류(재첩 등)		829	1,068	1,393	1,510	1,774	264	17.5
기 타		2,590	5,717	5,415	3,802	3,510	△292	△7.7
[양식어업]		20,957	18,082	18,364	20,726	21,987	1,261	6.1
가 물 치		285	187	259	233	282	49	21.0
민 물 돔		798	388	336	251	220	△31	△12.4
뱀 장 어		10,557	6,480	6,621	7,902	7,185	△717	△9.1
잉 어		269	492	224	200	142	△58	△29.0
향 어		800	1,028	929	1,169	1,434	265	22.7
송 어 류		2,882	2,780	2,737	2,652	3,014	362	13.7
기 타		5,366	6,727	7,258	8,319	9,710	1,391	16.7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2년

5. 원양어업

원양정책과 사무관 구도형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선박 보유척수 810척, 생산량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연안국 및 국제기구의 조업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선 및 생산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2011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511천톤으로 전년 592천톤에 비해 13.7%가 감소하였다. 어종별로는 참치류 생산량이 251천톤, 원양오징어 70천톤, 명태 49천톤, 꽁치 18천톤 등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참치의 경우 자원 감소와 어장 환경 변동에 따른 가다랑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오징어는 세계 최대 어장인 포클랜드 수역의 지속적인 어획 부진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명태는 100%, 꽁치 87.5%, 오징어 29.4%를 원양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톤, %)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712,832	666,182	611,950	592,116	510,624	86%
참치류		300,268	286,889	327,181	319,712	251,093	79%
명태		20,109	27,980	38,996	46,794	48,793	104%
오징어		223,338	181,780	84,652	65,416	70,130	107%
꽁치		16,976	29,591	22,001	21,360	18,068	85%
기타		152,141	139,942	139,120	138,834	122,540	88%

자료: 농림수산물부 2011 원양산업통계연보, 2012년

제2절 국내수산물 수출·수입

1. 수출

■ 수출진흥팀 서기관 김민욱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달러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 후 국내의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에 12억달러로 감소한 이래 2008년까지는 11억달러~14억달러 내외의 정체를 보여 왔으나, 2011년에는 23억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다. 2011년에 수출실적

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참치, 오징어, 김 등 주력품목의 수출호조에 기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51천톤 증가(8%)하였고, 금액도 510백만달러 증가(28%)하였다. 2011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0.4%로 전년과 동일하다.

〈표 3-2-8〉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총 수출	419,083	361,200	466,383	556,514	19.3
수산물 (구성비)	1,455 (0.3)	1,511 (0.4)	1,798 (0.4)	2,308 (0.4)	28.4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 품목별 수출현황

2011년 활어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치, 봉장어 등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0% 감소한 78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신선냉장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5% 증가한 228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또한 수출주력 품목인 냉동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 새우살 등의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269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표 3-2-9〉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달러, %)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1/20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52,214	1,511,230	792,045	1,798,162	686,715	2,307,798	△13.3	28.3
활 어	6,686	71,624	6,471	85,641	5,915	77,965	△8.6	△9.0
신선·냉장	30,744	174,345	30,129	192,678	26,138	228,235	△13.2	18.5
냉 동	499,151	897,662	608,826	1,074,204	417,187	1,269,014	△31.5	18.1
기 타	115,633	367,599	146,619	445,639	237,475	732,584	63.8	70.7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12년

■ 국가별 수출현황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3.0%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09년에 이어 2011년에 제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년에 비하여 수출이 다소 증가(27.2%)하여 제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약 100% 증가율을 보였으며, 더불어 일본,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호주, 스페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22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43.0%, 중국 20.1%, 미국 7.8%, 태국 7.5%, 뉴질랜드 4.0% 등으로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0〉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1,454,635	1,511,230	1,798,162	2,307,798	28.3
일	본	687,471	734,134	859,483	993,426	15.6
미	국	114,799	128,885	142,166	180,866	27.2
중	국	193,461	145,711	231,223	464,642	100.9
태	국	122,943	127,733	126,824	173,433	36.8
뉴	질	60,623	70,461	71,915	92,707	28.9
스	페	40,474	41,437	55,491	54,767	△1.3
대	만	18,734	18,208	22,314	26,516	18.8
홍	콩	9,546	12,963	27,980	31,274	11.8
이	탈	25,247	23,231	34,331	15,036	△56.2
러	시	7,069	4,666	6,203	5,395	△13.0
캐	나	8,848	11,818	15,383	17,194	11.8
멕	시	11,937	1,353	5,831	5,935	1.8
인	도	11,080	13,551	9,284	8,107	△12.7
베	트	19,320	22,407	32,009	61,454	92.0
기	타	123,083	154,672	157,725	177,048	12.3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2008년부터 소금이 수산물로 분류됨), 2012년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1,454,635	1,511,230	1,798,162	2,307,798	28.3
참	치	293,189	314,373	374,354	393,661	5.2
	김	75,313	81,507	105,197	161,494	53.5
	굴	46,260	42,247	66,057	81,683	23.7
넙	치	43,369	51,812	70,657	79,372	0.7
오	징 어	126,536	108,052	114,762	180,946	57.7
	캐비아(대용)	16,691	24,526	30,397	32,046	5.4
붕	장 어	44,168	39,382	42,105	55,264	31.3
계	살	43,484	41,986	43,054	54,172	25.8
	툰	36,379	28,904	29,622	31,886	7.6
미	역	20,584	16,811	19,039	40,761	114.1
한	천	10,261	8,004	9,279	11,825	21.6
바	지 락	19,219	34,763	42,960	37,989	△11.6
전	복	20,997	33,751	36,820	52,351	42.2
삼	치	45,464	45,361	54,635	67,630	23.8
피	조 개	15,103	11,832	14,067	20,580	46.3
새	우	11,407	12,072	10,120	16,045	58.6
이	빨 고 기	15,808	23,437	28,505	46,651	0.0
전	갱 이	29,242	21,117	24,825	23,076	△7.0
	돔	14,155	17,551	20,242	27,259	34.7
	새꼬리민태	16,689	13,967	20,624	21,872	6.1
기	타	510,317	539,775	640,841	871,235	36.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2. 수입

■ 원양정책과 사무관 이병웅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증가, 1997년 수입자유화의 영향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이래 최근 7년간 연평균 182백만달러씩 수

입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1년에는 국내경기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21.2%(734백만달러) 늘어난 4,192백만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국가 전체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율은 큰 변화 없이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12〉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총 수입	435,274	323,084	425,212	524,413	123.3
수산물 (구성비)	3,097 (0.7)	2,895 (0.9)	3,458 (0.8)	4,192 (0.8)	121.2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 품목별 수입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3%를 점유하는 냉동품은 대체로 증가경향을 보여 왔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652백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활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269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신선·냉장 수산물도 11.3% 증가하였다.

제품유형별 수입액 점유율을 보면, 냉동품(63%), 기타수산물(9%), 조제품(9%) 신선·냉장(8%), 활어(6%), 건조(3%)등의 순이다.

〈표 3-2-13〉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년
합 계	3,097,450	2,895,495	3,458,400	4,191,944	21.2
활 어	285,320	171,377	250,683	268,571	7.1
신선·냉장	313,504	284,904	302,771	336,996	11.3
냉 동	1,827,640	1,788,739	2,084,306	2,651,802	27.2
기 타	670,986	650,475	820,640	934,574	13.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 국가별 수입현황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29.8%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러시아, 베트남, 일본 순이다. 2011년 국가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국, 칠레, 노르웨이에서 수입액이 각각 14.0%, 33.8%, 28.2%, 23.1%, 85.3%, 42.9% 증가한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으로 25.49% 감소하였다.

〈표 3-2-14〉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년
합	계	3,097,450	2,895,495	3,458,400	4,191,944	21.2
중	국	1,018,678	854,256	1,096,264	1,250,436	14.0
러	시	384,434	435,537	495,267	662,758	33.8
일	본	224,990	195,063	226,204	168,543	△25.5
베	트	305,841	305,151	376,338	482,607	28.2
미	국	140,273	123,453	126,179	155,412	23.2
태	국	113,910	85,141	100,957	135,111	33.8
대	만	85,479	88,136	96,041	128,598	33.9
칠	레	77,369	81,407	76,957	142,581	85.3
캐	나	46,431	47,045	52,950	67,852	28.1
노	르	53,401	69,571	97,108	138,833	43.0
페	루	46,316	40,259	41,514	71,556	72.4
인	도	76,445	67,470	63,970	69,815	9.1
인	디	24,524	32,693	48,581	44,924	△7.5
필	리	19,429	15,222	17,430	19,561	12.2
영	국	21,705	18,227	18,937	23,309	23.1
기	타	458,225	436,864	493,703	630,048	27.6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국가별 수입액 점유율은 중국(29.8%)에 이어, 러시아 15.8%, 베트남 11.5%, 일본 4.0%, 미국 3.7%로 상위 5개국의 수입액 합계가 약 64.8%를 기록하여 전년의 67.0%에 비해 소폭 줄었다. ↻

〈표 3-2-15〉 어종별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합	계	3,097,450	2,895,495	3,458,400	4,191,944	21.2
명	태	326,488	330,383	416,233	397,926	△4.4
새	우	211,255	188,273	217,184	271,530	25.0
조	기	143,654	110,780	150,927	162,631	7.8
갈	치	89,813	98,202	107,986	110,641	2.5
오	징 어	75,751	62,822	90,063	142,476	58.2
꽃	게	66,222	54,269	45,626	36,436	△20.1
낙	지	128,506	118,480	154,129	194,527	26.2
어	란	49,811	63,429	67,606	112,544	66.5
아	귀	74,740	57,597	82,664	100,045	21.0
새	우 살	87,033	94,293	106,037	141,224	33.2
참	치	115,294	111,307	89,278	139,500	56.3
	돔	66,558	50,008	46,800	48,309	3.2
연	어	63,693	67,317	68,917	122,583	77.9
문	어	4,362	9,339	9,556	11,111	16.3
	계	39,243	41,791	40,384	43,516	7.8
캐	비 아	25,638	14,934	19,003	19,521	2.7
고	등 어	34,663	45,431	72,910	124,561	70.8
공	치	36,517	46,198	46,178	62,678	35.7
쥐	치	37,963	41,912	42,168	57,419	36.2
대	계	33,627	29,702	23,213	41,951	80.7
기	타	1,386,619	1,259,028	1,600,863	1,850,815	15.6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12년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지원

1. 수 급

2011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동향은 수입 감소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1.0% 감소한 5,918천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3,813천톤을 소비하였고, 1,466천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639톤은 2012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1,235천톤, 천해양식어업 1,476천톤, 원양어업에서 511천톤 등 3,256천톤이 생산되었다. 국내소비는 5.2% 증가했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059천톤과 전년 재고량 603천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3-2-16〉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천톤, %)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생 산 수 입 전 년 재 고	2,714 2,557 531	3,032 2,646 512	3,275 2,604 575	3,360 2,135 618	3,182 2,186 567	3,111 2,339 528
합 계			5,802	6,190	6,454	6,113	5,935	5,978	5,918
수요	국 내 소 비		4,169	4,568	4,625	4,280	4,071	3,624	3,813
	수 출		1,121	1,047	1,211	1,266	1,336	1,751	1,466
	차 년 이 월		512	575	618	567	528	603	639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2. 소 비

2010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1.3kg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48.9	49.5	56.6	56.5	54.9	49.8	51.3
어	패 류	41.1	39.9	43.5	42.1	39.1	35.4	36.6
해	조 류	7.8	9.6	13.0	14.4	15.8	14.4	14.7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1년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인당 1일,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46.66	45.43	48.14	48.46	46.71	46.46	47.32
축	산 물	26.61	26.29	27.39	28.59	28.30	29.94	30.17
어	패 류 (점유율)	20.05 (43.0)	19.14 (42.1)	20.75 (43.1)	19.86 (41.0)	18.41 (39.4)	16.52 (35.6)	17.15 (36.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1년

3. 가 격

2011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어업의 조업이 순조로워 전반적으로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갈치, 오징어 등의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소비자 물가		83.8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수산식품 소비자물가		74.6	75.7	76.2	76.3	80.5	89.9	100.0	108.5
신선어개류		74.2	76.2	77.1	75.8	80.0	88.3	100.0	108.7
해조류		76.8	78.5	81.0	83.5	91.8	97.9	100.0	107.1

주 : 2010년 대비 등락률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2012년

2011년 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의 경우 생산부진 및 소비 확대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 폭이 커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1. 어황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강수경

■ 해역별

2011년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평년에 비해 1~2℃ 낮은 수온이 지속되었으며, 동해남부 울기 연안 역에서는 5월 24일자로 냉수대 주의보가 발령되어 평년대비 약 20일 정도 빨리 냉수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동해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저수온의 영향으로 10월까지의 어황이 저조하였으나, 11월에 남하 회유하는 어군의 유입이 증가하여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봄철 복상하는 콩치를 대상으로 하는 콩치유자망어업은 작년에 감소하였던 콩치의 어획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자미류, 도루묵, 대구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남해에서는 대형선망과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다. 대형선망의 어황은 남해안의 수온이 가을 이후 회복됨으로서 고등어 어군의 내유량이 증가하여 평년비 증가하였다. 멸치어업은 멸치유자망의 경우 평년비 부진하였으며, 기선권현망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형트롤은 살오징어, 갈치류 및 멸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였으나 오징어의 어황부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어황을 기록하였으며,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참조기, 갈치를 주로 어획하였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망, 기선유자망, 저인망어업이 참조기, 갈치,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다소 증가하였다.

■ 어종별

고등어는 봄부터 여름철에 이르기까지 남해 해역의 저수온현상으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매우 저조 하였으나, 9월 들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평년비 순조로웠다. 10월에도 고등어 어획은 전년비 순조, 평년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1월의 고등어 어획은 평년수준 이하로 저조하였으나, 12월에는 동해남부와 제주도 주변에서 밀도높은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획량이 급증하였다.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 어획량 집계 이래 가장 많이 어획되었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 및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평년비 50% 수준이었다. 말쥐치의 어획량은 2009년 가을부터 증가하여 2010년까지 높은 어획량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은 전년 및 평년비 23%로 어획이 저조하였다.

갈치의 경우 내유량의 감소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평년비 저조하였다. 참조기는 제주도 서방 및 서해남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비 매우 높은 어황을 나타냈다. 살오징어는 10월까지의 어획량이 저조하였으나, 11월에 접어들면서 남해 회유하는 어군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평년수준의 어획을 유지하였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도루묵은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명태는 5월 강원도 연안자망어선에서 760kg이 어획되었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꽁치의 어획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웠다. 대구의 어획량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접안하는 10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2. 자원동향

■ 연근해 어업자원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서영일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 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

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눈볼대, 물가자미, 붕장어, 병어 등 17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12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소라,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등 11종에 대한 자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붉은대게, 꽃게, 참홍어의 자원동향은 최근 증가경향에, 키조개, 개조개, 대게, 소라 자원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었으며,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은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종별 자원수준은 고등어와 오징어는 높은 자원수준에 있으며, 키조개, 개조개, 도루묵, 참홍어는 낮은 자원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양 어업자원

■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양수산연구사 최석관

원양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주요 종인 다랑어의 자원상태를 보면, 눈다랑어는 모든 해역에서 남획된 상태는 아니지만 태평양해역에서 과도어획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다랑어도 모든 해역에서 남획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서양해역에서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다랑어는 모든 해역에서 안전수준이었다. 저층어업 관련 어종의 자원상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37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회의 및 관련 회의에 국별보고서 및 통계자료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국제옵서버 33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11년에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14명이 총 20척 14회 승선 조사하였으며, 대상 어업은 남빙양 저연승 1회 및 트롤 1회, 인도양 저연승 2회 및 트롤 1회, 남동대서양 트롤 3회, 남서대서양 저연승 1회 및 트롤 3회 그리고 오징어채낚기 1회, 대서양 다랑어연승 1척이었다. 국제옵서버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여 어업대상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 연안어장의 오염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김영숙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 외해와의 해수교환이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해안은 수심이 낮으며 반폐쇄적인 내만들이 산재하고 있어 해수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생산성이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양식어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 서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은 대규모 임해공업단지와 도시가 위치하여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조간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생산성 역시 높은 해역이나,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상 담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지속적인 연안개발로 해양환경의 변화가 큰 해역이다. 2011년 조사한 해수 중 생태기반 수질평가지수(WQI)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수질) 상태를 평가하였다.

동해 연안은 영일만, 구룡포해역은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Ⅱ등급으로 ' 좋음' 상태로 양호한 수질 상태를 나타내었다.

남해 연안은 경남의 통영, 사천해역과 전남의 도암만 해역이 해수수질 기준 I등급으로 '아주 좋음', 경남의 거제, 전남의 여자만, 득량만, 가막만이 Ⅱ등급으로 ' 좋음', 부산 기장연안과 경남의 진주만, 고성만, 전남의 완도, 진도 해역은 Ⅲ등급으로 '보통'의 수질 상태를 보였다. 전남의 가막만은 Ⅳ등급, 경남의 진해만은 Ⅴ등급으로 각각 '나쁨' 과 '아주 나쁨'으로 평가되어 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해역으로 나타났다.

서해 연안의 전북 곰소만과 충남 가로림만이 Ⅱ등급으로 ' 좋음', 충남의 천수만은 I등급으로 '아주 좋음'으로 나타나 서해연안의 주요만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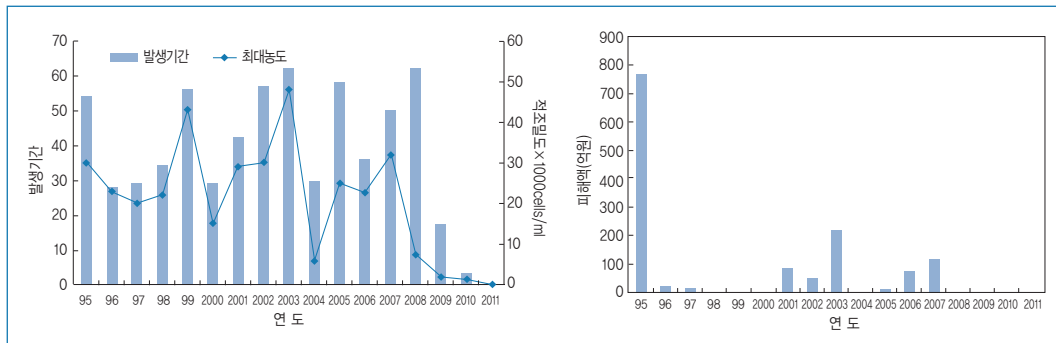
■ 적조 발생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임월애

2011년 적조발생은 총 6건으로 전부 무해성 적조만 발생하였으며, 유해성 코클로디니움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해성 적조는 5월 거제에서 와편모조류인 스크립시엘라(*Scrippsiella trochoidea*)가 적조를 일으켰으며, 10월 6일 거제 고현만에서 와편모조류인 아카시오(*Akashiwo sanguinea*)가 적조를 일으킨 이후 진해만, 한산·거제만 및 가덕도 해역까지 확산되어 1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3-2-1〉 유해성 적조 발생기간과 농도(왼쪽) 및 피해액(오른쪽)



1995년 이후 매년 유해성 적조가 고밀도, 광범위, 장기간 발생하여 대규모 수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08년 이후 유해성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이 없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유해성 적조발생 양상이 저밀도, 국지적, 단기간 발생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다른 적조생물의 출현, 냉수대, 가뭄, 바람 등 해양환경의 복합적 작용으로 적조생물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남해안 광역해역에 대한 코클로디니움 조사결과 첫째, 코클로디니움 외해유입 유영세포가 감소(2011년: 0.3cells/mL이하 출현, 2010년: 40cells/mL)하였고, 둘째, 태풍 및 강우의 영향으로 연안의 저염분 해양환경(31psu 내외, 코클로디니움 호적 염분 33psu 이상)이 형성되었으며, 셋째, 무해성 적조생물인 규조류와의 종간경쟁으로 코클로디니움의 성장이 억제되어 유해성 적조가 미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파리의 대량 출현

■ 국립수산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한창훈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는 2011년 5월에 동중국해 이서도 부근에서 최초 출현 후 6월에 전국 연안에서 산발적으로 출현하였으며, 12월에 소멸하는 양상을 보

였다. 2011년 출현량은 2010년과 동일하게 0.1개체/10,000m로 매우 낮았으며, 수산업 피해도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안성 저독성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aurita)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6월부터 8월 사이 시화호, 마산만, 득량만, 원문만, 고현만 등 특정해역에 밀집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 국제기구과 사무관 정현정

1. 세계 수산물 생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10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68,893천톤으로, 2009년의 162,847천톤보다 6,046천톤(3.7%)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63,492천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11,603천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9,348천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페루, 러시아, 미얀마, 칠레, 대한민국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의 3,200천톤보다 76천톤(2.4%)이 감소한 3,124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1.8%를 점유하며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0〉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톤, %)

순 위	국 가	2008	2009	2010	2010/2009
1	중 국	57,826	50,472	63,492	126
2	인도네시아	8,794	9,798	11,603	118
3	인 도	7,583	7,845	9,348	119
4	일 본	5,541	5,194	5,292	102
5	필 리 핀	4,968	5,079	5,158	102
6	베 트 남	4,584	4,833	5,128	106
7	미 국	4,855	4,710	4,874	103
8	페 루	7,419	6,964	4,354	63
9	러 시 아	3,510	3,950	4,197	106
10	미 안 마	3,169	3,545	3,913	110
11	칠 레	4,809	3,703	3,762	102
12	대 한 민 국	3,351	3,200	3,124	98
세계 총 생산량		159,113	162,847	168,893	104
비 율	한국 / 세계	2.1	2.0	1.8	

자료 : FAO yearbook 2010 : World fisheries production, by capture and aquaculture, by country (2010)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세계 어업과 양식 총생산량(해조류 제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억4,850만톤에 달하였다. 어업생산이 2001년 이후로 9천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양식생산은 6.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3,460만톤, 2010년에는 5,990만톤을 기록하였다. 2010년 양식생산액은 1,194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멸치류이나 전년 대비 39%가 감소했다.(2009년에 690만톤, 2010년 420톤). 그 다음으로 많이 어획된 어종은 알래스카 명태, 가다랑어, 대서양 청어, 고등어 순이다. 대서양 대구는 주요 조업종들 중 10위를 차지했는데, 이 순위는 1998년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대구목(대구, 남방대구, 해덕)은 지난 3년간 어획량이 약 200만톤 정도 줄면서 크게 감소추세였는데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주요 상업종으로 조업되는 어종 중 다랑어와 새우는 생산량이 안정적이며, 생산량의 변화가 큰 두종류는 2009년에 감소한 후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세계 총 어업생산량은 약 1.1% 감소하였는데, 이는 멸치류의 어업생산량이 270만톤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멸치류를 제외한 다른 해면 종들은 90만톤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2010년 내

수면어업 총 생산량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나온 통계치가 근사치이긴 하지만 1,120만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양식업은 1980년대 10.8%, 1990년대 9.5%로 연 평균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6.3%로 완화된 성장률을 보였다.

2010년 세계 양식생산물 중 내수면 어류는 56.4%(3,370만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동물 23.6%(1,420만톤), 갑각류 9.6%(570만톤), 회유성어류 6.0%(360만톤), 해면어류 3.1%(180만톤), 기타 수생동물 1.4%(814.3천톤)를 차지했다. 잉어류는 전체 양식생산량 중 40.5%를 차지했다. 단일 종으로는 초어(Grass carp)가 430만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흰다리새우는 113억달러로 가장 높은 생산액을 차지했다.

2010년 해조류 등 수산식물의 생산은 1,990만톤으로, 이 중 1,900만톤(95.5%)이 양식으로 생산되었으며, 2010년 양식 조류 중 다시마(Japanese kelp)가 510만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2. 세계 수산물 교역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9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95,961백만달러로 2008년 수출액 101,897백만달러에 비해 5.8%가 감소하였다. 나라별 수출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1.3% 증가한 10,246백만달러로 1위, 노르웨이가 7,073백만달러로 2위, 태국이 6,236백만달러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 1,287백만달러 보다 4.8%가 증가한 1,349백만달러로 24위에 머물렀다.

〈표 3-2-21〉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7	2008	2009	2009/2008
1	중 국	9,251	10,114	10,246	101
2	노 르 웨 이	6,228	6,937	7,073	102
3	태 국	5,709	6,532	6,236	95
4	베 트 남	3,784	4,550	4,301	95
5	미 국	4,437	4,463	4,145	93
6	덴 마 크	4,128	4,601	3,981	87
7	칠 레	3,677	3,931	3,606	92
8	캐 나 다	3,712	3,706	3,240	87
9	스 페 인	3,231	3,465	3,143	91
10	네 덜 란 드	3,281	3,394	3,138	92
11	독 일	2,275	2,472	2,373	96
12	러 시 아	2,364	2,619	2,317	88
13	인 도 네 시 아	2,101	2,473	2,247	91
14	페 루	1,962	2,423	2,207	91
15	영 국	2,202	2,121	2,119	100
16	스 웨 덴	1,657	1,902	2,038	107
17	인 도	1,670	1,624	2,015	124
18	아 이 슬 란 드	2,028	2,089	1,726	83
19	에 과 도 르	1,399	1,755	1,611	92
20	프 랑 스	1,927	2,011	1,598	79
:					
24	대 한 민 국	1,088	1,287	1,349	105
총 수출량		93,500	101,897	95,961	94
비율	한 국 / 세 계	1.2	1.3	1.4	

자료 : FAO yearbook 2010 :international trade in fishery commodities by principal importers and exporters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99,729백만달러로서 전년에 비하여 7.7%가 감소하였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3,858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7.3% 감소하여 1위, 일본 13,258백만달러로 2위, 스페인이 5,908백만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2,928백만달러에서 2009년에는 2,694백만달러로 8% 감소하여 세계 11위를 차지하였다. ☞

〈표 3-2-22〉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7	2008	2009	2009/2008
1	미 국	14,440	14,952	13,858	93
2	일 본	13,184	14,947	13,258	89
3	스 페 인	6,980	7,101	5,908	83
4	프 랑 스	5,366	5,836	5,579	96
5	이 탈 리 아	5,144	5,453	5,060	93
6	중 국	4,512	5,143	4,976	97
7	독 일	4,279	4,502	4,571	102
8	영 국	4,140	4,222	3,594	85
9	네 델 란 드	2,615	2,920	2,774	95
10	덴 마 크	2,887	3,110	2,735	88
11	대 한 민 국	3,090	2,928	2,694	92
12	스 웨 덴	2,531	2,765	2,617	95
총 수입량		98,903	108,034	99,729	92
비율	한국/세계	2.6	2.6	2.6	

자료 : FAO yearbook 2010 : International trade in fishery commodities by principal importers and exporters

제4편 2011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제1장 총론

■ 수산정책과 사무관 지정훈

■ 서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물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96.11)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98.11)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출범한 WTO-DDA 협상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7% 수준인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도 DDA 협상결과 약 6%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EU,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와 맞물려 수산물 관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교역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배출 경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탄소 감축 의무가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업은 어선을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유류소비가 많아 탄소경감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

제유가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도 그 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 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 등에 힘입어 2006년부터 300백만톤 수준을 회복하여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온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고수온 피해 등으로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반면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친환경 산업으로 성장토록 하고 수출증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수산분야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에는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 및 수산물 자급률·자주율 목표 설정 및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수산분야 10대 전략 품목 육성 추진

수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 품목(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해외수출 포함)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산시장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대책’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유럽시장 확대, 중국의 폭발적 수산물 소비 증가 및 대일본 수출 기회 증가 등 대외적 여건 변화가 우리 수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0대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자리 매김하는 한편 우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자본·기술·인력이 수산업에 들어 올 여건을 조성하고 고품질·안전·위생의 대한민국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세부 9대 추진과제로 ① 10대 전략품목 육성 ② 양식어장 진입규제 완화 및 친환경 양식 실현 ③ 정예인력 확충 ④ 양식시설 현대화 및 위험관리체계 강화 ⑤ R&D 시스템 구축 ⑥ 마케팅조직화 및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⑦ 고효율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⑧ 해외양식 진출지원 ⑨ 수출 홍보 및 시장확대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 수산물 자급률·자주율 목표 설정 및 제고 방안 추진

우리나라의 수산물 자급률은 2000년 이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6년에는 69%까지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 83%로 일시적인 반등을 하였는데 그 원인은 경제불황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 속도는 지난 10년간 17%로 국내 수산물 생산량 증대 속도인 11%보다 빨라 현 추세라면 수산물 자급률은 2020년 72%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공급과 늘어나는 수입수산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2015년 78%, 2020년에는 83%로 설정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식량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을 포함하는 '수산 자주율 지표'도 도입하여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자주율 목표는 2015년 84%, 2020년에는 90%로 설정하였다.

향후 자급률 및 자주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우리가 지닌 세계적인 양식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10대 전략품목 등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양식 생산량 180만톤(11년 148만톤) 달성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근해 수산자원량 1,000만톤(10년 831만톤) 조성을 목표로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조성 및 바다목장화 사업추진을 통한 자원조성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한·중·일 수산자원관리 공동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원이용의 합리화·최적화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10대 전략 품종육성 및 자급률 상향대책을 반영 및 연계하여 수산분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항, 사무관 주두만 · 김덕균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산업 여건은 동북아 EEZ 체제 개편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전통적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과잉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사업 노력에 힘입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수산자원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어획이 계속될 경우에는 회복세가 둔화되고 수산자원의 감소도 우려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정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회복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 조성, 자원회복 및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대상자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회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수산자원회복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09.4.22, 시행일 '10.4.23)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10.4.23)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10.5.31)을 제정하였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특),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하고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을 추가하고, 2009년에는 갯장어(남해), 갈치(남해) 등 2종을 추가하여 총 12종으로 대상어종을 확대하였다.

한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기초로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11년 TAC 사업은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17천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약 1,124여 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였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

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배분량의 할당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서 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1년까지 판매장소를 117개소로 확대하였고,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도에는 TAC 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 제도의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4-2-1〉 2011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고
합 계		425,32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60,000	2011. 1. 1~2011. 12. 31
	전 갱 이	21,000	2011. 1. 1~2011. 12. 31
근 해 통 발	붉은 대 게	32,000	2011. 1. 1~2011. 12. 31
근해통발·근해자망	대 계	1,620	2010. 11. 1~2011. 12. 31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2,400	2011. 1. 1~2011. 12. 31
	키 조 개	2,700	2011. 1. 1~2011. 12. 31
마 을 어 업	제 주 소 라	2,570	2010. 9. 1~2011. 12. 31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 계	13,200	2011. 1. 1~2011. 12. 31
근해채낚기·대형선망 대형트롤·동해구트룰	오 징 어	188,100	2011. 1. 1~2011. 12. 31
동해구기저·동해구트룰	도 루 목	1,500	2011. 1. 1~2011. 12. 31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	참 흥 어	230	2011. 1. 1~2011. 12. 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2012년

■ 바다목장 조성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2006년까지 총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에 완공되었다. 2001년 추진한 여수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완공되었다. 2013년까지 3개소(울진, 태안, 제주)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관광·레저를 접목한 해역별 테마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작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하여 2011년에는 174억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되는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10년부터 체험관 건립, 수중해양 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연안 시·군·구 68개소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50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 까지) 20개소, 2단계(12년~20년) 30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0년 17개소에서 2011년 강진, 여수, 경주, 거제 4개소가 신규사업지로 추가되어 총 21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 바다숲 조성

2009년부터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동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탄소 저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조류를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연안압반에 무절석회조류 등이 번식하여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하거나 생장을 저하시키는 갯녹음(백화현상) 발생 면적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연안 마을어장 압반지역 35,000ha에 대하여 갯녹음 발생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4년 6,954ha였던 갯녹음 발생면적이 2010년에는 14,317(7,363ha)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갯녹음 진행시 수산생물의 서식기반 붕괴로 어업생산성이 감소하고,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자 2011년까지 26개소에 1,986ha를 조성하였고, 2030년까지 35천ha의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4-2-2〉 바다숲 추진현황 및 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대상해역	추진실적				2012 예정	2020까지
		계	2009	2010	2011		
면 적	14,317	1,000	100	185	715	840	12,477
사업비	4,085	380	100	150	130	159	3,646

■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건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사업비 44,334백만원을 투입하여 약 3,133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약 17,725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 상태를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와 인공어초 시설가능구역의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ha)

구분	연도	1971~2010	2011	누 계
합	계	210,504	3,133	213,637
부	산	2,754	80	2,834
인	천	11,148	116	11,264
울	산	2,450	8	2,458
경	기	5,080	224	5,304
강	원	23,182	88	23,270
충	남	17,595	276	17,871
전	북	14,893	304	15,197
전	남	43,153	332	43,485
경	북	23,224	120	23,344
경	남	36,484	353	36,837
제	주	30,541	1,232	31,773

■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종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였으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2009년부터 56종(해면43종, 내수면 13종)으로 품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1단계('07년~'09년/넙치 등 4종)로 실시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결과 넙치 2.61배, 전복 2.97배, 볼락 3.8배, 다슬기 1.6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는 2010년

~2012년까지 계획으로 감성돔, 강도다리, 꽃게, 해삼을 대상으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종묘방류 효과조사 및 대상 품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기초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발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은 전문성이 강화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출범시켜(12.1.26) 수산자원을 보호·육성 및 연구·개발·보급 등의 기능을 더욱 체계화된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유어산업 육성

■ 자원환경과 사무관 홍근형

■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 선용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레저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 레저산업인 낚시 역시 그 향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약 573만명(민물낚시 378만명, 바다낚시 195만명)으로 추정되는 낚시 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 산업으로서 낚시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단위: 천명)

구분	계	1년에 한두 번	1년에 서너 번	1년에 대여섯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자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년)

낚시 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더불어 낚시 산업으로 인한 위험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로 인한 어획량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쓰다 남은 낚추,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낚시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다 꾸준히 낚시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2-5〉 낚시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구분	추정인구수(천 명) [A]	평균출조획수/년 [B]	총출조획수(천회) [C]	1회당조획량(kg) [D]	조획량(톤) [E]
잠재낚시인구	3,222	3.5	11,277	2.2	24,809
일반낚시인구	2,097	25	52,425		115,335
전문낚시인구	411	100	41,100		90,420
총 낚 시 인 구	5,730	128.5	104,802		230,564

자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년)

■ 추진내용 및 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연계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12.9.10)될 예정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잡을 수 없는 시기나 크기 등을 제한하였다.

■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 및 낚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낙시 문화의 조성 및 낙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낙시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 내수면 산업 육성

■ 자원환경과 사무관 김평전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양식 수산물의 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낙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4-2-6〉 내수면어업권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면허어업	82	75	61
허가어업	4,847	4,708	4,983
신고어업	3,454	3,674	3,905
합계	8,383	8,457	8,94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시설 지원, 토종종묘보급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11년에 3개도 15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소양호)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 청정자원 생태장조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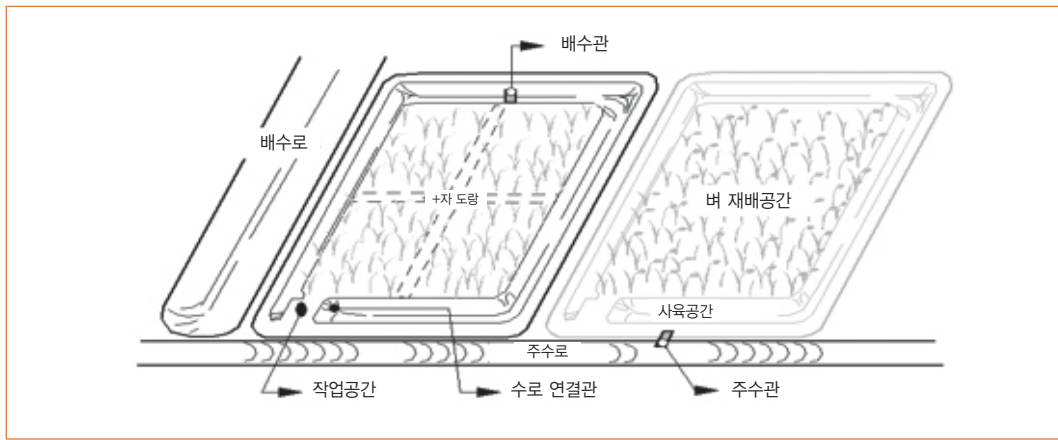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태교육이 가능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에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건립하여 수산자원의 중요성 제고와 자연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토종종묘 보급사업 추진

수입산 종묘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어류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가격우위를 점하고 양식어가에 저렴한 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식어류의 안정된 가격과 생산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어업인은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꾸라지 종묘생산을 위한 개발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참게, 붕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물고기를 키우면서 친환경농업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2-2〉 논생태 양식 개념도



2007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강·하천의 레저인구가 늘고, 내수면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수면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고품질의 양식어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민물고기의 멸종위기까지 초래하였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선호한 민물고기 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보양식인 민물고기 명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수산정책과 사무관 강거영

■ 추진배경 및 개요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소비도 증가하여 조리가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고급화·다양화·건강지향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FTA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수산가공품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보급 및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 확보는 물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국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자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106개소, 221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6개소, 21억원) 및 수산물 공동가공시설현대화(3개소, 19억원)등 총 115개소에 대해 국고 261억 38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소비자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11년 53.5억원 사업기간 '08년~'11년),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조성('11년

30억원 사업기간 '09년~'14년),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건립('11년 17.6억원 사업기간 '10년~'13년),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조성('11년 50억원 사업기간 '09년~'13년),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11년 10억원 사업기간 '09~'12년), 영광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11년 10억원 사업기간 '09~'14년) 및 영덕 로하스수산물식품거점단지('11년 2.5억원, 사업기간 '11~'13년) 등 총 7개소에 143억 6천 만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을 2010년 15개(중전 10개)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1년에 친환경 수산물을 약 19,231톤을 출하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성 벌교 꼬막, 완도전복, 기장미역, 장흥키조개, 완도넙치 등 11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4-2-7〉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 실적

(단위: 개, 톤)

구 분		인증실적			비 고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인증건수	수 산 물 ¹⁾	15	32	17	
	수산가공품 ²⁾	6	15	9	
인증업체	수 산 물	15	29	14	
	수산가공품	6	8	2	
인증품목	수 산 물	3	4	1	굴, 김, 미역, 톳
	수산가공품	3	3	-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출하실적	수 산 물	4,446	18,576	14,130	김 4,117톤, 미역 14,270톤
	수산가공품	-	656	656	

주: 1) 수산물(양식): 넙치, 무지개송어, 뽕장어, 굴, 홍합, 전복, 흰다리새우, 김, 미역, 톳, 다시마

2) 수산가공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표 4-2-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1호	2009. 2. 25	보성벌교꼬막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20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20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20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20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20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20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제8호	2010. 8. 20	완도김	완도김영어조합법인
제9호	20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제10호	2011. 1. 18	장흥김	(사)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제11호	2011. 5. 13	장흥매생이	(사)장흥정남진매생이생산자협회

아울러, 2012년 1월 1일부터 현행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인증표지를 '초록색 사각 표지(logo)'로 단일화하였으며,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수산물 가공업이 등록 및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일원화하여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의 확대 및 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발굴 등 수산물 인증·표시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수산물 수출 진흥

■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아시아권의 소비증가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등의 여건 하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 시켜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580억원을 투·융자하여 수출확대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원을 저리로 128개 업체에 융자하여 833백만달러의 우수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9회, 로드쇼 3회, 판촉전 1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체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광고 등을 위하여 4.5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62대의 기기 구입비 6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

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2012년까지 1,390억원을 투자목표로 2011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24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수출은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추진 및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반영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28.3% 증가한 2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1년 농림수산물 총수출은 76.9억달러이며 이중 수산물 수출은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금액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2년부터는 중화권·아세안 등 급증하는 수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 자원환경과 사무관 주두만

■ 추진배경 및 개요

연안생태계 및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1975년부터 경남·전남·충남 등 10개만(21개 시·군) 4,204km²(육지부 1,243, 해면부 2,625)에 해면과 인접한 육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30여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06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에 육지부 중 70.3%인 875km²를 해제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완화, 국가·지자체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표 4-2-9〉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현황(2011년)

(단위: km²)

구 분	계	해수면			내수면
		계	육 지	해 면	
지 정	4,185	3,849	1,263	2,586	336
존 치	3,231	2,895	1,236	2,526	33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존 개발위주의 정책방향이 환경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 규제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 자원환경과 사무관 김도순

■ 추진배경 및 개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정적 어업생산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장 및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시범사업 당시 63개소였으며,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시행 10년차인 2011년 참여공동체 수가 932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 단계로 도약하였다.

〈표 4-2-10〉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단위: 개소,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공동체(개소)	659	758	863	932
마을어업	341	391	438	465
양식어업	78	80	85	89
어선어업	115	135	156	175
복합어업	102	124	143	153
내수면어업	23	28	41	50
참여어업인(명)	50,728	56,100	60,902	63,860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217개소에 232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 공동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관리어업 분쟁 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 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여 2010년까지 27건의 분쟁을 해결, 자율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공동체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만의 지도·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컨설턴트로 하여금 공동체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지도자협의회 활동(2회),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권역별 광역워크숍(6회),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 교육, 우수공동체 견학 및 미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유럽 및 일본)의 어촌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근 3개년('08년~'10년)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28백만원, 2009년 1,189백만원, 2010년 1,226백만원으로 소득이 매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자원 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가, 일정크기 이상 채포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및 공동판매 등으로 어가소득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바다 낚시터, 체험어장 운영 및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축제 행사 등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어업의 소득도 증대하였다.

〈표 4-2-11〉 2011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지역	지역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932	25	43	20	32	82	17	82	44	271	91	177	48	
육성사업	지원수	1,222	31	45	30	39	137	22	95	84	329	131	203	76	
	사업비	1,452.9	33.4	53.2	30.3	47.9	152.5	15.8	136.1	106.8	398.6	168.1	234.1	76.1	

■ 평가 및 향후계획

정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참여어업인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분쟁도 스스로 조정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숙단계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마을어업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인의 약 4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선어업이나 복합어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을 전체 어촌계의 60%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3.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

■ 수산정책과 사무관 하두식

■ 추진배경 및 개요

수협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 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305억원의 무이자융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부실규모(00년)에 비해 과소한 자금지원과 수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실이 증가(01년)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원인과 규모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체 97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실사('02.11~'03.4)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순자본 비율이 0% 미만인 61개 조합을 예비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중 자체 회생의지를 보인 10개 조합과 상호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전남서부수협을 제외한 50개 조합에 대해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47개 조합과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체결한 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3개 조합에는 통폐합을 위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부실수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조합의 추가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6973호, 2003.9.3)을 제정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6,359억원(경영개선자금 3,418억원, 구조개선자금 2,941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2011년 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47개 조합 중 34개 조합이 정상화(순자본비율 0% 이상) 되었다.

그리고 순자본비율은 2009년 말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2.6%를 달성하였으며, 미처리결손금도 2002년 8,419억원이었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804억원의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었다.

〈표 4-2-12〉 일선수협 순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 연도	2002	2005	2008	2011
순자본비율	△6.3	△2.3	△0.1	2.6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8,419	△6,284	△3,659	804

자료 : 수협중앙회, 2012년

또한 2011년에 31개 적기시정조치 수협에 대한 경영정상화 추진 결과 위판금액 증가, 부실채권 회수 등으로 경영이 개선되어 거문도, 근해통발, 김제, 모슬포 및 제주시 수협 등 5개 조합이 권고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상승하였으며, 부산시수협은 요구조합에서 권고조합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경기남부와 부산동부수협은 거액대출 부실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와 오징어 매취사업 손실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종합등급이 권고조합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수협경영정상화를 통해 순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미처리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등 일선수협의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부실수협이 감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실 및 부실우려 수협에 대해 경영상태에 따른 실질적 이행목표를 부여하고 상시 경영 지도를 강화할 경우 일선수협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부실수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조합의 경영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한 부실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정책과 사무관 류민석

■ 추진배경 및 개요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조 5,665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7,581척을 감척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6%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감척사업으로 연안어선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5,449억원을 투입하여 14,974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774억원을 투입하여 1,299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근해어선척수 : ('00년) 68,629척 → ('11년) 50,211척으로 26.1% 감소

* 자원량(만톤) : ('90년)835 → ('94년)801 → ('00년)768 → ('05년)783 → ('11년)860

* 어획량(만톤) : ('90년)154 → ('94년)149 → ('00년)119 → ('05년)110 → ('11년)124

척당 생산량은 2000년에는 척당 생산량이 17.3M/T이었으나 2011년에는 25.0톤으로 44.5% 증가하였으며, 척당 어로수입은 2000년 3,39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8,770만원으로 259%로 대폭 증가하였다.

* 척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척당 생산량 : ('00년) 17.3톤 → ('11년) 25.0톤

· 척당 어로수입 : ('00년) 33.9백만원 → ('11년) 87.7백만원

■ 평가 및 향후계획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5,665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7,581척을 감척하였으며, 감척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척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구조개선 참여 촉진 및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11.7.26)에 따라 어선감척, 어업종류의 통합·변경, 어선현대화사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4-3-1〉 감척 필요 어선 척수

(단위: 척)

구분	어선척수(2011년 잠정)	적정어선척수	과다 어선척수	
			건수	비율(%)
합계	50,211	43,139	7,072	16.0
연안어업	47,352	40,798	6,554	15.9
근해어업	2,859	2,341	518	18.6

* 연구용역 : 연안어선('10년. 군산대), 근해어선('07년. 전남대), 구획어업(2,397척) 및 어장관리선(17,737척)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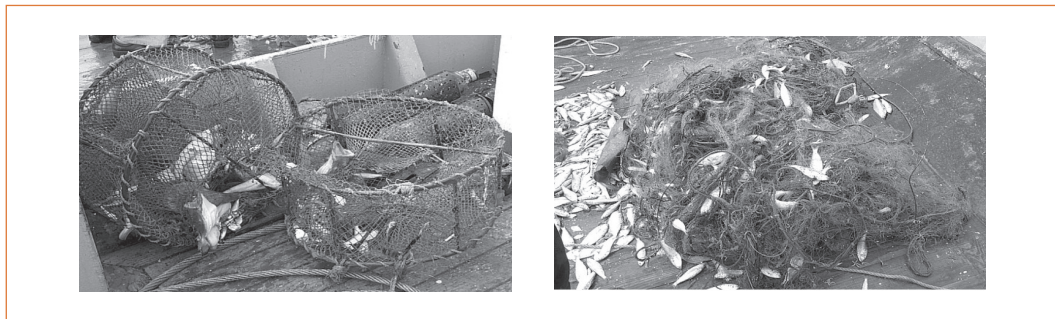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어업정책과 사무관 임동규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선척수는 약 49,000여척이다. 이 중 자망·통발어업의 어선척수는 전체어선의 40%인 20,000여척으로 연중 조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14,000여톤의 어구를 소비하고 있다.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산란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이에 페어구·페어망에 의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에서 수백년 후에 분해되는 나일론 재질의 어구 대신에 수중에서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기존 나일론 어구대신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어구가 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어업인들의 친환경 의식제고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계자망어선 60여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약 43억원을 지원하여 대계자망, 봉장어통발어선 등 약 250여척으로 생분해성어구를 확대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인 참여율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대상어종별 생분해성 어구 12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척, 개수)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투자계획	43	39	40	43	43	43
생분해성어구 사용 척수	200	130	200	250	250	25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지원시도	2	5	5	6	6	6

■ 평가 및 향후계획

생분해성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 어구와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어장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유령어업 발생 저감으로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수중에서 완전 분해되므로 폐어구 수거 및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상묵 · 이세오

■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의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어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 저감장치 개발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해역별 해양환경 특성이 적합한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변화대비 탄소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실태파악 및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치망, 낚장망, 연안개량안강망, 기선권현망, 통발, 자망, 근해형망 등 혼획 어업실태조사와 해역별·업종별 혼획, 치어포획, 어획물 해상투기 실태조사,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 국제어업 정책동향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조사를 토대로 자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의 지리적 어장환경과 특성이 다양하고 지역여건과 해역특성에 따라 어구와 어법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도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안·구획·마을·정치망어업을 대상으로 지역 및 해양환경 특성에 맞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 이후 어업분쟁 및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이양을 통해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 지자체, 관련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0년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수산업법 제89조에 근거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안건으로 상정(10,12)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최종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어업제도개선 협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심의를 통해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화되어 선진국은 1990년대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협약하고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높은 10개국에 포함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아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탄소배출 실태를 2010년부터 조사를 통해 이행준비에 도입하여 2013년까지 어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은 2012년까지 연구조사를 추진하여 치어·혼획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관련업체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어업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및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2017년까지 탄소배출 실태파악 및 대책방안 등을 마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상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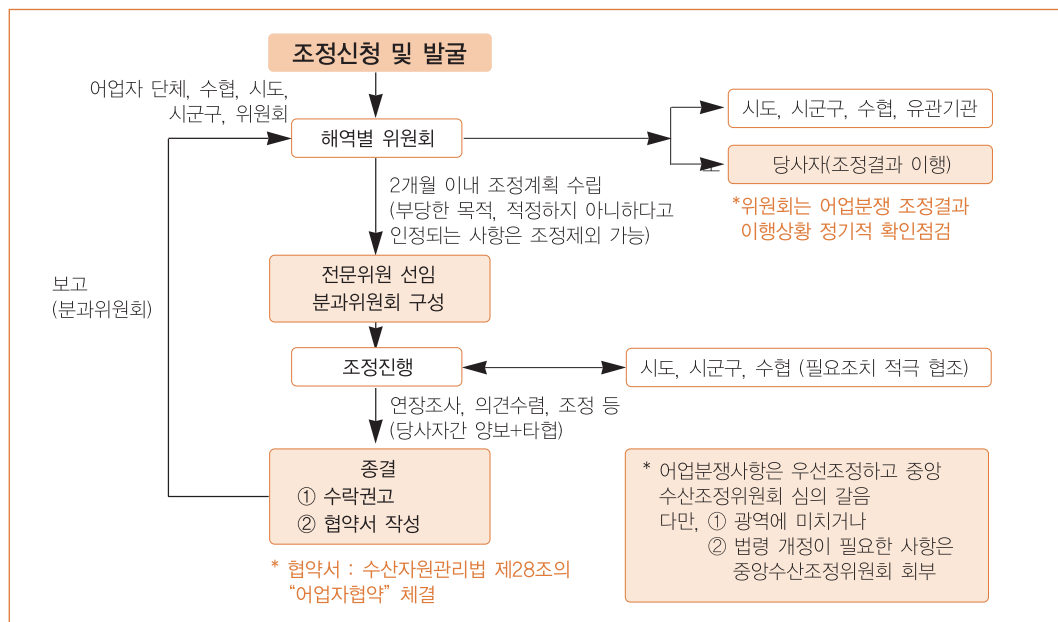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업 41개 업종 약 50,000여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조업경쟁으로 업종간, 지역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해역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 동·서해어업관리단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동해 '09.10.13, 서해 '09.11.3)하였다.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2011년까지 2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분과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해 8건은 조정완료, 6건은 종결처리 되었고, 나머지 7건은 계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다.

〈그림 4-3-2〉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 효율적인 분쟁조정 노력 경주

조정중인 분쟁안건의 조정방향 설정 및 Know-how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 본위원회 5회, 분과위원회 10회, 현장방문 간담회 30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충남지역 멸치 조업분쟁 조정’ 및 ‘태안군 연근해 어업 분쟁 조정’ 과제에 대해 분쟁조정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11개 시·도 담당공무원, 수협,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장교육 실시 및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출범 초기인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홍보 및 분쟁조정 안건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은 해역별로 발생되고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조정결과를 담보할 권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내실화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

제2절 어업질서 확립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 지도안전과 사무관 김성수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자원의 감소와 유가 및 어가상승 등으로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남획,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어업인 및 업종간 어장확보와 이용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선형·어구의 개조 및 변형조업으로 불법어업 및 조업갈등의 형태가 복잡·다양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2008년 3,198건, 2009년 3,394건, 2010년 3,221건, 2011년 3,293건이다.

그리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일간은 조업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한·중간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 입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어패류 산란기와 성육기인 5월, 10월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일선 지자체 및 수협에 배포하고,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하여 불법어업예방 공익광고 캠페인과 다큐멘터리 등을 송출·방영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단속을 강화하고,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정부로 하여금 불법조업 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어업교섭시 조업조건 강화 등 제도적 대응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표 4-3-3〉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척)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합 계	3,198	3,394	3,221	3,293
어업관리단	1,106	875	610	818
해경청	1,251	1,471	1,871	1,685
지자체	841	1,045	740	790

〈표 4-3-4〉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척)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1
합 계	494	432	381	370	537
영 해 침 범	26	12	27	31	28
특정금지구역침범	47	32	34	52	21
무 허 가	70	76	91	91	171
조업조건위반	351	312	229	196	317

■ 평가 및 향후계획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결과,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대표적 업종인 대형기저, 잠수기, 기선형 망어업 등은 감소하는 반면, 무허가 및 허가어선의 불법 어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간·업종간 조업분쟁,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와 생계형 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EEZ 수역에서의 우리어선에 대한 일본측 대응이 강화되고, 우리 EEZ 수역에서의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11.12)을 마련하여 EEZ 수역에서의 우리어선 안전관리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통하여 선진어업질서 구축과 지도단속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 지도안전과 서기관 전갈권

■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단속 및 우리 EEZ 내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하여 1966년부터 1999년까지 517억원을 투입, 20척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나 1994.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 및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관할수역이 영해에서 EEZ까지 광역화되면서 관할수역은 88천km²에서 361천km²로 4.1배, 활동거리는 1,143마일에서 1,952마일로 809마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어업지도선을 2009년 20척 수준에서 38척까지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2002~2003년에 감척된 트롤어선 5척(139척)을 인수하여 55억원을 투입, 국가 어업지도선으로 개조하여 활용하였다. 또 2002~2006년까지 730억원을 투입하여 500톤급 8척 확충, 2007~2008년 113억원 투입, 500톤급 노후지도선 1척 대체, 2009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지도선으로 전환하여 34척까지 증척하였다.

2011년에는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어업지도선 대체를 위하여 2010년에는 219억원을 투입, 500톤급 1척을 준공하고 1,000톤급 1척을 착공하였으며, 2011년에는 239억원을 투입 1,000톤급 1척을 준공하고 1,000톤급 1척을 착공하여 어업지도선 안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 국가어업지도선은 100~2,000톤급 34척으로 지속적으로 노후대체와 신규확충을 추진하여 EEZ 해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EZ 해역관리를 위해서는 EEZ수역 24척, 중간수역 12척, 제주도 주변수역 2척 총 38척이 필요하나 선령 25년 이상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가 우선 시급하고 중국어선 지도단속과 관련 대형화 건조가 필요하므로 2015년까지 노후대체 및 대형화 건조를 완료 후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2년에 1척을 대체하여 2012년까지 노후어업지도선 대체를 완료하고 2013년에 1척, 2014년에 1척, 2015년에 1척을 500톤 이하에서 1,000톤 급으로 대형화하여 건조,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1척씩 신규건조 하여 2019년까지 38척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 지도안전과 사무관 김성수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연근해어장에서의 이용경쟁이 심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어업으로 어업인간 분쟁을 유발하고, 자원의 감소, 유가 및 어가 상승 등으로 업종간·지역간 조업경쟁과 자원남획,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업인의 자율어업질서 유도를 위해 2007년 8월 14일 도입한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는 그 대상이 소형기저 및 공조조업 등으로 한정되어 신고대상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어선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하여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매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준법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고대상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11.5) 시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제도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주요 항포구 및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게시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710여척)된 어선을 전국 일제 단속 기간 중에 참여토록 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개별적인 포상기회도 마련하였다.

한편 불법어업이 없는 우수 어촌계·단체를 선정(최우수, 우수, 모범 등급으로 구분)하여 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장려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및 선진적 어업질서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3-5〉 2011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현황

구 분	어촌계(단체)	대표자	선정결과
경남(2)	청곡어촌계(거제시)	이금철	우수
	중촌어촌계(사천시)	진부근	우수
제주(2)	제주시어선주협회(제주시)	한윤종	최우수
	모슬포어선주협회(서귀포시)	라성무	모범

주: 선정기준: 시·도지사 추천 → 현장실사 → 심의·의결 → 선정

■ 평가 및 향후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시행,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의 불법어업 합동단속 자율적 참여,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 등을 통한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 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활용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 지도안전과 서기관 전길권

■ 추진배경 및 개요

기관사고 등 설비관련 해난사고는 2010년 485척에서 2011년 524척으로 8.0% 증가하였다.

2011년 해난사고 원인은 운항과실이 218척(4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표류(기관고장 등) 349건(66.2%)과 충돌(견시소홀) 89건(16.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 연근해어선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점검 생활화, 해황정보 문

자서비스 제공, 기상특보 방송 강화,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조업 교육 내실화를 위해 50백만원을 투입하여 180여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범실시하고, 조업 중 해상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00백만원을 투입, 상시착용 구명조끼 2,177개를 보급하였으며 조난 어선의 원활한 구조를 위해 30백만원을 투입하여 130척에 예인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위치발신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가칭「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지속적인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난사고가 감소되고 않으므로 2012년에도 '2012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에 따라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하여 어선 해난사고 감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표 4-3-6〉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연도	구분	계	기상 악화	선박불량				운항과실				
				소계	기관 고장	조타기, 스크류	기타	소계	어망, 로프감김	운항 부주의	원인미상	기타
2010		485척 (71명)	6 (9)	282 (9)	211 (-)	35 (-)	36 (9)	197 (53)	75 (-)	98 (20)	1 (1)	23 (32)
2011		518척 (64명)	14 (2)	289 (-)	239 (-)	27 (-)	23 (-)	215 (62)	80 (-)	105 (19)	- (-)	30 (43)

주: ()은 인명피해

〈표 4-3-7〉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연도	구분	계	표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전복	침수
2010		485척 (71명)	327 (-)	82 (20)	21 (1)	30 (9)	3 (10)	14 (31)	8 (-)
2011		518척 (64명)	349 (-)	89 (17)	22 (2)	20 (-)	9 (24)	16 (19)	13 (2)

주: ()은 인명피해

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

제1절 어가 소득 증대

1.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 수산정책과 사무관 변혜중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 경영자금 중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어업경영을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산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용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영어자금의 총 운영규모는 1조 9,050억원으로,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7,850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1,200억원이 공급되었다. 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실적은 6,426억원으로 전년 실적 5,756억원 대비 11.6%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산업 경영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2011년 어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다.

〈표 4-4-1〉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단위 : 억원, %)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11/'10)
합	계	52,859	57,518	63,451	69,243	74,256	80,728	8.7
연근해어업		27,513	29,391	32,223	36,404	39,117	44,441	1.1
천해양식		14,432	15,995	15,201	18,463	18,156	17,842	△1.7
원양어업		8,910	9,901	13,274	11,638	13,645	14,670	7.5
내수면어업		2,004	2,231	2,753	2,738	3,338	3,775	13.1

자료 : 통계청, 2012년

■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전체 공급자금 1조 9,050억원 중 1,000억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한파 및 저수온 피해, 태풍 무이파 피해어업인 등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44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525억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10,044억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3,481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에 대한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4-4-2〉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요액	41,299	41,685	44,223	46,837	49,221
	공급액(공급률)	15,050(37)	15,050(36)	19,050(43)	19,050(41)	19,050(38.7)
연근해	소요액	36,364	36,668	39,210	40,973	42,654
	공급액	14,250	14,250	17,850	17,850	17,850
	공급률	(39)	(39)	(46)	(44)	41.8
원양	소요액	4,935	5,017	5,013	5,864	6,036
	공급액	800	800	1,200	1,200	1,200
	공급률	(16)	(16)	(24)	(21)	19.9
재원별	재정자금	5,636	5,636	5,636	5,525	5,525
	수협자금	4,433	4,433	8,433	9,544	10,044
	상호금융	4,981	4,981	4,981	3,981	3,4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012년

■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수산발전기금의 조달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장기 용자사업의 거치기간 종료

로 정기상환 융자원금이 일부 회수되면서 융자원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수입이 확대 편성되었으나, 2009년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여유자금 회수액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정부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폐업지원금, 소득보전직불금, 품목별경쟁력강화 등 FTA피해 지원을 위해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기금운용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 계획 5,139억원 보다 증가한 5,626억원으로 융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9.9%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수산물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품목별 경쟁력강화 및 직접피해지원, 유통가공시설개선,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등 수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4-3〉 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적(B)	증△감	
	당초	변경(A)		(B-A)	%
합 계	642,611	642,611	662,143	19,532	103.0
• 경상사업	51,181	56,881	49,503	△7,378	87.0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2,300	2,209	△91	96.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10,600	10,600	10,600	-	100.0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자치단체보조)	3,000	3,000	3,000	-	100.0
- 비축사업	12,500	18,200	17,464	△736	96.0
- 출하조절	3,781	3,781	3,781	-	100.0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12,500	12,500	12,449	△51	99.6
- 소득보전직불금	1,500	1,500	-	△1,500	0.0
- 폐업지원금	5,000	5,000	-	△5,000	0.0
• 융자사업	505,717	505,717	501,319	△4,398	99.1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0,687	10,687	10,687	-	100.0
- 양식어업지원	7,629	7,629	6,929	△700	90.8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29,662	29,662	29,662	-	100.0
- 영어자금	51,000	51,000	51,000	-	100.0
-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3,000	3,000	-	△3,000	-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1,000	1,000	1,000	-	100.0
- 수산물수매지원	107,949	107,949	107,915	△34	100.0
- 우수수산물지원	134,000	134,000	134,000	-	100.0
-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26,640	26,640	26,640	-	100.0
- 해외수산물시설지원	1,400	1,400	1,400	-	100.0
-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132,750	132,750	132,086	△664	99.5
• 기금운영비	1,546	1,546	1,447	△99	93.6
• 기금간거래	1,403	1,403	727	△676	51.8
• 여유자금 운영 등	82,764	77,064	109,147	32,083	141.6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정책은 WTO/DDA 협상,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어업경영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 및 정책자금 연체율 감소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부담은 감소하고, 정책자금을 통한 수산업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수산업 경영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주성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물의 수입증대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분야는 향후 WTO/DDA 및 FTA 협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1년 수산분야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금, 어선원 및 어선보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 성격의 기타 직불성사업으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수산직불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산분야는 WTO 일반보조금 협정에 포함되어 있어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는 농산물만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 출범이후 1997년부터 경영이양, 쌀 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4-4-4〉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구분	직불제	2010(억원)	2011(억원)
농업부문 (1조 6,276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6,650	6,195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5,951	7,993
	경영이양 직접지불	699	62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520	37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417	387
	경관보전 직접지불	156	139
	FTA피해보전 직불	250	250
	FTA폐업지원	300	300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	5	10
수산부문 (847억원)	FTA피해보전 직불	15	15
	FTA폐업지원	50	50
	어선원 및 어선보험	629	67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63	55
	친환경어구보급	50	50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해 345개도서, 461개 어촌계, 27,000가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연구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접지불금)에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념 검토와 어업활동 및 생활상에 있어서 조건불리성 실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200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실태조사 및 DB구축 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실태조사 결과 DB구축 및 어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도입목적, 경제적 활용가능성, 등록대상, 등록

방법, 등록내용, 등록절차, 관리체계 등을 연구하였다.

■ 어업경영체등록제 법적근거 마련

어업경영체 등록 추진에 필요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4.1), 시행령(’09.10.8), 시행규칙(’09.12.9)을 제정하여 어업경영체등록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11.10.31)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13년부터 시행한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 육지생활 중심권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4,415어가에 대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 파악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어업경영체등록제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8km 이상 떨어진 27,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수산분야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절 어가경영안정 지원

1. 어업보험 내실화

■ 수산개발과 서기관 김봉현

■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 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36,112명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8,494척에 대하여 50,47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4-4-5〉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2010
어선원보험료 인 원(명)	36,846	35,815	37,116	37,283	34,899	36,112	103%
보 조 액(백만원)	8,573	9,829	11,968	15,612	21,491	21,100	98%
어선보험료 척 수(척)	5,015	5,397	5,704	6,518	7,233	8,494	117%
보 조 액(백만원)	2,007	2,615	3,897	6,002	9,139	12,285	134%
위탁운영사업비 보 조 액(백만원)	7,420	7,683	10,675	12,153	18,145	17,093	9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12년

■ 가입률 제고 추진

소형어선의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 홍보용 안내장 103,000부, 포스터 3,000매, 플랭카드 3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대어업인 홍보 강화를 위해 만화로 알아보는 정책보험 안내서 5,000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계약안내를 위한 안내서 18,000부와 휴향 환급제도 안내를 위한 안내서 9,000부, 어선원보험 법령요약서 5,000부를 제작·배부하였다. 이밖에 어업 무선방송 연중 실시, 수산전문지 및 정책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실시는 물론 정책보험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정책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용 동영상 제작하여 어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홍보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였다.

■ 어선사고 예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지정선박수리소 186개소, 지정병원 497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이

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어업인 지원 및 제도개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2011년 어선원보험의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어선원의 기초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에 따라 보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에 따라 과거 3개년간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요율 조정요인(용역결과 어선보험 전체 평균 2% 인상)을 반영하여 손해율이 높은 50톤 미만 어선은 2% 인상, 손해율이 낮은 50톤 이상 어선은 동결함으로써 일부 톤급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수지균형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계약에 대해 코리안리(주)와 특약(50% 비례 재보험)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위험분산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정책보험 도입 9차년도로서 가입 증대, 체납보험료 감축 등 정책보험사업 재정 건전화로 도모하여 대어업인 지원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증대 캠페인을 통한 보험사업 확대, 체납보험료 감축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재해률이 높은 어업의 재해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운식

■ 추진배경 및 개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및 재해에 기인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근 태풍, 집중호우, 한파, 이상기후, 질병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대상품목 확대

2008년 7월 ‘넙치’ 1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연차적 대상품목 확대 계획에 따라 2010년에는 넙치(본사업), 전복(시범사업) 2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추가로 조피볼락·굴·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매년 제도개선을 통한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11년에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 운영비 100%(10년 80%)를 지원하였고, 보장범위 확대, 대어업인 보험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가입률을 전년 6.9% 대비 18.8% 증가한 8.2%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납입방법, 자기부담금 등 완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태풍 무이파, 1~2월 한파, 7월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2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가입률 증가 추세에 따라 시범사업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대상재해 보장범위를 확대(태풍·강풍·해일·풍랑·적조·조우·홍수·대설·동해·이상조류)하여 보험상품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표 4-4-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지급액

(단위 :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년	2011
가입률	5.3	13.8	6.9	8.2
지급액	0	0.32	2.5	27.3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3.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사무관 임귀상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예인줄 절단으로 3천톤급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으로 입항 대기 중이던 유조선(Hebei Spirit호)과 충돌해 12,547kl(10,9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3개 도(충남, 전남·북의 11개 시·군)에 걸쳐 대규모 유류 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피해민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 유류오염 피해어장의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 7월 유류오염 피해어장에 대한 어장환경개선 및 복원을 위한 ‘어장환경복원계획(2010~2019년 3,821억원)’을 수립하고,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1,577억원) 및 어장생산력 증진사업(2,244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 421억원, 어장생산력 증진사업 481억원 등 총 902억원을 투입하였다.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연구용역 및 홍보 등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8억원을 직접 집행하여 어장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어장환경개선 효과 등 15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피해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383억원을 배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마을어장 및 조업어장 등 피해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어업인 재기 및 지역숙원사업으로 갯벌참굴 시범사업 및 종묘발생장 ‘썩’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장생산력 증진사업으로는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 제공을 위한 해중립 및 인공어초 조성에 213억원, 해역 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조성에 177억원, 자원증강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에 91억을 투입하였다.

■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의 규모별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 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선주 책임제한 채권’은 2011년 127,483건 4조2,273억원으로 채권관리 소관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고되었다.

■ 피해지역 특별영여자금 등 지원

유류 오염사고 직후, 피해 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여자금 273억원('07년 100억원, '08년 120억원, '09년 53억원)을 배정하여 2011년까지 누계기준 248억원을 공급(연리 3%, 1년, 1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였으며 2011년 기준 특별영여자금 중 89억원이 상환되어 159억원을 지원중이다. 피해 발생일 기준 이미 사용 중인 일반영여자금 759억원(누계 기준)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상환기일 연장 및 이자를 감면(연리 3%)하였다.

■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 및 사정 동향

IOPC 92 Fund는 2011년 10월 제53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액을 최대 2,826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IOPC Fund 서울사무소인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에 접수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청구액은 1조 5,787억원으로 IOPC 92 Fund의 피해 추정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민의 대부분이 2009년 5월 8일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채권' 신고를 마치고 난 다음, 국제기금측(HSC)에 손해 배·보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국제기금측(HSC)에 대한 손해 배·보상 청구가 저조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 28,866건이 청구되었으며 이 중 국제기금측은 75%인 21,801건을 사정하였다.

〈표 4-4-7〉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1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클레임접수 (a)	피 해 사 정			지급	
			계(b)	b/a(%)	인 정		반 려
수 산	건 수	10,800	6,771	62.7	1,130	5,641	769
	금 액	15,787			448	-	358
방제, 예방조치	건 수	301	244	81.1	216	28	181
	금 액	4,639			978		896
관 광	건 수	10,697	9,099	85.1	2,124	6,975	1,964
	금 액	2,638			238		223
재 산 손 해	건 수	19	16	84.2	14	2	9
	금 액	21			4		4
환경손해, 연구	건 수	1	-	-	-	-	-
	금 액	813					-
기 타	건 수	7,048	5,671	80.5	179	5,492	123
	금 액	2,153			0.76		0.55
계	건 수	28,866	21,801	75.5	3,663	18,138	3,046
	금 액	26,051	-		1,676	-	1,487

■ 보령도서지역 피해산정 개시일 조정 지원 활동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보령도서지역 유류피해 배·보상을 위한 피해 개시일을 연장('08.1.1부터 → '07.12.14부터)하여 배·보상하도록 IOPC Fund 제53차 집행위원회('11.10/런던), HSC 방문 업무협의회 및 제31차 HSC 정례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국제기금측은 긍정적인 검토계획 입장을 밝혔다.

■ 기타 피해지역 지원사항

농림수산식품부는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축산발전기금 및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력 승마대회'에 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한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201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차례의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IOPC Fund 제53차 집행위원회(11.10.24~28)에 참석하여 피해 배·보상을 위한 보령 도서지역의 피해산정 개시일이 국제기금측에서 주장하는 2008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007년 12월 14일부터 유류 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시 해양경찰청의 방제작업 상황자료와 국제기금측에서 2007년 12월에 사고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불한 사실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국제기금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IOPC Fund 서울사무소와 정례회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피해 배·보상업무를 위해 국제기금측은 서울사무소(HSC)를 개설하고, 피해 배·보상과 관련되는 각종 현안사항의 해소와 의견 교환을 위해 한국정부측과 3~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7월에 첫 회의를 가졌으며 양측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하기로 함에 따라 2011년에 총 5회(10년 6회)의 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속한 사정 촉구 및 보령 도서지역 피해산정 개시일 조정요구 등 현안사항에 대해 국제기금측과 협의하고 설명하는 등 양측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에도 모든 유류 오염피해지역을 해양오염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어장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 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IOPC Fund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피해어업인 배·보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 유류 오염피해지역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장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에 반영토록 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장환경복원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19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입하여,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1,156억원) 및 어장생산력 증진사업(1,763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는 어장환경 정밀조사 및 정책연구, 마을 및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갯벌참굴을 비롯한 고소득 생산기반 조성 등이며, 어장생산력 증진사업으로는 바다목장화사업, 인공어초 조성사업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유류오염 사고로 훼손된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자연적인 생물 다양성을 지닌 건강한 어장으로 복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1차 지역경제활성화 26개 사업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업은 3개 사업으로 2008~2010년까지 428억원을 투입하여 각각 충남지역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400억원,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7.5억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20억원을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지원하였다.

2011년 11월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확정된 27개 사업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20개 사업으로 2011~2016년까지 3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35억원을 투입하여 양식장 조성, 어장환경개선 및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 신청 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간접 지원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부터 지원된 특별영어자금(연리 3%, 2년 상환)의

상환기일 연장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배·보상 진행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반환 도래한 영어 자금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유류 오염사고에 관한 보상주체인 IOPC Fund측과 각종 회의를 통해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지속 촉구하여 왔으며 2012년에도 4월, 10월에 개최 예정인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신속한 보상을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피해 어업인 대표 등도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피해 배·보상 활동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모든 피해 배·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업인을 위한 역할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국제기금 사무국과 집행위원회 주요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어업인의 정당한 배·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당하고 신속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1. 수산 경영인 육성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추진배경 및 개요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자는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는 1인당 5천만원, 전업경영인은 1인당 7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인당 1억원까지 지원되며, 1981년부터 2011년까지 19,757명에게 총 5,202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0까지		201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9,757	520,211	18,772	469,741	985	50,470
일반후계자(1981년부터)	16,498	339,455	15,772	307,685	726	31,770
전업경영인(1992년부터)	3,068	162,741	2,852	148,291	216	14,450
선도경영인(1995년부터)	191	18,015	148	13,765	43	4,25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11년에 504억원(985명)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업경영인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후계인력 유도를 위해 전업경영인의 경우 대상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집행대상사업을 당초 양식어업, 어선어업, 가공분야에서 유통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창업자금지원 2억원과 주택구입비 4천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2.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화·개방화로 수산업의 위축과 함께 어촌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진입과 함께 양질의 후계인력 양성도 한계에 직면, 2008년부터 어촌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 구축방안의 하나로 수산계 고등학교(전국 9개교)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도 수산전문 진입인력 양성 및 전문계고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산계고등학교(9개교)에 취업·창업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공통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등) 12억원, 학교자체프로그램(현장체험, 해외연수, 수상레저프로그램 등) 8억원을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해기사 양성과정인 종합승선실습을 통해 5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운 연근해 및 원양업계의 항해사 및 기관사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을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취득 등)을 확대 개발·지원할 계획이며, 수산계고교 학생 중 수산분야 정착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업과 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승선예비역 제도 확대, 산업체별 취업설명회를 통한 취업알선 및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인력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추진배경 및 개요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와 어촌지역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촌의 기능적 변화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제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어촌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어촌 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촌개발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 리더 육성사례와 시사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어촌개발리더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개발리더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낙후된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조직인 어촌사랑주부모임을 활성화시켜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인력개발센터에 '어촌관광사업 지도자과정',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무장' 및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의 4개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하여 지역 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어촌지역개발리더사업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단지의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등 어촌 지역의 개발을 선도할 핵심적 리더에 대한 전문능력을 강화·육성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에서 약 40명을 선발, 학습단위별로 4개 세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 여성어업인육성사업

‘어촌사랑 주부모임 전국연합회’는 1989년 제1회 한일 어촌부인 생활체험 발표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2월에 강화 등 5개 수협을 ‘시범 부인부’로 결성하였다. 2004년에는 ‘수협부녀회’가 ‘어촌사랑 주부모임’으로 변경이 되는 등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어촌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그리고 2011년 7월 6일 어촌사랑 주부모임 창립총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여 27개 수협 4,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적인 조직으로 태어났다. 향후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회·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권의 신장 및 역량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어촌관광사업 지도자과정

어촌계장, 이장, 어촌관광리더·가이드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관리트랜드 변화, 어촌관광자원 조성, 상품화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고객관리 및 갈등관리 등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

어촌계장, 어촌계임직원, 공무원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권역별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교류를 도모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어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육성을 위하여 연간 7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 및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사무장의 역할, 홍보 마케팅 전략,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과정

어촌지역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2009년부터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리더양성 워크숍을 매년 2회, 8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지역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증대시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 모델을 도출하여 어촌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 어촌개발과 관련된 시설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어촌만들기에 어촌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어촌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절 살기 좋은 어촌 개발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 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4)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5-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요

구 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농식품부 (수협 위탁)	2004년~ 계속	-	연근해 어선원등	국비 20% ~70%	어선주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자체	1994년~ 계속	8,795억원	230개권역	국비70%, 지방비3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자체	2006년~ 계속	-	전국 향,포구 2,286개소	국비80%, 지방비20%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정화사업	지자체	1986년~ 계속	-	약 68만 ha	국비 80% 지방비10% 자부담10%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물 수거· 처리, 바닥갈이, 객토 등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수산인력 개발원, 지자체등	2006년~ 계속	-	어촌지역 정보화수준 100%	국비 100%	원격영상시스템 지원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계속	914억원	134개소	국비70%, 지방비3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지자체	2004년~ 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주차장, 해안산책로 등

■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분야 7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 사업은 2011년 어선원보험을 36,112명이 가입하여 전년(34,899명)보다 3.1% 상승하였다. 또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디지털 어촌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부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표 4-5-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2011년)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 험 가 입 률	12.5%	14.3%
어 촌 종 합 개 발 사 업	사 업 비 지 원 액	269억원	269억원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설 치 대 수	103대	103대
양 식 어 장 정 화 사 업	사 업 추 진 진 척 도	6,420ha	6,420ha
디 지 털 어 촌 구 축 사 업	어 업 인 정 보 화 교 육	1,760명	1,410명
어 촌 체 험 마 을 조 성	마 을 조 성 수	3개	3개
어 촌 관 광 활 성 화 사 업	개 소 수	7개소	7개소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수산분야 7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별로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 투자와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사업간 연계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어촌 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2013년	8,795억원	230개권역	국비 70%, 지방비 30%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등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95억원 중 2011년까지 6,926억원(국고지원 4,083억원)을 투자하여 181개 권역은 완공하고 27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79%)중에 있다.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구분	연도	2008까지	2009	2010	2011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량	174(12)	10(13)
	사업비	600,850	25,831	26,457	151,890

주 : ()내는 계속 지원대상 포함 권역수임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

업으로 그동안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편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어촌어항법에 따라 새롭게 수립되는 '제3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14년~18년)'에 맞추어 '제3차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과 휴양·관광산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어촌복합생활공간'으로 어촌을 추가 개발·조성할 계획이다.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들의 소득 및 주 40시간 근무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외 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휴양·관광 등의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의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민간보조 (어촌어항협회 등)	2005년 ~계속	- 억원	어촌체험마을 134개소, 어촌계 1,874개소, 자매결연체결 1,117개소	민간보조 국비100%, 지자체 국비 50%	홍보, 사무장 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 추진내용 및 성과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시와 어촌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컨설팅 제공, 도시-어촌교류축진 및 어촌전문문화재현(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

과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오프라인 및 대중화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등 어촌체험마을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 1인1촌 컨설팅 추진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요인 해소, 마을에 적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1인1촌 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2010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에게 품질높은 시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로 구분하여 마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 여타 마을에 전파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우수마을에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명품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운영의 경우 체험객 수에 있어 2010년 770천명에서 2011년 1,158천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소득도 2010년 178억원에서 2011년 237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7〉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증(△)감(2011-2010)	비율
체험운영 수	91	90	△1	△1.1%
방문객(천명)	5,022	5,913	891	17.7%
이용객(천명)	771	1,158	387	50.2%
직접소득	17,857	23,694	5,837	32.7%
간접소득 ¹⁾	33,418	36,268	2,850	8.5%

주: 1) 직접소득은 체험이용료, 민박, 식사, 수산물판매에 한정

■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2011년에는 바다콘서트 등 축제지원, 해안선 자전거 여행 개최, 도시지역 어촌체험놀이관 운영, 이달의 어촌 포스터 제작,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어촌 View Point 100선 책자 제작, 농산어촌체험마을 박람회 홍보관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어촌관광 수요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관광 S/W 지원강화로 국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을 찾도록 시행중인 어촌관광 소프트웨어 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굴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4. 어항시설 확충

■ 수산개발과 사무관 배길중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8〉 어항지정 현황(2011년)

(단위: 개)

구분		항 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고
법정항	국가어항	10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비 100%	
	지방어항	285	시·도지사	국비80% 지방비20%	
	어촌정주어항	576	시장·군수·구청장	국비80% 지방비20%	
비법정항	소규모항	1,316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육지 546개항 도서 709개항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12년

■ 추진내용 및 성과

■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중에 있다. 총사업비 38,467억원 중 2011년까지 총사업비의 76.7%에 해당하는 29,494억원을 투입하여 94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6.2%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30개 항에 1,472억원을 투입하여 그 중 충남 삼길포, 남당항을 완공하였다.

〈표 4-5-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09	3	5	2	1	14	8	6	31	14	19	6
완공항	94	2	5	2	-	13	7	5	27	13	15	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12년

■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1년 285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1972~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2004년까지 농특회계,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49개 항에 746억원(국비 597억원, 지방비 149억원)을 투입하여 2개 항을 완공함으로

써, 전체 285개 항 중 166개 항이 완공(완공률 58.2%)되었다.

〈표 4-5-1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2011년)

(단위: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5	13	15	4	5	14	29	12	91	23	61	18
완공항	166	9	10	4	4	9	21	4	45	11	43	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12년

■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1년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5-1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2011년)

(단위: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76	5	31	9	9	24	15	6	81	8	342	46
완공항	144	1	10	7	5	9	-	-	-	-	112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바, 2011년에는 이들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30개항에 1,472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어항 49개항에 746억원(지방비 149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어항시설 투자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5. 어촌·어항 관광개발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강구 및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자원화를 통해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구 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2001년~ 계속	914억원	134개소	국비70%, 지방비30%	마을안내소, 샤워장, 진입로, 화장실 증
어촌관광모델 개발사업	지자체	2004년~ 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 추진내용 및 성과

■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134개 마을조성(총사업비 914억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 경주 연동 등 전국 108개소에 716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4-5-13〉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까지	108	2	5	-	9	9	-	9	6	31	10	18	9
'12계획	7	-	-	-	-	1	-	2	1	3	-	-	-
해제	-15		-2	-	-1	-3	-	-3		-2	-2		-2
장래조성계획	34	1	1	1	3	3	2	6	0	6	2	5	4
계	134	3	4	1	11	10	2	14	7	38	10	23	11

■ 어촌관광모델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 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광형, 어촌관광단지형 등 2종의 시범사업으로 어촌관광 모델 개발 18개소 선정, 2005년부터 투자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다. 2010년부터 광 특회계사업으로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4-5-14〉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사업별		목표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34	95	7	3	3	7	34
	사업비	49,985	31,905	2,150	1,250	500	1,930	11,900
어촌관광 모델개발	사업량	계속사업	6(18)	-(11)	-(10)	2(7)	3(6)	계속사업
	사업비	계속사업	27,994	7,594	5,044	3,434	4,200	계속사업

주: 국비기준, ()은 계속사업 포함

〈표 4-5-15〉 어촌관광모델개발 시범사업내용

구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Ⅰ모델)	어촌관광단지형(Ⅱ모델)
개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기존어촌 + 관광기능
사업기간	· 6개년('04~'13)	· 6개년('04~'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지자체
대상지역	·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 연안에 국가어항이 없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어촌
사업대상지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규모	· 7개소 1,089억원 - 개소 당 150억원 - 기본·실시설계비 29억원	· 11개소 702억원 - 개소 당 60억원 - 기본설계·홍보비등 36억원

■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어촌어항관광개발을 통해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은 2012년까지 계획된 I 단계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조기완료하고 II 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총 134개 마을을 조성함과 더불어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시범사업 18개소를 2013년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자체 편성을 통해 추진중인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은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연안지역별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상기

■ 추진배경 및 개요

기존의 어항은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의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우리의 어촌은 WTO/DDA, FTA 협상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및 보조금 제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어촌지원 방안 강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어촌소득으로 연계할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어업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관광 대중화를 위해 '가고 싶은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을 수립하고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지정해 개발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어항을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및 어항기능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제공,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대처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대포, 격포 등 13개소의 다기능어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241억원을 투자하여 8개항을 완공하고 4개항을 지원 중에 있다.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연도	목표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이후
사업량	13	3(9)	2(6)	2(5)	1(4)	3(1)	2
사업비	244,950	113,501	30,758	37,567	25,546	20,857	16,721

주 : ()은 계속사업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구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	다기능종합어항형
개념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기존어항 + 관광기능
대상지역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배후에 어촌이 없어 연계가 곤란한 국가·지방어항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소('04.12.15 선정) - 어유정항(인천 강화군) - 정자항(울산 북구) - 강릉항(강원 강릉) - 마량항(전남 강진) - 양포항(경북 포항) - 맥전포항(경북 고성) - 모슬포항(제주 남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04.10.25 선정) - 대변항(부산 기장) - 대포항(강원 속초) - 흥원항(충남 서천) - 국동항(전남 여수) - 격포항(전북 부안) - 지세포항(경남 거제)
사업기간	2004~2013(10개년)	2004~2013(10개년)
사업비	(항당) 100억원	(항당) 500억원(민자200억원 포함)

■ 평가 및 향후계획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다기능어항개발은 기존의 국가어항 개발과는 달리 정부투자 이외에 민간 투자부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부투자부문도 기본시설 외에 친수공간 및 조경시설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국가어항건설사업에 대한 심층평가(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998년 이후 수산업기반시설 위주의 국가어항개발이 어촌계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기능어항개발이라는 어항개발방식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13개항에 대한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 양식산업과 사무관 박형구

■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 소득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장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주요 수산물 생산 60개 해역에 대한 등급설정을 위한 위생조사·평가가 마무리되고, 주요 생산해역 등급화 고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 적용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3개 품목 14개 양식장에서 HACCP 등록이 이루어졌다.

〈표 4-6-1〉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단위: 개소)

품 목	합 계	2008	2009	2010	2011
소 계	14	3	2	2	7
넙 치	5	3	1	1	-
뱀 장 어	1	-	-	-	1
송 어	8	-	1	1	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또한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전 품목으로 시행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16개 품목(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에 대해 1,3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4-6-2〉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2011년)

(단위: 개소)

구 분	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참여업체	1,321	179	99	19	1,0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이력제의 홍보활동 강화로 참여율이 제고되고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생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인식변화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력제 인지도는 26.8%로 아직은 저조한 상태로 수산물이력제 홍보관 설치, 시식회 개최 등 정책 홍보 강화와 기존 바코드 방식에서 QR코드 방식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현장에서 이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수산물 이력제 저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보급사업은 HACCP 등록과 등록업체의 매출과의 비연계성, 등록에 따른 복잡한 서류 작성 문제 등으로 사업수요 신청이 낮은 편이었으나 향후 수요 증대를 위해 2012년 양식장 HACCP 고시 개정을 통해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사업을 발굴하여 HACCP 등록에 따른 사업자 매출 증대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한편 생산해역 등급화 설정

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급별 어장관리, 기관별 및 이해관계 단체별 역할 부여 등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출 · 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양식산업과 사무관 박형구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물 수입의 자유화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 · 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산 냉동공장 및 창고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적수산물의 유치물량은 2007년 15만톤이었으나 2009년에는 11만톤까지 감소하고, 해외 바이어까지 부산 감천항을 대체할 물류기지를 모색하는 등 수산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환적수산물의 적극적 유치 및 EU 수입위생조건 충족을 위해 환적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방사능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은 매건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평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근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 오염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신중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액체질량분석기 등 29종 67대의 최신 정밀분석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정밀검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유기오염 · 항생물질 · 어류질병 등 14개 분야 55명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밀분석 검사원간의 신

퇴성 오차범위 축소와 표준화 유지를 위해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정기 숙련도 향상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적수산물 수출검사 체계마련을 위해 감천항내 지정 하역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하역, 보관, 선적에 이르는 단계별 위생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환적수산물 처리방식에 따라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확대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적수산물 수출검사 체계를 마련하여 환적수산물 유치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감천항의 수산물 허브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11년 11월에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산물 수입국가인 러시아와의 위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대러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및 러시아산 수입수산물 검사강화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시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수산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1년 44개 항목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검사를 2012년까지 47개 항목까지 확대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수산물 안전관련 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 설정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만 등 주요 수산교역 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불법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 부정통관을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판별 DB 구축을 추진하여 국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 검역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생동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시행(08.12.22)되었고 이에 따른 수산동식물 검역대상은 종전의 이식용에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확대되는 등 국경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인천, 부산, 통영, 강릉 등 주요 수산물 수입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각 검역검사소에 유전자분석장비 등 31종 191대의 최신 검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TV,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검역 업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169명의 수산생물검역관을 확보하고 국경검역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 자동분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수산동물국경검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등재 수산생물전염병 등 수입위험분석 대상 질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산생물 검역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호주 등 OIE 표준실험실에 연수를 실시하고 수산물 검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관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민원신청부터 검역결과 통보까지 온라인화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수입위험분석 실시요령을 제정하고 질병 위험도에 따른 위생조건을 설정하여 수입위험분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OIE 표준실험실 연수를 통한 수산생물 검역관 역량을 강화

하고 신속한 검역을 위해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분석실 기능정립과 인력보강을 통해 기술 개발 강화하여 선진검역 인프라 구축하는 등 수산동물 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 친환경 양식생산

■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05년부터)와 경상남도('06년부터), 전라남도('07년부터), 강원도('08년부터), 경상북도('09년부터), 전라남도('10년부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총 6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다. 이 중 2개(전남, 제주)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외해양식어업 5개소(참다랑어 3개소, 일반어류 2개소)를 개발하고 참치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11년에 70,959백만원(일반회계 4,990, 농특회계 22,300, 광특회계 3,859, 애특회계 28,400, 수발기금 11,410)을 지원하였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5,040백만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원 8,820백만원, 기타 지하해수 조사사업 등 22,300백만원이었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 및 냉

동망보관시설 620백만원, 양식어장자동화시설 750백만원, 적조방제사업 770백만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919백만원 등 3,859백만원이었다. 애특회계 사업내용은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에 28,4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 지원에 7,629백만원, 출하조절 3,781백만원 등 11,4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원-원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친환경 양식산업의 육성 및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124,181백만원(농특회계 100,840, 애특회계 16,000, 수발기금 7,341)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8,040백만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원 15,100백만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76,800백만원(이차보전), 기타 지하해수 조사사업 등 100,840백만원이다. 애특회계사업은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 16,0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발기금사업은 수협사료시설에 3,560백만원, 수산물관측에 2,040백만원, 수산물자조금 1,741백만원 등 7,34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양식어장 환경개선

■ 자원환경과 서기관 안치국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입지적인 특징은 어장 설치·관리의 용이성, 태풍 등의 연재해 예방성, 풍부한 먹이생물 등에 의해 주로 반 폐쇄성만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해역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원과 양식어장 자가오염부하량 증대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을 위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6,420ha에 대해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하였다.

〈표 4-6-3〉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누계)

연도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어장정화 누계면적(ha)	14,756	60,164	177,844	346,502	456,934	502,226

또한 전국 연안 양식해역의 어장환경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양식어장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연차별·지역별로 전국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관으로 서해안(함평만, 곰소만, 웅진군 어장관리해역 등)의 어류·전복·바지락·다시마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수질환경, 퇴적물 환경, 양식생물 생태, 어장환경 수용력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안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부표(스티로폼)는 값싼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으로 태풍·파도에 쉽게 파손되고 쓰레기 수거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2009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등 8개 연안 시·도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73억원(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을 투입하여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제품(고밀도 등) 84만개를 양식어장에 교체·보급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해안에서 대량 양식되는 굴의 박신(굴까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각을 친환경비료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연안환경의 2차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신규로 굴패각친환경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에는 폐각 15만여톤의 친환경처리를 위하여 25억원(국고 20%, 지

방비 60%, 자부담 20%)을 투입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양식어장 환경개선정책은 어업인의 어장청소 등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보전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하절기 지속적인 적조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정화·정비사업, 친환경부표보급사업 등 어장환경개선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장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어장관리의 근거법인 「어장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2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1.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수산정책과 서기관 강혜영

■ 추진배경 및 개요

위판장과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유통채널이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과 함께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강한 대형유통업체 등은 산지와 직거래·자체 물류센터 보유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는 마케팅교섭력에서 우월한 소비자가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어 산지는 가격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FTA 등 대외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산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산지의 마케팅

교섭력을 높여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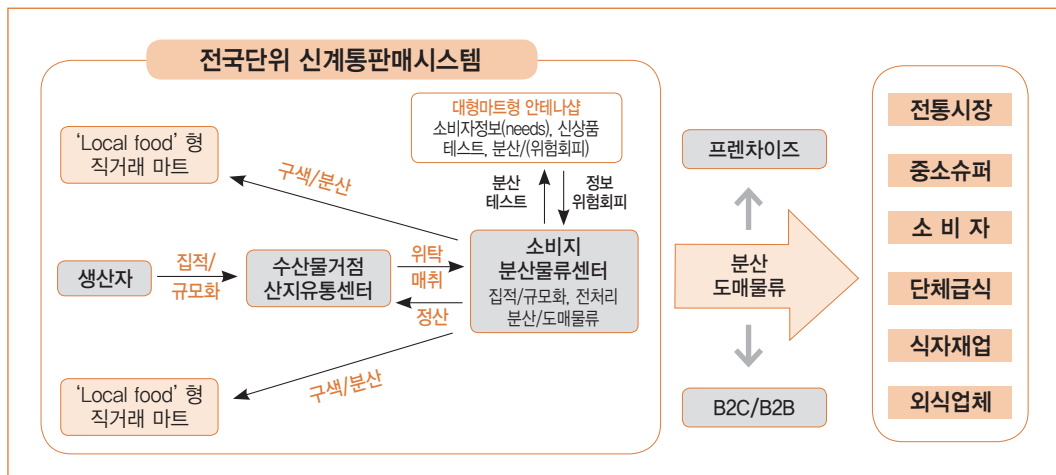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생산자 중심의 신(新)유통채널을 구축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단체인 수협의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에서는 지역수협이 중심이 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지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중심이 된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에서 산지의 다양한 상품을 집적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소비지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PC는 2012년 2개소 추진을 위한 예산 72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2011년 11월~12월까지 운영하였다. TF에서는 FPC 기본개념, 운영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는 정부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채널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통주체인 수협의 역할이다.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협이 판매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갖추어 생산자인 어업인이 수협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수협은 2011년 11월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판매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 4-6-1〉 생산자 중심의 신(新)유통체계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11년 7월 농산물비축기지 전체를 시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12년에는 FPC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과 맞물려 생산자단체가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물 확보 자금, 마케팅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 자체적으로도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경제사업 조직개편방안, 인력육성 방안 등 수협내부의 혁신방안도 포함하게 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산지위판장을 중심으로 위생시설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HACCP, 콜드체인시스템 등을 구축할 것이다.

〈그림 4-6-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후 조감도



2.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기원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구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냉동고등어·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4개 품목 4,588톤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냉동갈치는 생산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구매하지 못하였고, 냉동고등어, 냉동명태는 계획대비 각각 108%, 115% 구매하여 물가대책에 활용하는 등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어황에 따라 냉동갈치 대신 냉동조기를 구매하는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구매품목을 조정하였다.

〈표 4-6-4〉 2011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계획 (A)		실적 (B)		대비 (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5,186	18,200	6,773	17,465	130.6	95.9
냉동 고등어	1,608	7,000	1,729	6,821	107.5	97.4
냉동 오징어	710	2,524	813	2,982	114.5	118.1
냉 동 명 태	2,568	4,791	4,200	7,197	163.6	150.2
냉 동 갈 치	-	85	-	85	-	100
냉 동 조 기	300	3,800	31	380	10.3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상승기조 속에서도 설,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비축물량 방출로 수

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2011년은 수발기금사업계획을 변경하여 57억원(125억원→182억원) 증액하는 등 전년보다 정부비축 예산이 증가(74억원, 69%)함에 따라 비축물량도 증가하였고 방출 시기, 방출방법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출방법 측면에서 예전에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방출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도 직접 판매함으로써 방출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특히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용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방출시기 조정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민간 가격안정사업

■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기원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정부비축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단체)에게 수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적극 구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필요한 시기에 이를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민간 가격안정사업으로 1,079억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328천톤을 구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구매 지원사업에 986억원을 지원하여 289천톤을 구매하였고, 가공구매 지원사업에 93억원을 지원하여 39천톤을 구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지 수산물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판장과 소비지에서의 수산물의 집하·분산 역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주에게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위·공판장출하촉진자금 915억원과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60억원 등 총 975억원을 지원하여 1,906천톤(위판장 거래량 1,489천톤, 도매시장거래량 417천톤)의 수산물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민간 가격안정사업은 정부비축사업의 물가안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추석 등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중 정부비축물량과 함께 민간보유물량의 방출은 물가대책 수단으로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매 및 방출을 민간자율에 맡김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매 및 방출이 용이하지 않아 그 효과 측면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산물 수매지원사업의 산지가격 안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산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물가 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금리 부여, 새로운 소비지 가격안정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

4.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 양식산업과 사무관 장묘인

■ 추진배경 및 개요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정부 주도적 수산물 수급 조절 정책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부터 수산업 관측 및 자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가격, 유통, 수·출입, 해외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적정 생산 및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자조금사업은 수산물 수급동향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수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양식수산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7개 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전복, 송어, 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관측 내용을 보면 시설, 입식(채묘), 양성, 출하, 사료, 소비, 수출·입 등의 물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정보는 관측월보를 연간 14만부가 발간하여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어업동향도 연간 1만부를 제작·배포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그리고 생산자 5개 단체(김, 전복, 넙치, 송어, 자라)에 자조금을 지원하여 자율적 출하조절과 홍보 활동, 품질향상 및 관측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시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하였으며, 2011년에는 총 3,78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편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해 면허구역을 이탈하거나 초과한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김, 어류, 전복 양식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정비 목표를 세워 불법시설을 철거하는 등 자율적인 정비노력이 돋보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시장개척, 소비촉진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주요 양식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중장기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 관측 및 해외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자조금사업 참여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여 자조금 사업 효과를 높여나가고 이를 위해 전년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등 자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 지원 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원양정책과 사무관 이병웅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11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4),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125억원(2011년)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1년 수산물 수입은 4,192백만달러로 전년 3,458백만달러 대비 21.2%(734백만달러)가 증가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 조사를 확대하여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제1절 국제협상 강화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강희정

■ 추진배경 및 개요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6년 협상중단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큰 입장차로 인해 쉽지 않은 진행과정을 거쳐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다.

2008년 12월 DDA협상 진전을 목적으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주요 개도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간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11월 DDA 출범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도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규범 협상분야의 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장안에 대하여 미국·호주·뉴질랜드, 칠레 등 수산자원 보호 주장국들은 의장안을 적극 지지하였고, 중국·인도 중심의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공해어업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의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요구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일본·대만·EU 등은 의장안의 기본골격에 반대하고 금지보조금의 광범위함을 지적하며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의장은 의장안 초안을 일단 유보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는 6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어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회원국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010년부터는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도국 특별대우, 유류보조, 공해어업보조금 금지,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 등의 핵심쟁점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장안에 대응하여 면세유 등 운영비, 항만인프라 지원, 가격 보조, 소득보조 등을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2010년 9월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2011년 4월까지 새로운 수산보조금 협정 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강도높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결국 규범의장은 수정협정문안 대신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8년 12월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 적용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인하 신축성(관세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4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태국, 중국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반 이후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조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이에 자발적 참여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NAMA 협상의 주요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우리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NAMA 협상에 공세적으로 임해야 하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향후 일부 민감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이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해 상대국의 이의제기 시 양자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수산물 무세화(sectoral) 협상은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여 참여 불가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방문진

■ 추진배경 및 내용

2011년 8월 한·페루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칠레, 아세안, EU 등 45개

국이다(11.12). 한·미 FTA는 추가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회비준을 추진하였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 뉴질랜드, GCC(걸프협력회의) 등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 중심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중국과는 20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협상개시를 위한 정부간 사전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진행중인 FTA 협상중 콜롬비아, 터키 등 2개 당사국간 협상 논의가 있었다. 터키, 콜롬비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이 크지 않으며, 터키측으로부터는 연체동물이, 콜롬비아로부터는 관상용 열대어 등 특정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한·터키 FTA 제3차 협상(11.3)에서 양측은 상품 수정 양허안 교환이 있었으며, 이 양허안에서 우리측은 명태(냉동), 민어(냉동) 등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양허안을 제시하였다.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2010년 12월 양허안 교환시 최종 단계의 양허안을 제시하여 이후 추가 양허 개선을 하지 않았다. 이 양허안에서 우리는 한·터키 FTA와 마찬가지로 명태, 민어 등 민감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기타 139개 주요 품목은 10년 이상으로 장기양허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FTA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과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예외적 조치 확보에 역점을 두어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

FTA는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 시장의 41%(11년)를 점유하는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쿼터(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3.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 국제기구와 사무관 이규선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획에 가장 중요한 어장을 갖고 있는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8개국(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군도, 나우루, 솔로몬 아일랜드, 투발루, 팔라우)이 OPEC과 같은 국제적인 자원카르텔 구축을 위한 ‘코로르선언’(Koror Declaration)을 채택(10.2.25, 팔라우)하여 PNA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는 조업권 부여 제외 및 향후 중서부 태평양내 조업척수 감축시 우선 감축대상임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적으로 자국 자원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연안국과 조업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요 어장 확보를 위하여 PNA 국가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 당국자를 초청, 수산과학·기술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과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300백만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업의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경제협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PNA 8개국과의 경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참치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해양수산과학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양식기술 및 해양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1년까지의 연안국 협력을 위한 물자공여 사업은 연안국 요청 위주로 진행하여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자원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안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연안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수산 ODA 기본 계획을 수립, 물자공여 사업 대상품목 및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물자지원 중심에서 포럼/워크숍 개최, 연안국 주민 대상 교육훈련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지원 영역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연안국에 통합 지원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2년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족한 협상인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수산기구 전문가 협상 지원 인력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 4-7-1〉 양국 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6개국
노르웨이	수 산 부	2002. 1. 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트남	수 산 부	2002. 4. 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 제 생 산 부 농축수산식품처	2003. 9. 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알제리	수산어로자원부	2007. 10. 22	수산·양식업의 공동개발 등
브라질	수 산 양 식 부	2010. 6	수산 분야 전문가 교환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2012년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 국제기구과 서기관 권현욱, 사무관 정현정 · 방종화

■ 추진배경 및 개요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94.11), 1995년의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01.12)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각국의 책임있는 어업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상업 어종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1/105)'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2008년,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Guideline)을 발간했으며,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의 저층어업 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UN은 2006년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총회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4/72)'를 통해 FAO 지침에 근거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였다. 저층어업 규제 이외에도 상어 등 부수 어획종 보호,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생물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전 세계의 참치자원은 5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이 5개 기구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남획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다랑어는 더욱 집중적으로 남획되고 있어 어획쿼터량 축소, 어업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중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 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물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물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을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동대서양 공해상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자원 관리를 위해 2001년 설립된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가입('11.4)과 남인도양 공해상의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물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 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협상과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 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사무국 유치를 위하여 미국, 러시아, 대만, 중국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2011년 8월 29일~9월 2일에는 부산에서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비준을 미뤄온 유엔공해어업협정을 2008년 2월 1일자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 국제수산물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 가입한 19개 수산물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물관련 국제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6개 지역수산관리기구(5개 참치관리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기구) 관할 수역에서 전체 원양생산량 511천톤의 55%인 281천톤을 어획하였다. 이 중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역에서는 참치 238천톤(원양생산량의 47%, 참치생산량 251천톤의 95%)을 어획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부산에서 제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참석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참치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UN, OECD, FAO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관련해서는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08년)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10, 부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한·FAO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로 2011년 2월, 한국과 FAO는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도국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FAO 산하 아·태 수산위원회(APFIC) 의장으로서 제72차 APFIC 집행이사회('09, 서울), 제3차 지역자문포럼 및 제31차 총회('10, 제주)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역내 능력배양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OECD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부의장국으로서 수산자원회복, 기후변화, 양식 부문 등 주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OECD 기후변화 워크숍('10, 부산)을 개최해 향후 수산부문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 양식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계획중에 있으며,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보고서는 향후 OECD 수산위원회에 제출되어 녹색성장 양식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표 4-7-2>와 같다.

〈표 4-7-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2011년)

번호	기구명	본부(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 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 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 12	일본, 미국 등 88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 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 12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4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5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콕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48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 10	일본, 호주 등 6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네시 아 (2004. 6)	2004. 10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2005. 12	미국, 일본 등 16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6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 쿠 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7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2011. 4	앙골라 등 6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 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약정 (SIOFA)	미정 설립준비	미가입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21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	일본(임)	설립준비	러시아, 일본, 미국 등 6개국	북서태평양 저층생태계 관리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2012년

5. 한·일 어업협정

어업교섭과 서기관 정동근

■ 추진배경 및 개요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쟁적으로 선포하면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EEZ로 확대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6년 각각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한·일 양국의 관련 수역인 동·남해 및 제주 남부수역의 양국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의 EEZ가 중첩되고 EEZ 기점에 관한 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EEZ 경계획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 15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35해리 이내의 EEZ를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은 2개의 중간수역으로 하여 EEZ 경계획정이 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의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98.11)·발효('99.1)하였다. 현재 매년 다음 연도의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에 관해 협의·결정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한·일 양국은 2011년 2월 18일 일본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를 87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 입어규모

2011년 총어획할당량은 전년과 동일한 60,000톤이고, 총입어척수는 870척으로 전년보다 30척 감소하였으나 1척당 어획할당량은 전년(67톤/척)보다 높은 수준(69톤/척)으로 확보하였다.

■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우리 연승, 중형기저, 선망 등을 비롯한 주력업종의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제안하였으나, 우리 측은 새로운

조업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였으며, 2011년 2월 18일에 전년과 거의 동일한 조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또한 우리 어선의 지속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4월 15일까지 2010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2011년 조업일지 교체를 위해 조업중 귀항하거나 조업중인 어선에 2011년 조업일지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어획할당량은 2,080톤으로 유지하였고, 주년 어기를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12년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 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양국 어선 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1년 한·일 양국 EEZ내 총어획량은 우리나라가 23,016톤으로 할당량 대비 38.4%, 일본은 10,591톤으로 할당량 대비 17.7%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2.2배 더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척수는 우리나라가 570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65.5%, 일본은 100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11.5%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5.7배 더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은 다양한 업종에 의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3〉 2011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구분	합 의 사 항		실 적		대 비(%)	
	할당량(A)	입어척수(B)	어획량(C)	조업척수(D)	C/A	D/B
한국(a)	60,000톤	870척	23,016톤	570척	38.4	65.5
일본(b)	60,000톤	870척	10,591톤	100척	10.7	11.5
대 비 %(a/b)	100	100	184.3	570	-	-

어종별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등어류, 꽁치, 살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어류가 약 8,989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5%를 차지하였다.

〈표 4-7-4〉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2011년)

(단위: 톤)

구분	계	꽁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돔	갈치	붕장어	기타
한국(A) (%)	23,016 (100)	-	1,213 (5.3)	11,290 (49)	3,803 (16.8)	898 (16.5)	8 (0)	1,789 (7.8)		4,013 (17.4)
일본(B) (%)	10,591 (100)	-	492 (4.6)	8,989 (85.)	167 (1.6)	-	0.7 (0.0)	1.1 (0.0)	9 (0.1)	932.2 (12.5)
A - B	12,425	-	721	2,301	3,636	898	7.3	1,781	-9	3,08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2012년

또한 어종별 어획할당량에 대한 소진실적에서도 우리측은 고등어류, 살오징어, 갈치, 가자미류 등 여러 종을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측은 주어종인 고등어류는 23.8%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의 꽁치붕수망 조업의 경우 전년에는 5,958톤을 어획하였으나, 2011년에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지역 내 꽁치붕수망조업수역이 일부 포함돼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일본 EEZ 조업을 자제시킴으로써 어획실적이 전무하였다.

〈표 4-7-5〉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2011년)

(단위: 톤)

구분	계	꽁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돔	갈치	기타
할당(A)	60,000	7,000	3,500	23,385	8,750	1,150	220	2,080	13,915
어획(B)	23,016	-	1,213	11,290	3,803	898	8.0	1,789	4,013
B/A(%)	38.3	-	34.7	48.3	43.5	78.1	3.6	86	28.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2012년

〈표 4-7-6〉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어종별 어획실적(2011년)

(단위: 톤)

구분	계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돔	갈치	붕장어	기타
할당(A)	60,000	3,000	37,814	3,150	40	78	50	50	15,818
어획(B)	10,591	492	8,989	167	-	0.7	1.1	9	932.2
B/A(%)	17.7	16.4	23.8	5.3	-	0.9	2.2	18	5.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2012년

■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 어획할당량은 2010년과 동일한 60,000톤이고, 총허가척수는 870척으로 2010년보다 30척 감소하였으나 1척당 어획할당량은 증대됨으로써 조업실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매년 자국 어업인과의 조업분쟁, 자국수역의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연승, 중형기저, 선망 등 주력업종의 조업조건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원활하고 경제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한·중 어업협정

■ 어업교섭과 서기관 김학기

■ 추진배경 및 개요

한·중 어업협정은 1992년 8월 한·중간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간 최대 현안 사항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양국 정부 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을 거쳐 1998년 11월 11일 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가서명 이후 1999년 3월 중국의 양자강 주변수역을 연중 조업금지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우리 어선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국내적으로는 한·중 어업협정 조기발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기발효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를 어업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어선의 조업권을 협정발효 이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하였다.

정식서명 이후 양국의 EEZ 상호 입어규모와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측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1년 4월 5일 양국 수산당국 차관급 회담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2001년 6월 30

일·한·중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로 한·일 어업협정('99.1 발효)과 중·일 어업협정('00.6 발효)에 이어 한·중, 한·일, 중·일 3개국간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4년 발효된 UN 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었다.

〈표 4-7-7〉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구분	어업협정 가서명	어업협정 정식서명	어업협정 발효	협정 유효기간	협정 효력상실
한·중	1998. 11. 11	2000. 8. 3	2001. 6. 30	5년	1년전 서면통보
한·일	1998. 10. 9	1998. 11. 28	1999. 1. 22	3년	통지 후 6개월 이후
중·일	1997. 11	1997. 11. 11	2000. 6. 1	5년	6개월전 서면통보

■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및 어업실태 파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입어교섭 추진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에는 조업실태 전수조사('99.4~11), 어업 무선국 조업위치보고 자료 D/B화('99.4~'00.10), 수협 위판 및 어획량 분석조사('99.1~6) 등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중국 측 수역 조업실태 및 전 어업인에 대한 입어희망 조사 실시('00.2~4), 어업인 검증작업('00.5~7) 등을 거쳐서 입어교섭(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어선의 우리수역에서의 정확한 조업실태 파악과 중국 통계의 검증을 위하여 중국 어업실태 현지조사 실시('99.10),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주요 항구 내 긴급피항 척수 조사('99년),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통한 일일 관측('99.7) 및 위성영상사진 판독 실시('00.2)는 물론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으로부터 매일 중국어선의 동태파악을 실시('00.3)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우리 어업인 피해 방지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중국어선의 무질서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문제가 대두되고, 양국 어업인과의 빈번한 조업분쟁 발생 등으로 우리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이러한 문제와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중국어선 조업척수 감축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확보로 우리어선 조업활동 지원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그 동안 우리 수역에서 무차별하게 남획하였던 중국 어선의 조업척수를 협정 전 12,000여척에서 2012년 입어척수를 1,650척으로 대폭 감축시키고 조업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금지 및 중·일 잠정조치수역 상부수역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EEZ 경계확정 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 어선의 어획증대 및 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EEZ 자원관리방안 마련 및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우리 EEZ내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 수산자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측에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을 촉구하여 2010년 선망어업에서 어획하는 고등어에 대해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시범실시한데 이어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오징어에 대한 어종별 할당제 실시를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를 각자 실시하되, 양국은 상호 전문가를 계속 파견하여 자원조사 실시 상황을 상호 교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폭력저항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단속·정선명령 위반어선에 대해 30일간 어업정지 처분, 자망어업의 어구 실명제 실시, 조업 위반어선 명부 및 처리조치사항 통보 등 조업질서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자원보호, 중국어선들과의 조업질서 확립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측 단속기관의 점검 시 일부 중국어선의 집단·폭력적 저항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EEZ내 중국어선의 조업실적에 비해 중국 EEZ내 우리어선의 조업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조업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공동자원조사 실시 및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등 과학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어업인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산하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추진 및 어업지도단속실무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 한·러 어업협정

▣ 원양정책과 사무관 조성남

▣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1989년부터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91.10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조업형태는 정부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민간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였고, 이마저 2003년부터 없어짐에 따라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합작사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조업하고 남은 국적선은 5~7척 정도만 조업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민의 수산물 불법 어획 및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IUU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를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세금, 과실송금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 러시아수역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어업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정발효 초기에는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로 구분하고 정부쿼터는 어종교환과 상업쿼터로 구분되고, 민간쿼터는 직접어로·공동어로·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2년의 경우 명태, 대구저연승 계통발 등 3개 업종이 정부 또는 민간협력에 의해 109천톤 정도 어획되었고, 이와 별도로 오호츠크 공해에서 206천톤 등 총 319천톤 정도 어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호츠크 공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993년 4월 25일부터 조업을 자제하였고, 계통발어선은 러시아연방 대륙붕법 공포(95.11.30)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계통발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러시아수역은 북해도에서 조업하던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이 1999년 모두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 명태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유일한 어장이 되었다.

정부간 협력에 의한 명태쿼터(상업쿼터) 확보는 1993년 150천톤으로 최고의 물량을 확보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0천톤까지 감소하였으나 러시아 측과 IUU어업 방지협정 체결 및 이행,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 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 추진으로 명태쿼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1년에는 50천톤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쿼터에 의한 명태조업은 직접어로 분야는 매년 19천톤~164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러시아가 2001년부터 불법 어획 및 교역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종료되었다. 또한 공동어로도 매년 17~58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합작사업은 협정체결 초기부터 1~2개 업체가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협력에 의한 직접조업 및 공동어료가 불가능해진 어선들이 합작형태로 협력방법을 전환하여 최근에는 14개사 24척이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표 4-7-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단위: 천톤)

구분 \ 연도	1992	2001	2002	2004	2007	2009	2011	2012
계	187	200	25	20	21	39	50	40
정부쿼터	100	35	25	20	21	39	50	40
민간쿼터	87	165	-	-	-	-	-	-

■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추진

러시아는 제7차('97년)부터 제11차('01년) 한·러어업위원회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의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자료를 2003년 1/4분기부터 러시아 측에 제공하였다.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러시아수역 명태 민간조업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특별쿼터 배정을 요청('02.5)한데 대해 러시아측은 이 문제는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력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13차('03년)부터 제17차('07년) 한·러어업위원회에서 양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협의하였으며, 제18차 한·러어업위원회('08년)에서 양측은 2009년 1/4분기 중에 이 협정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09년에 5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후 2009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9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산 수산물을 러시아 선박에 의해 한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방법의 불법교역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제3국선에 의한 불법교역이 아직 남아있고, 특히 게 불법교역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우리 측에서 2012년 7월 24일부터 게 수입신고시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게 원산지증명제도를 시행하였다.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활성화 추진

우리나라는 2003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3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한·러 수산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 측이 한국에 명태쿼터를 향후 10년간 매년 5만톤씩 제공할 경우 한국측은 매년 5백만달러씩 10년간 러시아 극동에 냉동창고·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2008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수역 명태 쿼터를 과거(4만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진출과 한·러 수산물 불법 수출방지협정의 조기체결을 희망하면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였다. 이에따라 제19차 한·러어업위원회('09년)에서 양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가공공장, 어선 건조 및 수리소 투자진출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하였다.

2010년 12월 명태업계(북양트롤위원회)와 러시아 Ecarma社간 수산물 냉동창고 및 수산가공시설

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고, 75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할린에 1,0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2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은 우리 명태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이므로 안정적인 조업권터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2월 IUU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0년 7월부터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통합고시를 제정 고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11.11)에서 2012년 명태권터 40,001톤을 비롯한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대구 4,450톤, 기타 2,016톤 등 총 61,967톤도 확보하였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등 한·러 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IUU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러시아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이 이루어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 어업교섭과 사무관 박영기

■ 추진내용 및 성과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입어하여 조업하는데 대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수산당국은 서해 평화정착 및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졌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정부에서는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그동안 남북 당

국 간 추진키로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실정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남북 당국간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5.7)에서 남북 수산실무회담 개최 문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05.7)에서 ① 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②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협력 ③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추진 ④ 우량품종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북한의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07.11) 및 제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07.12)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제1차 서해평화특별지대추진위원회(07.12)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을 통한 공동어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07.12)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①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협력 ②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개발·양식분야 협력 ③ 수산물 유통분야 협력을 재차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해수역 입어는 2008년 중에 실시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4-7-9〉 남북수산협력 사업 주요 추진경과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5. 6. 24 ~ 6. 24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
2005. 7. 9 ~ 7. 12	제10차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7.25~27)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05. 7. 25 ~ 7. 27	제1차 남북수산 협력실무협의회	서해상 공동어로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 및 합의서 채택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 6. 3 ~ 6.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으며, 남북은 4.18~21일 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
2007. 5. 8 ~ 5. 10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2007. 7. 24 ~ 7. 26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 없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2007. 10. 2 ~ 10. 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경제협력사업 적극 활성화 등 2007남북정상선언문 채택
2007. 12. 4 ~ 12. 6	제1차 남북경제 협력공동위원회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
2007. 12. 14 ~ 12. 15	제1차 남북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2008년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협력을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합의
2007. 12. 28 ~ 12. 29	제1차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공동어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어로구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추진, 공동어로 실시방안 및 수산협력방안의 협의를 위해 '08년 상반기 공동어로협력분과위 개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2012년

그러나 2008년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북핵문제 및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따라 남북 간 수산협력사업도 중단된 실정이다.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북한산 수산물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중국 현지 실태조사 및 위장반입 차단 점검 등 범 정부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남북수산협력사업은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등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에는 호혜적인 남북 수산협력사업으로써 2007년에 합의한 수산협력사업 중 '우리어선의 동해북측수역 입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상호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실용적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하여 KMI 등에 남부수산협력방안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북 수산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2절 해외 수산자원 개발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원양정책과 사무관 구도형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 증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조업경쟁의 심화,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규제강화 등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산물 생산량은 2011년 51만톤(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의 약 16%)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

다.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금액과 수출금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선 척수 등과 같은 우리 원양 선단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인프라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의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수산기업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직 계열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여 세계 수산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도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어선 현대화와 해외 수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원양산업이 태동한 이후 최초로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를 무대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총 조사 결과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원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노후한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에 이어 주력업종인 참치선망어선 4척의 대체 건조사업에 착수하였다(10년 2척 완료). 아울러 트롤어선 1척에 대해 냉동시설과 같은 선상설비현대화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

어업 외에도 양식,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용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자원이 풍부한 연안국의 수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2개 기업을 지원 하였다. 이와함께 그동안 해외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투자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개 국가의 투자여건(수산업 정책, 법령, 산업동향, 투자환경) 등을 조사·제공하였다. 원양산업 거점 국가의 교민을 임명한 명예수산물관 8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수산 투자기업 지원사업은 중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작은 실정이며, 용자 조건이 광물, 농업 등 타 해외자원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용자 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정책 외에도 2012년부터는 원양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협상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국제읍서버를 확보하여 조업 환경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원양 생산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1년 착수한 참치선망어선 4척과 트롤어선 1척에 대한 선상설비 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원양정책과 사무관 조성남

■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어장의 개발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연구기관, 원양업체 등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19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정책 강화 등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어장은 날로 좁아져 새로운 어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1957년 지남호에 의해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 시험조업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어장 개발의 효시이며, 동 시험조업의 성공으로 원양어업 해외어장 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모아, 인도양 등 다랑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캄차카, 러시아수역, 베링공해, 북해도 등 명태어장 개발,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 오징어 어장개발, 북태평양 퐁치어장 개

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해외어장개발 장기 정책방향연구'를 실시하여 해외어장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온 콩치붕수망어선의 조업쿼터 확보 어려움이 대두되자 2002년 북태평양 서경어장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조업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어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남태평양 동부공해 전갱이 어장을 개발하여 상업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2척이 15천톤을 어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2004년에는 북태평양 중부 돔어장 개발, 2006년 FAO 47해구의 이빨고기 어장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에는 FAO 41·47해구에 대한 오징어어장, FAO 47해구에 대한 금빛눈돔어장 등에 대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7-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단위: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예산
2001~2002	과학원(탐구1호)	트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2002. 8~10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콩치	3
2003. 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콩치	4
2003. 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콩치	3
2003. 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2004. 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2005. 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2005. 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2006. 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2006. 12~2007. 5	상업어선 2척	연승	47해구 공해	메로	10
2007. 9~2008. 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미드웨이	참치	9
2007. 7~8	상업어선 2척	트롤	중부베링	명태	6
2008. 8~12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민대구	6.5
2008. 9~11	상업어선 1척	트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2009. 7~9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민대구	4.3
2009. 6~9	상업어선 1척	트롤	베트남 EEZ	조기류	3.2
2009. 8~11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7
2010. 8~12	상업어선 1척	트롤	SAEFO	전갱이류	4
2010. 3~2011. 2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5.2
2010. 3~6	상업어선 1척	트롤	기니아 EEZ	돔류	4.8
2011. 10~11	상업어선 15척	붕수망	북태평양 공해	콩치	8
2011. 10~11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7해구	금빛눈돔	1.1
2011. 6~2008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41·47해구	오징어	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12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8개 수역(200억원 투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8개 수역에서 상업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부터 정부주도로 추진된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으로 매년 콩치, 전갱이 등 22,000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매년 260억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조업실적을 미리 쌓아 놓아 계속 설립되고 있는 지역수산물리기구 관할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대서양 서남부(FAO 41해구)에 대해 오징어 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 원양정책과 서기관 정상윤

■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업체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어업의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를 보면 2011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2,680억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1,200)을 지원하여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으로 해외어장에서 지속적인 조업과 주요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원양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양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지원을 위해 2012년에는 2,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해외어장의 개발 및 수산자원의 확보,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 원양정책과 사무관 전우진

■ 추진배경 및 개요

2011년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선 179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165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92%에 이르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 참치어업은 횡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주로 태평양 중서부수역에서 연간 약 30만여톤을 생산하여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51%를 점하고 있는 수출주력업종이다.

원양어업 중 경쟁력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과 2006년, 2009년에 선망어선 1척씩 총 3척을 건조하였다. 2010~2011년에는 선망어선 2척을 건조하였다. 또한 2011년까지 총 7척의 참치 연승어선의 중고선 도입자금도 융자지원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참치 선망어선 4척(소요예산 154억원)의 1차년도 자금을 용자지원할 계획이다. ↶



2011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2년 12월 일 인쇄

2012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1-1718

디자인 및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